2000년도

규제개혁 백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2기 규제개혁위원회 강철규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2000. 4. 17).



위원장이신 이한동 국무총리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2000. 7. 15).



위원장이신 이한동 국무총리께서 조정제 전 경제1분과위원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고 있다(2000, 11, 10).



전라북도에서 중앙·지방 합동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2000. 12.8)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0년도에 추진한 제1차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모습(2001. 4. 27)

발 간 사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구현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을 토대로 민간인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정비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만 1,000여건의 규제를 찾아내어 절반 이상을 폐지하고, 기업활동·사업자단체·유사행정규제 등 분야별로 집중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기업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0년부터는 기존규제의 정비 외에 새롭게 도래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규제체계의 정립을 위해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추진하여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는 IMF 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OECD 등 선진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바, 이는 바로 국민 여러분의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총체적인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는 향후 규제개혁의 새로운 과제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의 시정과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의 규제와 하위·유사행정규제의 정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경제계와 상시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 무 총 리 **시 찬-중**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시 찬-중**

규제개혁 백서 발간에 부쳐

정부에서는 지난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1만 1,000여건의 규제를 발굴, 이 중 절반 이상을 폐지하고, 126개 분야에 대한 중점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3,000건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1,019건을 개선 또는 철회토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되, 환경·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도부터는 법령상 규제의 정비 외에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의 집중정비, 경제5단체 등으로부터의 주기적인 건의과제 수렴 및 개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정립을 위해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총 81개의 세부과제 중 26개 과제의 추진을 2000년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가 3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한 이정표로 삼기 위해 1998년도와 1999년도에 이어 2000년도 규제개혁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백서에서는 제1장과 제2장에서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지난 3년간 규제개혁 추진실 적을 종합정리하고, 제3장 내지 제8장에는 분야별 추진실적을 수록하였으며, 제9장에는 향후 규제개혁 방향과 2001년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백서가 관계 공무원에게는 업무지침서로서, 전문가와 일반국민에게는 참고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공 동 위 원 장 **76 建干**

교체 1 장 규제 개혁 추진 개요

제1절 규제개혁 추진경위 · 25

제2절 규제개혁 추진방향 · 27

- 1. 우리 나라 정부 규제의 특징 27
- 2 규제개혁의 필 와성 28
- 3. 규제정비원칙 29

제3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조직 · 31

- I. 개요・31
 - 1. 효율적이 고 일 관성있 는 추진 기구 구축 31
 - 2 추진 기구 31
- Ⅱ.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33
 - 1. 개요 33
 - 2 회의 운영 34
 - 3.심사절차 35
- Ⅲ.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ㆍ36
 - 1. 개요 36
 - 2회의운영 38

기고문/딜레마상황과규제기혁 · 39

국민의정부3년간 규제개혁 추진실적 개관

제1절 기존규제의 전수조사 및 정비 · 43

제2절 중점개혁 과제의 정비 · 47

제3절 지식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규제정비 · 49

제4절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 55

제5절 하위법령 · 유시행정규제의 정비 · 57

- 1. 추진 경 과 · 57
- II. 2000년 도 추진실적 · 58
- Ⅲ. 주요 정비사례 59
 - 1. 회원 가입 및 탈퇴 관련 불합리한 규제 59
 - 2 회비 납부 강제 과다 장수 등 회비 관련 부당한 규제 60
 - 3.의무불이행회원에대한 과잉제재 규제 60
 - 4. 회원에 대한 불필요 과도한 교육의무 부과 60
 - 5. 허 가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협회 경유의무를 규정한 규제 61
 - 6.단체의우월적 지위를 이용,회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규제 61
 - 7. 가격담합적 성격의 불공정한 규제 61

8. 각종입찰·경매참여및 거래행위 제한 등 진입제한적성격 규제 · 62

9. 행정편의적으로 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규제 62

10.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현실과 괴리되거나 사문화된 규제 • 63

기고문/규제개혁과의식개혁 • 64



중점규제개혁과제 등의정비

제1절 경제 및 공정거래분야 · 69

-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마련 69
- Ⅱ. 다단계 판매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70
- Ⅲ. 보세구역 관련 규제개혁방안 72
- Ⅳ. 맥주제조 시설기준 완화방안 73
- V. 보험 관련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74
- VI. 자동차보험 진입규제 개선방안 75
- ₩1. 감사인 수임규모 제한제도 개선방안 76
- WII. 코스닥시장의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개선방안 · 77
- IX. 유가증권 발행 관련 규제개혁방안 · 78

- X. 보험영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 79
- XI. 금융업 영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 81

제2절 건설·교통및 산업분야·83

- 1.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규제개혁방안 83
- Ⅱ. 자동차 관리 관련 규제개혁방안 84
- Ⅲ. 도시계획 지역 지구제도 개선방안 87
- Ⅳ. 주택ㆍ토지 취득 관련 거주지 제한 규제개혁방안ㆍ88
- V. 도시공원내 시설규제 개선방안 90
- Ⅵ.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91
- WII.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 92
- ₩II. 건설현장 환경관리 관련 규제개혁방안 · 94
- IX.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개선방안 96
- X. 전기 및 가스분야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방안 · 97

제3절 사회문화분야 · 99

- Ⅰ.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Ⅱ) 99
- Ⅱ.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100
- Ⅲ.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제개혁방안 102
- Ⅳ. 의료보험 관련 규제개혁방안 104
- V. 의약품 등 검사업무 관련 규제개혁방안 · 105
- WI. 산업안전 관련 건축시설물기준 합리화방안 ⋅ 107

- ₩1. 전자직업소개 관련 규제개혁방안 108
- ₩1. 고용보험제도 관련 규제개혁방안 109
- IX. 청소년 보호연령 기준 관련 규제개혁방안 · 110
- X. 교장 · 원장 자격인정 관련 규제개혁방안 · 111
- XI. 외국어학원 설립 · 운영 관련 규제합리확 방안 · 113
- XII.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 규제개혁방안 114
- XIII.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제도 규제개혁방안 · 115
- XIV. 보호외국인 관련 규제개혁방안 · 116
- XV.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제도 개선방안 · 117
- XVI.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발급 관련 규제개혁방안 · 118

제4절 시업지단체 및 환경분야 : 119

- Ⅰ.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ㆍ119
- Ⅱ.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 127
- Ⅲ. 공원지역내 행위제한 규제개선방안 130
- Ⅳ.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제개선방안 131
- V. 오수처리시설 및 정확조 설치 관련 규제개선방안 · 132
- Ⅵ. 환경산업 관련 규제개선방안ㆍ133

제5절 정보통신 등 기타분야 · 135

- T.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 관련 규제개혁방안 · 135
- Ⅱ. 정보통산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136

- Ⅲ. 해운 분야 규제개혁방안 138
- Ⅳ. 항만 분야 규제개선방안 140
- V. 축산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 141
- Ⅵ. 농약유통 및 안전 관련 규제개선방안 142
- WI. 농업 관련 민원업무 규제개선방안 · 143
- ₩1. 농업 관련 규제개선방안 145
- IX. 임산물 굴취ㆍ채취 및 매각 관련 규제개선방안ㆍ146
- X. 산지의 보존 및 이용 관련 규제개선방안 · 147
- XI.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제개혁방안 · 148

기고문/핵심규제풀어약경제가산다 · 151



지식정 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 155

- I. 규제개혁 추진 기본방향 · 155
- Ⅱ. 규제개혁 중점 추진분약ㆍ156
 - 1.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ㆍ 156
 - 2 지식과정보의활용및 확산을위한 규제개혁 158

- 3.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159
- 4. 건전 하고 안전 한 정 보화 시 스템구축 · 운영 을위한 제도정비 161

제2절 2000년도 추진실적 · 162

- 1.전 작업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재경부,조달청) 162
- 2신기술개발진흥을위한특허제도개선(특허청) 163
- 3.인터 넷환경하의 상표권 보획(특허청) 164
- 4. 외국인투자제도 규제개혁(산자부) 165
- 5.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 완화(재경부) 165
- 6. 금융 관련 보고서의 전자문서화및 전자민원확대(금감위) 167
- 7.전 자매체의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담경감(재경부,금감위) 168
- 8.채권시장 선진 확률 위한 규제개혁(재경부) 168
- 9. 영상산업 활성 확률 위한 규제정비(문광부) 169
- 10. 방송광고시장의경쟁체제 도입(문광부) 170
- 11. 인터넷시대에적합한 저작물이용합리홱(문광부) 171
- 12 전 자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공정위, 산자부, 법무부, 정통부) 172
- 13. 전 자상기래 특별 통관절차 마련(재경부) 172
- 14. 지적전산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행자부) 173
- 15. 건설 공사 관련 도서의 연계및 공유 촉진(건 교부) 174
- 16. 창의적 능력신장을 위한 교육내용및 방법 개편(교육부) 174
- 17. 영재교육체계확를 위한 규제개선(교육부) **·** 175
- 18. 민간자격제도 규제합리확(교육부, 노동부) 176
- 19. 재택근로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노동부) 177
- 20. 전 자직업 소개업 규제 합리 회(노동부) 177
- 21. 부당한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개선(공정위) 178
- 22.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도입 을위한 제 도개선 (정통부) 178

23.민간부문 개인 사생활보호를위한제도정비(정통부) • 179

24. 정 보통신 망상의 인 권침해행위 방지대책(정통부) • 180

25.청 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추진(정통부,청보위) • 181

26.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정 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체제정비(정통부) • 182

기고문/디지털 경제학에서의 규제개혁 방향 • 183



제 5 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제1절 경제 및 공정거래 분야 · 187

- I. 신설·강확규제 심사·187
 - 1. 재정경제부 187
 - 2 공정거래위원회 190
- Ⅱ. 누락규제 등록(감사원 감사결과)ㆍ193
 - 1. 재정경제부 193
 - 2 공정거래위원회 195
 - 3.국세청 196
 - 4. 관세청 · 197

제2절 금융분야 · 198

- I. 신설·강확규제 심사·198
 - 1. 재정 경제 부 198
 - 2 금융감독위원회 213
- Ⅱ. 누락규제 등록(감사원 감사결과) · 234
 - 1. 제정 경제 부 234
 - 2 금융감독위원회 235

제3절 산업지원 분야 · 243

- I. 신설·강확규제 심사·243
 - 1. 산업 자원 부 243
 - 2 중소기업 청 · 257
 - 3. 특히청 259
- Ⅱ. 누락규제 등록(감사원 감사결과) 260
 - 1.산업 자원 부 260
 - 2. 중소기업 청 262
 - 3. 특허청 ⋅ 263

제4절 건설교통 분야 · 265

- 1. 신설ㆍ강확규제 심사ㆍ265
 - 1. 건설 교통 부 265
 - 2철도청 291
- Ⅱ. 누락규제 등록(감사원 감사결과)ㆍ292
 - 1. 건설 교통 부 292

제5절 복지·환경분야·310

- 1. 보건 복지 부 310
- 2식 품의약품안전청 325
- 3. 환경부 330

제6절 일반행정및 법무분야 · 351

- 1. 행정 작치 부 351
- 2법 무부 354
- 3. 경찰청 357
- 4.청 소년보호위원회 361

제7절 문화관광분야 · 364

- 1. 문화관광부 364
- 2 문화재청 371
- 3.방송위원회 · 374

제8절 교육·노동분야·379

- 1. 교육인적 자원부 379
- 2 노동부 387

제9절 외교·국방및 보훈분야·397

- 1. 통일부 397
- 2 외교통상부 398
- 3. 국방부 399
- 4.병 무청 399
- 5. 국가보훈체 399

제10절 해양수산 분야 · 401

- 1. 해양 수산 부 401
- 2 해양경찰청 410

제11절 농림분야 · 412

- 1. 농림부 412
- 2산림청 ⋅ 426

제12절 과학기술 · 정보통신 분야 · 432

- 1. 과학 기술 부 432
- 2정보통신부 436

기고문/건설산업발전 견인하는 규개위활동 기대한다 • 446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제1절 자치단체 규제정비 · 451

- 1. 추진 배경 451
- 2.2000년 도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현황 452
- 3.향후자치단체 규제정비 중점사항 454

제2절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455

- 1. 규제계혁 이행실태 상사점검체계 운영 강화 455
- 2 국민제안 및 불편신고에 대한 환류체계 활성화 456
- 3. 규제개혁 관련 교육의 내실화 457
- 4. 대국민 홍보및 여론조사 457

홈페이지계시물/규제개혁 관련 네티즌 반응 · 458



제 7 장 규제개혁 이행실태점검및 홍보

제1절 이행실태점검 개요 · 465

- 1. 점검체제 구축 및 점검활동 465
 - 1.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단 구성 465
 - 2점검단 운영및 활동 465
- II. 점검결과 · 467
 - 1.점검실적 467
 - 2점검후조치결과 467

제2절 5차이행실태 점검 · 469

- 1. 점검 개요 469
 - 1.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469
 - 2 중점 점검사항 469
- II. 점검결과 · 470
 - 1. 총평 470
 - 2 주요점검결과 470
 - 3. 지적 사항 471
 - 4. 분야별 점검결과 472

제3절 6차이행실태 점검 · 474

- 1. 점검 개요 474
 - 1.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 474
 - 2 중점 점검사항 474
- II. 점검결과 · 475
 - 1. 총평 475
 - 2 지적 사항 476
 - 3. 분야별 주요 사례 · 476
 - 4. 주요 수범사례 478

제4절 규제개혁 홍보·480

- 1. 규제개혁과 홍보의 의의 480
- Ⅱ. 2000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홍보・481
 - 1.2000년 도 규제개혁 주요 홍보실적 481
 - 2 기존 홍보에 대한 평가 482

제5절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 · 484

- 1. 규제신고센터 설치ㆍ운영ㆍ484
- Ⅱ. 국민제안 접수ㆍ처리실적 ㆍ485
- Ⅲ. 평가 및 향후계획·488

여론조사/국민의정부규제개혁성과에대한여론조사결과 • 489

체감도 조사/국민의 정부규제개혁체감도 조사결과 • 491



제 8 장 규제개혁 평가

제1절 규제개혁 3년의 종합평가 · 495

- 1. 규제개혁 실적 495
- 2규제개혁실적평가 499
- 3. 규제개혁성과에 대한 비판의 원인 500
- 4. 규제개혁 예론조사 결과와 사사점 502
- 5.정 책적 시사점 502

제2절 경제 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504

- 1. 규제개혁의 배경과성과 504
- 2 경제적 규제개혁의 평가 ⋅ 505
- 3. 개선해야 할점 509

제3절 시회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511

- 1. 사회 분야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511
- 2.2000년 도사회 분야 규제개혁의 주요실적 ㆍ512
- 3. 사회 분약 규제개혁의 성과 513
- 4. 사회 분야 규제개혁의 미흡한점 514
- 5. 사회 분야 규제개혁의 추진전략 515

제4절 OECD 규제심사 · 518

- 1. 개요ㆍ518
- Ⅱ.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OECD의 심사 추진경위 · 519
- Ⅲ. 규제개혁 국별 심사 분야와 구성 · 519
- Ⅲ. OECD 규제개혁 심사 관련 업무 · 522
- Ⅳ. OECD 한국 규제개혁 심사보고서 요지 · 524 -한국규제개혁 보고서에대한 OECD 발표문 · 527

기고문/American Chamber of Commercein Korea \cdot 533

제 9 ^장 향후 규제개혁 방향 및 2001년 도 계획

- 1. 지식정보화 사회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537
 - 1. 제1단 **계 계획 추진 완료** 537
 - 2 제2단 계 계획 수립 · 추진 538
- Ⅱ. 하위규정 ㆍ유사 행정규제의 집중정비 ㆍ 538
- Ⅲ. 신설·강확규제 심사 강확·539
- ₩.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강화 540
 - 1.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계혁 추진체계 구축 540
 - 2 기존규제의 지속적인 정비 541
- V. 규제개혁 성과의 평가·홍보 강화 및 지원 확대·542
 - 1.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실시 542
 - 2 규제개혁 모니터링 제도 운영 543
 - 3. 규제개혁 관련 세미나 등연구 · 홍보강화 543
 - 4. 지방지치단체의 규제개혁 지원 544

<u> 부록</u> (1)

규제개혁 관련 법령

행정 규제기본법 ·549 행정 규제기본법 시행령 · 56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571

부록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지

- 1.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576
- Ⅱ.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591
- Ⅲ.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ㆍ601
- Ⅳ.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ㆍ607

2000년도

규제개혁 백서

제1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1절

규제개혁 추진경위

*집필자: 정현용 서기관(Tel. 3703-3926, junghyun@opc.go.kr)

오늘날 세계는 개방화·국제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정보기술혁명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온 변화는 이제 물량적인 충격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경제 곳곳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계 각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치열한 자기혁신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산업을 빠른 시일내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관여나 통제는 일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며 민간부문의 역량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오히려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IMF체제를 겪으면서 정부의 지시나 통제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메커니즘으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시기에 형성된 각종 정부주도형 규범들을 국제화·정보화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혁하고자 지난 1998년 이후 본격적인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완화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간 약 6.000여건의 규제가 개선된

바 있으며 1997년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약 100여건의 규제개혁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규제개혁작업은 대부분 구비서류 감축, 절차 완화 등 지엽적인 개선에 그침으로써 금융거래, 국토이용, 산업생산 등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시장진입 제한, 과도한 감독 등의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접근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근본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그동안 비상설적으로 운영되어온 규제억제 장치를 대신하는 항구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1998년 3월「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법에 의거하여 1998년 4월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확고한 규제개혁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 하에서 그동안 전 중앙행정기관 기존규제의 절반수준 폐지, 법령 미근거 규제의 전면 철폐 등 기존규제의 정당성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아울러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등 보다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제2절

규제개혁 추진방향

* 집필자: 정현용 서기관(Tel. 3703-3926,

1.우리 나라 정 부 규제의 특징

규제의 건 수가 많 고적 용범 위와 내용이 포괄적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초기인 1998년 당시 우리나라에는 약 1만 1,000여건의 정부규제가 있었음. 규제 대상분야별로 규제건수만을 보면 일부 유럽 국가나 일본에 비하여 과다하게 많은 것은 아니나 국내외 기업인들이 규제가 과다한 것으로 느끼는 것은 규제의 건수보다는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행정간섭이 과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과 행정지도 등에 의한 비공식적인 규제가 과다하며 민간에서도 각종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는 문화전통과 집행자 편의의 행정 풍토에도 기인

기준·절차가 복잡하고 집 행권자의 재량권이 많아 부정·비리 발생소지가 큼 상당수의 정부규제가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결과를 예측하기가 곤란함. 피규제자는 총체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에게는 비 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집행자가 과도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량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미약하여 재량권의 오·남용 가능성이 큼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아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상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법대로 집행할 능력이 있는가, 현실이 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보다 국민정 서나 정치논리에 의해 규제하거나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들이 많음. 이러한 비현 실적인 규제들은 낮은 준수율로 인해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되어 사실상 무규제 상 태를 초래하고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음

규제수단이 주로사전규제, 원칙금지 · 예외허용의방식

대부분의 규제제도가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되어 있고, 규제수단도 획일적 인 기준부과 방식이어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규제자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여러 기관에 걸친 중복규제가 많음

여러 기관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중복규제가 많고 또한 이들 중복규제의 집행이 분산된 각 행정부서의 주관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과잉 집행되거나 범정부적인 일관성 결여가 심각한 문제임

2.규제 개혁의 필요성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 종 규제의 과감한 개혁이 선결과제임

민간자율과창의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인정받는 행정풍토와 사회분위기를 진작시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과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통해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필요

국민생활의질 향상

보건 · 환경 · 안전 등의 사회적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야 함

부정부패의 추방

규제가 심한 곳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해 왔으며 모호한 규제와 비현실적 규제로 인해 각종 부정과 비리가 유발되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임. 부정부패가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제도의 국제화

국제화와 세계 경제통합 추세에 부응하여 규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 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선진 규제기법의 도 입이 필요

3.규제 정비 원칙

사전적 규제는 기준을 설정한 후사후적 규제로전환

사전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반자에 대한 적발, 처벌 등을 강화

주 간적 · 추상적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 · 구체적 으로 규정하여 투명성 제고 상위법령의 위임을 초과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호하거나 포괄적 재량 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객관적 · 구체적으로 규정

준수율이 낮거나 규제효과에비해비용이 더 큰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

준수율이 낮은 비현실적인 규제는 기준을 현실화하거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체하고 필요시 일몰제를 적용하고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검토, 주어진 규제목표에 대해 최선의 규제수단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정비

동일 목적 의 다른 규제 혹은 동일내용을 다수의 기관에 중복제출토록 하는 규제는 주된 규제로 통합정비

중복규제 심사시 관련 기관 소관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통합하고 One-Stop-Service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

OECD국가의 대다수가 갖고있지 않은 규제는 우선적 으로 폐지

해당 부처가 외국에서도 동일(유사)한 규제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과다하 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완화 제3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조직

* 집필자 : 박구연 사무관(Tel. 3703-3931,

1. 개요

1. 효율적 이고 일 관성있는 추진 기구 구축

- 그동안 다원화되어 있던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규제개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
- 각 부처별로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

2.추진 기구

가. 규제개혁 위원회

• 행정규제기본법 제2 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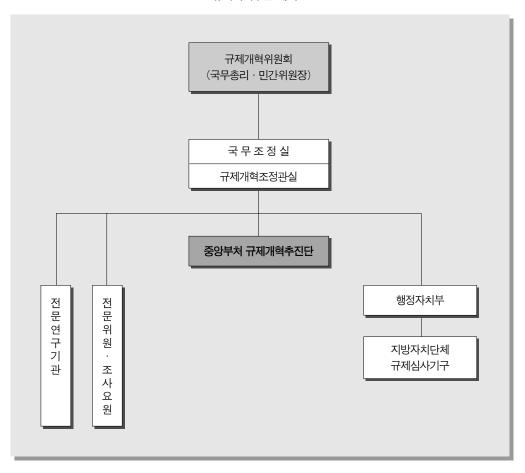
나.각 부처별 규제개혁추진단

• 기획관리실장, 관련 실·국장,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처별 규제개혁추진 단은 규제의 신설·강화시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

다.지방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업무를 수행

규제개혁추진 체계도



Ⅱ.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개요

가.위원회설치근거및 목적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 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1998. 4. 18, 행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2001년 5월 현재

| 구 분 | 성 명 | 현 직 |
|------|-----|-----------------------|
| 委員長 | 李漢東 | 국무총리 |
| | 姜哲圭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政府委員 | 진 념 | 재정경제부 장관 |
| (6) | 李根植 | 행정자치부 장관 |
| | 張在植 | 산업자원부 장관 |
| | 羅承布 | 국무조정실장 |
| | 李南基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 | 朴珠煥 | 법제처장 |
| 民間委員 | 金一燮 | 한국회계연구원 원장 |
| (12) | 金在玉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
| | 金大煥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 金周元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 | 文貞淑 |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 | 成樂五 | 한국편집포럼 대표 |
| | 申受娟 |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
| | 安文錫 | 고려대학교 교수 |
| | 李啓民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 | 李允鎬 | LG경제연구원 원장 |
| | 鄭淳勳 |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
| | 趙健鎬 | 무역협회 부회장 |

정규제기본법 제23조)

나.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 규제의 등록 · 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 등

다. 구성

•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2인, 정부위원 6인 등 총20인으로 구성

2.회의 운영

가. 소집

•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주 개최

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회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회의 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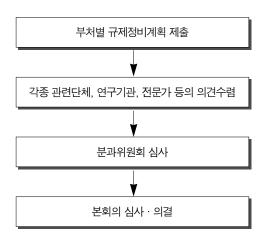
•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 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 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마. 조정 및 의견청취

•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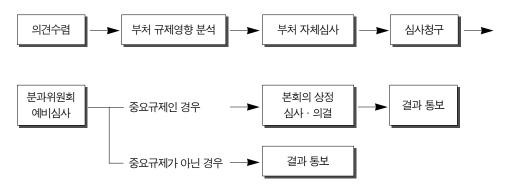
3.심사절차

가. 부처별 규제정 비계획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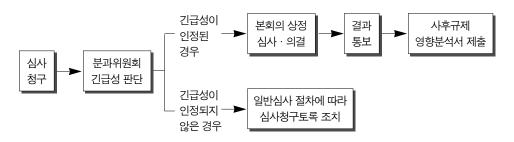


나.신설 · 강화규제심사

• 일반적인 경우



• 긴급규제의 경우: 부처의 사전 규제영향 분석 및 자체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60일 이내에 사후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Ⅲ.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개요

가. 분과위 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1998. 4. 18, 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

나. 기능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 조정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 · 연구
-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다. 분과위 원회의 구성

• 분과위원회 수는 경제1분과, 경제2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4인, 정부위 원 2인 등 6인으로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2001년 5월 현재

| 분과위원회 | | 분과위원 | 소관부처 |
|----------|------|---------------------------------------|--|
| 경제 I | 민간위원 | 安文錫 (위원장) 金一燮 (간사위원) 李允鎬 金在玉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 |
| | 정부위원 | 재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12개 기관) |
| 경제Ⅱ | 민간위원 | 趙建鎬(위원장) 成樂五 金大煥 申受娟 |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
| | 정부위원 | 산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 (9개 기관) |
| 행정 사회 | 민간위원 | 李啓民(위원장) 鄭淳勳 金周元 文貞淑 | 국가보훈처,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병무청, 경찰청, |
| | 정부위원 |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14개 기관) |

2.회의 운영

가.회의 소집

•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

나, 의결

•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회의 공개

•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회의 출석

-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마.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사항

- 규제등록의 요청 및 미등록 규제의 등록 · 정비계획 제출요구
- 중요규제 여부 및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 기존규제의 정비에 대한 위원회 심사여부의 결정
-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에 대한 심의
-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

딜레마 상황과 규제개혁

안문석(고려대 교수, 규제개혁위원)

모든 정책은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낸다. 특정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도 기본적으로는 딜레마 상황 속에서 전개된다. 규제 개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한다.

규제개혁은 선택의 문제이다. 그리고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리성과 공정성이다.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하면 선택은 어렵지 않다. 비용·효과 분석을 통하여 규제의 이익과 손실을 사회 전체적으로 계산하여 규제로 인한 이익이 많으면 규제를 하고 손실이 많으면 그 규제를 버리면 되다.

그러나, 눈높이를 사회 전체로부터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으로 맞추면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차원에 정치적 고려라는 차원이 추가된다. 그리고 규제개혁에 정치적 차원이 도입되면 딜레마 상황이 나타난다.

제2기 규제개혁위원회 시기로 접어들면서 규제개혁 과정에서 딜레마 상황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이것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잠잠해졌던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제2기로 들어서 면서 다시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결정을 연기하거나 판단이 '오락가락' 하는 스윙현상이 나타난다. 제2기가 되면서 결정연기현상이나 스윙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규제개혁이 딜레마적인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관된 기준과 합리적 기준으로 자료검토와 심사를 해 준 규제개혁담당관실 공무원들과 규제개혁위원회 위 원들의 활동이 항상 인상적이었다. 이들이 규제심사 과정에서 보 여준 공정성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튼튼하게 만든 바탕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각 부처 담당국장의 자세였다. 이들은 그동안 규제개혁 심사를 받으면서 규제개혁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던 국장들이 승진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을 맡는 것을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큰 보람이었다.

규제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산다. 국민의 정부 국정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규제개혁위 원회의 활동을 국민에게 더 소상하게 알리고 이를 통하여 국민 의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게 느껴진다.







제2장 국민의정부3년간 규제개혁 추진실적 개관 제1절

기존규제의 전수조사 및 정비

* 집필자: 정현용 서기관(Tel. 3703-3926, junghyun@opc.go.kr)

국민의 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관 기존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매 규제 한 건 한 건마다 규제의 타당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총 1만 1,125건의 규제 중 5,430건(48.8%)을 폐지하고, 2,411건 (21.7%)을 개선하였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환전상 설립인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선물거래업, 증권투신운용업 등 금융서비스업종의 자본금 대폭 인하 등을 통한 시장진입제한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제한 31개 업종 개방 등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민간인들의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 허용 및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로의 전환 등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의료보험 진료권 이용제한 폐지, 단순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 등 국민생활 관련 규제의 개선 등이 있다.

1999년에는 1998년도의 1단계 규제정비 이후 남은 나머지 규제에 대하여 "민간 조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철저히 정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30개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잔존규제 총 6,811건(1998년도 신설규제 511건 포함)에 대한 검토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집중 심사·조정하여 규제의 존치여부 및 품질개선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1999년도의 기존 규제 정비 결과 잔존규제 총 6,811건 중 503건(7.4%)이 폐지되었으며, 570건 (8.4%)이 개선되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품질보증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권한의 민간이양, 식품제

조가공업, 식품접객업 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전환, 대학원 정원 자율화, 일반·전문 건설업의 겸업 및 영업범위 제한 폐지, 일정규모 이하의 양곡가공업 등록제 폐지 등 을 들 수 있다.

2000년도부터 정부는 지난 2년간에 걸친 규제개혁으로 대부분의 개별규제에 대한 정비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나 기존과 같은 규제 한 건 한 건에 대한 정비방식으로는 여러 부처와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합규제에 대한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기존규제 정비방식을 전환, 분야별로 부처간 혹은 법령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중심으로 63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중점과제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2절 중점개혁과제의 정비 참조)

부처별 규제현황

쪞

2000,12.30

현규제수 7,533 312 449 228 848 42 83 116 16 147 234 396 563 826 530 4 29 业 125 388 33 12 2 က 싵 497 47 9 24 30 32 46 2 4 29 45 2000년 정비계획 쎭 147 -23 8 23 <u>동</u> 9 133 30 9 ල 3 3 $\widehat{\infty}$ 2 6 \odot 巌 -127 8 Τ Ţ Ţ 121 191 233 432 329 221 37 30 301 72 郭 7 1999년 정비계획 칉 436 45 9 22 19 33 12 뗪 149 204 12 9 டி 7 9 က (몽모) (220) (58) (43) (27) $\widehat{\mathbb{O}}$ (22) 15) (25) (36) (67) (42) (33) 38 6 \equiv -12 -10 -28 6 -23 53 -31 -24 -23 -25 이율 규제 수 6,497 215 359 228 317 136 244 353 88 37 92 业 20 20 실 1998년 정비계획 83 532 15 28 32 43 30 60 22 쎭 25 27 20 개선 137) 165) 174) 232) 169 (15) 2 (22) (54) 86 9 (96) -142 -202 -362 345 -182 뚪 -224 -467 422 45 -16 쓮 <u>추</u> 규제 수 \$ 426 \$ 701 299 342 420 75 파삼 쌂 랆 샹~ 亿매 非 보윤전 파매 늅 맒 콺 햃 뺩 乾성 파

| | 四十五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 | 592 | 30 | 120 | 10 | 4 | 27 | 259 | 14 | ∞ | 175 | æ | 42 | 142 | 53 | 72 | 75 | 92 | 9 | 7 | æ |
|------------|--|-------|------------|------|-------------|----------|--------------|-------------|-----|-------------|------|------|--------|----------|--------------|-------------|------------------|--------------|------|-------|-------|
| Ī | tir I⊢ | 120 | 10 | 6 | | | | က | | | | 19 | œ | | | | | | | | |
| | 실 | 63 | | | | | | 4 | | _ | 12 | 2 | | _ | | | വ | - | | | 33 |
| 2000년 정비계획 | 四 0万 | 52 | | 7 | | | | | | | | | | 2 | | | | | | | |
| 2000년 | (개선) | (19) | | 9 | | | (5) | <u>(</u> | | | | | | 6 | | | (4) | | | | (12) |
| | ᄧ | 75 | | 4 | | | | | | | | -14 | -5 | | | | | | | | |
| | 이원 규제수 | 412 | 20 | 108 | 10 | 4 | 27 | 252 | 14 | 7 | 163 | 43 | 36 | 139 | 59 | 72 | 70 | 25 | 9 | 7 | 0 |
| | 計 | | | | | | | က | | | | | | | | | | | | | |
| 1999년 정비계획 | 실 | 99 | | _ | | — | | 7 | | | 33 | 4 | | | | | | 7 | | 7 | |
| 1999년 | 成 0万 | | | | | | | 13 | | | Ξ | | | | 2 | | | | | | |
| | (개선) | (64) | | 6) | | | (11) | (10) | | | (2) | | (2) | (36) | | \equiv | (20) | | | | |
| | 屈 | -35 | | -11 | | | | -20 | | | -21 | ကု | | -10 | | -13 | | | | | |
| | 이원 규제수 | 382 | 20 | 118 | 10 | ო | 27 | 249 | 14 | 7 | 138 | 42 | 36 | 149 | 27 | 82 | 70 | 23 | 9 | 0 | 0 |
| | 파 | | | | | | | | | | | | | | | | | | | | |
| 1998년 정비계획 | 신 | 24 | | | | | | 9 | | | | | | — | | 20 | - | 23 | 9 | | |
| 1998년 | (正 (正 | 43 | | | | | | თ | | | | | | ကု | | 4 | | | | | |
| | (개선) | (131) | (14) | (52) | | (2) | (11) | (68) | (3) | 9) | (83) | (11) | (10) | (99) | (11) | (37) | (2) | | | | |
| | 屈 | -315 | <i>L</i> - | -133 | -17 | -7 | -5 | -148 | -14 | -7 | -138 | -47 | අ | -160 | -30 | 翠 | 8 | | | | |
| iKi Ki | 규제수 | 089 | 27 | 251 | 27 | 10 | 29 | 382 | 28 | 14 | 276 | 68 | 75 | 311 | 22 | 124 | 138 | | | | |
| <u> </u> | 마 전 마 | 마모 | 과세정 | 과세청 | 저 교 전 | 동계장 | SE 사 전 | 성 한 장 | 기상청 | 상 전 장 | 사람청 | 871참 | 를 양 | 수양창 | 설 다 30 | 해 경 창 | 문 유 전 전 | 성 보 의 안 | 여성특위 | 국무조정실 | 방송위원희 |

제2절

중점개혁 과제의 정비

* 집필자: 정현용 서기관(Tel. 3703-3926,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어야 할 규제개혁과제를 중점과제 (1998, 1999년도에는 핵심규제개혁과제로 통칭)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도에는 주택·건설산업 관련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개혁 등 37개의 핵심규제개혁과제가 추진되었고 1999년에는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 방안, 산업현장 안전기준 등 관련규제 합리화 방안 등 33개의 핵심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에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등 56개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개혁이 추진되었다.(1998·1999년도 추진 핵심과제 목록은 1998·1999년도 규제개혁백서 참조)

중점규제개혁 과제로는 ①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우리 경제의 회생에 시급한 규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분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온 분야, 국민생활 불편 분야 등) ② 다수의 법령과 여러 부처에 얽힌 복합규제로 일괄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규제, ③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개혁요구가 집중되거나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개혁과제를 주로 선정하였다. 과제 선정과정에서도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의 건의를 적극 수렴 토록 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2000년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한 중점규제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번호 | 중점과제명 | 번호 | 중점과제명 |
|----|----------------------------|----|-------------------------------|
| 1 | 코스닥시장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개선 | 29 | 전력기술관리 관련 규제개선방안 |
| | 방안 | 30 | 문화재보호 관련 규제의 합리화 |
| 2 | 도시계획지역 · 지구제도 개선방안 | 31 | 전자직업소개업 관련 규제개혁 |
| 3 | 외국인 국내활동 관련 규제개혁방안 | 32 | 고용보험제도 관련 규제개혁 |
| 4 | 농약유통 및 안전 관련 규제개선 방안 | 33 |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 규제개혁 |
| 5 | 임산물 굴취 · 채취 · 매각 관련 규제개혁방안 | 34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제도 관련 규제개혁 |
| 6 | 사립학교 교장자격 관련 규제개선 | 35 | 농촌개발 및 지원 관련 규제개선 |
| 7 | 공원지역내 행위제한 규제개선방안 | 36 | 산지의 보존 및 이용 관련 규제의 합리화 |
| 8 |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 관련 규제개선방안 | 37 | 수산업분야 진입규제 등 개선방안 |
| 9 | 의료보험 관련 규제개혁방안 | 38 | 금융업 진입규제 및 겸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
| 10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 39 | 금융기관 영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
| 11 | 축산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 | 40 | 인감증명제도 개선 |
| 12 |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 관련 규제개선방안 | 41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제도 개선방안 |
| 13 | 보험영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 42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발급 관련 규제개혁 |
| 14 |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개편방안 | 43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 관련 규제개혁 |
| 15 | 시장지배적 사업자 심사기준 개선방안 | 44 | 광고물 관련 규제의 합리화 |
| 16 | 증명민원서류 감축 방안 | 45 | 산업의 진입, 가격 등 경쟁제한적 |
| 17 | 해운분야 규제개혁방안 | | 규제개선방안 |
| 18 |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규제개선 방안 | 46 | 위탁대행기관 관련 규제개선 |
| 19 |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제개선 | 47 | 항만분야 규제개혁방안 |
| 2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 48 | 공공공 사 입찰 관련 규제개선방안 |
| 21 | 학원설립 · 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 | 49 | 건축 관련 규제개선 |
| 22 | 정보통신산업 관련 규제합리화 | 50 | 토지이용 관련 규제개혁방안 |
| 23 |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 51 | 의약품 및 검사 관련 규제개혁 |
| 24 | 품질인증 관련 규제개혁 | 52 | 환경산업업종의 합리적 개선방안 |
| 25 | 농업관련 인·허가 업무절차 간소화 | 53 | 다단계 판매업 등 관련 규제 개선방안 |
| 26 | 공공공사 입찰 관련 규제개선방안 | 54 | 각종보세구역 지정 · 운영 관련 규제개선방안 |
| 27 | 토지이용 관련 규제개혁방안 | 55 | 단체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제개선 |
| 28 | 병역특례제도 관련 규제개선 | 56 | 수도권 산업입지 관련 규제개선 |

주) 동과제 중 일부는 법령 심사시 반영 등의 사유로 별도과제로 상정되지 않아 제3장의 세부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3절

지식정보화 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집필자: 정현용 서기관(Tel. 3703-3926,

우리 사회는 선진국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주도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봉착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이 존중받는 역동적 경제사회가 시현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다음의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투입요소 확대중심의 성장에서 생산성·지식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의문제, 다음으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불합리한 기존의 제도와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적극적인 국제화 추진 문제,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가 21세기 선진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법과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규제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식정보화 과제는 금융, 건설,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10개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 및 규제개혁조정관실 담당관을 중심으로 10개 작업팀을 구성, 2000.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여 동안 추진대상 과제 등을 1차로 선정하였으며, 1차 선정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1개 최종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대통령께 보고 (2000. 9. 19)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일정에 따라 2000. 9월부터 12월까지 총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000년도 추진

대상과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2001년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81개 규제개혁과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기본계획 개요 및 주요 추진실적은 제4장 참조).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 구 분 | 추진 부처 |
|-----------------------------------|----------|
| 1-1.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 | |
| ①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 행자부 |
| ② 민원사무의 정보통신망 사용 관련 규제정비 | 행자부 |
| ③ 정보통신망 이용 민원의 신분확인 관련 규제개선 | 행자부 |
| ④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 재경부, 조달청 |
| ⑤ 자동차 민원행정 간소화 | 건교부 |
| 1-2.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
| ① 표준화 시스템의 재정비 | 산자부 |
| ② 단체표준의 활성화 | 산자부 |
| ③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측면의 표준화 장려 | 산자부 |
| ④ 인터넷 특허행정을 위한 규제정비 | 특허청 |
| ⑤ 신기술 개발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특허청 |
| ⑥ 통계자료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통계청 |
| ⑦ 인터넷 환경하의 상표권 보호 | 특허청 |
| ⑧ 생명공학 관련 법령 정비 | 복지부, 과기부 |
| ⑨ 외국인 투자제도 규제개혁 | 산자부 |
| ⑩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도 개선 | 재경부 |
| ① 코스닥시장 운영 · 관리체제 개선 | 재경부, 금감위 |
| 1-3. 선진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 |
| ① 인터넷은행 설립 규제개혁 | 재경부, 금감위 |

| 구 분 | 추진 부처 |
|-------------------------------------|----------|
| ②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제한 완화 | 재경부 |
| ③ 선물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재경부 |
| ④ 금융업 진입제도 규제개혁 | 재경부 |
| ⑤ 금융 관련 보고서의 전자문서화 및 전자민원 확대 | 금감위 |
| ⑥ 전자매체의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담경감 | 재경부, 금감위 |
| ⑦ 투자신탁사 및 자산운용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보수제 도입 | 금감위 |
| ⑧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 재경부 |
| ⑨ 투자자문업 운용인력 보유제도 규제개혁 | 재경부 |
| 1-4. 기타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
| ①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 문광부 |
| ②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 문광부 |
| ③ 건강보험 EDI 청구에 따른 조기지급 제도화 | 복지부 |
| ④ 건강보험증 관리업무 개선 | 복지부 |
| 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 복지부 |
| ⑥ 소방과 화재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재해예방 강화 | 행자부, 금감위 |

지식과 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 구 분 | 추진 부처 |
|---|-------|
| 2-1. 전통적인 장소개념의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 |
| ① 각종 영업의 인·허가, 등록요건인 사무소, 상시고용 인수, 자본금 요건 등 대폭 완화 | 전 부처 |
| ② 원격의료 제도 도입 | 복지부 |
| ③ 전자의무기록 제도의 도입 | 복지부 |
| ④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 | 복지부 |
| ⑤ 보건의료정보 공동 활용 추진 | 복지부 |

| 구 분 | 추진 부처 |
|------------------------------|-----------------------|
| ⑥ 출판산업진흥과 도서관 정보화 | 문광부 |
| ⑦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저작물 이용 합리화 | 문광부 |
| 2-2. 전자거래의 활성회를 위한 규제개혁 | |
| ①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 공정위, 산자부, 법무부, 정통부 |
| ② 전자화폐제도 규제개혁 | 재경부 |
| ③ 전자상거래 책임관계 등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산자부 |
| ④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마련 | 재경부 |
| 2-3. 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 |
| 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정 통부 |
| ② 지적전산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행자부 |
| ③ 공간정보의 유통 · 활용범위 확대 | 건교부 |
| ④ 측량 및 지적제도의 합리화 | 건교부, 행자부 |
| ⑤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개선 | 건교부 |
| ⑥ 수치지도 갱신관련 제도 개선 | 건교부 |
| ⑦ ITS시설의 설치 근거규정 보완 | 건교부 |
| ⑧ 공공부문 수집교통정보의 유통과 민간이용 촉진 | 건교부 |
| ⑨ 건설공사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 건교부 |
| ⑩ 물류정보화 전담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 | 건교부 |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 구 분 | 추진 부처 | | | | | | | |
|-----------------------------|-------|--|--|--|--|--|--|--|
| 3-1.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 | | | | | | | |
| ① Cyber교육체제의 구축·운영 | 교육부 | | | | | | | |

| 구 분 | 추진 부처 |
|-------------------------------|----------|
| ② 창의적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개편 | 교육부 |
| ③ 학교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및 경쟁제고 방안 | 교육부 |
| ④ 교과서 발행 · 공급 규제개혁 | 교육부 |
| ⑤ 학원 설립 · 운영제도 개선 | 교육부 |
| ⑥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 교육부 |
| ⑦ 영재교육 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 | 교육부 |
| ⑧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제도정비 | 교육부 |
| 3-2. 새로운 직업창출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 | |
| ①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혁 | 노동부 |
| ②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 규제개선 | 노동부 |
| ③ 민간자격제도 규제합리화 | 교육부, 노동부 |
| ④ 재택근로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 노동부 |
| ⑤ 휴일 · 휴가제도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 | 노동부 |
| ⑥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규제개혁 | 노동부 |
| ⑦ 여성보호제도 개혁 | 노동부 |
| ⑧ 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안정 서비스 관련 규제개혁 | 노동부 |
| ⑨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 제도 개혁 | 노동부 |
| ⑩ 전자직업소개업 규제합리화 | 노동부 |
| ① 근로자 공급사업 관련 규제개혁 | 노동부 |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 구 분 | 추진 부처 |
|---------------------------|---------|
| ① 우수 쇼핑몰에 대한 포상 · 인증제도 개선 | 산자부,정통부 |
| ②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 개선 | 공정위 |

| 구 분 | 추진 부처 |
|----------------------------------|-----------------|
| ③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 강화 | 공정위 |
| ④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 정 통부 |
| ⑤ 민간부문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 정통부 |
| ⑥ 정보통신망상의 인권침해행위 방지대책 | 정통부 |
| ⑦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암호이용제도 정비 | 정통부 |
|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추진 | 정통부,청보위 |
| ⑨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기반 시설보호체제 정비 | 정 통부 |
| ⑩ D/B의 체계적인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정통부 |

제4절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집필자: 정현용 서기관(Tel. 3703-3926,

정부는 지난 1998. 6. 1일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신설·강화규제 심사제도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 신설·강화의 타당성을 자체심사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친 신설·강화규제 중 중요규제가 아닌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분과위원회가, 중요규제로 판단되는 경우는 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토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강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심사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심사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규제심사제도도 아울러 운용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38차례에 걸쳐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총406개 법령, 1,102건의 신설·강화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이 중 702건 (63.7%)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306건(27.8%)에 대해서는 개선을, 94건(8.5%)에 대해서는 철회를 권고하였다. 2000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중요 신설강화규제로는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관련 규제신설, 대기환경 배출 허용기준 강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관련 규제신설 등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 신설강화규제 심사실적은 다음과 같다.

분과위원회별 신설 · 강화규제 심사실적

 $(2000.1 \sim 2000.12)$

| 구분 | 법령 수 | 심사대상 | 심사 결과(%) | | | | |
|--------|------|-------|----------|-----------|-----------|--|--|
| 1 2 | но і | 규제 수 | 철회권고 | 개선권고 | 원안수용 | | |
| 경제1분과 | 195 | 424 | 35(8.3) | 108(25.5) | 281(66.2) | | |
| 행정사회분과 | 122 | 338 | 37(11.0) | 109(32.2) | 192(56.8) | | |
| 경제2분과 | 89 | 340 | 22(6.5) | 89(26.2) | 229(67.4) | | |
| 총계 | 406 | 1,102 | 94(8.5) | 306(27.8) | 702(63.7) | | |

제5절

하위법령 · 유사행정규제의 정비

*집필자: 정현용 서기관(Tel. 3703-3926,

1. 추진 경과

지난해부터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내규, 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위규제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는 아니나 정부 산하기관, 유관단체, 법인, 협회 등 준공공기관 소관 규제로서 각종 정관, 내규 등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정비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2000년도 규제정비지침」(국무총리 지시 1999-27호)에 포함, 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하였다.

2000. 5월 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하위규제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을 1차 집계한 결과 하위규제 419건(폐지 345건, 개선 74건), 유사행정규제 121건(폐지 41건, 개선 80건) 등 총 540건을 정비키로 하였으나, 상당수의 정비대상기관 및 규제 등이 누락되어 2000. 5. 25일 정비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 부처별로 정비작업 반을 구성해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과 누락된 정비대상기관 및 규제를 추가할 것을 재시달했다.

이에 따라 2000. 10월 전 중앙행정기관의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을 재접수한 결과 하위규제는 798건이 추가된 1,217건(폐지 549건, 개선 668건), 유사행정규제는 1,087건이 추가된 1,208건(폐지 927건, 개선 28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우선 이를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였다(자세한 정비실적 및 정비사례

Ⅱ. 2000년도 추진실적

- 각 부처가 제출한 하위규정 정비계획을 종합한 결과, 36개 중앙행정기관 소관하위규정은 총 8,408개로 집계되었으며, 각 부처는 이 중 844개(10.0%)의하위규정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 844개 정비대상 규정을 유형별로 보면 고시 372개, 훈령 156개, 예규 73 개, 지침 52개, 기타(요강등) 191개 등임
- 한편, 844개 하위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는 총 2,533건이며 각 부처는 이 중 개선 668건(10.3%), 폐지 549건(47.5%) 등 총 1,217건(57.6%)의 규 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제출
 - 부처별 정비계획 건수를 보면, 노동부가 총 596건(폐지 221, 개선 375)으로 가장 많고 관세청 131건(폐지 81, 개선 50), 복지부 40건(폐지 46, 개선 61), 과기부 58건(폐지 24, 개선 34) 등의 순임
- 유사행정규제는 지난 1년 동안 36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총 822개의 소관 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
 - 총 규정수 3,158개 중 1,675건의 유사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이 중 1,208건 (72.2%)을 정비
 - 정비대상규제 1,208건에는 폐지 927건(76.7%), 개선 281건(23.3%)이 포함
- 그동안의 정비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분야명 | 검토 기관수 | 대상 규정수 | 총유사 규제 수 | 정비실적 | | |
|------|-----------|--------|-------------|------|-----|-----|
| | | | | 소계 | 폐지 | 개 선 |
| 금융 | 22 | 225 | 128 | 102 | 23 | 79 |
| 산업 | 284 | 75 | 14 | 14 | 5 | 9 |
| 건 설 | 53 | 1,416 | 169 | 46 | 6 | 40 |
| 교육 | 9 | 282 | 67 | 9 | 0 | 9 |
| 일반행정 | 15 | 10 | 12 | 12 | 1 | 11 |
| 보건복지 | 63 | 33 | 35 | 35 | 23 | 12 |
| 노동 | 15 | 141 | 1,018 | 906 | 838 | 68 |
| 환경 | 25 | 6 | 6 | 6 | 4 | 2 |
| 정보통신 | 31 | 55 | 181 | 9 | 2 | 7 |
| 농림 | 191 | 585 | 90 | 51 | 21 | 30 |

^{*}기타 법무, 해양, 수산, 통일, 외교, 보훈분야 등은 제외

Ⅲ. 주요 정비사례

1.회원 가입 및 탈퇴 관련 불합리한 규제

-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반드시 협회에 가입토록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전국여객터미널사업자협회, 정관)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탈퇴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가공식품수출협회, 정관)
- 회원은 목적과 명칭이 유사한 다른 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한국양곡가공협회, 정관)

2회비 납부 강제 · 과다 장수 등 회비 관련 부당한 규제

- 정부로부터 위탁된 사무(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접수)를 처리하면서 회비납부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회비납부를 강제하던 것을 폐지(대한건 설협회, 건설공사 실적신고 수리 및 실적산정 업무처리규정)
- 조합가입금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과다한 가입금(300만 원)을 책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개선(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정관)
- 협회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과오납의 경우라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선(한국건설감리협 회, 회계규정)

3.의무 불이 행회원에 대한 과잉제재 규제

• 협회 회원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정부위탁사무인 해외건설 공사용 기자재 반출입 확인서의 발급을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폐지(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반출입업무 처리세칙)

4.회원에 대한 불필요 · 과도한 교육의무 부과

- 장애인 신문판매원에 대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교육 및 수시·임시 교육 실시 를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한국장애인재활협회, 신문판매사업 운영규정)
- 약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들이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대한약사회, 위생교육규정)
- 단란주점업중앙회는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교육시 행규정)

5.허가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협회경유의무를 규정한 규제

• 영업허가 갱신, 명의 및 시설변경, 공장이전 등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할 경우 반드시 당해 지부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한국양곡가공협회, 정관)

6.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회원의권리를 부당하게제약하는 규제

- 관세사 사무소 직원 채용시 관세사회에서 6개월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25% 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관세사회, 정관)
- 입주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농수 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시설운영 관리요령)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융자대금 연체시 연체이자율을 사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 도록 규정하던 것을 개선(농수산물유통공사, 농공단지 입주 기업지원자금 융자 취급 규정)

7.가격담합적 성격의 불공정한 규제

- 정비업자의 자동차 정비요금을 정비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간 자율적인 공정경쟁을 제한하던 것을 개선(전국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정관)
- 양축업 공사조직 대표자로 구성하는 국산녹비가격 심사위원회에서 국산 녹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개선(한국양록협회, 공동구매위원회 규정)
- 수출가격경쟁 방지 등을 위하여 신발류 수출질서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출질서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 위원회가 수출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개선(한국신발산업협회, 신발류 수출질서위원회 운용규정)

8각종입찰ㆍ경매참여및 거래행위제한 등진입제한적 성격 규제

- 협회가 신용도 및 본회와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지명하거나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폐지(농협, 축산무역업무 취급준칙)
- 경매장장이 경매참가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임의로 경매참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폐지(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운영요령)
- 자재 및 용역공급 등 거래행위는 반드시 자기 회사에 거래선 등록을 필한 사업 자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개선(포항제철, 공급사 평가관리규정)

9.행정 편 의적 으로 규정 되어 운용되고 있는 규제

- 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시불 또는 분할수납방법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대금수납방법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개선(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 시행세칙)
- 계약해지시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할 경우, 이자지급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던 것을 개선(한국수자원공사, 용지 관리규정)
- 공사의 귀책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광고사용료를 감면하여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개선(한국도로공사, 도로광고시설물 등 관리예규)
- 매매 등에 따라 수요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종전 수요자가 체납한 수돗물 요금을 신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개선(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

10.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현실과 괴리되거나 사문화된 규제

- 양곡소매업의 영업시설기준 중 기본영업 점포면적을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개선(농림부, 양곡소매업의 영업시설기준)
- 음식점의 식사에 10% 이상의 혼식을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농림부, 음식판매업에 관한 행정명령)

규제개혁 과의식 개혁

양승두(연세대 명예교수)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의 우리나라의 행정규제 총량은 무려 1만 1,000여건에 달했다. 그리고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규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많은 규제는 기업의 '창 의적인 발전' 과 '공정한 경쟁'에 장애가 되었고,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편성을 가진 국제적인 규범 때문이라도이와 같은 많은 행정규제는 용납될 수 없다.

행정규제위원회는 우선 행정규제의 기본적 원칙을 정하였다. 모든 규제는 법률로 정하며, 규제 일몰제(日沒制)를 도입하고, 규 제영향평가를 실시하며, 법령 제·개정에 앞서서 그 법령의 규 제사항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등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 리고 행정규제위원회는 비교적 짧은 2년이란 기간 안에 기존의 1만 1,000여건의 규제 중에서 약 반수의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핵심규제를 찾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폐지 또는 개 선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행정규제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아직도 규제개혁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규제를 너무 많이 폐지하였다는 견해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교육·노동·금융 등의 분야에는 아직도 개혁해야 할 규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는 과도한 규제완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행정부가 일시에 획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입법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규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의 의식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모든 것을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 생각,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무원은 규제가 있어야 손쉽게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새로운 규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기존의 규제가 폐지·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개혁은 우리 모두의 의식변화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제3장 중점규제개혁 과제 등의 정비

제1절

경제 및 공정거래 분야

*집필자: 박구연 사무관(Tel. 3703-3931, kuyeon@opc.go.kr) 이상희 사무관(Tel. 3703-2158, shlee302@opc.go.kr)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마련

1.검토배경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가. 시장지 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구체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

나. 시장지 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 위를 금지하면서 그 행위유형을 5개로 분류하여 제시

- 1) 가격의 부당한 결정 · 유지 · 변경행위
- 2)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
-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등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고시)에서 각 행위 유형별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행위 유형을 예시

3.추진실적

• 2000. 7월부터 동 고시 시행

Ⅱ. 다단계 판매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다단계 판매업자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및 다단계 판매원의 관련 폐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뒤떨어지는 다단계 판매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자율적인 유통산업 발전과 시장경제 확립에 기여코자 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가. 다단계 판매업 자 등록제 도 개선

•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시 3억원 이상의 자본금, 영업소 등 일정시설 구비요건을 일체 폐지하여 판매업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되, 소비자 피해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 기능을 강화

나. 다단계 판매업 취급상품 가격제한 완화

• 다단계 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100만위 이하"로 규제하던 것을 폐지

다. 환불보증금 공탁제 도 개선

• 다단계 판매의 청약 철회시 환불을 보장하기 위한 환불보증금 공탁의무를 폐지

라.위탁 · 알선판 매 제한 완화

• 다단계 판매자의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알선행위, 다단계 판매원 또는 다 단계 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를 폐지

마.판매원 모집시 중요정 보공개제도도입

•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가입여부 판단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연평균 수당지급액, 회사규모, 매출액 규모, 명확한 반품기준 등)

3.향후 조치계획

• 2001년 상반기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반영

Ⅲ. 보세구역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통관 등 관세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세구역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세구역 관련 민원인의 실질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보세구역 특허신청시 구비서류 중 정기검사필증 대신 사용 전 검사필증의 제출 도 허용하고, 임차시설의 경우 특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허용(부관부 특허)
- 수입화물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보세구역 관련 각종 서면보고를 폐지하고, 전 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정정신청 허용 및 세관장의 직권정정제도 도입
- 신청이 있는 경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체화공매를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류 허용
- 보세운송신고를 관할 세관 외에 도착지 세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할세관구역 내 동일사업장 또는 집단화된 지역간에는 관세법상 보세운송신고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 간이보세 운송업자의 화물자동차의 보유요건을 현행 1 0대에서 5대로 완화

3.추진 실적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고시 개정 완료(2000. 11)

Ⅳ. 맥주제조 시설기준 완화방안

1.검토배경

• 현행 맥주제조 시설기준이 과다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소규모의 다양한 맥주의 개발 보급을 저해하므로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현행 맥주제조 시설기준을 폐지하여 생산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그 수준을 대폭 하향조정하되. 구체적인 수준 및 방안은 2001년 8월까지 마련

3.향후 조치계획

• 2001년 상반기중 세부 개선방안 심의확정(재경부 소관 규제개혁 특정과제)

V. 보험 관련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1.검토배경

•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 등 보험 관련 전문자격사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자격취득, 실무수습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경쟁제한 및 형평성 문제 야기 등의 폐해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합격자 선발방식 및 합격자 수를 대폭 확대하여 2001년까지는 현행 선발예정 인원 공고방식을 유지하되 선발인원을 1999년의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 고, 2002년 이후에는 일정 시험점수 이상 득점자 전원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선
- 경력자에 대한 시험전부 면제제도를 폐지하여 경력과 직결되는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로 개선하되, 면제과목 수를 1차 및 2차 공히 전체 시험과목의 1/2 범위내로 제한
- 실무수습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현행 2년인 수습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
- 손해사정인의 보조인수 제한을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2000년 하반기 보험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수습기간 단축 및 보조인수 제한을 폐지
- 시험제도 개편사항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01년 하반기 시행

Ⅵ. 자동차보험 진입규제 개선방안

1.검토배경

-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보상담당 기구의 설치 및 보상담당 인력 확보 등이 요구되나, 지역별로 일정수 이상의 기구와 인 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통 · 통신의 발달에 따라 그 유의성이 떨어지고 보험산업 의 경쟁촉진, 상품차별화에도 역행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자동차보험 영위기준 개요
 - 보상담당 기구 : 특별시, 광역시, 도(제주도 제외) 단위별로 1개소 이상 설 치·운영
 - 보상담당 인력 : 서울 25명, 부산 7명 등 최소 54명을 확보
 - 보상담당 인력의 자격요건 : 자동차보험업무 1년 이상 취급경험자 등
 - 보상처리에 대한 업무제휴 : 보상담당 기구 및 인력을 갖추고 자동차보험사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업무제휴협정을 1개사와만 체결 가능

2.개선방안

• 보상담당 기구, 보상담당 인력 및 업무제휴에 대한 제한 등 일체의 규제를 철폐

3.추진실적

• 2000. 3월 보험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기시행

₩. 감사인 수임규모 제한제도 개선방안

1.검토배경

- 외부감사인의 조직형태 및 규모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피감사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의 폐해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제한 개요
 - 회계법인(공인회계사 100인 이상): 제한 없이 수임 가능
 - 회계법인(공인회계사 100인 미만): 자산총액 8.000억원 미만 회사
 - 감사반 :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회사
 - 기타 연결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 및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에 한정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단기방안으로 2000년중 감사반 수임규모를 종전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인 회사(계속감사인 경우에는 1,000억원 미 만)로 확대
- 중장기 방안으로 2003년부터 수임제한을 철폐. 다만, 연결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 및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현행대로 회계법인에 한정

3.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단기방안은 2000. 7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시행
- 중장기방안은 감사품질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2002. 12. 31 일까지 동 법률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시행

₩II. 코스닥시장의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개선 방안

1.검토배경

•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코스닥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에 부응하여 시장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기능의 강화와 관련하여 제도적 미비점이 노정되는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조정이 요구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벤처금융의 투자에 의한 벤처기업 지정의 경우, 투자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만 완화된 코스닥 등록요건을 적용
-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개월간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을 제한하고 등록 후 3개월간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의 지분변동을 제한하는 지분변동 제한제 도를 신설
-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원을 9인에서 11인으로 확충하고, 상근위원제도 및 전문가위원 위촉제도 등을 신설
-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최종부도, 영업정지, 자본전액

잠식 등 관리종목제도를 신설

• 코스닥 등록 전 사모증자 제한제도를 개선하여 등록 전 사모증자한도(자본금의 100% 이내)를 초과하는 증자주식에 대해 일정기간(1년) 매각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

3.추진 실적

• 2000. 1월 협회등록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기시행

IX. 유가증권 발행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 등 발행시장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주식·사 채 등 유가증권 발행시 발행내용·재무상태 등에 의한 금감위앞 신고의무, 투 자자앞 공시의무 등의 이행에 따른 사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유가증권 발 행과 관련된 신고·효력발생시기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전자공시 대상을 모든 공시서류로 확대하고 서면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전면적 인 전자신고제로 전환
- 복잡한 사업설명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한 사업 설명서 제도를 도입
- 무보증사채의 유가증권 신고서 효력발생기일을 현행 금감위 신고수리일로부터

10일에서 7일로 단축

- 일반공모 증자시 발행가액을 시가의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여 발행기업이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환기간 1년 이상의 사모CB·B W의 경우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경우에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협회등록법인에까지 확대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금 융감독위원회 앞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
- 기타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국내 증시상장을 위한 주식공모절차 마련, 사채권의 전매가능성 기준 완화.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간소화 등 관련 제도 개선

3.추진실적

• 증권거래법 시행령(2000. 9), 동법 시행규칙(2000. 11) 및 금감위규정 (2000. 10)을 개정하여 기시행

X. 보험영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금융산업의 개방화 · 겸업화의 진전으로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전자금융 거래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보험시장의 자율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의 투명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자기계열 집단과의 부동산 및 비상장 유가증권 매매·교환 또는 공동소유 등 거래가 전면 금지되던 것을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허용
- 보험회사의 자율운용재산 한도를 총자산의 2%에서 5%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군 소속기업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의 보유한도(당해 회사 채권발행한도의 15%)를 폐지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및 보험모집인의 금융 감독원 등록의무를 폐지(자격요건만 설정)
-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자기 회사의 모집 종사자로 스카웃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험회사의 상호협정을 폐 지
- 손해보험사업 및 보증보험사업 부문에서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
- 가계성 보험에 국한되던 손해보험모집인의 모집범위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고 보험중개인에 보증보험 중개업무를 허용
- 상품판매 전 신고대상 상품을 축소하여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하고 보험회사 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

3.추진실적

• 보험업법 시행령(2000.6), 보험감독규정(2000년 하반기) 등을 개정하여 기 시행

XI. 금융업 영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금융기관의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자유로운 기업경영의 보장과 건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 지점의 신설·이전·폐쇄에 관한 기준·절차를 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장기대출금을 1년 이하의 할부납입으로 정기변제토록 한 제한을 폐지
- 은행의 부수업무에 회사채 매매업무,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고대행업무를 허용하고 증권회사에 투자자문형 Wrap Account 및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를 허용
- 국채 등 무위험자산에 대해서는 투신사의 동일종목 투자한도(각 신탁재산의 10% 이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총액대비 비중이 10%를 넘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10%의 초과비율만큼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확대
- 투신사 수익증권의 신탁약관 금감위앞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
- M & A 전용펀드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고 일반사무 수탁회사의 등록요 건을 완화
- 신탁회사로 하여금 선물거래, 보유유가증권의 대여,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자금 운용방식에서 회사채 및 어음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탁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
- 상호신용금고의 영업구역 외에 거주하는 자와의 여수신을 허용
- 선물거래에 있어서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인 일임매매를 허용

3.추진실적

•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선물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기시행

제2절

건설 · 교통 및 산업 분야

*집필자: 민용식 사무관(Tel. 3703-2160, kantmin@opc.go.kr) 이종협 사무관(Tel. 3703-3927, bird@opc.go.kr)

1.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양 업종간의 겸업제한을 2002년부터 전면 폐지토록 하는 등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개혁방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 국제적 관행이나 시대적 여건에 맞지 않는 재하도급 제한, 일반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건설업체의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하도급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유도하고자 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단계별 중간마진 발생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우려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업종이나 공정이 계속 분화·전문화되어 나가는 여건하에서 재하도급 제한은 공사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규제개혁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발주자 및 수급자의 동의를 전제로 쌍방계약에 따라 재하도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원도급은 대기업인 일반 건설업체, 하도급은 중소기업인 전문 건설업체라는 이 분법적 생산체계를 전제로 일반 건설업체에서 일반 건설업체로의 하도급을 제 한하고 있으나, 일반 건설업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 및 전문성이 다양하여 분 업에 의한 효율증대가 가능하므로 일반 건설업체간 하도급 제한을 폐지토록 함
-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감액된 경우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토록 강제"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임의규정으로 전환토록 하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어음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 급토록 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어음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여 건설산업기본 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중복규제를 정비함

3.향후 조치계획

• 하도급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2002.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그동안 건설교 통부가 중심이 되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Ⅱ. 자동차 관리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자동차의 검사·정비·등록 등 자동차 관리와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건의내용 가운데서 개선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작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어, 경미한 부분도장을 위해서도 종합 및 소형 정비업자에게 도장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불편 및 비용증대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사용자 및 자동차 부분정비업자에 의한 '경미한 부분도장' *을 허용토록 함
- 신규등록신청, 형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안전시험, 신규 또는 임시검사, 보관·전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서 교부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단, 신규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이전)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때에는 반납기간 경과 후 10일까지는 3만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규등록시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떼어낸 시점부터 신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시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지가 불가피한 점 등의 불편이 있으므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재질을 종이 등으로 교체하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에 임시운행 허가기간의 식별이용이하도록 표기하며,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전제로 자동차신규등록시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의무를 폐지함
-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동차를 양도함에 따라 실제로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 통·반장 또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부분도장: 판금이나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 없이 압축공기(compressor)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차체의 일부를 도색하는 작업

양도자에 의한 일방적인 등록말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등록차량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양수인의 장기간 이전등록 미필을 이유로 하는 등록말소제도의 존재의의가 미흡하므로, 자동차 양도자의 말소등록 사유에서 "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양도함에 따라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삭제토록 함

• 자동차의 안전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이 있으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주기가 시기적으로 중복되어 있어 구분의 실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기점검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자동차의 내구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간 차등적용에 사용되는 차령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제도 및 자동차정기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함

3.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정비업의 작업범위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부분도장"의 범위를 종래의 "칠붓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서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스프레이 용기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는 경우"로 법률해석 변경(건교부, 2000. 4): '경미한 부분도 장'을 종합 및 소형자동차 정비업의 작업범위에서 제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건교부, 2001년중): 자동차신 규등록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반납의무 폐지
- 도로교통법 개정(경찰청, 2001년중)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지나서 운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강화
- 자동차등록규칙 개정(건교부, 2001년중)
- 자동차정기검사제도 및 정기점검제도 개선 관련 용역시행 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건교부, 2001.8)

Ⅲ. 도시계획 지역 ㆍ지구제도 개선방안

1.검토배경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대적 도시계획제 도가 도입된 1934년부터 용도지역·지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용도지역제 의 경우 용도지역 지정이 일부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편중 되어 있고, 허용 용적률이 과도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녹지공간이 훼손되어 도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 도시 미관이나 특정시설 보호 등 용도지역만으로는 달성하기가 곤란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12개의 용도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구의 세분 기준이 불합리하고 일부 용도지역과 유사한 행위제한이 불필요하게 중복적용 되고 있고,
- 평면적 · 소극적인 용도지역 · 지구제를 보완하여 도시를 입체적 · 능동적으로 계획 · 관리할 수 있는 선진 도시계획기법인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운영중이나 계획수립에 주 민참여가 부족하고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계획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 지구제 와 지구단위 계획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허용 용도 · 종류 ·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일부 용도지구 세분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용도지역 · 지구내 행위제한의 중복사항을 해소함
-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수 립에 주민참여를 확대함

3.추진 실적

•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건교부, 2000. 7.1. 시행)

Ⅳ. 주택·토지 취득 관련 거주지 제한 규제개혁 방안

1.검토배경

• 부동산 투기억제나 환경보전의 명목하에 지역내 거주민들에게만 주택분양이나 토지이용의 권리를 부여하는 '거주지 제한 규제'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함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위장전입을 조장하여 잘못된 인구통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한편, 건전한 실수요자의 주택취득 내지 토지이용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주택·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필요로 하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 거주민으로 제한(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는 하나의 지역으로 예외)하고 있으나,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로의 이동을 곤란 하게 하여 교통비용 증대 등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라이프사이클에 따르는 주 거지 선택의 유연성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주거만족도를 저해하며, 위장전입에 따른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있으므로, 거주지역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제한 또 는 차별규제를 폐지토록 하되, 청약예금 가입자(230만)에게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하여 충격을 줄이는 장기·점진적 방안을 마련토록 함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의 이용목적이 법에서 정한 용도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지 역 거주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 해하고 농지취득시 농지법에서 정한 절차와 중복되며, 위장전입의 부작용을 초 래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일제정비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추어 토지 거래허가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함
- 팔당호 및 대청호 주변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별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오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거주지 제한규제를 비롯하여 별도의 입지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원의 수질은 '주변의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주변의 토지를 누가 이용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제는 합목적적인 정책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저해하고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낙동강 물관리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함

3.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주택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규제 폐지(건교부, 2001. 10)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에 대한 거주지 제한규제 개선(건교부, 2001, 10)
- 팔당호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토지이용에 대한 거주지 제 한규제에 대한 대안 마련(환경부, 2000, 10)

V. 도시공원내 시설규제 개선방안

1.검토배경

•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도시공원 면적의 일정비율 이하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등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공원조성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다양하고 개성있 는 공원조성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도시공원 면적의 일정비율(어린이공원 60%, 근린공원 40%,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 20%, 체육공원 50% 이하)이어야 하며,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해서는 당해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목·잔디, 기타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인 조경시설과 시설외 부지인 녹화공간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공원시설의 설치면적이 증가할수록 공원면적 확대조성이 불가피하여 특정 조경시설을 활용한 창의적 공원조성을 억제하고 획일적인 형태의 공원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 도시공원 안에서 면적규제를 받는 공원시설의 범주에서 조경시설을 제외하고,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합계의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공원조성이 가능토록 함
- 저류지는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친수형으로 설계되어 도 시공원의 효용을 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도시공원법에서 '겸용공작물' 로서 도시공원시설로도 이용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류지 를 도시공원시설로 겸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저류지를 도시공원 시설로 이용가능토록 명확히 함

3.추진실적 및향후 조치계획

- 저류지 등 겸용공작물의 도시공원 내 설치허용과 관련한 운영지침을 마련·시행(건교부, 2000, 10)
-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2002.10)

Ⅵ.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1.검토배경

• 외환위기 이후 공사물량이 격감된 가운데 업체 수는 더욱 늘어나 건설업계의 수주여건이 악화되었고, 1998. 8월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담합근절책으로 담합 구조가 와해되어 수주경쟁이 치열,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85%수준에서 73%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지나친 저가낙찰이 계속될 경우 부실시공 및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로 산업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 시장기능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공사이행은 공사이행보증제도*로 보완
-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되, 기술력과 재무건전 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업체가 우대받도록 심사기준을 강화

^{*}공사이행보증제도(Performance Bond): 공사계약 체결 후 업체 부도시 보증기관이 책임시공하거나 계약금액의 일 정액(현행 3 0%)을 발주기관에 지급

• 상승된 낙찰률이 하도급 공사현장에 제대로 투입되도록 저가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액 대비 82%를 기준으로 감리자의 의견, 공사특성, 현장지형,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저가하도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지침을 제정

3.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재경부, 2001. 1):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최 저가낙찰제 도입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건교부, 2001, 1) : 감리기능의 실효성 제고
- 회계예규 개정(재경부, 2000. 4) : 입찰심사기준의 변별력 제고 및 낙찰하한 선 상향조정
- 저가하도급 심사지침 제정(건교부, 2000. 5): 저가하도급 심사지침 제정·시 행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1.검토배경

• 감리제도가 건설(토목, 건축 및 기계설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공종에 따라 다기화되어 있어 동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수개의 감리업체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효율적인 시공이 곤란하고, 민간분야 공동주택감리에 있어 감리자 지정기준에서 과도한 실적요구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과 재정상태에 대한 상대평가 실시 등으로 신생 감리업체에 대한 진입장애가 되는 등 불합리하므로 감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공사의 종류별로 감리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공사비용 증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 등 모든 종류의 공사감리가 가능한 선진국형 종합감리회사의 성장여건을 조성키 위해 감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함
- 공사종류별로 감리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상이하여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벌방식이 다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이므로,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토록 함
- 민간발주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감리를 건축법과 전력기술 관리법에서 중복 규정함에 따라 책임소재가 모호하고 감리비를 이중으로 부담 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사가 전기분야 기술자를 두고 감 리하는 경우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감리업자가 전기공사 감리를 분 리시행하는 경우를 선택사항으로 하여 건축주가 감리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공사 감리방식이 책임감리에 국한되어 발주청의 다양한 감리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방식을 현재의 책임감리 및 시공감리, 검측감리로 다양화하여 중·소규모 공공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건설사업 관리의 활성화를 추진토록 함

건설공사의 감리방식별 업무범위

| 구분 업무내용 | 책임감리 | 시공감리 | 검측감리 |
|---|------|------|------|
| -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확인 | 0 | 0 | 0 |
| - 품질관리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 0 | 0 | |
| -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 대행 | 0 | | |

- 민간발주 공동주택의 감리자 지정기준이 불합리하여 감리자의 기술능력과 재 정능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리업체 및 감리원에 대한 감리 업무 수행실적 만점기준을 하향조정하고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신 생 감리업체의 시장진입 제한을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평가요소를 개선함
- 감리원 자격(등급)체계에 대한 분야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등급인플레 현상이 심각하므로, 감리원의 자격 및 등급기준을 국제적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함으로써 감리인력 구조를 합리화하고 감리원 수준으로 제고함

3.향후 조치계획

-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공동주택감리 자 지정기준 개정(2001년중)
-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개정(2001.6)

₩ . 건설현장 환경관리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이 주변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환경규제는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규제이나, 현행의 환경규제는 비현실적 · 비합리적 측면이 다수 존재하여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건설공사의 착수에 따른 다원화된 신고절차를 간소화함
-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준을 현실화함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건설업자에게 인 센티브 부여
- 건설공사 현장의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작성·보고하여야 할 서류가 과다하 므로 이를 간소화하도록 함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와 관련한 외부점검시 점검실명제를 도입하여 점검목적 · 일시 및 점검자 성명 등을 현장에 남기도록 함
- 건설공사의 사전 적격심사시 환경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1.0~-0.5점의 신인도 감점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함
-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시에 환경보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환경보전비와 폐기물관리비에 대한 적산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

3.향후 조치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환경부, 2001년): 각종 신고절차 간소화,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준 현실화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환경부, 2001. 6): 처리위탁 폐기 물의 재활용 실적 인정
-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원가절감 보장관련 지침 마련(재경부. 2001. 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환경부, 2001, 6): 폐기물 관련 각종

제출 · 보관서류의 간소화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1.7): 환경관리 비용의 적정 계상을 위한 기준 마련

IX.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개선방안

1.검토배경

-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 확대로 국내 대기업의 시장진입 제한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수입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중소기업 정책의 기조를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대체품 개발 등으로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없는 업종 등 실질적으로 고유업종지정제도의 효과가 상실된 업종을 대폭 정비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업종의 수를 2000년 현재 88개 업종을 45개로 대폭 축소
 - 내수시장에서 수입품의 비중이 25%이상으로 수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외경쟁력 열위 8개 업종 해제
 - · 플러그 · 잭 제조업, 봉제완구제조업, 연마지석제조업, 당면제조업, 보청기 제조업, 의료용물질생성기제조업, 자기치료기제조업, 석공예제조업
 - 대기업 및 선진국에 비해 품질 및 기술수준의 열위인 14개 업종
 - · 습강기제조업, 고압가스용기제조업, 벽시계제조업, 탁상시계제조업, 트랜

스포머제조업, 철심코아제조업, 컷아웃스위치제조업, 고장구간자동개폐기 제조업, 일기책제조업, 크레용파스텔제조업, 골판지제조업, 크라프트지포 대제조업, 화장품용유리제조업, 음반 및 녹음테이프제조업

- 참여 중소기업체가 소수이거나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지정효과가 상실된 21개 업종
 - 길이계제조업, 박용전선제조업, 봉합침제조업, 소형 프로펠러제조업, 플러그부착코드제조업, 상업용 저울제조업, 자동소화기제조업, 피난기구제조업, 선박용 문제조업, 어학실습기제조업, 면거즈제조업, 앨범제조업, 지우개제조업, 발포폴리스치렌관 및 판 제조업, 서류전분제조업, 위생약품용 유리제조업, 적오징어조미 가공식품제조업, 석건재제조업

3.추진실적 및향후 조치계획

• 2000년 9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령 개정, 관련업계의 준비를 위해 해제예시기간(1년) 후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

X. 전기 및 가스분야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방안

1.검토배경

• 인텔리전트 빌딩의 증가로 인하여 건물 관리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 건축물의 소유와 관리가 분리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중 전기 및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리체계의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건물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전기 및 가스 분야의 안전관리자를 건물 위탁관리자도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안 전관리담당자의 선임주체에 건물 위탁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 정하되.
 - 규제개선의 효과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의 요건에 관한 규정 중 "소속직원으로서 일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수정하여 건물 소유자가 자기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건물 위탁관리자 소속 직원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
-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산업자원부 장관 지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금(2억원)에 관한 요건 중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출자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의무구입제도 폐지

3.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 2001년중
- 조기 시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2001년 2월

제3절

사회문화 분야

*집필자:권태성 과장(Tel. 3703-3940, ts-kwon@opc. go. kr) 유주봉서기관(Tel. 3703-3941, yujubong@opc. go. kr)

Ⅰ.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Ⅱ)

1.검토배경

- •음반·비디오·게임산업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여 동 산업의 육성·지원과 건전한 문화·오락 공간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의결(99.12)
-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규제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법 게임물 및 성인용 게임물 취급업소의 건전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코자 함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현재 적법하게 영업중인 대다수의 게임제공업소에서 운영중인 기존 게임물을 감안하여 성인용 게임물의 수용공간 마련을 위해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으로 구분
- 멀티게임장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이용 제공업' 으로 변경하여 게임제

공업에서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

- 종합게임장 지정제도는 전용게임장 구분 세분화로 구분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함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과를 의무적으로 관련협회 · 단체와 지도 · 단속기관 등에 통보하여 자율정화 활동 및 지도 · 단속기능 강화
- 불법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의 제작·유통 방지를 위해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함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게임제공업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함
- 문광부 장관이 음반 · 비디오물 · 게임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향후 조치계획

-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2001년)
- 하위법령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 등 정비(2001년)

Ⅱ.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음란 · 폭력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영화의 제작 · 유통과정의 규제를 정비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등급분류 보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하고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도록 제한함
- 제한상영관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상영관을 설치·경영할 경우 시·도지 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와 선전은 제한상영관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제한상영가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 · 판매 · 전송 또는 대여하거나 시청 제공을 금지하는 등 유통을 엄격히 제 한함
- 이중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수입추천제도와 등급분류제도의 중복문제를 최소 화하기 위해 수입추천시 등급심의를 병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 영화상영신고, 영화상영관 등록, 재해예방조치 등을 공연법에서 영화진흥법으로 이관하여 영화에 관한 법체계를 일원화함
- 청소년보호법 등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18세관람가' 등급 및 연소자 (18세 미만) 등의 연령을 '19세'(연나이 적용)로 통일함

3.향후 조치계획

- 영화진흥법령 개정(2001년)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관련 규정 정비(2001년)

Ⅲ.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문화재 보호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인(私人)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관련 기준을 명료화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고 비지정문화재 중 일반 동산문화재는 국외수출 또는 반출제한, 매장문화재는 발굴금지 등의 보호책을 두고 있으나, 근대화 과정 및 해방 전후에 형성된 건조물 등 부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책이 없어서 멸실·훼손위기에 직면하여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방안을 강구하고,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를 정비 등문화재 보호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함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근대문화유산 보호제도 마련
 - 근대문화재 등록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문화 재에 준하여 보존·관리를 위한 규제와 경비 등의 지원을 하여 보존과 함께 활용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등록문화재(근대건조물, 기념물)는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엄 선관리할 객관적인 선정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문화재 발굴비 원인자부담 예외인정 범위 확대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비용 지원대상범위인 "대지면적 495㎡ 이하 및 건축 연면적 264㎡ 이하의 단독주맥, 건축 연면적 661㎡ 이하의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시설물, 대지면적 330㎡ 이하 및 건축 연면적 264㎡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건축물"에 "영세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주택조합 등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의 건설공사와 발굴조사 중 중요유적의 확인으로 보존이 결정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건설공사"를 추가함
- 중장기적으로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워대상 범위를 계속 확대 추진키로 함
- 3만㎡ 미만 건설공사 전 지표조사 실시여부 인정기준 명확화
 - 사업면적이 3만㎡ 이상 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사전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사업면적이 3만㎡ 미만인 건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경우에 실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민원발생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에 인정한 사례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 시행규칙에 명시토록 함
- 문화재 수리공사 평가
 - 문화재 수리공사의 시공, 실측·설계, 감리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 공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을 도모토록 함
- 사유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등도 수용대상에 포함
 -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유문화재의 경우에도 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내의 토지,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3.향후 조치계획

•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 시행(2001년중)

Ⅳ. 의료보험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1977년 의료보험이 처음으로 도입·시행되어 19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었지만, 227개 지역조합,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공단, 139개 직장조합별로 분리·운영되어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 조합간 재정격차 및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2000년 의료보험의 완전통합 추진과 관련 법령의 규제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2000. 7. 1일부터는 보험증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자격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보험증 없이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도 자격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가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시기한에 관계없이 가입자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소급하여 보험 급여토록 함
- 요양급여의 방법,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요양급여 기준(고시)을 부령으로 상 향조정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4개 진료과목(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에 대한 1단계 진료의 폐지로 의료전달체계 강화
- 새로운 의료행위 · 약제 · 치료재료에 대한 등재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요양기관 의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 비급여 사례를 해소토록 함
- 심사평가원에 설치되어 있는 진료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절차를 보건복지 부 장관 승인제에서 위원 호선제로 개선하고, 상근심사위원을 공개경쟁에 의하 여 임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그 절차 및 방법을 정관에 명문화하도록 하여 공단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

- 2000. 7. 1일부터 공무원·교직원 피보험자 근무처 변경통보서, 의료보험증 반납사유서, 피부양자 자격신고서·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등 각종 서식의 폐지·통합으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자격 취득·변동신고기간을 현재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 임시직 근로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직장 가입자로 관리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및 인권보호 강화
- 1차 전문인력 배출 확대, 단골의사제도(주치의 등록제) 도입 등으로 의료전달 체계의 기초요소인 1단계 진료역량 강화

3.향후 조치계획

- 준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규제정비(2001년중)
-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연계·발전방안' 및 의료보험카드제 도입 등 자격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2000~2001년)
- 의료보험 통합 이후의 변경된 제도에 대한 관련 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2001.8)
- 규제개선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1~2002년)

V. 의약품 등 검사업무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1998, 1999년도 규제정비시 전규제사무를 대상으로 규제정비계획, 잔존규 제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와 관계가 적은 불필요한 규제와 중복규제 등을 정비함과 동시에 규제개혁 취약분야별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규제정비를 추진하여 총 311개 중 175개 규제를 폐지하였으나, 각종 시험검 사 관련 규제는 많은 부분이 준공공기관에 위임된 유사행정규제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정비가 미흡한 부분을 정비코자 함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156개 품목의 의료기기는 수입품목허가(신고)여부를 확인 후 통관하나 782 개 품목은 확인없이 통관하여 무허가 의료기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
 - 관세청과 협의하여 782개 의료기기 전품목에 대한 정밀검토 절차를 걸쳐 필 요한 품목에 대하여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추가지정
- 동일한 제조(수입)업소의 제조·품질관리실태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의료 기기 조사기관과 지방식약청에서 2년에 1회 중복점검하여 업소의 부담이 발생
 - 의료기기 조사기관과 지방식약청에서 중복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제조·품질관리 실태조사의 중복 해소
- 의료기기 조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정기조사는 약사법상 근거규정 없이 식약청 고시에 근거하여 수행
 - 의료기기 조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정기조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5개 품목군 이상의 시험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등록요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 1~2개 품목군을 의료기기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검사기 관에게는 현행 시설요건이 전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등록요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3.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2001.1.19)
- 의료기기법 제정(안)에 중복해소방안 마련(2001년 하반기)

• 의료기기법 제정(안)에 등록요건 완화방안 마련(2001년 하반기)

Ⅵ. 산업안전 관련 건축시설물기준 합리화방안

1.검토배경

• 소방 관련 법령, 건축 관련 법령,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각기 규정된 산업안 전 관련 건축물 시설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내용의 중복, 상치에 따른 민원인 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위험물제조소의 비상구 설치
 - 비상구 설치의 요건과 방법을 보다 상세히 규정(출입구 반대편에 수평거리 50m 이내 설치 등)
- 경보용 설비의 설치
 - 면적기준(200㎡ 이상) 또는 근로자 수 기준(상시 50인 이상)을 모두 적용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
- 계단참의 설치
 -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에 관한 규칙 내용수용)

3.향후 조치계획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2001.12.31)

₩. 전자직업소개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중심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전자직업소개업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직업소개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자직업소 개업에 대한 법적 · 제도적 뒷받침 등 전자직업소개업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사이버 공간에서 직업소개업을 등록함에 있어, 현재 오프라인상의 직업소개업 등록에 필요한 물적요건인 사업소 확보(개인: 20㎡, 법인: 33㎡)요건을 폐지
- 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자격으로 현행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이외에 전자 상거래사 추가
- 전자거래에 다른 손해배상제도의 강화를 위해 국내소개업자의 경우 사업소별 1천만원까지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소별 1억원까지 예치하도록 상향 조정
- 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한 직업소개업 부조리의 효과적 지도 · 점검 장치 마련 검토

3.향후 조치계획

• 구체적 추진일정은 시장 발전상황을 감안한 시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추진 ※ 직업안정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001년 상반기까지 개정완료 계획

₩ . 고용보험제도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실업위기에 긴급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속히 확대된 사업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
 - 이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보호강화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추진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고용안정사업 분야
 - 고용유지 지원대상의 조정(사외파견제도 폐지, 인력재배치의 업종전환 요건 강화)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조정(고용유지지원금의 최고한도 설정, 지원의 형 평성 제고, 훈련 지원수준 상향조정)
 - 채용장려금제도 폐지
 - 감원 방지기간의 확대(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로 연장)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방식의 변경(정률제 → 정액제)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대상 확대(1년 → 6개월)
 - 여성고용지원 강화(육아휴직장려금의 지원수준 상향조정,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등)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의 개선(고령자 신규채용의 지원요건 강화, 다수 고용지원금 상향조정 등)
- 실업급여 분야
 - 급여 기초임금 일액의 상향조정(6만원 → 7만원)
- 직업능력 개발사업 분야

- 훈련비용 지원한도 상향조정(중소영세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훈련실시시 비용 지원)
- 수강장려금 지원대상 확대(비자발적 이직예정인 자와 정보화 기초과정 훈련 수강자에게까지 지원대상 확대)
- 실업자 직업훈련비용 대부

3.향후 추진일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완료(2000.12), 2001.1월 시행

IX. 청소년 보호연령 기준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유해환경의 규제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하거나, 술·담배 등을 자유롭게 구입·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만 19세 미만' 청소년 중에는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한 청소년이 다소 있음으로 하여 이들이 사회통념상 사실상 성인으로 간주됨에도 사회활동과정에 일부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 또, 청소년 관련 연령이 '만 19세 미만', '만 18세 미만' 등으로 개별법마다 상이하여 일선행정관서의 법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단속과정에서는 업주와 타툼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 청소년 보호연령을 일반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현실에 일치시키고, 규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 19세 미만' 으로 완화하면서 다른 법률상의 청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보호연령을 고교를 졸업한 대학생, 근로청소년 등이 제외될 수 있도록 '만 19세 미만'에서 '연 19세 미만' 으로 개선
- 일선행정관서 및 업소의 적용연령 차이로 인한 법집행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영화진흥법, 음비게임법 등 청소년 관련법상의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상 의 연령으로 일원화함

3.추진실적 및향후 조치계획

- 청소년보호법 개정 완료(2001.4)
- 영화진흥법, 음비게임법 개정 추진(2001. 5월 현재 국회 계류중)

X. 교장 · 원장 자격인정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사립학교의 교장 등 자격인정과 관련, 사립학교 측에서 사학의 자율성과 자격 인정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
- 이에 따라 교장 ·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 자격인정의 연령기준, 자격인정 절차 개선을 통한 사학의 자율성 제고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교(원)장 자격 인정기준 합리화
 - 교(원)장 자격 인정기준에 초등학교의 교육경력 · 교육행정경력도 포함
- 사립학교 교(원)장 자격인정의 연령기준 합리화
 - 3 2세 이상 6 2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장 자격인정의 연령 기준 상한 폐지
- 교(원)장의 자격인정 절차의 개선
 - 시행령상의 학식·덕망자의 교장·원장에 대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 추천관 려 규정 일체 폐지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자격인정 권한을 교육감에 위임

3.추진 실적

- 교원자격검정령 재정 : 2000. 5. 16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재정 : 2000. 6. 1
- 교(원)장 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00.6.1

XI. 외국어학원 설립 · 운영 관련 규제합리확방안

1.검토배경

• 21세기 뉴밀레니엄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현행 외국어학원의 설립·운영 관련 규제가 보다 과학 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어 강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서울지역 외국어학원 시설기준을 하향 조정
 - 현행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서울지역 외국어학원의 시설기준을 하향조정
 - 330 $\text{m}^2 \rightarrow 150\text{m}^2$ 수준으로 하향조정
- 외국어학원 개별 강의실 면적 제한규정 폐지
 - 교습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15㎡ 이상으로 규정된 강의실 당 최소면적을 학습형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 폐지
- 외국어학위 수강료 상한 완화
 - 성인대상 외국어학원의 경우, 소규모 인원 교습시에는 교육방법과 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

3.향후 조치계획

•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01년 하반기)

XII.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외국인학교는 출입국관리법 제39호 내지 제45호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였으나 관계법령 개정으로 등록업무 폐지
-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로 설립 · 운영하고 있으나 각종학교로 설립할 경우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 학교용 고시, 학력인정문제에 따른 규제 발생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외국인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명문화
 - 각종 학교 중에 별도로 외국인학교 관련조항을 신설, 명문화하여 장학지도, 평가, 교원자격 및 배치, 수업, 학생부, 교과용도서, 수업연한 규정 적용 배제
 - 외국인학교 교육과정(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학교 설립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절차 간소화
- 기존 외국인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 중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 적용 배제

3.향후 조치계획

- 초 · 중등교육법 개정(2001년 상반기)
- 외국인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2001년 하반기)

XⅢ.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제도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의 획일성, 금지업종의 타당성 결여, 정화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으로 인한 개인의 재신권 행사와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므로 개선방안 마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존치
 - 현재와 같이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 설정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업종 재분류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기타 금지행위 및 시설'을 법으로 규정하여 학교교 육환경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
-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제도
 - 지역교육청에 두는 정화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전체위원 1/2 이상으로 구성

3.향후 추진일정

• 학원보건법 시행령 개정(2001.5)

XIV. 보호외국인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모든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지문을 찍도록 하였으나 과거 국내에서 지문찍기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도록 함
- 보호외국인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보호외국인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
- 보호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외국인의 문서 · 서신의 사전검열제도 및 전화 · 전보의 송신제한제도를 폐지함

3.추진실적

• 보호외국인규칙 개정(2000.3.9), 시행(2000.5.1)

XV.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제도 개선방안

1.검토배경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체류지도 함께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근무처 변경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지 변경은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체류 외국인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현행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는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함

3.향후 조치계획

- 출입국관리법개정안(2001년 상반기)
- 시행예정(2001년 하반기)

X VI.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발급 관련 규제개혁방

1.검토배경

•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시·군 또는 구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체류 외국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요청에 의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바.
- 외국인등록 관련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의 중앙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시·군·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발급권자를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출장소장)외에 시·군·구의 장으로 확대함

3.향후 조치계획

- 출입국관리법 개정(2001년 상반기)
- 개정 법률 시행예정(2001년 하반기)

제4절

사업자단체 및 환경 분야

*집필자: 전 홍부이사관(Tel. 3703-2191, jeonhong@opc.go.kr) 전옥태 사무관(Tel. 3703-3935, jkj751@opc.go.kr)

1.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

1.검토배경

- 정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유도, 일부 집행사무를 위탁하고 사업자단체의 활동을 감독 · 통제해 왔음
- 그러나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단체의 설립·가입 및 회비납부의 법정의무 화는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음
- 또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정부사무의 독점위탁은 경쟁을 억제하여 서비스 수준 의 저하와 가격인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인 사업자단체의 사업기관 화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완화하고, 특정 사업자단체에의 독점 위탁을 지양하여 사업자단체가 업계의 건전한 발전도모 등 단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값싸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추진 경위

- 1998. 4월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후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개혁 건의가 제출되었으며.
- 이와는 별도로 정부의 공공개혁 추진일환으로 정부사무 위탁기관과 단체에 대 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마사회 · 연금관리공단, 지적공사 등 68개 기관은 기획예산위원회 주관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 정부의 출연이나 예산지원은 없으나 법령에 설립기반을 두고 정부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각종 협회, 단체 등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하였음
- 위원회 개혁 추진일정
 - 1998. 8. 14: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기본방안을 의결하고 각 부처별로 해당 단체 개혁방안 제출요구
 - 1998. 11. 6 : 제1 8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 부처별 개혁 계획을 심사하여 전체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의결
- 1998. 11.10 : 국무총리 지시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추진'각 부처 시

3.주요 규제 개혁 내용

가.설립 및 가입강제의 폐지

- 설립, 가입 및 회비납부 등을 법규로 강제하여 경쟁적인 단체의 설립을 원천 봉쇄
-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37개 단체에 대한 설립 및 가입강제, 회비납부 규정을 폐지

달

개 요

-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35개 단체 법 개정 완료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12개 협회는 국회에서 수정의결 또는 법률 폐기로 설립·가입강제 존치
- 대한법무사회는 법률 개정 미추진

나. 등록업 무의 국가기관 회수

- 자격사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등록의무는 사실상 단체가입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
-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등 5개 단체 등록업무를 국가기관 회수

개 요

- 대한변리사회는 법 개정 완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 2개 단체는 국회에서 수정의결 또는 자동폐기로 존치
- 대한법무사회는 법률 개정 미추진

다.징계권 국가기관회수

-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자격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의 징계권은 국가의 고유권한 이며 이를 협회에 부여함은 부적절
-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은 대법원 또는 법무부에서 행사하고 변협 소속 징계위원 회는 징계건의권과 자체 기강권만 행사함

개 요

-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권 회수는 국회에서 수정의결로 협회의 징계권 존치
- 대한변리사회 등 3개 단체는 자체 추진하여 법 개정

라, 보수교육폐지

- 법에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에 대한 보수교육 독점위탁은 회비강 제징수 수단화, 교육의 형식화 및 질 저하 초래
 - 자격사의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은 협회·회원간 자율적으로 실시
- 의사 · 약사 등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수교육을 제외하고 세무 사. 관세사. 음식업 등에 대한 보수교육 6 3 종 폐지

개 요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47개 단체 보수교육 폐지
- 대한안마사회 등 16개 단체는 국회 수정의결 또는 자동폐기로 존치

마.위탁사무개혁

- 섬유직물수출입조합, 강관협회 등 6개 협회 자율규제를 위한 수출 승인제 폐지
- 법률에 자격시험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독점위탁하고 있는 건축사협회, 관광협회에 대한 법정 독점위탁은 법률에 위탁근거만 두고 위탁단체 지정은 폐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4개 단체의 경영지도 폐지, 한국냉동공조공업 협회 등 2개 단체의 제품안전성 검사 위탁기관 복수화

개 요

- 실적확인 및 시공능력 산정 폐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6개 단체 법개정 완료
- 수출입 인증 폐지: 한국섬유수출입조합 등 19개 단체 법 개정 완료
- 사업대행 및 시험관리제도 개선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3개 단체의 시험대행 독점위탁 폐지, 법 개정 완료
- 한국광고사업협회 등 6개 단체 검사위탁기관 복수화, 법 개정 완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자동폐기로 존치
- 기타 위탁사무 개선
- 한국경비협회 등 22개 단체 법 개정 완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2개 단체 국회 수정 또는 자동폐기로 존치

바.설립조건 개선

- 단체설립에 ① 일정수 이상(예1/3) 동업자의 동의 확보, ② 유사명칭 사용금지, ③ 5개 이상 시·도에 지부설치 조건부과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여 사실상 복수단체 설립을 저해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출을 어렵게 하고 경쟁 저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 등 23개 단체에 대해
 - 동의 확보비율과 총회 출석비율은 폐지하고 발기인 기준은 폐지하거나 1/10이상으로 개정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지부설치 의무 폐지

개 요

- 한국항공진흥회 등 68개 단체 법 개정 완료
- 대한약사회 등 14개 단체 국회 수정의결 또는 자동폐기로 미개선

사. 각종 승인 · 보고사항정비

- 각종 승인 · 보고사항은 법인에 관해 민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최소화
- 회장 등 임원승인 사항은 사후보고 사항으로 개선
- 총회 · 이사회 의결사항 보고의무는 필요시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
- 사업계획, 실적보고 의무는 필요시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

개 요

-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90개 단체 법 개정 완료
- 대한변호사회 등 15개 단체 국회 수정의결 또는 자동폐기로 미정비

주요 법률의 국회 수정통과 내용

| 법률명 | 규개위 의결내용 | 국회 수정내용 |
|---------------------------|--|--|
| 약사법 (보건복지부) | 약사회 설립 및 가입강제 폐지 지부 또는 분회신고 폐지 의약품 · 의약부외품 제조관리자 고용의무 폐지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기준 중 약사 고용의무 폐지 약국시설기준 폐지 | 동조항 존치 동조항 존치 동조항 존치 동조항 존치 동조항 존치 |
| 의료법 (보건복지부) | 의사회 설립 및 가입의무 폐지 지부 또는 분회신고 폐지 의사회 설립 및 정관변경시 허가제 폐지 의료인단체중앙회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협조 및 보수교육 실시의무 폐지 의료인단체에 대한 정관 또는 임원 개선명령 폐지 | 동조항 존치 동조항 존치 동조항 존치 동조항 존치 동조항 존치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교통부) | 사업자단체 설립시 회원자격이 있는 자의 1/5 이상 동의를 1/10로 완화 창립발기시 총회동의 요건(회원자격자 1/2 이상) 폐지 | |

| 법률명 | 규개위 의결내용 | 국회 수정내용 |
|-------|--------------------|----------|
| 변호사법 | • 가입강제 폐지 | • 동조항 존치 |
| (법무부) | • 변호사단체 설립 임의화 | • 동조항 존치 |
| | • 징계 · 등록권의 국가환수 등 | • 동조항 존치 |
| | | |

4.추진성과 및 문제점

• 상당수의 단체가 이미 해당법률을 개정하여 복수단체간 서비스 경쟁 촉발, 독점 사업기관화 방지 및 단체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

주 요 성 과

- 단체 설립, 회원 가입강제를 폐지하여 경쟁적인 단체설립을 허용함으로써 단체가입비 인하, 회원에 대한 교육의 품질제고, 전문정보 제공 등 동일업종 복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 촉발
- 대한변리사회 등 36개 단체의 설립 및 회원 가입강제를 폐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68개 단체의 발기인 수 완화,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삭제 등 설립조건 개선
- 정기 보수교육, 등록심사, 징계권 등 위탁사무의 위탁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독점사업기관화를 방지
- 대한건축사협회 등 47개 단체의 보수교육을 폐지
- 대한건축사협회의 업무정지명령 건의권 폐지, 대한변리사회의 징계권 회수, 대한행정사회의 징계권 폐지
-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31개 사업자단체가 교육위탁 제도 및 기타 위탁 사무를 복수기관에 위탁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
- 단체의 구성, 임원승인 및 과도한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단체운영의 자율성을 제고

- 대한행정사회 등 112개 사업자단체가 임원선임 승인, 총회의결 사항 보고 등 각종 승인·보고 사항 정비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1개 사업자단체의 실적 확인, 시공능력 산정 폐지 또는 위탁기관 복수화
-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약사회 등 일부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 법률개정 안이 폐기됨으로써 사업자단체간 형평성 시비 등 갈등을 초래

문 제 점

- 해당 사업자단체 법률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단체와 아직 통과하지 못한 단체간에 형평성 문제 야기
- 일부 법률의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자단체 관련 조항이 제외된 채 수정통과되어 당초 규제개혁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지속적인 규제 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 초래(약사법, 의료법, 변호사법,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 법무사법의 경우 설립 및 가입강제, 회비 강제납부, 공무원 자동자격 부여제 등 규제개혁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 시비 상당

Ⅱ.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전문자격사제도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로 대국민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 취득, 법인설립 등에 규제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한 경쟁제한 등의 폐해가 있 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음
- 규제개혁 대상 자격사(11종)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공인노무사 · 변리사 · 세무사 · 관세사 · 공인중개사 · 건축사 · 감정평가사 · 행정사 · 법무사

2.주요 규제개혁 내용

가. 자격시험제도의 개선

- 2001년까지 매년 선발예정 인원을 정하고 있는 자격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는 자질 있는 자격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선발인원 대폭 확대
- 2002년부터는 모든 시험을 전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는 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여 자격사의 진입이 쉽도록 하며 자격사의 수급조절은 시장 기능에 맡기도록 함
 - 선발예정인원 사전결정제도를 폐지하고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 점 이상 점수 취득자 전원 합격
 - 시험의 난이도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검증하는 수 준으로 조정
- 각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장인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 자격사제 도 개선 추진

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 개선

•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여 공무원에 대한 특혜시비를 해소 · 경력인 정시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력인정의 투명성, 공 정성을 확보함

다.법인설립 및 영업활동 관련 규제의 개혁

• 각 자격사별 법인의 설립을 쉽게 하여 전문화, 대규모화가 가능토록 조치·영 업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법령 정비현황

- 가.법 개정 완료 (6개) : 세무사·관세사·변리사·공인회계사· 공인 노무사·감정평 가사
- 세무사법 개정: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자동자격인정제도를 폐지하고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 일부면제로 개정, 분사무소 설치제한 폐지(1999. 12. 31 개정·공표)
- 관세사법 개정: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고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 일부면제로 개정(2000, 1, 7 개정·공표)
- 회계사법 개정 :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수임한도 제한 폐지, 수임규모 제한은 2003년부터 폐지(2000.4.7 규개위 재심, 2000.1.12 개정·공표)
- 감정평가사 관련법(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개정: 자격사심의 위원회 구성, 선발인원 및 시험 관련 사항 개정, 법인설립시 자격 관련 요건완화(2000.5.16 시행령 개정·공표)
- 변리사법 개정: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자동자격부여제를 폐지하고 일부시험 면제로 개선(2000.1.28 법 개정·공표), 선발인원 및 시험관련사항 개정 (2000.6.27 시행령 개정·공표)
- 노무사법 개정 :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자동자격부여제를 폐지하고 일부시험 면제로 개정(2000.12.30 법 개정·공표)

나.법률개정 추진중

- 행정사법: 2002년부터 시행사항으로 2001년 개정예정
- 법원행정처에 개혁토록 통보한 법무사는 법령 미정비

4.추진 성 과

- 그동안 선발인원이 OECD 등 선진외국에 비해 매우 적어 사실상 경쟁이 제한되고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으나 OECD 회원국의 자격사 1인당 국민수 등을 고려하여 변리사는 1999년 81명 → 2000년 121명으로 세무사는 1999년 350명 → 2000년 450명으로 계속 늘려 나감으로써
 -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과도한 가격을 적정화
 - 최근 급증한 고학력 실업자의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취업기회의 확 대
-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를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자격사 시험준비자 등의 예측가능 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
- 또한 자격사의 법인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구조의 선택이나 대규모화를 통한 전문경영 등 자율적인 영업활동이 확대

5.향후 추진일정

- 2002. 1. 1일 폐지인 행정사법은 2001년중 개정예정
- 해당부처의 시행령 개정시 분사무소 설치제한 및 법인 설립시 자격요건 완화 등 개혁안을 차질없이 반영
-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후 공무원 외 관련 직종의 경력인정제도 도입 등 지속 적 제도개선 추진
- 자격사 선발인원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확인

Ⅲ. 공원지역내 행위제한 규제개선방안

1. 검토배경

• 자연공원의 엄격한 보전과 공원구역내 주민의 행위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기 위함

2. 주요 규제 개혁 내용

- 현행 취락지구를 취락의 밀집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와 '밀집취락지구' 로 이 원화하고 밀집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
 - 현행 행위허가제를 사전 신고제로 전환
 -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금지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
 - 자연환경지구 중 사실상 취락지역은 선별하여 취락지구로 조정, 완화
- 집단시설지구 지정 후 일정기간(10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실정에 맞는 취락지구 등으로 용도지구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해소

3.향후 조치계획

• 2001년 상반기 법 개정, 시행

Ⅳ.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제개선방안

1. 검토배경

•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병회수 제도, 건설폐기물, 페트병 재활용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자원 재활용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함

2. 주요 규제 개혁 내용

- 제품 · 포장재 등의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독자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국세청에 나뉘어져 있는 공병회수제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공병보증금제도의 개선안 마련
- 페트병 제3자 예치금 지급범위를 전년도 물량의 0.3% 이상을 재활용한 자까지로 확대(현행 0.5%)하고, 수출시 적정 재활용 여부 판단절차를 강화함
- 건설폐기물 재활용인정 범위에 골재생산업체의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발주자가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3. 추진실적 및향후 조치계획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2000.11)
- 제3자의 예치금 지급규정 마련(2001년 하반기 시행예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2001. 1. 1)

V.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관련 규제개선 방안

1. 검토배경

• 오수발생량의 기준이 획일적이며 일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어 도시에 비해 오수발생량이 적은 읍·면 지역의 처리시설 규모가 과다하여 오수처리 부적정 현상 등 오수처리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필요

2. 주요 규제 개혁 내용

- 오수처리시설 중 건축물의 용도가 다양해진 점을 감안하여 비디오방, 찜질방, 약탕방, 납골당 등을 반영
- 현행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시설용량 산정기준이 인구밀도나 생활수 준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토록 개선
- 여인숙, 호텔, 모텔, 콘도 등 오수발생량의 차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에서도 동일한 산정기준이 아니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 강구

3.향후 조치계획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관련 규제개선을 위하여 용역연구 등보다 정확한 조사연구가 필요하여 2001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 (2000, 10, 13 제69차 경제2부과위)

Ⅵ. 환경산업 관련 규제개선방안

1. 검토배경

- 환경산업을 수출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저해요소가 되는 규 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필요
 - 기능과 규제기준이 유사함에도 업종분류를 세분화함으로써 영업영역을 제한 하고 있는 업종을 통폐합
 - 영업영역이 중복되는 업종을 일원화하고 기술인력의 공동활용을 확대함으로 써 업체의 부담을 완화
- 환경관련 측정검사업무를 관련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부분으로 확대방안 추진 필요

2. 주요 규제 개혁 내용

가. 환경산업 업종분류및 규제개선

- 환경산업 분류기준 중 유사업종인 '분뇨처리 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이 세분화됨으로써 영업범위확대를 제한하고 업체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으로 통합
- 측정대행업체가 환경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인력이 이중으로 필요하므로 '측정대행업'과 '환경관리 대행기관'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공통기술의 활용인정(인력 Pool제 인정)
- 방지시설업(수질분야)등록을 한 경우, 공통적인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업체등록절차 를 간소화

나. 환경관련 측정 · 검사기관의 진입규제 완화

- 폐기물소각시설 검사기관이 공공기관 위주로 진입규제를 하고 있어 능력을 갖춘 대학 및 민간연구소의 진입을 허용
- 환경관리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만 수행하는 폐기물매립시설 검사업무를 검사능력, 검사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사기관을 확대하도록 함

3.향후 조치계획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01년 상반기)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01년 상반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2001년 상반기)
-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 개정(2001년 하반기)

제5절

정보통신 등 기타분야

*집필자:전 홍부이사관(Tel. 3703-2191, jeonhong@opc.go.kr) 박응렬 과장(Tel. 3703-2183, parkerl@opc.go.kr)

권

1.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전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전파자원의 산업화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 합리화
 - 해안국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 선박 및 항공기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 구국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
 - 기타 기술발전 추이, 국제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선국 종별 유효기간 조정

- 무선국의 폐지와 운용 휴지제도 개선
 - 사업상 필요에 따라 무선국 내 송신장치의 일부를 운용 휴지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고, 운용 휴지기간은 전파사용료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
- 무선종사자 자격검정제도 개선
 -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기관으로의 일원화 문제는 별도 추진 불필요(제48차 경제2분과위 의결사항)
 - 무선종사자 자격종목 통합 및 종사범위 개선
 - 자격시험검정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제고
- 무선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 설비의 자동화를 고려하여 무선국별 무선설비 관리를 위한 자격증의 종류 및 의무 배치인원을 조정

3.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전파법 시행령 개정(2000.4), 동법 시행규칙 개정(2000.9)
- 전파법 개정 예정(2001.12), 관련 고시 개정 예정(2001.6)

Ⅱ. 정보통신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세계적으로 통신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라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응전략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통신산업의 중심축이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 및 별정·부가통신 서비스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규제의 중심축 전환이 필요함. 또한, 통신사업자의 증대로 인한 경쟁격화에 따른 공정경쟁질서 확립이 필요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기간통신사업자는 가입자 선로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을 요청할 경우 허용토록 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대상사업자, 대상설비의 종류 및 제 공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정통부 장관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이용의 범위와 조건 ·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공동이용 의무를 부여함
 - 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 공동이용은 공동이용에 관한 고시에 의하도록 함
-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한도를 33%에서 49%로 확대함
- 전기통신 역무 사전선택제의 법적 근거 마련
 - 전기통신 역무의 사전선택제도 및 사전선택등록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사전선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절차, 방법 및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 신설
- 번호이동성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정통부 장관은 번호이동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대상 서비스,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번호이동성 시행 에 따른 비용분담방안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 정통부 장관은 번호이동성 시행에 있어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통부 장관의 번호이동성 계획 수립시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불법 통신사업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 대리점의 불공정행위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보아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조

치" 등을 추가함

- 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 없이 전기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역무제공 중지 및 전기통신 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
 -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에 대한 기여 의무를 "보편적 역무의 제공 또는 손실보전금 분담의무"로 명확하게 규정
 - 보편적 역무에 따른 기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신사업의 허가·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공포(2001.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01.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 정·공포 예정(2001. 6)

Ⅲ. 해운 분약 규제개혁방안

1.검토배경

• 해운물류산업의 경제성 확보를 통한 육상수송의 한계를 보완하고, 운항 및 입출항 관련 제도개선을 통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해운대리점이 국내 해운대리점과 국제 해운대리점으로 구분하여 등록토록 되어 있었으나 구분제도를 폐지
- 기상특보 발효시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통제기준을 무게 · 길이 이외에 선박의 성능 ·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분
- 쾌속선의 경우 운항관리 메뉴얼에 따라 통제를 완화하고, 감항성이 우수한 여 객선은 인센티브 제공
- 교통안전특정 해역에 진입한 선박의 진입사항 통보의무 사항 간소화
- 국내연안 항만 운항 외항선에 선원가족 동승시 신청절차 간소화
- 세관, 법무부, 출입국에서 각각 운영중인 승선허가를 기관간 협조로 일원화
- 외국인 선원 고용시 선원노련. 선주협회 등 합의사항 철폐 또는 완화 권고

3.추진실적 및향후 조치계획

- 해운대리점업의 구분제한 폐지
 - 해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2001년 상반기 개정하여 2001년 하반 기 시행
- 여객운항 관련 규제개선
 - 선박입항통보제도를 2001년 말까지 개선 시행
- 선원가족 등의 승선허가제도 개선
 - 2000. 9월부터 승선허가제도 개선 시행
- 외국인의 선원 고용제도 완화
 - 노사정 간담회시 수시 권고(3회 논의)

Ⅳ. 항만 분야 규제개선방안

1.검토배경

•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로 항만 관련 종사자들의 각종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고, 선박운항의 안전성 확보와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업무부담을 경감하 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지정항만 내 어항구를 설정한 지역에 대하여 어항법상 어항시설의 일부를 항만 시설로 인정
- 항만법 제5 4조에 따라 항만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던 공사비용 부담조항 폐지
-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0톤 이상 강제도선 의무조항 중
 - 예선 결합 부선은 현행대로 강제도선을 실시하되, 예인선에 로프를 연결하여 운항하는 선박은 선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도선 실시로 완화
-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박보다 총톤수가 작은 선박에 옮겨 승선하는 경우는 강제도선 면제

3.향후 조치계획

- 지정항만내 어항시설의 일부 설치 허용
 - 항만법 개정 · 시행(2001년 7월)
- 수익자부담금 폐지
 - 항만법 개정(2001년 하반기 시행)

• 강제도선 적용대상 완화 및 강제도선 면제선박 범위 확대 - 도선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2001년 하반기)

V. 축산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

1.검토배경

• 가축사료 제조업의 진입규제를 폐지하고 국가검정제도 · 위생교육제도의 개선 과 축산업 인 · 허가시의 불요불급한 제출서류를 대폭 감축시킴으로써, 축산업 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주문용 사료 첨가제(비타민제, 무기물제 등)의 공급을 독점해온 것을 배합사료의 실수요자인 양축농가, 협업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폐지
- 동물용 항생제의 제조 및 수입품에 대한 국가검정제도(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정)를 폐지하고 제조업체의 부담 경감과 업체의 자체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업체의 자체검사·검정제도로 규제개선
- 동물용 의약외품(욕용제 · 염색제 등) 제조업을 의약품과 동일하게 허가함으로 써 동제조업의 진입 제한을 하던 것을 신고제로 개선하여 규제완화
-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동업자조합이나 외부기관에서 매월 또는 매년 축산물 취급 영업자 · 종업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업계의 불편과 영업에 지 장을 초래하므로 축산물의 보관 · 운반 · 판매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현행 위 생교육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영업자의 경우에만 교육을 받도록 대폭 개선

• 축산업 관련 인·허가나 등록시에 제출토록 한 법인 등기부 등본, 건강진단서, 이력서, 사진 등 불요불급한 서류를 대폭 감축토록 하여 업체의 부담과 불편 해 소에 기여

3.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주문용 사료첨가제 제조업 진입규제 완화와 항생제에 대한 국가검정 폐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규제개선(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시행: 2000, 7, 11)
- 축산물 취급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제도 개선(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00.12.11)
- 축산업 관련 인·허가시 첨부서류 감축(축산법 개정: 2001. 1. 26 개정, 동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2001. 5. 30)

Ⅵ. 농약유통 및 안전 관련 규제개선방안

1.검토배경

• 미생물농약의 등록요건을 일반 화학농약 등록요건보다 완화하여 저독성의 안 전한 친환경농약의 개발을 촉진하고, 독성 등 안전성 분야는 강화함으로써 국 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저독성이고 잔류가 적은 친환경농약의 개발을 촉진하고 등록, 유통이 용이하도 록 하기 위해 화학농약 등록기준보다 대폭 완화한 별도의 미생물농약 등록기준 을 마련
- 기존의 일반화학농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약 및 원제의 시험방법 및 등록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농약 및 원제는 부성분· 환경독성 등의 검토기준을 강화하여 OECD 등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
- 유통농약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이화학적 자료검토 기준의 경시변화시험에 고 온안정성시험 외에 저온안정성시험을 추가하여 W H O 기준에 맞도록 개선

3.추진실적

• 미생물농약 등록기준(고시) 개정 · 시행(2000. 4월)

₩. 농업 관련 민원업무 규제개선방안

1.검토배경

• 농업 관련 민원을 일선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증빙서류의 접수행위와 행정 편의적인 관행과 답습행정을 개선함으로써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기여키 위함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농지전용변경허가 대상 완화
 - 농지전용 허가 후 전용허가 면적의 증감없이 건축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10이하로서 건축물 바닥면적 20㎡ 이내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개 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
- 동물의약품 등 수입절차 개선
 - 동물용의약품 등을 수입허가 전에 수입자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다시 수입 허가신청을 하도록 한 수입자 확인증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연구용 동 물용 의약품 수입 승인제를 신고제로 개선함
-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 절차 개선
 - 축산물 가공업자가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검 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던 것을 신청시 검사시료를 함께 제출토록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
- 민원업무 개선
 - 초지조성 허가(50일 → 35일), 사료 제조시설 변경신고(10일 → 7일) 등 13종의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
- 매립지 등 분양신청, 전통식품 명인지정 신청 등 18종의 민원 중 첨부서류 32 건을 감축
- 기타 약사법의 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등록을 신고제로 개선

3.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농지법 개정(2001, 8월중)
-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개정(2000. 7. 11)
-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2000, 12, 11)
-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2001, 6월중)

₩ . 농업 관련 규제 개선방안

1.검토배경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절차 및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제처 분제도의 비합리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투명한 행 정구현 및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절차 외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시· 군·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 인이 선택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함
- 농지처분 결정기준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투명하게 법령 에 명시하도록 개선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결정 이전에 청문이나 이의신 청 절차 등 농지 소유자에 대한 행정상 구제절차를 법령에 신설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유통단지 개발용 토지의 농지전용부담과 농지조성 비를 2000.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정부의 유통 단지개발종합계획 기간인 2011. 12월까지 감면기간 연장을 허용
- 천적용 곤충 · 응애류 등을 유해동물로 규정하여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병해충 위험분석을 거쳐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 인 수입허용을 하여 친환경농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함

3.향후 조치계획

-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시행(2001, 10월중)
- 식물방역법 개정 시행(2001. 7월중)

JX. 임산물 굴취·채취 및 매각 관련 규제개선방

1.검토배경

• 임산물의 임의 굴취·채취 범위 및 국유임산물 입찰참가 조건의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주요 규제 개혁 내용

- 임의로 형질변경 또는 토사채취가 가능할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
 - 장기적으로는 '산림형질변경' 과 '굴취·채취행위' 를 통합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법령을 개정토록 함
- 산림의 보호 및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임업기술을 보유한 자가 입찰토록 제한하되 입목벌채 실적의 기간제한을 삭제하고, 임업기능인을 추가하여 진입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세무서장이 확인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 사본' 중 하나의 서 류만을 제출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3.추진실적

- 산림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2000. 5. 16)
- 임산물 매각규칙 개정 · 시행(2001. 1. 20)

X. 산지의 보존 및 이용 관련 규제개선방안

1.검토배경

• 산림의 전용 및 개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행정절차의 개선과 난개발, 그리고 산지의 훼손방지 등을 위해 산림행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주요 규제개혁 내용

- 현재 4종의 인·허가 체계를 2종으로 통합하여 허가의 중복 또는 의제·배제 적용 등으로 매우 복잡한 현행 허가체계를 간단 명료하고 투명하게 정비
- 사업예정지 안에 보전임지·준보전임지가 혼재된 경우, 사업자가 2개의 기관 에 허가 신청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을 초래하여 허가권자를 일원화함
- 매년 많은 산지가 산림형질 변경(채광, 채석 포함)으로 인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므로 산림법에 산림형질 변경허가 기준 마련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 부실 채석업자의 채석중단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무분별한 채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석업등록 제도를 도입
-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전문가에 의해 산림상태, 토질, 경사, 재해위험 등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받도록 제도화함
- 사업중단 또는 방치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허가권자가 재해방

지를 위한 최소한 응급복구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집행 근거를 마련(산림법 제 91조 개정)

• 경관 훼손 및 산림 훼손지에 대한 부실복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마련(산림법 시행령 제98조의 4)

3.향후 조치계획

-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체제를 2종으로 통합정비, 산림전용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등
 - 산지관리법(가칭) 제정(2001년 하반기)
 - 산림법 개정(2001년 하반기)

XI.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제개혁방안

1.추진 배경

- 최근 증가되는 교통사고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응시자에 대한 교통안 전교육 강화 및 자동차운전학원 관련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에 따른 관련 규제 의 전반적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추진
-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토록 하여 안전운 전 및 교통도덕 등 올바른 운전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전학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면허 응시자 및 관련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

2.주요 규제개혁 내용

가.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시설 관련

- 장내 기능교육용 승용차 등의 사용연한(5년)을 폐지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준 한 차량 정기검사제를 도입
-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이 운영되는 전문학원은 일시 수용인원이 확인되므로 교육용 차량 정수규제 및 예비용 자동차 확보의무를 폐지

나.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 관련

-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운전면허 응시자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단 기적으로는 운전면허 응시자에게 학과시험 응시시 교통안전교육 7시간을 의무 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함(추후 도로교통법 개정 시 반영)
- 기능검정 권한이 없는 일반운전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장내 기능교육 25→10 시간. 도로주행교육 10→4시간으로 현실화
- 장내 기능교육 25시간 중 마지막 시간의 자체평가를 폐지

다.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 관련

- 학원 종사자 중 기능검정원(30세 이상), 강사(23세 이상), 학감(35세 이상) 의 연령제한을 만20세 이상으로 완화하되, 학감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정함
- 수강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수강료 게시의무를 통해 부당징수 예방
- 일반학원과 중복되는 전문학원의 부책은 폐지하고 부책명 등을 명확히 하며,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학원의 경우 전산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교육생원부, 학과 및 기능평가 서류철 등 24종을 간소화
- 지역별 학원강사 구인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경찰청별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응시자격으로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설정

라. 자동차 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 분제도 개선

• 행정처분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처분내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문학원 행정처분을 실효성이 미미한 기능검정 정지에서 학원운영 정지로 강화

• 무등록 유사 자동차운전학원에 의한 유상교육행위 금지 및 자동차학원 표식 등 부착을 금지

마.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규정의 이관

• 교육부 소관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정을 도 로교통법에 이관하여 일원화

3.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2000. 12)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01년 상반기)
- 기타 자동차운전학원 운영규정 등 개정(2001년 하반기)

핵심규제 풀어야경제가산다

박용성(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경제체질 강화와 시 장경제 창달을 위한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구조개 혁에 착수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목표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기존 규제총량의 상당부분을 폐지 내지 개선하는 등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하위법령 정비, 규제품질 제고 등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외국인투자, 각종 인·허가제, 그리고 M&A, 건설부문 등에 있어서 상당한 규제완화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편 지금까지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적지않게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기업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규제 완화가 이해관계 부처간의 갈등, 정책적 판단차이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본다.

지난해 OECD의 규제개혁 심사에서도 정부내에 상존하고 있는 개입과 통제의 관행을 시정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

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항용 정부주도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개입의 당위성은 시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환경을조성하는 데 있는 것이지 시장의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보화와 기술력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시대에서 우리 산업의 역동성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엽적인 규제완화보다는 경제전반에 걸친 핵심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시장개방 확대와 함께 금융, 준조세, 공 정거래, 노동부문에 있어서의 핵심규제개혁 노력이 더욱 가속되 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금융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금 융산업에서의 정부역할을 시장기능으로 대체해 나가야 하고 준 조세성 기업부담금의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공정거래와 관련해 서는 보다 선진화된 규제수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제 반 노동관련 법제 역시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 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규제의 실질적인 개혁 만이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어 소비자 이익과 고용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 된다.

향후 정부가 시장경제원리 중심의 정책을 보다 착실히 집행해 나가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제약하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 선해 나간다면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선진경제로의 진입은 훨씬 앞당겨질 것이 자명하다.

제4^자 지식정 보화 사회 구현 을 위한 규제개혁

제1절

지식정보화 시회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집필자: 정현용 서기관(Tel. 3703-3926, junghyun@opc.go.kr)

1. 규제개혁 추진 기본방향

목 표

-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경제·사회·행정 제도 전반의 과감한 혁신
 - 새시대 지식창출의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식의 확산기반을 구축
- 글로벌 지식정보화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국제수준에 맞도록 정비
 - 선진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당겨 구현함으로써 세계 일류국가 도약의 기틀을 마련



추 진 방 침

-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조기 철폐
-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의 개선 · 정비
- 지식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 구축에 핔요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Ⅱ. 규제 개혁 중점 추진 분야

1.지식정 보화 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개 요

-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 제고
-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과 책임하에 각종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가.전 자정 부 구현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중 심의 민원행정 기반을 마련
 -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또는 행정기관간 조회·확인이 가능한 증명민원은 원 칙적으로 폐지
- 가능한 모든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 인터넷을 이용한 증명민원의 신청을 허용하고, 처리결과의 통지시에도 전자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의 처리를 전산화하여 부패·비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 건설공사 인·허가 전산화, 전자입찰제, 세무신고 전산화 등의 도입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나.산업의 지식정 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특허 및 표준, 품질인증에 관한 규제 개선 등 국 가표준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
 - 기술개발 및 특허 관련 절차상의 규제를 혁신하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를 장려하여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촉진

-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연구인력의 유동성과 해외우수 인력의 유 치를 제한하는 규제 개선
 - 연구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제도를 확대하고 컴퓨터 · 인터넷의 보급 등 변화된 연구화경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
- 지식의 자본화 추세에 부응하는 관련 규제 개선
 - 생명공학기술권, 데이터베이스권 등 신지식 재산권을 외국인 투자대상 목적 물에 포함하고 부당한 지적 재산권 행사에 관한 규제를 개선
- 미래의 핵심산업인 생명공학산업의 지원·장려 및 윤리적 문제 발생의 사전방 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생명복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비윤리적인 문제는 제한하되,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학연구는 허용토록 하는 법령 제정 추진
- 사이버 무역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 · 벤처기업의 대외활동 관련 장애를 제거하는 한편. 사이버 기술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

다.선진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 금융지식·정보전문가의 금융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 금융서비스업의 설립자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여 금융 전문가가 쉽 게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
- 금융기관의 겸업 및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고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향상
 - 금융기관의 보안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프로세싱 분야 등에의 진출 을 허용
- 인터넷 은행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 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
 - 기존 은행이 인터넷 은행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자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설립자본금 요건을 최소화
- 선물거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
 -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문유형을 다양화하고 일임매매

를 제한적으로 허용

-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신용평가업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증권사의 장외채권 거래정보의 실 시간 공시체제를 구축

2.지식 과정 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규제 개혁

개 요

•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에 따른 장소개념의 변화에 부응하고 전자거래 및 물류정보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

가.전 통적인 장소개념의 변화에 따른 규제개혁

- 각종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기준으로 되어 있는 사무소 요건, 상시 고용인수, 출석·발언 조건 등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시설·자본금 요건 등을 대폭완화
-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및 원격진료 제도도입 등 Cyber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

나.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 전자서명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전자우편 주소를 주소로 대신할 수 있 도록 제도 개선
- 전자문서의 효력, 효력의 발생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망 운영자, 배송업자 등 전자거래 관련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화
- 표시 및 광고제한 등 통신 및 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 전자화폐시대의 도래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
 - 전자화폐 발행자격, 이용자 보호방안, 위·변조 방지대책 등에 관한 제도 정비

다.지식정 보의 공유 ·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구축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정비
 -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전산화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 지형·도로·지하매설물 등 공익적 공간 관련 정보의 유통활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 측량제도를 합리화하여 측량기술 및 성과의 원활한 상호이용을 촉진
- 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이용자 중심의 물류체계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지능형 교통체계(ITS) 수립에 필요한 ITS시설물 설치 관련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공공부문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민간부문에서도 이용·유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건설 CALS)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제 정비
 - 건축물 및 시설물 준공서류를 전자화 방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각 건설업자가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 및 절차 등 제도 정비
 - 건설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시공 등 건설생산체계의 유기적 연계를 저해하는 규제의 정비
- 출판, 인쇄, 음반, 게임, 방송 등에 관한 규제를 Cyber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디지털 지식정보의 유통 및 이용을 활성화

3.지식정 보화 사회 를선 도할 인적 자원의 개발 을 위한 규제개혁

개 요

- 창조적이고 경쟁력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민간주도 ·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 교육체제로 개편
- 고용의 유연성 및 열린 노동시장의 구축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가.창의적 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 Cyber대학 · 학원의 설립 · 운영 등 사이버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Cyber대학 · 학원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활성화
-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 · 확산, 다양한 대안학교제도 마련 등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규제 개선
 - 경쟁원리에 따른 교육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학교'· '특성화학교'등 다양한 학교 유형을 허용
- 조기유학규제 완화, 외국인학교 설립 · 운영 자율화 등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외국인학교의 인가요건 완화, 외국인 학교에의 입학 허용 등 교육개방을 확대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 대학간 통합·연계운영을 자율화하고 대학설립 및 폐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치를 확대
- 영재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자율적인 학년 · 반편성 및 교육과정을 허용하고, 조 기진급 · 조기졸업제 및 영재교육 교과서의 사용을 자율화
- 교육정보화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
 - 학생·교사의 정보소양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원정보화 연수 등을 추진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 관련 제도를 개선

나. 새로운 직업창 출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규제개혁

-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직업훈련, 사내직업교육 등 직업훈련제도상의 규제 개선
 - 공공훈련의 훈련직종을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개편하고 민간훈련기관 평가체제를 성과위주로 전환하여 내실화 추진
- 각종 직업능력인정제도에 관한 제도의 개선
 - 국가자격검정의 응시요건을 완화하고 민간자격제도 관련 규제를 합리화
- 재택근무, 복수직장근무, 근무시간제도 등 고용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노동법상 의 각종 규제의 개혁
-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근로자 파견기간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전문직 및 파견근로자의 근무형태 다양화

4.건전 하고 안전 한 정 보회 시스템 구축 · 운영 을 위한 제도 정비

개 요

- 사이버시대의 개인·소비자 및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지식정보화 사회를 구현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통신판매시 소비자의 무조건적 청약철회제도 도입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정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자의 범 위를 확대
 - 민간의 암호이용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명시
-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정보통신 기반시설 및 개인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금융·통신·운송·에너지 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통신 시스템 보호 를 위한 체제 정비
 -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풍속 · 청소년 관련 규제의 합리화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 추진
 - 청소년 게임장 · PC방 등의 음란 프로그램 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제 2절

2000년도 추진실적

*집필자: 박구연 사무관(Tel. 3703-3931,

개 요

- 2000년도에는 전체 86개 과제 중 26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이 중 16개 과제는 2001년까지 계속해서 추진되는 과제이다.
- 이해를 돕기 위해 당초 확정된 과제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시기는 별도로 병기하였다.

1.전 자입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재경 부, 조달청)

가.현황및 문제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은 직접 제출토록 하고 입찰공고 표시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우편제출 허용
 - 전자입찰은 보안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미허용
 - ※ 시행령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40조(개찰), 회계예규 제10조(공사입찰 유의서), 제9조(물품구매입찰 유의서, 기술용역입찰 유의서) 등
- 이로 인해 많은 조달업체들이 직접입찰 참여 및 내역서, 규격서 등 첨부서류 제

출로 인한 시간 및 비용 낭비

※ 1999년 입찰참가자: 내자 16,747명, 외자 13,911명, 시설 313,845명

나. 개선방 안 및 추진실적

- 디지털 경제시대에 부응하고 조달비용 절감 및 정부입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입찰에 대해 전자입찰제 도입(2000년 하반기)
 - 전자입찰 대상: 500만 SDR(78억원) 미만의 공사, 13만 SDR(2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조달
 - 국제입찰은 보안성 확보. 정보화 기술수준 등을 감안. 추후 검토
- 온라인 전자입찰 시스템을 구축(조달청, 2000년 하반기)
 - 사무실에서 인터넷 실시간 입찰조회 및 응찰이 가능토록 하고, 온라인 입찰뿐만 아니라 상시입찰, 우편입찰 및 직접입찰등 모든 응찰이 가능토록 하여전자입찰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 공공기관의 다양한 입찰방식을 수용, 공동활용이 가능토록 개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스템 구축 완료(2000.

11)

2.신 기술 개발 진흥을 위한 특히제도 개선(특히청)

가.현황및 문제점

- 신규성 상실의 예외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인터넷 등 정보전 달 수단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을 통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특 허출원 시점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 · 발명으로 볼 필요성이 대두
- 반도체 배치 설계의 등록대상에 SOFT TYPE(상위 설계)를 제외한 HARD TYPE만을 규정하고 있어 배치설계권의 실질적 보호 미흡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하는 정보에 대하여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과 동일하게 특허출원 시점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 · 발명(신규성 상실 예외대상)

- 에 포함시켜 발명의 공개를 보다 자유롭게 함
- 신규성 상실 예외대상, 반도체 배치 설계권의 보호범위 확대(2000년 하반기 특허법 개정)
 - ⇒ 개선방안 심의확정(2000.11) 및 특허법 개정 완료
- •도면 또는 사진으로 표시된 반도체 배치 설계뿐만 아니라 상위개념의 설계 (SOFT TYPE)에 대해서도 등록가능하도록 배치 설계의 보호를 강화
 - ※ 2001년중 배치 설계 강화여부 및 추진방안 확정

3.인터 넷 환경 하의 상표권 보호(특히청)

가.현황및 문제점

-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사용은 기존의 상표와는 무관하게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도 메인네임을 이용하여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도메인네임 등록자와 상표권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자기의 웹페이지에서 타인의 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등 인터넷의 출현으로 상표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증대

- 도메인 네임을 포함한 인터넷상의 표지사용행위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희석화하는 경우에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규지토록 함
 -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00년 하반기)
 - ⇒ 개선방안 심의확정(2000.11) 및 법 개정 완료
- 인터넷상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실제공간의 일반 적인 상표사용으로 보아 상표권의 성립, 유지, 침해여부를 인정하도록 함
 - ※ 구체적인 추진시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에서 논의중인 관련 국제규범 의 마련일정과 연계하여 추진

4.외국인투자제도 규제개혁(산자부)

가.현황및 문제점

-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화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권, 생명공학기술권 등 신지식재산권에 명시적 규정 결여
- 고도기술사업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에서 사전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 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속한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 현재, 신고업무는 '수탁기관장의 업무처리준칙'을 통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외국화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업무를 위임

나. 개선방 안 및 추진실적

- 지식자본에 대하여도 출자목적물로 인정(2001)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조세감면 대상업종의 지정 시스템 개선
 - 정기적으로(1년마다) 조세감면 대상업종의 개정 추진(2000년 하반기)
 - ⇒ 시스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완료(2000. 12)
- 인터넷 공간(Cyber KISC: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가능케 함
 - 'Cyber 공간에서의 신고 방안'용역의뢰 및 검토(2001년 상반기)
 - 예산반영 및 시스템 구축(2001년 상반기)

5.금융기관업무영역의제한 완화(재경부)

가.현황및 문제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범위는 개별법령에 의해

^{*} 현행 고도기술 수반사업(436개)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97개)

제한되고 있으며,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금감 위에 신고(증권) 또는 허가(보험)를 받아야 함

- 은행의 경우,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채무보증 등 16개 업무) 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영업가능여부 결정을 재경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재경부 고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 고유업무 외의 타업무를 겸영하고자 할 경우 금감위의 겸영인가 등을 받아 야 함
- 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에 대하여는 환매수 기간 및 환매수 이율을 제한하고 있음(환매조건부채권 매매규정)
 - 동 업무가 실질적으로 예금수신업무와 유사함에도 은행에 대해 불공평한 규제로서, 은행의 동 업무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 금융업별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한 영위 제한 및 금융업종간 형평에 반하는 규제는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능동적 대응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초래

- 부수업무의 범위 확대(2001년 상반기)
 - 금융업의 핵심기술로 자리잡고 있는 보안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프로 세싱 등 업무에 대한 금융기관의 진출 허용
 - · 증권 및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의 대여 · 판매업무는 기 허용
 - 증권회사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영업 허용 등
 - ※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인가 등을 요하는 부수업무의 범위 최소화(2001년 상반기)
 - 당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는 허가 등을 면제(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은행의 환매채 매매업무 활성화를 위해 환매수 기간 및 이율 제한을 완화

^{*}은행: 채무보증업무 등 1 6개 / 증권: 주식평가 등 1 3개 / 보험: 보험수리 등 1 1개 업무

(2000년 하반기)

- 은행·증권업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겸업화의 수준을 감안하되, 불합리한 차별소지를 제거
- ⇒ 추진 완료(2000.2): 환매수 기간 및 이율제한을 절반으로 완화
- 화매수기간 및 이율 제한 폐지(2001년중)
- 겸영업무의 확대 추진
 -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겸영업무의 확대방안을 검토·추진

6.금융 관련 보고서의전자문서화 및 전자민원확대(금감위)

가.현황및 문제점

- 증권거래법을 제외한 금융관계법은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신고서, 보고서 등의 서류에 대해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국가기관의 장이 허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제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고시의 미제정으로 인해 각종 보고(신고)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이 제약되고 있음
- 종이서류의 생산, 제출, 보관에 드는 비용도 상당

-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가능한 각종 허가 등의 범위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화 (2000년 하반기, 금감위 고시 제정)
 - ⇒ 개별 감독규정별로 관련 사항을 규정키로 전환(2000.10)
 - 은행, 증권, 투신, 종금, 여전사는 반영 완료
 - 보험, 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은 전산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2001 년중 반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규정한 허가 · 인가 · 승인 · 등록 · 신고 · 신청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문서와 전자문서 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7전 자매체의 활용을 통한 금융기관의 부담경감(재경부, 금감위)

가.현황및 문제점

- 은행이 공고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은행법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 서명·날인의 의무화는 내용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나, 문서전자화의 장애요인이 됨
- 은행의 수표, 어음 등 타점권을 마이크로필름에 촬영, 보관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7조 제2항)
 - 마이크로필름에 의한 촬영, 보관은 공해유발, 인력낭비 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 선진국에서는 전산 이미징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음

나. 개선방 안 및 추진실적

- •은행 재무제표의 서명 ·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체
 - 은행이 공고하는 재무제표와 업무보고서는 대부분 전산에 의해 출력되므로 서명·날인 대신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 은행법 제41, 42, 47조 개정(2001년 상반기)
- 타점권 보관방법 개선
 -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 보관하는 방법 외에 전산 이미징시스템 방법을 선택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2000년 하반기)
 - ⇒ 추진 완료(2000, 12)

8.채권시장 선진 확률 위한 규제 개혁(재경 부)

가.현황및 문제점

• 채권시장은 기업의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 근들어 급격히 위축되어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회사채 발행규모:1998년 56.0조원 → 1999년 30.7조원 → 2000.1 ~ 6월 26.9조원
- 채권시장의 위축은 1999년 하반기 투신사 환매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나, 채권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에 영향받은 바가 적지 아니함
-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해 그동안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 및 채권매매전문 증권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권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채권전문딜러 의 육성과 국채전용펀드의 허용 등 채권수요 기반을 확충한 바 있으나, 근본적 인 채권시장 인프라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신용평가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2000년 하반기)
 - 신용평가업의 진입기준, 영위업무의 범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관리체제를 정비
 -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증권거래법 개정
- 장외채권거래정보의 실시간 공시체제 구축(2000년 하반기)
 - 증권회사가 장외채권매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권업협회에 통보하고, 증권업협회는 이를 증권전산 단말기 등을 통해 즉시 공시하도록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
 - ⇒ 추진 완료(2000.12)

9.영상산업 활성 확률 위한 규제정비(문광부)

가.현황및 문제점

- 영상물의 제작, 유통, 수입, 등급분류 등과 관련,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다수의 규제가 상존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제약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자와 유통 관련 업자는 문화관광부에 등록 하여야 하며, 위반시 벌칙을 부과함
 - 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 수입·반입할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수입시 수입추천 또는 반입추천과 등급분류를 받아

야 함

•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경우 상영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상영등급 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영화 및 음반·비디오·게임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관리를 강화(2000년 하반기)
 - 음반 · 비디오물 · 게임물의 제작업 및 유통 관련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
 - ⇒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II) 확정(2000.11)
- 영상물 등급분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한상영등급과 제한상영관을 도 입(2000년 하반기)
 - ⇒ 영화산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확정(2000.11)

10방송광고시장의경쟁체제 도입(문광부)

가.현황및 문제점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수 없도록 규제(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 따라서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가칭)을 제정하여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2000년 하반기)
 - *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지
 -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시 예상되는 부작용(방송광고요금 폭등, 방송광고 거래질서 문란, 방송의 상업성 심화)을 최소화
 - 민영 미디어렙의 지분과 관련하여 특정인에 의한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

분참여 범위 설정

- 방송사 등 특정세력에 의한 미디어렙 지배 견제와 미디어렙의 방송광고 거래 질서 문란 및 방송의 상업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
- ⇒ 개선방안 확정(2000.12)

11.인터 넷시대에적합한 저작 물 이용합리회(문광부)

가.현황및 문제점

- 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환경하에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성 증대
- 현행 저작권제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규는 엄격한 반면, 저작물 이용 정보 제공 등 유통창구가 미비하여 우수한 저작물들이 산업화되지 못하고 어문, 미술, 사진, 영상 등의 저작물을 이용한 컨텐츠산업 성장도 지연
 - ※ 컨텐츠는 컨텐츠 보유기관에서, 저작권 관리정보는 저작권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어 이를 동시에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

-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 '전송권'을 신설(2000년 하반기)
 - ⇒ 저작권법 개정 완료(2000. 7월부터 시행중)
-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2001년 하반기)
 -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물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저작물 전송을 합법적 으로 허용
 - 저작권 등록공보 발행 및 온라인 제공으로 저작물 이용환경을 개선
 - 저작권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분산형 저작권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저작권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
 -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등록과정을 자동화하고 지방거주 신 청인의 저작권 등록 관련 불편 개선

12전 자거 래 활성 화를 위한 제도정 비(공정 위,산자부,법 무부,정 통부)

가.현황및 문제점

- 그동안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의 제정으로 인해 전자문서의 이용환경 및 기본적인 제도는 뒷받침되어 있으나, 현재 전자문서의 이용은 개별법에서 허 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개별법령상 적용에 한계가 있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는 상품인도서, 용역제공서를 서면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불편 초래
- 아울러 본인확인 및 서명날인 등을 대신할 전자서명체계 및 정보화환경 구현도 부족하여 전자서명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품인도서 및 용역제공서 등의 송부방법을 소비자의 동의 등 일정한 요건하에 전자문서화 허용(2000년 하반기 : 공정위)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중

13전 자상 거래 특별 통관절 차 마련(재경 부)

가.현황및 문제점

-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별도의 통관규정이 미비하여 관세법상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하므로 인해
 - 관련자료의 제출을 위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등 신속한 거래를 생명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확대발전에 어려움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시 신속하고 간편한 통관을 위해 일반통관절차를 대 폭 생략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할 필요

나. 개선 방 안 및 추진실 적

• 관세법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통관절차의 생략 또 는 특별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000년 하반기)

- ⇒ 관세법 개정 완료(2000.12)
-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별통관절차 마련(2001년 하반기)
 - 밀수 방지, 관세 확보 등 최소한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전 자상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통관절차를 마련
 - ※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은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

14.지적 전산 확사업 활성 확를 위한 제도정비(행자부)

가.현황및 문제점

-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전산화작업을 지적공사에서만 독점하고 있어 지적측량업 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적전산화작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련기술의 발전을 저해
 -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에서 지적측량 및 지적도면의 작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300인 이상의 지적기술 자를 고용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5개도 이상에 지사를 두고, 전체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에 출장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으 나.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지적공사에 불과하여 사실상의 독점 허용
 - 1998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기존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사업의 시 급성에도 불구하고 지적공사가 이를 독점하고 있어 사업추진 미흡

-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측량 및 지적도면 작성 대행자 요건 완화(2000년 하반기)
 - ⇒지적전산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2000. 12), 2001년 상반 기중 지적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15건설 공사 관련 도서의 연계 및 공유 촉진 (건 교부)

가.현황및 문제점

- 시설물준공도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될 수 있으나
 - 공개범위 및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정보공개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 주체들간에 공유 및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기존사업의 준공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가 활용하기 불가능하거나 미흡
- 이 때문에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 및 시설물 관리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의 공유 및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건설공사 관련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를 명기(2000년 하반기)
 - ⇒ 건설공사 관련 도서의 연계 및 공유촉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마련(2000. 12), 2001년 상반기중 관련규정 개정

16창의적 능력신장을 위한 교육내용 및 방법 개편(교육부)

가.현황및 문제점

- 현행 교육제도의 획일성과 경직성,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방법 등은 학생들 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계발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
- •지식기반 사회와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국제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는 영 어학습 능력의 증진 및 선진국가의 학문과 기술습득을 위한 외국문화 이해기회 확대 등 관련 규제의 개혁이 필요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기초 능력, 언어 및 정보 등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동심 등 지식기반경제에서

-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습득을 강조하는 교육내용 및 방법을 적극 도입(2000년 하반기)
- 교육정보화 진전에 따라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사이버 경제 · 문화를 포함하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교과별 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마련
- ⇒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운영지침 마련(2000.11)
- 영어 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한 조기유학 규제완화
 - 자비유학자격을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상의 자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자로 완화(2000년 하반기)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완료(2000.11)

17.영재교육체계화를 위한 규제개선(교육부)

가.현황및 문제점

- 현행 교육내용과 교수 · 학습방법이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창조적 소수의 조기발굴과 이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 인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

- 초 · 중등학교 운영상의 특례적용 학교로 영재학교를 운영하되 상급의 영재학 교에서 하급학교과정의 영재교육을 담당
- 학생들이 능력 수준과 학습스타일, 관심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기, 수업 일수, 학급편제, 반편성 · 운영 및 조기진급,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제를 개선
- 영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학교나 해당학교의 교원이 인정·채 택·개발한 도서 또는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이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원임용, 방법을 개선하고, 영재교육담당 교사들에 대한 승진시 가산점 부여 등 유인책 마련
 - ⇒ 위 내용대로 확정하여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중

18민간자격제도 규제합리화(교육부, 노동부)

가.현황및 문제점

- 민간자격의 공인제도가 법상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절차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
 - 자격기본법 제정으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공인실적 전무
- 국가의 자격관리 독점체제로 민간검정기관의 활성화 저해
 - 국가기술자격검정이 한국산업인력공단 · 대한상공회의소에 독점
- 자격관리 관련 법적 · 제도적 장치의 미흡
 - 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 각 개별법상의 규제중복 및 상충 현상과 함께 법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불필요한 규제 및 불합리한 법체계 정비(2000년 하반기)
 -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각 개별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정비
 - 관련 법령의 통 · 폐합
-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개선(2000년 하반기)
 - 민간자격·국가자격의 설정기준 명문화,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및 절차 등 구체화
- 민간자격 검정기관의 활성화(2000년 하반기)
 -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의 위탁확대를 통한 민간자격 검정기관의 활성화
 - ⇒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합, 자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제택근로제도 활성 화를 위한 규제 합리 화(노동부)

가.현황및 문제점

- 최근 정보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업의 생산방식과 인력고용 형 태에 변화 초래
 - 텔레워크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자신의 집 등 전통적인 작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재택근로 형태의 근로 증가
- 증가추세에 있는 재택근로 활성화를 위하여 재택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
 - '재택근로자의 보호지침' 을 마련 · 시행함으로써 재택근로의 활성화 도모 필요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재택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시행(2000년 하반기)
 - ⇒ 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 적용방법(지침) 마련(2000, 12)

20전자직업소개업 규제 합리회(노동부)

가.현황및 문제점

-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적 · 물적(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 등) 등록 요건이 필요하며
- 유료 직업소개사업 종사자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함

- 인터넷 확산 등 시대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전자직업소개업을 구인 · 구직자 모두에게 유익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2000년 하반기)
 - ⇒ 전자직업소개업 규제합리화방안 확정(2000.11)
 - 인적 · 물적 요건을 사이버시대에 맞게 정비
 - 전자거래에 따른 피해구제제도 마련
 - 직업소개사업 영역과 직업정보제공 사업간의 유기적 관계정립

21.부당한 지적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개선(공정위)

가.현황및 문제점

-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금지와 관련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3 2 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이에 따라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 시행중 이나
 -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도입계약 체결 금지(법 제32조)
 - 부품 등 구입처, 수출지역, 거래상대방, 거래수량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도입계약 체결 금지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 고시)

-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부당한 지적재산 권 행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 지적재산권의 권리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공 정거래법 제59조)
- 따라서,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 및 심사기준(고시) 마련 필요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마련
 - 현행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국 내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마련 (2000년 하반기)
 - ⇒ 심사지침 마련(2000.8)

22발산번 호표시 서비 스 도입 을 위한 제도 개선(정통부)

가.현황및 문제점

• 현재는 전화에 의한 폭력 · 협박 · 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3

조에 의하여 당해 수신자가 증빙자료를 전화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발신 번호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동조항은 전화폭력·협박·희롱시에만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
- ※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란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통화개시 전에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가입자의 전화기에 내장 또는 부착된 장치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로서, 전화 폭력 차단, 부재중 전화번호 표시, 유선전화의 데이터 부가서비스 기능 구현 측면에 서 유용함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 규정을 신설(2000년 하반기)
 - 발신번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수신인이 요구하면 모든 발신번호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며, 발신자가 거부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능토록 함
 - 협박·폭력전화 등으로부터 사생활보호를 위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제 13조를 삭제하고 대신에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발신자의 번호송출 거부시에도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범죄신고(112)·화재조난신고(119) 등 특수번호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한없이 수신자가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반영 완료(2000.12)

23민간 부문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정통부)

가.현황및 문제점

- 개인 사생활 보호에 관한 제도는 다수 법령에 산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은 국가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주요 보호 대상이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수집, 취급, 이용, 제공 등을 규율하고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단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금지
- 기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개별법령에도 관련 규정 산재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일반법이 없으며, 현행 규정도 추상적 이고 구체성이 부족
- 아울러 개인정보 관련법상 사각지대가 존재(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점, 일반 백화점)하고, 전문분쟁조정기구 부재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곤란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포괄적 입법 추진
 - 미성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개인정보제공 거부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 등
- 정보화 진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자의 범위를 확대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리점 및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저장·처리하는 일정한 서비스 제공자로 확대
-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분쟁조정제도 강구
 - 상대적 열세에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감시기능을 통해 분쟁의 소지 사 전예방 및 사후에 신속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 완료(2000.12)

24정 보통신망상의인권침해행위방지대책(정통부)

가.현황및 문제점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등 인신공격이 나 인권침해 정보의 유통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현행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삭제 요구 조치만으로는 온라인 공간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확립하기에는 한계

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0년 하반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 마련
 -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정보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가 사업 자에게 정보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그밖의 '바른말 쓰기', '실명쓰기' 등 네티즌 윤리강령 실천운동 및 네티켓 교육·홍보 강화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 완료(2000.12)

25청 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추진(정통부,청보위)

가.현황및 문제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5 3조에 의해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불건전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온통신에 대한 모니터링(신고접수 포함) 및 심의를 통하여 정보삭제 및 정보제공자 ID제한 등 사후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현행 심의제도로는 인터넷 보급으로 크게 늘어난 불건 전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는 데에 한계

- 정보제공자가 객관적인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정보의 한계 등급을 정하도록 하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도입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정보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내용선별 S/W 를 통하여 청소년 접근을 차단
- 동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 보호단체, 이용자단체 등 민간에서 시행, 정착될 수 있도록
 - 상반기내 등급기준 마련, 내용선별 S/W 개발 등 제도적·기술적 기반구축

완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 완료(2000.12)

26전 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체제 정비(정통부)

가.현황및 문제점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 과 '국가정보통신보안 기본 지침'에 의해 국가기밀 보안중심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없음

나.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 정보화 진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 위로부터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 주요 사회시설과 관련된 정보통신 시스 템(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2000 년 하반기)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평가하고 보호대책을 마련
 - 침해발생시 대응과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방안 강구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완료(2001, 1월 공포)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규제개혁 방향

허 선(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21세기는 디지털의 시대이다. 정보·지식이 디지털화되어 네 트워크를 통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 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류의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야 기되고 있다. 우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은 인류역사상 세 번째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디지털 혁명의 시 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란 생산·소비 등 제반 경제활동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어 경제전반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세계경제는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무한경쟁이 이루어지며, 지식·정보가 가치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등장하는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규제개혁작업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무한경쟁하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가 반드 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 도록 시장중심 경제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제도·관행이 시장경제 시스템에 걸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수량위주 보다는 질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수단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치열한 국가간 경쟁 속에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규범화 노력이 OECD, WTO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적 협력이 불가피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국제적 규범(Global Standard)에 대한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제도·관행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한 차원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제의 디지털화에 맞추어 '디지털' 이란 새로운 잣대로 기존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즉,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구축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자본금 규모, 사무실 면적 등 전통적 산업시대에 설정된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에 맞게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시장중심, 국제화, 디지털화에 맞는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제5장 규제의신설 · 강화 등에 대한심사

제1절

경제 및 공정거래 분야

* 집필자 : 박구연 사무관(Tel. 3703-3931, kuyeon@opc.go.kr)

1. 신설ㆍ강화규제 심사

1.재정경제부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 현황

(1)개요

• 재경부는 금융부문을 제외한 경제일반분야에서 총 25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25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제 중 27건의 규제를 강화하였다.

(2)주요신설·강확규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제(1999, 2월부터 시행)
-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변경요건을 규정(2000.3월부터 시행)
 - 지정요건 : 특정지역으로서 일정면적 이상이어야 하며, 연계교통시설의 개발·조성 및 통제시설이 설치·조성되어 있을 것
 - 관세자유지역의 변경 : 시·도지사 등은 필요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관세자

유지역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의 변경신청이 가능

-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신설(2000, 3월부터 시행)
- 관세자유지역 등록업체, 그 임원 또는 그 사용인이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법 또는 관세법에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등록업체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2000.3월부터 시행)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 2000년도에 담배사업법, 소비자보호법 등 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3건, 내용심사 1건, 재심사 3건 등 총 1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 중 5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재경부의 2000년도 비금융부문 총 신설규제수는 5건임

(1) 세무사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세무사의 직무상 발생한 납세자의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그 한도액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3,000 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심사결과(2000.6.14)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

(2) 소비자 보호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사업자에 대한 리콜명령을 긴급리콜명령과 일반리콜명령으로 세분화하고, 긴급리콜명령에 대해서는 즉시 리콜을 실시토록 제도 개선(내용심사)

심사결과(2000. 10. 4)

- 결함사실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도입취지는 인정하되, 시행령 개정시 결함사실 의 범위, 인지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권고
- 긴급리콜명령의 도입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3)담배사업법

십사요청 규제내용(신설2. 강화 1)

-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독점권을 폐지하되, 담배제 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위반시 허가를 취소하는 규 제를 신설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자사제품의 판매촉진 을 목적으로 물품제공 등을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
-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나 서비스업 자 등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소매인 지정없이 판매가 가능한 바, 그 요건에 담배 를 진열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

심사결과(2000.6.14)

• 제조업자 등의 물품제공 금지와 관련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기준 마련시 공정거 래법상 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인정하고 기타 안건은 원 안의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십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재심사 3)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종전의 6개월 \sim 1년에서 $1\sim$ 2년으로 강화
- 부대입찰제를 당초 2001. 1. 1부터 폐지토록 하였으나(규제개혁위원회, 98. 10)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폐지시기를 2002. 1. 1로 연장(재심사)
- 지역공동도급의무 및 지역제한입찰의 금액한도를 2001. 1. 1부터 축소토록 하였으나(규제개혁위원회, 98, 10) 그 이행시기를 2004. 1. 1로 연장(재심사)

심사결과(2000. 11. 17)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는 원안대로 의결
- 부대입찰제의 폐지시기 연장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경과규정으로 2001. 12. 31까지 유효하도록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권고
- 지역공동 도급의무 및 지역제한 입찰의 금액한도 이행시기 연장은 재경부의 2004.1.1을 2002.1.1로 수정의결

(5) 관세자 유지역설 지법 시 행령 (2000.3.2)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2)

-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으로 다시 관세 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내국물품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신 설)
- 세관장은 관세자유지역 안에 있는 물품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 게시판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토록 규정(신설)

심사결과

• 내국물품 확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물품의 폐기에 대한 공고방법은 전산망(인터넷 등)도 포함하여 공고방법을 다양화하도록 수정권고

2.공정 거래위원회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10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9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 제 중 15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신설 · 강화규제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이 사업자단

체가 가입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 금지 등 표시·광고 관련 10개 규제를 신설(99.7월부터 시행)

•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혐의사항에 대한 금융기관 과의 거래내용자료 요구권 신설(99.2월부터 시행)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2000년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8건, 내용심사 3건 등 총 1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 중 5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2000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1) 독점 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 률 시 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3)

-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제한과 관련 에외가 인정되는 사유로 구조조정, 외국인 투자 유치, 중소기업 기술협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내용심사)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사항에 "당해 회사의 순자 산액, 출자한도 및 출자총액"을 추가 규정(강화)
- 법 제18(시정조치의 이행확보)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때의 지정순위를 새로이 규정(내용심사)
-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중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토록 의무화(내용심사)
- 채무보증 제한대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탈법행위 유형에 자기 계열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의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 (강화)

•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달라 과징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에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의결시까지 과징금 부과대 상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 행위기간에 대한 과징금을 나누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강화)

심사결과

-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요건에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계열회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당해 기업집단의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추가토록 권고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관련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을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으로 수정토록 권고
- 신규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과 관련하여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를 "주공일로부터 5년 이내"로 수정토록 권고
-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

(2) 경 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1건)

• 경품류 제공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 소비자 현상경품 행사시 제공 가능한 경품가액을 최고 100만원 이내로 설정(강화)

심사결과

•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행시기를 당초 2000. 6. 1에서 2000. 9. 1로 연기토록 수정권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4)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행사시한을 현행 한시제에서 영구제도로 전환하고, 적용대상에 위장계열사도 포함(강화)
-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강화)
- 공정거래사 제도의 도입 및 등록의무 부과(신설)

-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관련 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이행강제금 부과 로 전환하고 그 수준도 강화(강화)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대상을 당해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로 확대강화(강화)

심사결과

•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에 대해서는 당초 한시제에서 2004년까지만 존속하도록 수정, 이행강제금 부과수준은 법제처와 협의하여 그 수준을 더 상향조정토록 권고하고,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다만, 공정거래사 제도의 도입은 부 처협의 과정에서 자진 철회)

Ⅱ. 누락규제 등록(감사원 감사결과)

1. 재정 경제 부

가, 개요

1999. 6~7월중 실시한 경제분야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재정경제부의 경우 총 43건이 지적됨. 이 중 행정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등록을 미이 행한 사례가 40건,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서 폐지토록 한 규제를 개선만하고 폐지한 것으로 등록한 사례가 3건임.

동 감사결과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규제정비계획을 심의한 결과 누락규제 40건 중 13건에 대해서는 신규등록, 19건은 규제등록 후 폐지, 10건은 타규제와 통합하여 관리토록 하고, 1건은 행정규제가 아닌 것으로 분류함. 개선만 하고 폐지한 것으로 등록한 3건에 대해서는 1건은 기폐지한 것으로 인정하고, 2건은 개선된 현행규제를 재등록토록 함

나. 누락 규제 내역

(1) 신 규등 록 누락 규제 내역

- 수입인지 관리를 위한 지시, 조사 및 자료제출 의무(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7조)
- 담배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소매인외 제조담배의 판매제한(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 제조담배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담배사업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
- 담배수입판매업자의 판매가격 신고의무(담배사업법 제18조 제2항)
- 변조담배 등의 판매금지 및 소매인의 매입제한(담배사업법 제20조) - 소매인의 매입제한 규제는 폐지
- 담배판매인의 보고의무, 장부 및 시설에 대한 검사(담배사업법 제24조)
- 궐련판매수입금 일부의 공익사업 등 출연의무(담배사업법 제25조)
- 엽연초 생산자조합 설립인가(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 제11조)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외 통관업의 취급 제한(관세사법 제3조)
- 관세사 합동사무소 설치 등록 및 운영조건(관세사법 제9조)
- 관세사 등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관세사법 제16조)
- 관세사법인 설립 · 변경인가 및 취소 등(관세사법 제17조, 제18조)
-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등(관세사법 제27조)

(2) 누락규제 중 폐지규제 내역

- 수입인지판매 기관장의 판매관련 장부 비치의무
- 제조담배 판매업자의 지사 설치시 신고의무
- 공사 또는 공사의 위탁자 외에 연초종자수출입 금지의무
-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제한 규정 폐지(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
- 엽연초 생산조합 및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등 겸직금지의무
- 엽연초 생산조합의 구역지정 및 조정
- 엽연초 생산조합의 사업범위 제한 및 특정사업의 담당자 지정
- 엽연초 생산조합의 임원정수 및 선임방법 지정 등
- 엽연초 생산조합 대리인의 자격, 수 및 권한의 제한

- 엽연초 생산조합에 대한 장부 구분 및 조직에 대한 지정
- 엽연초 생산조합중앙회의 사업내용 지정
- 엽연초 생산조합중앙회, 엽연초 생산조합의 유사명칭사용 제한
- 관세사 수임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 관세사의 영리목적업무 종사 금지
- 관세사의 소양교육, 보수교육 이수 의무
- 관세사가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채용시 신고의무

2. 공정 거래위원회

가,개요

1999. $6 \sim 7$ 월중 실시한 경제분야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총 15건이 지적됨. 이 중 행정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등록을 미이행한 사례가 14건, 존치가 필요함에도 폐지한 사례가 1건임.

동 감사결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정비계획을 심의한 결과 누락규제 14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신규등록, 1건은 폐지, 10건은 타규제와 통합하여 관리토록 함. 존치가 필요함에도 폐지한 것으로 지적된 1건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함.

나. 누락 규제 내역

(1)신 규등록 누락규제 내역

-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무(공정거래법 제8조)
- •지주회사 설립신고시 일부서류의 공인회계사 확인(공정거래법 제8조)
- 기업결합제한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공정거래법 제 17조)

(2) 누락규제 중 폐지규제 내역

• 표준약관사용 사업자 및 단체의 약관운용상황 제출의무를 폐지

3. 국세청

가.개요

1999. 6~7월중 실시한 경제분야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국 세청의 경우 총 26건이 지적됨. 이 중 행정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등록을 미이행한 사례가 13건, 폐지를 다른 조항에 신설한 사례가 2건, 개선 또는 폐지토록 했으나 문구만 수정한 사례가 6건, 폐지토록 하였으나 개선만 하고 폐지등록한 사례가 5건임.

동 감사결과에 대한 국세청의 규제정비계획을 심의한 결과, 누락규제 9건은 신규등록, 2건은 폐지, 1건은 타규제와 통합관리, 1건은 행정규제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고, 폐지한 규제를 신설한 2건에 대해서는 1건은 폐지 1건은 재등록토록 함

나. 누락 규제 내역

- 밑술, 술덧 제조자에 대한 면허(주세법 제7조)
- 주류제조업 폐지시 면허취소신청 및 신고(주세법 제16조)
- 주류, 밑술, 술덧 제조업, 주류 판매업의 상속시 신고의무(주세법 제18조)
- 주류의 제조 및 출고 정지처분(주세법 제12조)
- 밑술, 술덧의 제조면허 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주세법 제13조)
-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제출 의무(주세법 제53조)
- 원료, 품질 등에 관한 필요한 명령(주세법 제40조)
- 주류제조 및 판매업자의 설비, 시설 등의 변동 신고(주세법 시행령 제58조)
- 주류제조 및 판매업자의 제조 및 판매관련 관할세무서장의 각종 승인(주세법 제46조)
- 주류제조설비의 사용전 검정(주세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70조)

4. 관세청

가.개요

1999. 6~7월중 실시한 경제분야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의 경우 행정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등록을 미이행한 사례 13건이 지적됨.

동 감사결과에 대한 관세청의 규제정비계획을 심의한 결과 9건은 신규등록하고, 2건은 폐지, 2건은 행정규제가 아닌 것으로 분류함.

나. 누락 규제 내역

(1)신 규등록 누락규제 내역

- 특정물품에 대해서는 세관별로 취급처를 지정(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1조 및 별표11)
- 항공기 등 관련 관세감면대상 제조공장 지정취소 또는 지정정지(관세법 제28 조의4, 관세법 제28조의 4규정에 의한 지정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 간이수출신고물품 검사를 위한 구분·장치 의무(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 시 제3-0-5조 제2항)
- 보세공장의 특허(시설, 관리)요건(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 귀금속류 보세공장 설영특허 및 운영요건(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 기내식 보세공장 설영특허 및 운영요건(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 5조)
- 특허장 등의 각종 게시의무(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 출국내국인 등에 대한 물품판매한도제한(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 4조)
-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처분 보류요청 및 승인(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 에 관한 고시 제9조)

(2)폐지규제 내역

- 보세판매장 영수외화대금 익일내 외국환은행 매각 또는 예치 의무규제 폐지
- 세관장이 항공기 등 관세감면대상 제조공장 지정승인시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 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

제2절

금융 분야

*집필자:이상희 사무관(Tel. 3703-2158, shlee302@opc.go.kr)

1. 신설 ㆍ강화규제 심사

1.재정 경제부

가.지난 3년간 신설·강화규제현황

(1) 개요

• 총 71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33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 규제 중 24건의 규제를 강화함

(2) 주요신설 · 강화규제

- 예금보험료율의 상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금융기관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되, 예금보험료율의 상한조정에 대해 5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함(98.6)
- 증권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 운용 전문인력 확보, 증권투자회사의 차입 및 보증 제한 등 증권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필요 규제를 신설함(98.7 및 98.9)
-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의 인가요건, 업무범위 기타 감독관련 규제들을 마련

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제도를 도입함(98.11)

-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선물거래한도를 설정하고 동일종목 등에 대한 투자한도 적용이 배제되는 사모펀드의 범위를 설정함(99.3)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기타 광고금지, 금융업 오인 명칭사용을 금지시킴(99, 11)
- 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일정 금융기관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내부통제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용토록 함 (99,11)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차등보험료율 비교광고를 금지토록 하되, 5년의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함(99.11)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0년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증권거래법, 상호신용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인회계사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 거래규정 등 31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42건, 강화 9건, 내용심사 13건, 재심사 9건 등 총 7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함
- 심사대상 73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철회, 11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59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으며 재정경제부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42건임

(1) 증권거래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기업을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 상인 증권회사 및 주권상장법인으로 정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서 일부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함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기업을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증권회사 및 주권상장법인으로 정함

심사결과(2000, 2, 2)

• 원안의결

(2)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률 시 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금융업 유사명칭의 범위를 열거하여 금융, 파이낸스, 자본, 캐피탈, 신용, 투자,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자산관리, 펀드, 컨설팅, 재테크, 보증, 팩토링, 개발 및 이들 명칭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외국어 등으로 정함

심사결과(2000, 2, 2)

• 원안의결

(3) 신 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요건을 일정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기타 금감위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 신용정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금감위가 인정하는 정보처리·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기타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등으로 정함
-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력요건을 공인회계사 또는 신용조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 이상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보유(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가 포함될 경우) 및 5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 력을 보유(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 하고 물적요건은 금감위가 인정하는 정보처리 · 정보통신설비로 정함

심사결과(2000. 3. 2)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인적요건 중 "경력자 5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보유의무"를 "5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으로 완화하고, 물적요건인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을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확보할 것"으로 하며, "기타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은 삭제토록 함

• 영업의 허가요건에 대해서는 신용조회업무 포함 영위시의 요건인 "10인 이상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보유의무"를 "1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으로 하고,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의 요건인 "5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2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으로 수정함

(4)신탁업법 시행령

십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신탁업 인가를 받기 위한 인적 · 물적 요건으로 일정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및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기준 확보 등을 명시함

심사결과(2000. 5. 17)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요건 중 "경영학·경제학 등 금융·증권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금융·증권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수정토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5)보험업법 시행령

십사요청 규제내용 (내용십사 1)

•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대상 보험사업자의 범위를 자산 2조원 이 상인 보험사업자로 정함

심사결과(2000. 5. 17)

• 원안의결

(6)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요하는 대상회사를 신탁재산 자산총액 6조원 이상인 위탁회사로 규정함
-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를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정의 유가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실,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구성에 관한 사실,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선물거래에 관

한 사실로서 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투자신탁설명서·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정함

심사결과(2000. 5. 17)

• 원안의결

(7) 외국환거래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재심사 2)

-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채권회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존치토록 심사요청(동규제는 2000년말 폐지키로 되어 있던 사항)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대차에 대한 규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무의 보증계약에 대한 규제, 증권의 발행 등에 대한 규제, 파생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 등 자본거래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존치토록 심사요청(동규제는 2000년말 개선키로 되어 있던 사항)

심사결과(2000. 5. 31)

• 대외채권 회수의무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외환시장의 안정 및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자본거래의 제한에 대해서는 존치토록 하되, 3년의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기준인 지배·종속관계의 범위를 종전의 지분 율 기준에서 기업의 실질지배력 기준으로 변경함(누락규제)

심사결과(2000.6.7)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사항 중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기타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로 변경할 것을 권고

(9) 금융지 주회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만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영위를 금지함
- 금융지주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도 여타 금융관련 법령과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 유를 설정함
- 금융지주회사에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총이사의 1/2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1/2 이상을 차지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는 사외이사가 2/3 이상을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심사결과(2000.6.20)

• 원안의결

(10) 증권거래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고객을 상대로 투자조언 등 매매권유를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행위의 범위를 확대함(누락규제)

심사결과(2000.6.20)

• 원안의결

(11)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의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증권투자회사 신탁재산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를 증권투자회사가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유 가증권 또는 선물거래에 관한 정보,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의 구성에 관한 사실, 증권투자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선물거래에 관한 사실 등으로 정함

심사결과(2000.6.20)

• 원안의결

(1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0)

- 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 및 처분, 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이 법에 따른 자산의 운용, 이 법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기업개선 약정체결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등만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 근하는 임원을 두지 못하도록 함
- 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도 여타 금융관련 법령과 동일한 수준의 결 격사유를 설정함
- 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감사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직무정지 및 당해 회계법인이 직무제한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의 집행을 선고받거나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구조조정투자회사는 기업개선 약정체결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등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금융기관이 기업개선 약정체결회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의 매매, 기업개선 약정체결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금융 기관에의 예치의 방법으로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음
- 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 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당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및 자산운용업무를 위 탁받은 자산관리회사와 이 법에서 허용되는 자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함
- 자산관리회사는 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 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을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 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보관업무 수행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이 법에서 허용하 는 거래를 할 수 없음
- 이 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구조조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심사결과(2000.6.20)

•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유사명칭 사용금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부활)

(1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십사요청 규제내용(재십사 1)

• 한국화재보험협회 특수법인 존치에 대해 폐지토록 한 정비계획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함

심사결과(2000. 7. 26)

•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국가고유기능의 분리, 임의단체화 등을 연구검토 하여 2000년말까지 재심사를 받도록 의결

(14)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시행령

십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십사 2)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약정체결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계획의 수립, 약정체결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약정체결기업 에 대한 투자 및 약정체결기업 자산의 취득 등을 추가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매각,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 10, 18)

• 원안의결

(15)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

- 금융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융 자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금융 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 분석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이를 그 보고에 관련된 거래상대방 및 그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 니됨

- 금융기관 등은 동법에 의한 보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고책임자 임명 및 내부보고체제의 확립,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교육, 정기적인 직원교육 및 연수 실시 등을 하여야 함
- 금융정보 분석기구의 장은 의심스러운 거래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 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금 융기관 등의 장에게 거래자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로써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정보 분석기구의 장은 동법상의 보고 및 금융기관의 내부보고체제와 관련 하여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관계 임직원 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십사결과(2000. 10. 25 / 2000. 10. 27)

- 분과위 심사(2000. 10. 25) 결과 금융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해 전산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구축 등 혐의거래의 자체수집 및 분석을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권고하고 금융기관의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삭제토록 권고
- 아울러,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정리 또는 분석한 결과"로 수정토록 하여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방지토록 권고
- 본회의 심사(2000.10.27) 결과 분과위 수정안대로 원안의결

(16)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 또는 거래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서면동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하며 금융기관 등은 관련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함
-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가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등과 관련하여 신고 를 하거나 신고한 경우 이를 그 신고에 관련된 거래상대방 및 관계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됨

심사결과(2000, 10, 25 / 2000, 10, 27)

• 분과위(2000, 10, 25) 및 본회의(2000, 10, 27) 모두 원안의결

(1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내용심사 1)

-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행위준칙, 임직원 등의 미공개 자산 운용정보 이용금지 의무 등을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에도 적용함
- 금융지주회사의 상근임원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등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범위를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설립 근거법률에 의해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2 이상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경 우로 정함
-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자를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당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와 일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함

심사결과(2000, 10, 25)

• 원안의결

(1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3)

-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시 4년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이사 및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회사와 감사인간의 유착소지를 제거함
-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던 감사인 선임절차를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후 정기총회 보고로 하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상장법인과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계약기간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만을

얻도록 함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법인에 상 장법인 이외 협회등록법인을 추가함
- 전기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계약기간중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전 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 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진술한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 11, 1)

• 감사인 선임절차에 대해서는 법 제4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으로 수정하며 추후 시행령 개정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는 원안의결

(19) 공인회계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재심사 3)

- 공인회계사 업무수행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기업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해 재무제표 감사 · 증명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폐지토록 의결한 정비계획에 대한 재심사
- 회계법인이 감사 및 증명업무 수행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를 제한하는 사항을 폐지토록 의결한 정비계획에 대한 재심사
- 회계법인의 정관기재 사항 중 회계법인의 목적, 자본금 감소에 따른 자본금 총액·사원의 출자,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재정 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폐지토록 의결한 정비계획에 대한 재심사

심사결과(2000, 11, 1)

• 회계법인 정관의 일부변경 인가에 대해서는 원래 정비계획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존치토록 원안의결

(20) 증권투자회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설립하는 기업인수 사모증권투자회사(M & A 펀드)가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도록 의무화함

심사결과(2000. 11. 8)

• 원안의결

(21) 신 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십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은자 또는 그의 제1대주주인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동일인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만 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요건을 추가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 ·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신용정보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명령, 해임권고, 경고, 문책요구 등을 할 수 있음
- 채권추심업무 수행시 금지의무에 채무자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을 추가함

심사결과(2000, 11, 8)

• 채권추심업무 수행시 금지의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는 원안의결(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법제처 심사시 삭제됨)

(22) 여신전 문금융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 재심사 1)

- 여신전문금융협회 설립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폐지토록 의결한 정비계 획에 대해 재심사
- 여전사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여타 금융업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
- 자산규모 및 영위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전사는 이사회 내에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1/2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자산규모 및 영위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전사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함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체결전에 해당 가맹점을 방문하여 실제 영업여부 등을 조사해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 신용카드업자는 회원과 가맹점에게 이자율 · 연체요율 등 각종 요율, 이용금액 결제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신용카드회원 또는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 11, 8)

• 재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정비계획대로 여전협회 설립근거를 삭제토록 하고, 신용카드업자의 거래조건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서 교부의무"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권고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23) 상 호신 용 금고법(상 호저 축 은행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는 이사회 내에 이사 총수의 1/2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는 감사 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총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11.8)

• 원안의결

(24) 예 금자 보호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보험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수 있음

심사결과(2000.11.15)

• 원안의결

(25) 증권거래법

십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3)

-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 외에 상장·코스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전자 거래시장(대체거래시스템)을 증권업의 한 형태로 허용하되, 업무방법 및 절차 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인 경우 일정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반드시 동 후 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 사이어야 함
- 협회중개시장 운영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서 법률로 이관하며인사·예산면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예산과 사무국의인사가 협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함
- 사외이사의 선임의무와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도 확대함
- 대형 상장 · 협회등록법인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일정규모 이상의 거 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만 하며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 11. 15)

• 원안의결

(26) 외국환거래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재심사 2. 신설 2)

- 일정한 금전대차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토록 의결한 정비계획에 대해 재심 사를 요청함
- 일정한 채무보증계약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토록 의결한 정비계획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함
-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지급, 건당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체재비 및 해외유학비 등의 지급,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대외지급수단의 지급 등 일정한 고액자금의 대 외지급시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도록 함
- 해외에서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여 입금하는 경우 또는 회수의무 대상 대외채 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입금하는 경우 해외입금보고서를 지 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잔액 또는 연간 입금액이 일정액 을 초과하는 경우 잔액현황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경유 한국은행에 제 출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해외예금 또는 신탁잔액에 대한 보고제를 둠

심사결과(2000.11.29)

- 고액자금 대외지급시 한은확인에 대해서는 거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 은에서 직접 확인받는 방법과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확인받는 방법을 선택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동 규제에 대해 3년의 규제존속 기한을 설정함
- 해외예금 · 신탁 잔액보고에 대해서는 5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재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재경부안대로 원안의결

2.금융감독위원회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 현황

(1)개요

• 총 9 6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5 2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 규제 중 2 4건의 규제를 강화함

(2) 주요신설 · 강화규제

- 증권투자회사의 설립시 모집에 의한 주식발행의 신고,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신 청 및 자산운용회사(외국자산운용회사 포함)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증권 투자회사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98,10)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관련 사항,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건전성 확보와 관련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자산유동화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98.11 및 99.7)
- 잔존만기 90일 이내 단기외화부채에 대한 외화자산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토록 의무화함(98.12)
- 신용평가회사에 1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1,000억원 이상 대출 중인 법인에 대한 평가를 금지하여 신용평가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함 (99.12)
-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및 전자문서의 작성과 그 제출절차를 명시하여 증권거 래법에 의해 금감위·증권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보고 및 기타서류 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99.1)
-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는 등 리스크관리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99.6 및 99.12)
- 증권회사 등의 무보증채권 인수를 제한하고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정기 또는 수시평가결과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조정된 경우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에도 불구, 새로운 신용평가를 의무화함(99.12)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2000년도에는 증권거래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 등 3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6건, 강화 16건, 내용심사 34건, 재심사 1건 등 총 11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함
- 심사대상 117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철회, 22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92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63개임

(1)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 률 시 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의 의무기재사항으로 자산유동화계획의 구조,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유동화전문회 사 등이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일시적인 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차입·지출·상환계획 등을 추가함
- 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에게만 자산관리자 자격을 허용하던 것을 완화하 되,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5인 이상의 전문인 력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상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회사도 자산 관리자로 인정함

심사결과(2000 2 9)

• 워안의결

(2) 보험감 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모집위탁 보험회사로부터 지정 받은 본점 외의 점포,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인 및 보험중개인으로 제한함

- 전화모집시 보험가입의 권유 상대방을 사전동의를 한 자, 기존 보험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의 활용·제공에 관해 사전동의한 자 등으로 제한하고 보험모집 전 상대방의 동의 의무화, 전화시간의 제한 및 안내 거절자에 대한 권유 금지, 증거자료 확보의무 등 전화모집시의 준수사항을 정함
- 사이버물에 보험계약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이버물의 설치자 · 보험사업자의 명칭, 청약 · 청약철회 ·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및 보장내용 등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함
-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 자금공여를 금지하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도 후순위 자금공여를 금지함

심사결과(2000, 2, 22)

- 전화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 제한은 철회권고, 전화모집시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모집 대상제한과 보험계약청약시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등의 음성녹음 및 청약서 사후보완의무만 존치토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철회권고
- 사이버몰의 설치 · 운영기준 중 금융감독원장 앞 보고의무는 철회권고하고, 후 순위 자금공여 제한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3)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채권자기매매업자간 중개회사(IDB)가 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무규 정을 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정 · 변경 · 폐지시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함
- 채권자기매매업자간 중개회사는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채권자기매매업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심사결과(2000.4.14)

• 원안의결

(4)은행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예

금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 예금관련 민원·분쟁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의 관리 및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을 열거함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토록 하고 은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자, 타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자는 준법감시인에 선임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함

심사결과(2000. 5. 17 / 2000. 5. 25)

- 제1차회의(2000. 5. 17)에서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항을 부처간 협의 후 수정하여 재심사받도록 권고
- 제2차 회의(2000. 5. 25) 결과,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임·직원이 자산을 운용하거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체제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의결
- 제2차 회의(2000. 5. 25) 결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①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금융기관·금융감독기관·금융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교수 중 금융관계전무가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로 준법감시인의 자격을 확대하되, ②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및 소속 직원, 재정경제부의 소속공무원의 경우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로 하도록 개선을 하고 ③ 임원결격사유 해당자 및 최근 3년간 금융관 련법령을 위반하여 조치받은 자는 원안의결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종합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예금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 예금관련 민원 · 분쟁 처리 및 보고 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의 관리 및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을 열거함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토록 하고 종금사업무에 5년 이상 종

사하지 아니한 자,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자, 타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함

십사결과(2000. 5. 17 / 2000. 5. 25)

• 전술한 은행법 시행령의 심사결과와 동일

(6) 심탁업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수탁원본이 300억원 이상이고 합 동으로 운용되는 실적배당 금전신탁으로 정함

심사결과(2000. 5. 17)

• 원안의결

(7)보험업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2. 강화 2)

-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 보험금지급 기타 보험관련 민원·분쟁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의 관리 및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준법감시인의 임면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함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토록 하고 보험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자, 타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함
- 보험회사가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경우, 금감위가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조직변경 결의를 한 경우, 당해 보험사업자가 소송당 사자가 되는 경우 등 금융감독위원회에의 보고의무를 부과함
-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부 및 투자한도를 각각 총자산의 2%로 하고, 거액대부 (동일인에 대한 대부가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의 합계액이 보험사 총

자산의 20% 이내를 유지하도록 자산운용비율을 설정함

• 확인담당 보험계리인에 대한 문책, 보직변경 등 해임에 준하는 기타 조치를 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

심사결과(2000. 5. 17 / 2000. 5. 25)

-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선임은 전술한 은행법 시행령의 심사결과와 동일
- 보험사업자의 보고의무에 관련하여 "당해 보험사업자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소송가액 등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기타보험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8) 신 용협 동조합법 시행령

십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십사 2)

- 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감사대상 신용협동조합의 범위를 총자 산이 300억원 이상(현행 500억원 이상)인 조합과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및 1억원 이상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 확대함
- 경영관리의 요건을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 중 큰 금액의 2 배를 초과하는 경우, 동일인 대출합계액 중 부실대출 금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기타 내용은 하위규정에 있던 사항을 상향규정화)
- 총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지역 · 단체조합(상근이 곤란한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직종단체조합은 제외)의 이사장은 상임으로 함

심사결과(2000. 5. 17)

• 원안의결

(9) 상 호신 용금고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내용심사 1)

• 동일인에 대한 상호신용금고의 대출 등의 한도를 대출대상기업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5~10으로 단계화하던 것을 100분의 20으로 단일화하여 상향조정하되, 일정한 총액기준을 둠

- 이미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해 새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할 사채의 발행금액은 금고법상 차입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1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의무화함
- 상호신용금고의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래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자산을 운용하거 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감사의 사전감사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사항, 임직원 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적기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상호 신용금고의 외부감사인 지명을 의뢰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0. 5. 17 / 2000. 5. 25)

- 내부통제기준의 심사결과는 전술한 은행법 시행령 심사결과와 동일
- 나머지는 원안의결

(10)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3)

- 위탁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자산을 운용하 거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 처리해야 하는 사항,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고 객의 고충 ·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와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야 함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토록 하고 위탁회사 업무 5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자, 타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자는 준법감시인에 선임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함
- 외부감사에서 제외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소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사모투 자신탁과 신탁회계기간의 말일 현재 신탁재산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하인 신

탁재산으로 정함

- 신탁재산운용보고서의 수익자 앞 제공을 신탁회계기간 종료 후 1회에서 6개월 에 1회 이상으로 단축하고 당해 보고서에 위탁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유가 증권 등에 대한 투자내역, 당해 위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당해 신탁재산 간에 행하여진 유가증권 등의 거래내역 등을 기재토록 의무화함
-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광고에 투자신탁재산의 개요 및 특성, 수익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신탁 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신탁 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 고하는 내용, 원본감소의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신 탁재산의 운용실적의 평가를 위해 사용된 기간 및 최종기준일 등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함

심사결과(2000. 5. 17 / 2000. 5. 25)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선임은 전술한 은행법 시행령의 심사결과와 동일
- 판매권유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 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따르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 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11) 외국환업무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외국환은행의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동 비율산정시 부채의 범위에 기존의 난내항목 이외에 금융기관의 대(對)기업 무역신용관련 외화지급보증의 20%를 포함토록 함

심사결과(2000. 5. 31 / 2000. 6. 7)

• 제1차 심사(2000. 5. 31) 결과,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에 근거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제2차 심사(2000. 6. 7) 결과. 원안의결

(12) 선 물거 래법 시 행령

십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선물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2000. 5. 25일 의 결된 은행법 시행령 등과 내용 동일)

심사결과(2000.6.7)

• 원안의결

(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와 회계법인 또는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내용, 회계법인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미리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상장직전연도에 감사를 받은 회사 의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십사결과(2000.6.7)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안하는 요소 중 "회계법인의 규모"와 "기타 회계법인의 감사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하고, "감사업무운영에 대한 감리결과"를 넣도록 권고

(14) 금융지주회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8)

-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금감위는 인가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요 출자자의 출자 능력, 금융지주회사 등의 재무능력 등을 심사토록 함
- 금융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산업은행 등 특수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동일 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 이상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되 금융전업 기업가는 10%까지 금감위 신고로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승인으로 보유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함
-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야 함
-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두는 경우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토록 하고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당해 자회사와 업무수행과 연 관되는 금융회사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 정함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의 인가 또 는 신고를 받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에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제외한 금액의 범위내 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을 제외한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신용공여 합계액을 연결자기자 본의 25%(동일한 개인, 법인 각각에 대해서는 20%) 이내로 제한하고 지주회 사의 대주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자기 자본의 25%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금액에 당해 대주주의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제한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①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그룹내 회사간 거래의 준칙 작성·공시의무 및 금융감독원장앞 제출의무②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 겸임금지③ 자회사 등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④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금지⑤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및 신용공여시 적격담보 확보⑥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간 불량자산 거래금지⑦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간 거래시 일방당사자의 건전성을 해하는 거래금지⑧ 금융지주회사 및 고 자회사 등간 공동광고 및 하부구조 공동사용에 대한 제한 등 일정한 의무부과 및 행위제한을 설정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 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매 3개월마다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연결하여 기재한 영업실적·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 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1년간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해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임원을 해임 또는 선임, 최대주주의 변경, 상호변경, 해산사유의 발생, 자회사 등의 주식을 처분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게 된 때 등의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등과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0.6.20)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인가 요건 중 임원의 지식 및 경험구비는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15) 상 호신 용금고 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지급준비예탁금 회계에 대해서도 금고와 동일하게 자산건 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부과함
- 금고연합회의 지급준비예탁금 회계에 대해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재무현황, 자산건전성 분류표, 대출채권회수업무 추진현황 등을 금융감독위 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6.20)

• 원안의결. 다만, 지급준비예탁금 회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2000년 말까지 마련 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

(16)상 흐금융 감 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3)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요건 등을 규정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경영실태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조합에 대해 재무상 태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재무상태 개선계획을

조합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조합은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100분의 2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조합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대손상각하고자 할 경우 중앙회장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 6, 20)

• 원안의결. 다만,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에 대해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단 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

(17) 증권거래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3)

-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이 유가증권발 행인 등록시 제출하는 재무에 관한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또는 확인을 받 도록 함
- 소액공모법인이 모집 · 매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청약의 권유는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2000. 5. 25 의결 된 은행법 시행령 등과 내용 동일)
-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부과함(2000. 5. 25 의결된 은행법 시행 령 등과 내용 동일)

심사결과(2000.6.20)

• 원안의결

(18)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2)

-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는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증권투자회사의 개요 및 특성, 주식인수의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볼 것을 권고하는 문언, 원본손 실가능성 및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실적 평가를 위해 사용된 기간 및 최종기준일 등을 명시함
- 일반사무 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20억원 이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 문인력 3인 이상, 일정한 전산설비 보유 등으로 정함

•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자본변동현황 및 주식의 매매상황표, 자산운용현황을 정하고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부속서류, 재무제표 및 투자설명서를 정함

심사결과(2000. 6. 20)

• 일반사무 수탁회사의 등록요건 중 "기타 일반사무 수탁회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삭제토록 권고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19)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5)

- 구조조정투자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관,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 수탁회사 등의 명칭 및 위탁계약내용,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소, 존 립기간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조조정 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 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들 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반사실 발견시 법률에서 정 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변경 위반자, 결산서류 제출규정 위반자, 자료제출요구 불응자,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해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0.6.20)

• 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사항을 정관자체가 아니라 정관 중 일부사항만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20) 은행감 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특수은행에 대한 감독업무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21개 조항에 대한 피규제자에 특수은행을 포함시킴

심사결과(2000. 7. 12)

• 경영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은행감독규정 별표의 수익성 부문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 해서는 원안의결

(21) 보험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2)

- 보험회사는 분기별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 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누락 규제)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요건 등을 규정함
- 사이버몰에 약관을 공시하고 상담직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게시하여 보험계 약자의 문의에 응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에 의해 약관 및 보험증권 등을 교부하 는 경우 당해 문서의 수령여부를 보험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등 사이버몰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일정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대해 열람을 신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 7. 26)

• 경영상황의 공시와 관련하여 상품목록의 수록범위를 판매종료 후 일정기간 동 안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세칙에 마련토록 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사항 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22) 유가증권의발행신 고 등에 관한 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의 금감위 앞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등을 정하고 장외시장에서 호가중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액매출할 경우의 특 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2000.9.20)

• 원안의결

(23)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3)

- 위탁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인적 · 물적 기준 등을 설정 한
- 유가증권의 대여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대여시 충분한 담보를 확보토록 하고 관계인에 대한 대여행위를 제한하며 모든 제반수익을 신탁재산에 귀속토록 하 는 등 관련사항을 정함
- M M F의 장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1%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감위에 보고토록 하고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용 등급미만으로 하락시 즉시 신용등급에 의한 가격으로 조정하거나 하락일로부터 1월이내에 처분토록 의무화함
- 위탁회사 및 판매회사가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기 위해 투자신탁의 운용실 적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2000, 10, 11)

•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M M F의 장부가와 시가와의 차이보고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고토록 권고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24)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자산운용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인적 · 물적 기준 등을 설정함
- 증권투자회사 및 판매회사가 당해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2000. 10. 11)

•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광고권유시 준수사항은 원안의결

(2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십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자산관리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자본금 20억원 이상,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일정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전문인 력 확보 등으로 정함
-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 10. 18)

• 원안의결

(26)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3)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중간지주회사의 요건을 ① 금융지주회사가 당해 중간지주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② 중간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회사가 영 위하는 업종이 당해 중간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다른 회사의 업종과 동일하 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정함
- 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을 정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를 정함

심사결과(2000, 10, 25)

• 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에 대해 "발행주식을 취득하며 충분한 자금력이 있을 것"을 "발행주식을 취득할 정도로 충분한 자금력이 있을 것"으로 수정하고 금 융관련 종사자 및 임원이 아닌 자도 금융전업자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하며 "국내 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일 것"을 "최근 10년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일 것"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2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재심사 1)

- 금융감독위원회는 회사,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이사, 감사, 발기인, 검사인 등) 및 기타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 · 결합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경우및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분식회계·부실감사 이외의 요건은 폐지토록 결정된 정비계획에 대해 재심사 요청

심사결과(2000, 11, 1)

-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양정기준과 법인에 대한 양정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법상의 모든 제재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추후 법제처 심사시 동조항이 공인회계사법으로 이관됨)
- 재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3 제5호 및 제6호는 삭제토록 하고, 제8호의2 중 "회사의 동의를 얻어"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토록 하며, 제9호에 의한 시행령 제4조 제5항 제1호는 추후 시행령 개정시 삭제토록 권고

(28) 증권투자회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증권투자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일반사무 수탁회사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함
- 증권투자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산운 용회사는 매분기의 영업보고서, 매영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감위 및 투자신 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 11, 8)

• 원안의결

(29)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신용정보업자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11.8)

• 신용정보업자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위는 동 신용 정보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철회를 권고

(30) 여신전 문금융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라 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 을 마련하여야 함
- 여전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
- 여전사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회사와 여신한도 또는 자기주 식보유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 자금 중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전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고 여전사가 동기준을 충족치 못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실 여전사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경영정상화 도모 및 구조조정을 위해 미리 고시한 기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0, 11, 8)

• 원안의결

(31) 상 호신 용 금고법(상 호저 축 은행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

며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경영권 이전신고를 하도록 함(누락규제)

-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
- 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제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 단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상호 교차하거나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 니됨

심사결과(2000.11.8)

• 원안의결

(32) 증권거 래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현재 특수채로 간주되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금융채 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일정 금융채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 출토록 함
- 허위·부실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 향조정함

심사결과(2000.11.15)

• 원안의결

(33) 보험감 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보험회사로 하여금 주요 경영상황에 대한 공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확대하고 인터넷 공시를 의무화함

심사결과(2000.11.22)

• 원안의결

(34) 증권회사의 증권업 부수업 무에 관한 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중개방법, 담보의 관리,

대차거래 대상 유가증권의 인도방법 등을 정함

•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대여 및 차입현황과 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한국증권업협회를 통해 즉시 공시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11.29)

• 원안의결

(35) 증권업 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던 금융기관의 범위를 종전의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지 아니한 은행만으로 축소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특수채로 인정되던 채권 중 리스채, 종금채, 카드채 등을 예외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심사결과(2000, 12, 20)

• 원안의결

(36) 금융지 주회사 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8. 내용심사 1)

- 금융전업자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은행지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함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및 동일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다른 자회사 등에의 신용 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확보 해야 할 적정담보의 기준을 설정하고 담보제공 후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1 월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추가담보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이 공동광고를 할 경우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회사 등이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인지의 여부, 별도의 법적인 계약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이 다른 자회사 등의 채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다른 관련법령에서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 등으로 정함
- 금융지주회사가 지켜야 할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원화유동성 비율,

외화유동성비율 등을 정함

- 금융지주회사는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며 대 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 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 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회사별, 거래 별, 부서별, 담당자별 리스크 부담한도 · 거래한도 등을 설정 · 운영하여야 함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은 상호간 또는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조건 을 따라야 하며 이익상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발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0, 12, 20)

• 이익상충행위의 금지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 및 대처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고주기를 "7일 이내" 또는 "1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며, 경영지도비율 설정에 대해서는 필 요자본의 개념을 규정에 명시토록 권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37)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금융기관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자체안전대 책기준을 설정 · 운용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 · 절차를 제시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그 거래내역 등을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서면요청시 당해 거래기록 · 자료를 제공하거 나 열람케 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을 전자금융거래 개시이전과 변경시에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오류정정 절차를 정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의 장애 및 전산사고, 해킹 등 정보기술부문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 12. 20)

• 원안의결

Ⅱ. 누락규제 등록(감사원 감사결과)

1. 제정 경제부

가,개요

• 1999. 6. 7일부터 7. 20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경제분야 규제개혁 이행실태감사'결과, 등록누락된 규제 및 정비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한 규제 등 총 46건의 규제가지적되어 2000. 7. 12일 경제1분과위원회에 상정. 심의 · 의결함

나. 누락 규제 내역 및 정비결 과

- 총 3 2건의 누락규제 심사결과 2 4건에 대해서는 등록, 3건에 대해서는 규제제 외, 5건에 대해서는 기존규제와 통합등록토록 의결하고, 총 1 4건의 정비대상 규제에 대한 재심사결과 5건에 대해서는 존치, 7건에 대해서는 개선, 2건에 대해서는 폐지토록 의결함
- 이 중 존치된 규제를 살펴보면.
 - 임원 등의 겸직제한(은행법 제20조)
 - 신탁업무 영위시의 별도장부 보유(은행법 제29조)
 - 당좌예금의 취급기관 제한(은행법 제32조)
 -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재산 보유 등(은행법 제62조)
 -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증권거래법 제21조, 이하 3개 규제와 묶어 한 개 규제 로 등록)

- 신고서 사본의 송부(증권거래법 제22조)
- 공개매수 설명서의 작성과 사용(증권거래법 제24조)
-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증권거래법 제25조의2)
- 위탁매매전문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증권거래법 제44조의2)
- 영업보증금의 예탁(증권거래법 제70조의4)
- 증권거래행위 등의 금지(증권거래법 제70조)
-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적립(증권거래법 제95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증권거래법 제149조)
- 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증권거래법 제174조의2)
- 보고 및 확인 등(증권거래법 제174조의12)
- 유가증권의 관리(증권거래법 제176조의2)
- 감사의 자격 등(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증권거래법 제194조의3)
- 기금의 현금납입 의무(보험업법 제43조)
- 보험모집인의 범위(보험업법 제144조)
- 자기대리점의 금지(보험업법 제153조)
- 과태료(보험업법 제226조)
-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거래정보 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아래 규제와 통합하여 등록)
- 거래정보 등 제공 사실의 통보 및 기록·관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2. 금융감독위원회

가,개요

• 1999. 6. 7일부터 7. 20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경제분야 규제개혁 이행 실태감사'결과, 등록누락된 규제 및 정비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한 규제 등 총

128건의 규제가 지적됨

• 이와 함께, 감사원 지적사항은 아니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등록 누락규제(76건)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보한 재심사사항(4건), 국회입법과정에서의 수정 또는 부결사항(8건), 1998년도 정비대상규제 중 미완료된 사항(9건)등을 포함하여 총 225건의 규제(누락규제 204건, 정비대상 규제 재심사 21건)에대해 2000. 2. 2일 경제1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의결함

나. 누락 규제 내역 및 정비결 과

- 총 204건의 누락규제 심사결과 112건에 대해서는 등록, 65건에 대해서는 폐지, 10건에 대해서는 규제제외, 17건에 대해서는 기존규제와 통합등록토록 의결하고, 총 21건의 정비대상 규제에 대한 재심사결과 폐지대상 규제 16건 및 개선대상 규제 5건 모두 존치토록 의결함
- 이 중 존치된 규제를 살펴보면.
 - 증권회사의 장외거래업무 관련 신고 및 보고사항(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 조의18.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
 - 부동산신탁회사의 사업비의 조달방법(신탁업법 제27조, 신탁업감독규정 제28조)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신탁업법 제27조, 신탁업감독규정 제22조의3)
 - 시가평가위원회 설치(신탁업법 제20조, 신탁업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신탁업감독규정 제29조의2)
 - 수익증권 발행인가(신탁업법 제17조의2 제2항, 신탁업감독규정 제5조, 감독세칙 제4조)
 - 대리점계약의 체결(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감독세칙 제172조)
 - 보험대리점 등록의 제한(보험업법 제149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보험감 독규정 제87조)
 - 동일계열기업군 회사채 보유한도제(금감위공문 / 98. 10. 26, 신관7510-239, 은행감독원 투지3935-785, 증권감독원 생보510-20420, 보험감독원)
 - 증권투자회사의 청산관련 감독명령(증권투자회사법 제74조, 감독규정 제23조)
 - 증권투자회사 해산시 해산사실의 보고(증권투자회사법 제65조. 감독규정 제

23조)

- 판매회사의 등록(증권투자신탁업법 제41조의2, 감독세칙 제83조의2)
- 수탁한 당해 신탁재산의 판매업무 영위를 위한 승인(증권투자신탁업법 제40 조, 감독세칙 제83조의2)
- 임직원 유가증권 매매의 승인(증권투자신탁업법 제34조의2, 감독규정 제 83조의2 및 감독세칙 제49조)
- 수익증권 판매시의 금지행위(증권투자신탁업법 제34조의2, 감독규정 제110조)
- 외국인의 유가증권 보관의무(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7조의2 제2항,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매매계좌의 개설 및 외국인 예탁금의 처분제한(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7조의 2제2항,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내지 제10조)
- 상임대리인의 선임(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7조의2 제2항, 외국인의 유가증 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조건부 채권매매업무에 관한 표준약관 심사, 현황보고 및 세부사항(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8,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규정 제9조 내지 제10조)
- 매도채권의 보관(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8,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 무규정 제7조)
- 조건부채권 매매업무 영위법인(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8, 환매조건 부채권 매매업무규정 제4조)
- 매매수익률 호가를 게시한 채권의 매매(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8,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7조 내지 제8조)
- 채권 장외거래의 매매방법 및 결제방법(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8,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5조)
- 단주매매 공동계좌 설정 및 단주매매취급 의무(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18,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17조)
- 단주 장외거래(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8,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5조)
- 증권사의 소액채권매매업무 취급의무(증권거래법 제36조의18,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제11조)
- 증권예탁원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 행사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증권거래법 시행규

- 칙 제26조의3 제3항, 증권예탁원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규정 제8조)
- 증권예탁원의 의결권행사 주식수, 행사방법 및 예탁원의 통지(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제3항, 증권예탁원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규정 제4조 내지 제7조)
- 신용공여이자율 등에 관한 보고(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41조)
- 신용공여의 제한 및 이자율 변경보고(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증권회사 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40조)
- 신용거래시 금지사항(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27조)
- 신용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출(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증권회사의 신용 공여에 관한 규정 제26조)
- 신용거래의 임의상환 정리방법 및 상환(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21조 내지 제24조)
- 신용거래대상 유가증권(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17조)
- 신용거래계좌의 설정(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12조 내지 제16조)
- 어음관리계좌 수탁금 운용(종금법 제7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9조)
- 내부통제제도 확립(종금법 제21조의2,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41조)
-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 구축(종금법 제21조의2, 종금감독규정 제27조)
- 중개회사의 임직원 비밀준수 및 중개회사의 중개업무내역 보고 등(종금법 제 21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81조)
- 어음매매 중개수수료 한도(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79조)
- 매매대상 유가증권(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77조 제1항)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중개수수료(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76조)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의 환매기간(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75조)
- 양도성예금증서 매매의 중개수수료(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73조)
- 담보콜거래의 담보물 및 담보물 가액의 평가(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 세칙 제71조)

- 콜거래 중개수수료(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70조)
- 신용거래시 신용공여한도 설정(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68조)
- 거래신청 등에 대한 자료제공(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63조)
- 인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의 실행보고(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40조 제3항)
- 외부감사보고서 사본 제출(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40조 제2항)
- 적격업체별 무담보어음 매출 및 중개한도(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세 칙 제13조)
- 무담보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표시 및 부도율 명세 게시(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12조)
- 중개회사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독규정 제39조의3)
- 적격업체 선정 및 동사실의 종금협회 통보(종금법 제21조, 종금감도규정 제 18조의2, 종금감독 시행세칙 제15조)
- 종금사의 취급업무의 구분계리 등(종금법 제13조. 종금감독규정 제28조)
- 예금의 구속금지(은행법 제52조, 은행감독규정 제66조, 감독세칙 제12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은행법 제52조, 은행감독규정 제63조, 감독세칙 제10조)
- 비업무용자산의 처분(은행법 제39조, 은행감독규정 제56조제1항)
-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지도(은행법 제37조, 은행감독규정 제63조, 은행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29조)
- 금융기관 자회사임직원 소액대출한도 설정 관리(은행법 제37조, 은행감독규 정 제52조)
- 금융기관 주주대표 및 임원과의 거래내역 보고 및 공표(은행법 제15조 및 제38조, 은행감독규정 제27조, 감독세칙 제23조)
- 금융기관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감축계획 승인(은행법 제15조, 은행법 시행령 제10조, 은행감독규정 제60조의2, 은행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제 12조의2)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은행감독규정 제30조)
- 여전사의 경영공시의무(여전법 제54조의2, 감독규정 제9조의2, 감독시행 세칙 제20조)

- 법인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등의 금지(여전감독 시행세칙 제79조 제2항)
- 각종 준비금과 충당금의 충실한 적립(여전감독 시행세칙 제18조)
-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의뢰(신협법 제47조 제5항, 신협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신탁업법 제27조, 신탁업감독규정 제33조)
-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영공시(신탁업법 제25조의2 제4항, 신탁업감독규정 제30조의2)
- 공탁의무(신탁업법 제16조. 신탁업감독규정 제26조)
-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사업 여유자금 운용방법(신탁업법 제15조, 신탁업감 독규정 제27조)
- 부동산투자신탁 자금의 운용기준(신탁업법 제10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감독규정 제27조)
-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별 세부교환대상자 지정(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 조 제8항)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실 통지(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신용정보업 무 운용규정 제5조)
-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정(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신용정보업무 운용규정 제4조)
-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최고한도 설정(신용정보법 제7조, 신용정보업무 운용 규정 제2조)
- 신용정보업자의 기타업무 겸업승인(신용정보법 제6조 제5항, 제10조)
- 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업무보고서 및 기타 자료제출 요구(신용정보법 제 29조 제1항 및 제2항)
- 신용정보의 시정요청 및 명령(신용정보법 제25조 제4항 및 제5항)
- 신용정보의 정정청구(신용정보법 제25조 제1항, 신용정보업무 운용규정 제10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 확인(신용정보법 제24조 제2항, 신용정보업무 운용규정 제8조)
-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신용정보법 제21조, 신용정보업무 운용규정 제8조)
- 신용정보업자 등의 내부관리규정 제정(신용정보법 제20조, 신용정보업무 운

용규정 제7조)

- 건전성비율 유지(상호금융감독규정 제12조의2, 감독세칙 제12조)
-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의 겸업(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7항, 보험감독규정 제93조)
- 장부의 기재, 비치, 열람, 보존(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의12, 보험감독규정 제102조, 감독세칙 제242조)
-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 보험감독규정 제90조)
- 금융거래질서 유지(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보험감독규정 제62조)
- 담보제공금지 등(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보험감독규정 제61조)
- 중소기업 의무대출(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보험감독규정 제55조)
- 업무용부동산의 취득(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보험감독규정 제48 조 제1항 제2호, 제51조 제1항 제2호)
- 공익사업에 대한 투자(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보험감독규정 제48 조 제1항 제6호 및 제50조)
- 자기계열집단 선정대상(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감독세칙 제129조)
- 저축성보험의 위험보장의 한도(보험업법 제7조 및 제22조, 생보상품 관리 규정 제77조)
- 경영공시(보험업법 제6조의4, 보험감독규정 제37조)
- 지급여력기준(보험업법 제6조의3, 금산법 제10조, 보험감독규정 제25조 및 제31조)
- 보험사업자의 적기시정조치(보험업법 제6조의3, 금산법 제10조, 보험감독 규정 제28조 내지 제29조의2,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7)
- 지급여력의 보고(보험업법 제6조의3, 금산법 제10조, 보험감독규정 제27 조 및 제32조, 감독세칙 제55조)
- 등록의 취소, 거부 등(보험업법 제205조의2, 감독세칙 제273조 및 제274조)
- 손해사정인의 의무(보험업법 제203조 및 제205조, 감독세칙 제272조)
-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취소, 거부, 말소(보험업법 제202조의3 및 제204조의3, 감독세칙 제275조 내지 제278조 및 제281조)
- 특별계정 재산운용의 한도 및 특별계정의 동일인 주식한도(보험업법 제19조의2, 보험감독규정 제46조의2 및 제73조의2, 감독세칙 제134조의2 제1

항 및 제2항)

- 대리점시설 등(보험업법 제155조. 감독세칙 제186조)
- 지점의 설치 및 폐쇄(보험업법 제154조, 감독세칙 제182조)
- 신고사항(보험업법 제154조, 감독세칙 제180조)
- 겸영금지의 범위(보험업법 제150조의3, 보험감독규정 제103조)
-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예탁(보험업법 제150조의2, 시행령 제30조의 6, 제30조의7, 제30조의8, 시행규칙 제49조의6, 보험감독규정 제98조 및 제99조 및 제101조)
- 계약의 해지(보험업법 제150조, 감독세칙 제176조)
- 임원 또는 사용인 등의 고용제한(보험업법 제149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감독세칙 제178조)
- 임원 또는 사용인(보험업법 제114조, 시행령 제30조의2, 보험감독규정 제95조)
- 신탁업무의 승계신고(담보부사채신탁업법 제93조 제1항, 신탁업감독규정 제5조의3 제3항)
-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담보부사채신탁법 제6조, 신탁업감독규정 제5조의2 제1항)
- 외국회사의 대표자 지정신고(담보부사채신탁법 제11조 제4항, 신탁업감독 규정 제5조의3 제2항)

제3절

산업자원 분야

*집필자: 이정섭 과장(Tel_3703-3932, clee16@opc.go.kr)

1. 신설ㆍ강화규제 심사

1.산업 자원부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현황

(1)개요

• 총 21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77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 규제 중 46건의 규제를 강화함

(2)주요신설 · 강화규제

-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요금의 100분의 7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100분의 6.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연차적으로 부담금을 축소해 나가도록 권고(전기사업법)
- 송전사업의 통합운영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산업자원부 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송전사업에 대하여는 2 이상의 사업자를 허가하지 않고자했으나 철회하도록 권고(전기사업법)
- 전기판매사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발전 · 송전 · 배전 · 전기

판매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한 요금을 구분하여 명시(전기사업법)

- 유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 · 검사하여 불량품인 경우 기존에 회수 명령만을 할수 있던 것을 불량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은 허용하는 한편, 불량제품의 교환과 환불도 가능하도록 개선명령 사항에 추가할 것을 개선 권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에너지 수급상황의 변화 또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너지 공급자가 수립하여 제출하는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정 · 보완하여 시행토록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전력시장의 경쟁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일몰제(5년) 도입 권고
- 산업자원부 장관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자 및 공급자에 대하여 동 기자재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의 신설을 인정하 되, 모든 소비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하여 공공부문에 한정 하도록 개선 권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수출자유(자유무역)지역 물품의 역외수리 가공승인요령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던 물품처분시 신고의무, 물품관리 상황의 기록보존 의무를 법률에 규정토록 하고, 물품의 폐기, 양도, 임대 등을 업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개선 권고(자유무역지역지정 등에 관한 법률)
- 입주허가의 취소요건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기업체가 장기간 휴 · 폐업하는 경우에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신설(자유무역지역지정 등에 관한 법률)
- 천연가스 인수기지에 설치하는 초저온 저장탱크에 대해 저장성 탱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설비의 허가범위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규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품검사를 받도록 개선 권고(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시행령)
-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최근 3년간 이월결손금이 연속 발생하거나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등으로 하고자 하였 으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으 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거나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으로 경우로 개선할 것을 권고(산업발전법 시행 령)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입자본금 의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기업인수와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사업에 운용하여야 하며, 2년 이후에도 동 비율 이상의 금액을 계속 기업인수와 인수 한 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사업에 운용하도록 기준을 제시(산업발전법)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2000년도에는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24개 법령에 대해 신설 29건, 강화 23건, 내용심사 8건 등 총 6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0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철회, 25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2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업자원부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23건임

(1) 기술이전 촉진법 시행령

심사요청 내용(신설 4)

-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으로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이공계열학과를 설치한 국·공립 대학으로 하고, 전 담조직에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상근직원으로 선임하도록 함
-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추거나 대학의 교수, 연구·전문기관의 선임연구원으로서 관련분야 실적이 있는 자로 하되,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 함
- 공공연구기관은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및 사업화하여 발생한 기술료 중 순수입액 의 15% 이상을 연구개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기술이전 관련 정보를 거래소에 등록해야 하는 기관으로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국가 등의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을 보유하는 기관과 산업기술연구조

합 중에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조합을 추가로 규정

심사결과(2000. 4. 6)

- 전담기관 설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전담조직(기술이전 컨소시움)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하던 것을 삭제토록 권고
- 기술거래사의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거 래질서를 현저히 해한 때"의 규정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
- 기술료의 수입이 다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2차년도 이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연구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삭제할 것을 권고
- 개발완료된 기술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안의결

(2) 염 관리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내용(신설 1)

• 산업자원부 장관은 염 품질검사 대행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3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일정기준의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규정을 강화

십사결과(2000.4.6)

• 사무소의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검사설비와 검사장비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유 할 필요는 없고 단지 확보만 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3)전 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내용(내용심사 3)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공급전원 $50V\sim10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규정
- 기술표준원장이 안전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인증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의 · 평가한 후 제품분류별 안 전인증 수행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자원부 장관은 소비자의 안전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

으킨 경우, 정기검사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검 사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2000. 5. 10)

-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체제를 국제추세에 맞춰 전기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으로 분리시행하되, 전기안전 사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사항은 전파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등록을 면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은 국제기 준에 맞추어 고시하도록 고시내용을 제한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
- 검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소비자 안전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요건이 추상적이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기검사 결과 인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같이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

(4) 수 출입 별 도공고

심사요청 내용(강화 1)

• 남방 참다랑어와 이빨고기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통계서류 및 어획증 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는 수출입할 수 없으므로 동 어종을 수출입하는 경우 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2000. 5. 17)

• 국제협약 이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5) 수 출자 유지역 설 치법 시 행령

심사요청 내용(내용심사 1)

• 관세가 유보된 원재료 등의 작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역외생산업체에 위탁을 주어야 할 경우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역외가공 수탁업체를 산업자원부 장 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고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화

심사결과(2000. 6. 8)

• 역외가공 수탁업체의 등록의무 부여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제의 투명 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삭제토록 권고

(6) 계량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내용(내용심사 1, 강화 1, 신설 1)

- 수입업자가 수입한 계량기에도 검정을 받도록 하고 수입계량기의 신고의무 및 수입계량기의 검정지시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
- 자체검정사업자의 검정기준을 과거 기술표준원장 고시로 규정하던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국제법정 계량기구의 형식승인을 받고 최근 2년간 불합격률이 0.05% 이하이며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강화
- 기준기를 제작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기준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기준 및 절차는 고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2000.6.1)

- 계량기의 수입신고 및 수입계량기의 검정절차가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지정기준 중 임원이 이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된 이후 2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 이 없으므로 삭제하도록 수정 권고
- 계량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7) 품질경영 촉진법

심사요청 내용(신설 2. 강화 1)

- 품질경영체제 인증제도(ISO 9000)를 민간 이양토록 함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 등의 지정 및 취소 업무를 담당하는 인정기관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현재 개선 · 파기 · 수거 명령만을 할 수 있는 안전검사 결과의 사후감독을 강화 하여 위해사실의 공표 및 교환 · 환불 · 수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강화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안전검사대상 품목에 대하여 품질 및 안전 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안전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심사결과(2000, 6, 20)

• 품질경영체제 업무의 민간이양에 따라 인정기관의 지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 를 위하여 원안의결

(8)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심사요청 내용(강화 2)

- 현재 15개 품목인 단위가격표시 의무화 품목에 식초, 복합조미료, 소금, 참치 캔, 라면, 종이기저귀 등 6개 품목을 추가
- 현재 TV, VTR 등 12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에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등 10개 품목을 추가

심사결과(2000.6.28)

• 소비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

(9)석 유사업법 시행령

심사요청 내용(강화 2. 규제완화 2)

- 석유판매업 중 신고대상인 이동판매소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석유공급자 등이 전년도 판매량의 60일 이내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양의 석유를 비축하여야 하나 그 산정기준을 "전년도 판매량"에서 "직전월 12 월 동안의 판매량"으로 개선
- 에너지특별회계의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하던 판매부담금의 근거규정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천연가스의 경우 다른 석유제품 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톤당 6,908원에서 9,750원으로 상향 조정
- 등록 또는 신고한 석유판매업의 지위를 승계하여 성명 및 상호, 대표자의 변경 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 및 신고대상으로 규정

심사결과(2000, 7, 5)

• 에너지 특별회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10) 액화석 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심사요청 내용(강화 1)

• 찜질방 가스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시설기준을 새로이 규정

십사결과(2000. 7. 12)

• 소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

(11)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법률

심사요청 내용(신설 1. 강화 2)

- 불공정무역행위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거래자 등은 수입된 물품의 국 내 판매행위 및 수출을 위한 제조행위까지 확대하고 불공정무역 거래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물품을 처분하거나, 국내판매업자 및 제조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포함
- 불공정무역행위 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현행 3,000만원 에서 거래금액의 2%로 하여 부과금액을 확대
-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직권으로 당해 물품의 영치, 부당행위 중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심사결과(2000. 7. 19)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제협정에 부합할 필 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12) 석 유사업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내용(강화 1. 내용심사 4)

-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판매되는 석유제품이 품질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반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공표대상자에 위반사업자에게 위반석유제품 공급자를 포함하도록 공표대상 확대
- 석유정제업의 시설요건 중 저장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유사시설의 범위에 이동 탱크 저장시설 외에 선박탱크 저장시설을 추가

심사결과(2000. 7. 19)

- 일반판매업소의 거래상황 보고대상을 월 20킬로리터 이상 판매하는 사업자로 제한하고, 보고서식도 단순화하도록 개선 권고
- 기타 사항은 규제의 명확화 및 구체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

(13)열 기구사용 기자재 관리규칙

심사요청 내용(강화 1)

• 특정열사용 기자재(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 가열로)에 대해 검사 수수료를 28.47% 인상(평균 16,400원 인상)

심사결과(2000.5.17)

• 검사 수수료의 원가 보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

(14) 외국인 투자촉진법

심사요청 내용(강화 2)

- 주식예탁증서, 교환사채,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동 조항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의무화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

심사결과(2000.8.23)

• 외국인 투자의 촉진과 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

(15) 대외무역법

심사요청 내용(신설 3)

- 전자무역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무역 거래를 진흥하기 위하 여 전자무역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제도를 도입
- 전자무역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 부 장관이 전자무역공인 인증마크를 발급하는 근거를 신설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무역거래자의 금지행 위 및 대상자의 범위를 원산지 미표시행위 및 그 상품의 판매자에게까지 확대

심사결과(2000.9.20)

- 공인인증마크제는 전자무역거래의 피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부의 책임만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동 제도의 도입철회를 권고
- 새로이 추가되는 금지행위인 원산지 미표시행위와 관련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에 무역거래자외에 판매자를 포함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판매자는 제 외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

• 대외무역 중개기관의 지정은 지정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

(16) 수출입별 도공고

심사요청 내용(강화 1)

•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황새치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의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토록 추가

심사결과(2000. 9. 20)

• 국제협약 이행과 수출의 원활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17) 에너지 효율 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심사요청 내용(강화 1)

• 소비자 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만제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에너지 효율관리 기자재 대상품목에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추가하고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에 대한 효율등급 기준을 각각 30%. 7% 상향 조정

심사결과(2000.9.20)

•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18) 고압가 스안전 관리법

심사요청 내용(신설 1, 강화 2)

- 가스사고의 요인을 줄이고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고압가스사업자 등이 사업을 개시 · 휴지 · 폐지할 때에는 미리 이를 감독관청에 신고토록 규정
- 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 납부대상자를 고압가 스 제조신고자 및 검사기관 지정자에게까지 확대
- 사업소 경계 밖으로 고압가스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시공감리를 받도록 강화하고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하여 보존토록 규정

심사결과(2000, 10, 11)

• 사업의 개시 및 재가동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신고과정에서 기 통지하였으므로 이를 재신고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삭제토록 권고

- 수수료 추가 납부대상자 중에서 고압가스제조업 신고자의 경우에는 신고 수리에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
- 지하매설물에 대한 기록 보존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19) 부품소재산업발전 특별법

심사요청 내용(신설 5)

- 산업자원부 장관은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품에 대하여 신뢰성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자원부 장관은 신뢰성 인증에 필요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
- 산업자원부 장관은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 · 소재로 인하여 수요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계공제사업 단체와 보험사업자 중에서 신뢰성 보장사업 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
- 연구단 소속 연구기관은 부품 · 소재 전문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원의 파견, 연구장비와 시설 및 정보의 활용, 기술지도 및 자문에 응하도록 의무화
- 부품·소재산업의 정보유통과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품·소재 관련기업, 사업자단체, 연구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2000, 11, 8)

- 품질인증제도의 복수화 및 민간이양 방침에 따라 정부의 인증기능을 민간과 함께 공동 인증제도로 운영하고 3년 후에는 민간인증제도로 전환하도록 수정 권고
- 신뢰성 평가기관의 지정은 복수기관으로 하도록 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후감독 기능을 보완하도록 수정
- 신뢰성보장사업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원하는 경우 보험사업자가 신뢰성 보 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정 권고
- 사업자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할 것을 의무화한 것을 삭제하도록 수정 권고

(2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심사요청 내용(신설 10)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는 경우 위해성 평가서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이나 공항을 통하여만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수입·생산 승인 이후 위해성이 발견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새로운 과학 적 사실이 밝혀진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승인받지 않았거나 수입·생산이 금지된 품목에 대하여는 폐기 또는 반송의 명 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승인서 등을 첨부하여 산 업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의 운영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등급 이하는 사전 신고토록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루 는 특정실험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용기의 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유통관리기준을 준수하며 그에 따른 관련기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의무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수입업자, 생산자, 연구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장소를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시정,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하고 수입 · 생산업자는 공제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2000. 11. 24)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검사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긴 우편물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경우"에 만 신고하도록 신고대상자를 한정하도록 수정 권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장소를 모든 경우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 권고

- 승인의 취소사유 중 위해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수정 권고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 공제사업의 시행과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산업자원 부 장관이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선언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추후 외국의 입법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토록 규제 삭제

(21)석 유제품 품질기 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심사요청 내용(강화 1)

•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을 정유사에서 사실상 적용하고 있는 대기환경보 전법의 자동차 연료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그동안 품질기준이 없어 품질검사를 할 수 없었던 선박용 경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새로이 신설

심사결과(2000.11.29)

•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22)석 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내용(강화 4)

- 석유제품의 종류에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 부생연료유의 개념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부생연료유 판매소를 석유제품판 매업에 추가하여 일정기준을 갖추고 등록토록 하며 석유판매금의 징수대상자 로 규정하고 비축의무를 부과
- 수입부과금액을 원유 및 석유제품의 1리터당 13원에서 14원, 등유는 20원에서 23원, 천연가스는 톤당 6,708원에서 9,7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부탄 및 부생연료유에 대하여도 톤당 19.031원, 리터당 17원을 각각 부과
- 부생연료유 및 석유가스를 품질검사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검사수수료를 리터 당 0. 2워의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

심사결과(2000, 12, 6)

• 부생연료유의 개념을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을 수정하여 부생연료유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이 법의 규제대상으로 하여 탈법행위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권고

• 부생연료유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대상으로 추가할 경우 불필요한 생산활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

(23) 액확석유가수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 공급 계약체결 등 시범실시 특례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2)

- 현재 모두 소비자 시설로 되어 있는 석유가스 설비의 개념을 공급자 시설과 소비자 시설로 구분하고, 가스의 안전공급을 위해서는 안전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
- 가스사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현재 과실책임으로 되어 있는 무과실 책임인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도입하고 공급자는 반드시 보 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판매사업자의 가스공급 지역을 시범지역(허가지역) 내로 제한하고 시범지역 외의 판매사업자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통지서를 교부한경우에는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

심사결과(2000, 12, 27)

- 안전공급계약 표준서면통지서의 명칭을 안전공급계약서로 수정하고 안전공급 계약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안전공급계약 서상의 계약해지조항 등에 대하여 소비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정 권고
- 시범지역내 가스공급 제한은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으나 안전공급 체계확립과 무과실책임보험의 가입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도입을 인정하되, 기존 공급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할 것을 권고

2.중소기업청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확규제현황

(1)개요

• 총 6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6건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3건의 규제를 강화함

(2)주요신설 · 강화규제

- 연구개발기업과 특허 및 신기술의 사업화 기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총액 매출액 기준을 설정하여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 9,600만원, 2분기 이상인 경우는 4.800만원 이상으로 규정
- 창업투자회사의 상근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자 했으나 대표이사에 한하여 자격요건을 제한하도록 수정 권고
- 공장을 경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공장을 설립한 후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
-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아닌 자는 동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철회토록 권고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확규제심사내역

개 요

- 2000년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벤처기업육성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4개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1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8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철회하고 2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 수는 3건임

(1) 지역신 용보증재단법

심사요청 내용(신설 2, 내용심사 1)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혜택을 보다 많은 기업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동일기업 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
- 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 5 이상의 재단이 발기토록 하고 정관을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받도록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2000. 1. 12)

- 신용보증 총액을 제한하도록 하되, 다만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이 사회의 의결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최고한 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수정 권고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설립 및 정관변경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인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토록 권고

(2) 중 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심사요청 내용(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및 투자심사 경력이 있는 자 등 3인 이상의 전문인력과 독립된 사무실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중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를 99인 이하로 제한하고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추가하여 강화
- 창업투자회사가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 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재출토록 의무화

심사결과(2000. 3. 15)

-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중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부대시설 설치조건은 삭제하도록 권고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심사요청 내용(신설 1)

• 개인투자조합의 요건을 출자총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조합원이 49인 이하이며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로 규정

심사결과(2000.4.6)

• 투자자 보호 및 세제지원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

(4)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심사요청 내용(신설 1)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

심사결과(2000.9.8)

•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세제지원의 혜택이 있으며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3.특허청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현황

(1)개요

• 총 2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기존 등록규제 중 2건의 규제를 강화함

(2)주요신설 · 강화규제

•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여 벌칙을 강화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내역

개 요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사항이 없음

Ⅱ. 누락규제 등록(감사원 감사결과)

1.산업 자원부

가,개요

•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받은 총 15건 중에서 기 등록되어 있는 1건을 제외한 14 건에 대하여 규제 심사하여 1건은 비규제사항으로 하고, 7건에 대해서는 폐지 토록 하였으며, 4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규제내용을 보완토록 하고, 2건 에 대해서는 신규로 등록토록 조치

나. 누락 규제 내역 및 정비결 과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신고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폐지(해외자원개발법 제5조제4항)
- 동일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당사자간의 조정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행정 기관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폐지(해외자원개발법 제15조)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유사한"이라

는 규정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명칭은 상호로 등록 되어 상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폐지(집단에 너지사업법 제34조)

- 해저조광권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능력이 요구되므로 개인이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므로 법인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능력있는 개인에 대해 서는 동 권리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폐지(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 11조)
- 석탄광의 조광료율을 조광구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의 5%를 초과할 수 없 도록 한 규정은 석탄광의 조광권이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의 추진 결과 사실상 소멸된 사항이므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광업법 제59조 및 광업법 시행령 제51조)
- 광물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재 동 법률시행령에 부과금 징수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광업법 제102조의2)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인증제도의 민간이양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폐지(품질경영촉진법 시행령 제12조)
-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 점검할 수 있는 규제를 신규로 등록(집단에너지사업법 제3 4조)
- 광업시설의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및 성능검사 수수료를 결정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규제를 신규 등록토록 조치(광산보안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26조)

2. 중소 기업청

가.개요

•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받은 총 19건에 대하여 규제 심사하여 14건에 대해서는 폐지토록 하고 5건에 대해서는 신규로 등록토록 조치

나. 누락 규제 내역 및 정비결 과

- 투자회사가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외사무소 설치 증명서류, 해외 사무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한 규제는 폐지(중 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5조 제2항)
- 상담회사는 상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당해연도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고 전문인력 1명을 상시 배치토록 한 규정 폐지(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 규정 제26조 제1항)
- 상담회사는 창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에 관련된 서류는 5년 이상 보존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27조 제1항)
- 품질경영 진단기관 지정기준 및 진단업체에 대한 진단실시 상황보고서와 진단 실시 종합결과의 중소기업청장에의 보고의무, 진단기관 지정요건의 변동사항 에 대한 보고의무 등 폐지(품질경영 진단업무 운영요령 제2조 및 제7조)
- 지정된 진단사 양성기관의 장이 양성과정의 연간운영계획에 대해 매년 중소기 업청장에게 제출,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품질경영 진단업무 운영요령 제9조)
- 진단사 양성과정 교육이수자 명단 및 진단사 보수교육기관이 진단사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매년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는 규정 을 폐지(품질경영 진단업무 운영요령 제9조 및 제10조)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진단사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험실시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 규정을 폐지(품질경영 진단업무 운영요령 제13조)
-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에 지정 취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추가규제로 등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 행규칙 제6조)

- 투자조합을 해산하거나 다른 투자조합에 업무를 위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산 후에는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규정 은 신규규제로 등록(중소기업창업 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7조 제3항)
- 상담회사는 법인등기부, 정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내용을 등록토록 한 규정은 신규규제로 등록(중소기업 창업 지원업무 운용규정 제25조 제1항)
- 창업교육센터 사업자는 창업보육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변경한 경우 30일이내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는 의무를 신규규제로 등록(중소기업창업 지원업무 운용규정 제30조)
- 투자회사, 투자조합, 상담회사 등은 반기별로 업무운용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규제를 신규로 등록(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39조)

3.특허청

가,개요

•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받은 12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2건에 대해서는 폐지, 6건 에 대해서는 신규규제로 등록토록 하는 한편, 4건은 비규제사항으로 결정

나. 누락규제 내역 및 정비결 과

- 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정보기술센터, 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유사한"이라는 규정 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동 규제는 폐지(발명진흥법 제16조 제6항, 제 32조 제5항)
-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등에게 특허발명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

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신규규제로 등록(특허법 제125조)

- 특허청장이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규규제로 등록(발명진 흥법 제21조 제1항)
- 변리사회는 등록한 변리사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변리사로 구성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신규로 등록(변리사법 시행령 제19조)

제4절

건설교통 분야

*집필자: 민용식 사무관(Tel. 3703-2160, kantmin@opc.go.kr)

1. 신설 · 강화규제 심사

1. 건설 교통부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현황

(1)개요

• 총 270개(98년 61개, 99년 110개, 2000년 99개)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187건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74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규제 중 76건의 규제를 강화

| | | 합계 | | | 신설 | | | 강화 | | | 내용심사 | | |
|------|------|----|----|------|----|----|------|----|----|------|------|----|------|
| | | 98 | 99 | 2000 | 98 | 99 | 2000 | 98 | 99 | 2000 | 98 | 99 | 2000 |
| 심사대상 | | 47 | 34 | 106 | 25 | 11 | 60 | 22 | 18 | 40 | - | 5 | 6 |
| 심사결과 | 철회 | 3 | 7 | 16 | 3 | 6 | 13 | - | 1 | 3 | - | - | - |
| | 개선권고 | 8 | 8 | 26 | 4 | - | 15 | 4 | 4 | 10 | - | 4 | 1 |

(2) 주요신설 · 강화규제

- 공동주택 단지내 폭 1 2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고록 하던 것을 8미터 이상의 도로에도 보도를 설치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전기설비 용량을 3 kW를 기본으로 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 0㎡ 이상인 경우에는 6 0㎡를 초과하는 1 0㎡마다 0.3 kW씩을 추가하도록 하던 것을 0.5 kW씩을 추가하도록 하여 전기설비 기준을 상향 조정함
-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총 정원수 · 총량규제 대 상에 야간계 학과의 입학정원을 포함하도록 함
-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시설에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을 추가하고,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의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임대주택 사업자가 하자보수 책임기간(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범위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 가족의 생활여건 개선과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
- 자동차의 창유리를 원텃치 전동식으로 한 경우 어린이 등의 오조작으로 인해 유리틈에 손가락이나 목 등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의 창유리를 원텃치 방식의 전동 으로 할 경우에는 오동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물질 감지장치 설 치를 의무화함
- 가스사고의 원인은 안전시설 미비 등에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하지만, 교육과 홍 보 등으로는 취급자의 순간 실수까지도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 므로,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구밀집 지역인 주거·상업지역 안에서는 가스충전소 등의 건축을 제한함
- 기존의 주택단지 주변에 새로운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와 같이 하나의 진입

도로를 둘 이상의 단지가 이용할 경우, 적정 진입도로 폭이 확보되지 않아 단지 내·외 주민들의 불편 및 분쟁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가 둘 이상으로서 당해 단지의 진입도로가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5 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설계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건축 허가 신청시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중개의뢰인이 중개인에게 구두로 중개를 의뢰함에 따라 중개의뢰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중개업자가 사후에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와 중개인간에 중개대상물의 위치, 규모 및 거래예정가격 등 중개의뢰 내용과 중개수수료, 중개업자 및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필요시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용도의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 · 숙박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용도지역의 위계상 모순되며 난개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도 시 · 군 조례로서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음식점 · 숙박업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0년도에는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99개 법령에 대해 신설 60건, 강화 40건, 내용심사 6건 등 총 10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6건 중 16건에 대하여는 철회, 26건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6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건설교통부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는 45건임

(1)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시행령ㆍ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댐건설 예정지역 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 가능한 공작물의 범위를 농림생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잠실, 간이퇴비장, 간이탈곡장, 간이농림수산물 건조장, 간이종묘배양장 및 간이급수 시설로 한정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육가능한 가축의 범위를 소 15두, 돼지 20두, 닭 200수, 토끼 300수, 오리 150수, 사슴 15두, 염소·양 20두, 꿀벌 20군 미만의 경우로 한정하되, 2종 이상을 함께 기르는 경우에는 가축별 기준 사육 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리 수의 비율의 합계가 1미만이 되도록 제한함
- 댐건설 예정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착수한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댐건설 예정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 1. 19)

- 댐건설 예정지역 내에 허가 없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간이온실 등과 축사에 대한 보상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보상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과 가축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는 것은 규제의 투명화 · 구체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댐건설 예정지역 지정·고시 후 3월이라는 신고기간은 예정지역 지정사실을 인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2) 건 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건축물의 구조계산시 강원 남부지역(영월, 삼척, 강릉, 원주 등) 및 전남 북부지역(장성, 담양, 장흥, 순천 등)의 지진등급을 현행 지진구역 Ⅱ에서 지진구역 Ⅰ*로 상향조정하고, 15층 이상 아파트의 내진등급을 중요도 1에서 특으로, 5층인 숙박시설·기숙사·오피스텔의 내진등급을 중요도 2에서 1로 상향조정함

^{*}지진구역 Ⅰ은 지진구역 Ⅱ보다 지진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운데 그 중요도가 특 또는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3.2)

• 지진발생의 불확실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 물에 대한 내진기준 강화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규모의 '연면적' 산정기준으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1건으로 승인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합계로 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학원, 식품접객업시설, 도로법에 의한 휴게시설, 숙박업시설,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포함), 쇼핑센터, 철도역사,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 이용시설, 기타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하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도시계획구역 밖의 시·읍·면지역에서 농·임·축·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과조립식의 단층공장 또는 창고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주거용건축물로 구체화함

(나) 심사결과(2000. 3. 15)

• 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는 것은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지만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산정기준에서 여러 동의 건축물을 1건으로 승인받아 시공하는 경우에 전체 연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은 과도한 기준이므로 삭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에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를 추가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시설을 식품접객업시설 중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으로 축소하며, 도로법에의한 휴게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쇼핑센터,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철도역사, 기타 시·도 조례에서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건축물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4)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준농림지역에서는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위 락·숙박시설 등을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범위 결정기준을 구체화함

심사결과(2000. 4. 14)

• 준농림지의 토지이용권을 보장하는 한편, 위락·숙박시설의 입지에 따른 수질 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5)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중개업자의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의 한도를 법인인 중개업자는 5 천만원에서 1억원, 개인인 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심사결과(2000. 4. 14)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증한 도액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6) 건축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2)

-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공장 등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 두지 못하도록 건축물의 복합용도를 제한
-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자연권 수련시설을 추가함
- 극장 · 단란주점 · 노래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복도 및 계단은 불연재료 를 마감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

심사결과(2000. 5. 17)

- 건축물의 용도결정은 가능한 한 건축주 내지 사용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복합용도로 인하여 화재피해의 증대나 주거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체 수단 마련이 곤란하므로, 화재의 위험이 높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화재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에 두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자연권 수련시설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이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복도 및 계단을 불연재료를 마감재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7)자 동차 관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 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자동차 매매업자, 자동차 정비업자, 자동차 폐차업자 및 자동차 검사대행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행 처분기준 중 경고처분과 같이 현실성 없는 처분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누락 등 부실검사시 검사기관 외에 검사원에 대하여도 직무정지 등 처분을 강화하여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동일사항 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법규위반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 5. 17)

• 행정처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는 내용은 규제법정주의에 상치되므로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그 밖의 처벌강화 사항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적격 업체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기본방향과 합치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8)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가능한 축사·콩나물재배사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 (현행 1천 제곱미터 이하 → 300제곱미터 이하)하고, 양어장을 농지에 설치하 는 것을 제한

심사결과(2000. 6. 14)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공장 등으로 불법 이용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나 준농림지역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난개발된 토지는 회복이 쉽지 않으며 사후단속과 행정대집행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고려할 때 사전적 · 계획적 규제가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9) 제 주도 개발 특별 법 시 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규제신설 2. 내용심사 1)

- 패션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절차 구체화
- 자금조달 능력, 부지위치 등 팬션업의 사업계획승인 기준과 승인절차 구체화
- 대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저당권 말소 등 팬션업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주과 시기를 구체화

심사결과(2000.6.14)

- 팬션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이 과다하므로 객실 수 10실 이하, 건물층수 2 층 이하, 농지 또는 목장 확보(면적기준 제외)기준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등록 기준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도조례에 위임하도록 개선권고
- 팬션업 사업계획 승인기준 중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BOD 5mg/l이하(오수를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제한하는 기준만 시행령에 규정하고 나머지 사업계획승인 기준은 제주도조례에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권고
- 팬션업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기준 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팬션업 :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

(10) 건설기술관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 강화 2)

- 건설사업 관리자가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이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적정한 건설사업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함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원활한 건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현장배치 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초 설립용도 외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생산·사용하게 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배치 플랜트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감 리원의 자격 · 권한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건설업자가 수립하게 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건설기술자는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되며, 허위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 6. 28)

- 건설사업 관리자의 보증서 제출의무는 발주청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가기준 제시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는 건설공사의 품질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당초 설립용도를 벗어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생산·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건설업자의 무분별한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를 적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환경관리비용 계상의무는 건설현장의 환경보전 및 폐기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 주체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시공감리, 검측감리는 책임감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감리방식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건설업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 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허위경력 신고에 대한 처벌강화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2005년말까지는 자율 적인 경력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일몰제로 운영하도록 개선권고

(11) 여 객자 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무선전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 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심사결과(2000. 7. 26)

•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무선전화기 사용제한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모든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무선전화기 사용제한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되는 시기(2001.6)까 지 일몰제로 운영하도록 개선권고

(12) 하천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하천유역 내에서 택지 ·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이 증가될 경우에는 유역 종합치수계획이 정하는 바에따라 유출 저감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인접한 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유수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하천점용 허가를 받도록 함

심사결과(2000. 9. 20)

• 유출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유사규제(재해영향평가서의 작

- 성)가 시행중에 있으므로 하천법에서 동규제를 중복적으로 규정하여 혼란을 초 래하기보다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이를 보완함이 타당하므로 동 규제내용을 철회하도록 권고
- 하천수와 하천인접구역의 지하수는 물리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하천수 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유수의 사용뿐 아니라 하천인접구역의 지하수 채 취에 대하여도 하천관리청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13) 주택간설 촉진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주택건설 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 탁회사에 위탁하여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 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0. 9. 27)

• 계약당사자(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 변경 및 저당권 설정을 허용하는 것은 계약의 자기결정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도 그 근거는 법률에서 규정함이 마땅하므로 개정안의 내용을 철회하도록 권고

(14) 건 축법

십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이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자연환경 및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추가함

십사결과(2000.9.29)

• 특정 시·군·구에서의 개발행위가 인근 시·군·구의 주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위 지자체인 도지사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사결정권에 관여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1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시장은 상시적인 교통혼잡지역이나 주변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주차유발 억제,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시책 및 대중교통 우선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0. 9. 29)

•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 교통대책 마련을 위하여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나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당면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나, 구역내 혼잡통행료 부과는 대상이 통과차량이라는 점에서 요건 및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구역지정 후 2년내 구역지정 해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16)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준도시지역의 용적률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준 \rightarrow 200% 이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 이하 \rightarrow 80% 이하로 하향조정
-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100% 이하 → 80% 이하로, 건폐율을 60% 이하 → 40% 이하로 하향조정
-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용적률을 400% → 80% 이하로, 건폐율을 60% → 20% 이하로 하향조정

심사결과(2000, 10, 6)

•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비추어 준도시지역·준농림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하향조정은 타당한 방향이므 로 원안대로 의결

(17)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건축시 단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지역적 범위를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지 역으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기준을 현행보다 20%이상 강화
-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 등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2000. 10. 11)

- 국내외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단열대상 건축물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 에너지절약 대책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며, 비용효과분석 결 과 건축 후 대략 5년 이내에 에너지 절감비용이 공사비 증가분을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구내 통신선로 설비…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 통신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자구를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18) 지 하수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0. 강화 7)

- 지하수 굴착신고 없이 지하수의 개발 · 이용을 허가하던 것을 굴착신고 후에 지하수의 개발 · 이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단축
-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던 30톤 미만의 가정용 우물과 고정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지하수를 신고대상에 포함
- 고속전철, 터널 등의 시설물 설치자는 지하수가 대량으로 유출·방류되는 경우에 지하수 유출·방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에도 지하수가 유출·방류될 때에는 지하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굴착행위로 인하여 수량,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오염배출시설의 범위에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물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추가
- 종전의 지하수 보전구역 중 신규개발 제한 및 환경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지하수 개발제한구역으로 별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구역 안에서는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금지 또는 기존 지하수 개발행위의 중지를 명할수 있도록 함
- 시 · 도지사는 공공급수용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주변을 취수정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급수정 관리자는 당해 공공급수정에 대한 보호 ·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지하수 기초조사, 지반지질 조사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 굴착에 따라 발생한 폐공에 대해서도 처리의무를 부과
- 외부 오염물질이 우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부적합하게 설치 되었을 때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뿐 아니라 지하수 오염 원인자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 및 지하수조사 영향평가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오염 유발시설의 내용과 오염방지 조치계획 및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
- 지하수 보전구역 내의 지하수 오염원인자,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지하수 오염유 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측정 관을 설치하고 수질측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기록 부를 비치하여야 함
- 시 · 도지사는 지하수 정화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화 구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및 시설의 설치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지하수 개발 · 이용 시공업자는 허가(신고)받지 아니한 공사는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지하수 개발 · 이용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이 높은 지하수 개발 · 이용 시공업자로 참여를 제한할수 있도록 함

- 지하수 관련 굴착장비를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지하수 개발 · 이용자는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지하수 관련 기술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심사결과(2000. 10. 13)

- 지하수 개발시 굴착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무분별한 굴착에 따른 폐공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지하수 개발 · 이용 및 종료신고시 신고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신고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허가와의 구분이 모호한 등 불합리하므로 삭제하 도록 하고 기존의 지하수 개발, 이용자가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개발 · 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 · 허가권자의 자체확인이 가 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권고
- 대량의 지하수가 유출·방류되는 지하시설물 설치자가 지하수 유출·방류 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나, 동 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재이용하지 않거나 재이용률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미이행시 시설물 폐쇠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은 지하수 오염 방지, 지하수 보전차원에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지하수 보전구역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시 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상적이므 로 이를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지하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동 지역 내에서의 신규 지하수 개발행위 또는 기존 지하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지하수 보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공공급수정 관리자의 당해 공공급수정에 대한 보호·관리계획의 내용이 모호 하고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관리자의 자율규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 기초조사, 지반지질 조사 등의 행위로 발생한 폐공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원안

대로 의결

- 우물의 오염 방지시설 설치시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은 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의 실천력 제고차원에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출입검사 대상의 범위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원인 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출입 검사자의 성명·출입목적·출입시기 등을 현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점검실명제를 도입하도록 개선권고
-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의 내용과 오염방지 조치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 도록 하는 것은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나, 관리책임자를 임명 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도록 개 선권고
- 수질측정 결과를 보고하면 시 · 도지사가 이를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오염원인자에 의한 기준초과 판단 및 신고의무는 과도 하며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정화구역의 개념이 불투명하여 정화구역 내에서 토지의 이용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찰방식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하므로 공사참여업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굴착장비는 시공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등록은 불필요하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하수 개발 · 이용자의 부담금은 수질개선부담금, 지역개발 세와 중복되는 면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함이 타당하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지하수 관련 기술자에 대한 교육은 그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19) 유료도로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허위 등의 방법으로 통행료의 징수를 면탈하거나 할 인받은 경우에는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30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통행 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도로의 진입장소가 불분명할 때에는 통행료 를 징수할 장소에서 최장거리를 통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없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 및 유지관리비 총액, 징수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 10, 18)

- 부가통행료 부과한도액을 통행료의 30배 이내로 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10배 범위내로 하향하도록 하고, 통행권 분실시 최장거리의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한 것은 부가통행료만 징수하도록 개선권고
- 회계보고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없이' 로 정하는 것은 구체성이 없으므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로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20) 부동산 투자회사법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0)

- 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인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식공모를 금지하며,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및 재산양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할 수 있음
- 무능력자, 행위능력 상실자 등이 발기인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 중 일정비율을 인수하도록 의무화
-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부동산투자회 사는 발행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 감사의 이사회 참석을 의무화하고, 감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자산의 운영범위를 규정하고 이와 직접 관련한 업무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자문업이나 부동산시설 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

한 자회사만 둘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의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기준을 정함
 - 당해 회계연도 수입의 70% 이상이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도록 하여야 함
 -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함
 -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90% 이상을 부동산 및 현금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야 함
 -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대한 소유를 10% 이 내로 제한하고 동일법인 및 그 특별관계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총자산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함
 - 당해연도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하여야 함 등
- 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 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
- 부동산투자회사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주요 주 주, 자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간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임직원, 주요 주주, 인가·감독·관리권자, 자산운용 계약자 등은 미공개 자산운용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함
-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업무의 겸업이나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이 될 수 없음
-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 등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된 후가 아니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50% 범위 내로 제한
-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신탁회사.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한국토지

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관하도록 하고, 자산보관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 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매 결산기 및 분기마다 투자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사업계획서, 실사보고서, 투자보고서, 재무제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 주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 장 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손해 를 발생시킨 때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에 가입하여야 함
- 부동산투자자문업 미등록자는 그 상호 중에 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
-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익, 주주 및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의 변동·현물출자·임원변경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변동상황은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 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의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간에서만 합병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윤리규정을 제정 · 시행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 10, 27)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제한 없이 설립을 허용할 경우에는 회사난립 및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므로 설립시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최저자본금이 100억원임에 비추어,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상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정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이며, 유가증권 상장규 정에서 30% 이상을 일반모집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부동산투자회사 발행 주식의 30%를 일반공모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및 재산양수 제한은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한 기준 으로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무능력자 · 행위능력 상실자 등이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기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1인당 주식한도를 10%로 제한하는 것은 소수주주에 의한 기업지배를 방지하고(REITs의 경우 정관에서 1인당 보유한도를 5~9.9%로 제한),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감사의 이사회 첨석 의무화 및 업무기준 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과도한 간섭 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상법을 준용하도록 철회권고
- 부동산투자회사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특수 목적의 회사이며, 업무범위를 한 정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자회사의 수익 내부유보 등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회사의 업무범위를 부동산투자자문업이나 부동산 시설관리업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의무 외에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 의무는 지나친 경영간섭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 · 처분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가치의 왜곡에 의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내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의 운용수익보다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기준 중 당해 회계연도 수입의 70% 이상이 부동산 등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준수가능성이 낮고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만으로 도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제한은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철회하도 록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제한은 증권투자회사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규정이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 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와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내부자에 의한 부당거래 방지를 위하여 필 요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임원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업무의 겸업 또는 다른 회사의 상근직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고 겸업 허용범위를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부동산 개발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하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 등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된 후가 아니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기자본의 50%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보관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변경한 경우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과도한 경영간섭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계획서, 실사보고서, 투자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주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의 적절한 투자판단을 위한 정보공개 차원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자문업의 등록과 배상책임 등은 부동산투자자문업의 대형화 · 전문 화를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자문업 미등록자에 대하여 부동산투자자문 상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 것 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변동상 황 보고는 간접투자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 한 감독기관의 외부견제 수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부동산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조치권고는 기 업경영에 대한 과잉 간섭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부동산투자회사간에서만 합병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증권투자회사법에 유사입법례가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기준이므로 원안 대로 의결
- 창립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기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법을 준용하여 2주내 등기하도록 개선권고
- 부동산투자회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정·시행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며 다만, 윤리규정의 신고의무는 과다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21) 수 도권정 비계획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수도권 입지규제를 받는 공공청사의 범위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입지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화(도서관·전시장·공연장 제외)·의료·군사시설(군부대 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입지규제 대상에 포함
-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과 수도권을 업무관할로 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수도권내 공공청사의 신축을 금지하며, 증축·용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되었던 수도권을 업무관할로 하는 공공청사를 새로이 규제대상에 포함하되, 업무관할이 수도권에 국한되는 공공청사는 업무관할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협의·확인을 거쳐 건축을 허용
- 신축 공공청사에 대한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에서 기초공제 면적을 3천 제곱미 터에서 1천 제곱미터로 하향조정

심사결과(2000, 10, 27)

• 수도권 입지규제의 제한을 받는 공공청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수도권 과밀해

소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입지규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신축 공공청사에 대한 과밀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수도권 입지규제 강화에 맞춘 과밀부담금 산정기준 조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22) 건설기계관리법

십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중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수출 전까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11.1)

• 도난 등에 의한 제3자의 중고 건설기계 불법수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23) 여 객자 동차운 수사업법

십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버스 · 택시 · 전세버스 등의 운수사업용 자동차와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에 대해서도 자동차 외부에 사업자 명칭 등을 표기하도록 함
-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제한

심사결과(2000.11.1)

-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의무 신설보다는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 철회 등 시장을 왜곡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 당하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차령 제한은 노후 자동차로 인한 사고발생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를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24) 국토이용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2)

- 주거·상업·공업지역 중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의 구역으로서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 상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 을 지정하여 개발해위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설치

하게 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700%에서 500%로 하향조정
-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토도시기본계획 또는 국토도시관리계획을 입안중인 지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 또는 특별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0. 11. 22)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및 동 지역에 대한 건폐율 · 용적률 강화는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한 균형있는 개발 및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 로 원안대로 의결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의 취지는 개발이 이미 허용된 지역은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되, 녹지·관리지역 등 미개발지역은 개발사업자가 원인자 부담 및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지내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향조정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비도시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을 시장·군수의 허가 대상으로 한 것은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대상 중 "국토도시기본계획 또는 국토도시관리계획을 입안중인 지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도시기본계획 또는 국토도시관리계획을 입안중인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수정하도록 개선권고

(25)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2)

- 특정지역 또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고시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기타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 정을 받아야 함
- 특정지역 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변경승인) 을 받아야 함
- 특정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0. 11. 29)

- 특정지역 또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고시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제는 각종의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규제로서, 개발촉진지구나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특정지역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지역개 발사업을 시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국고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나 준공인가는 필요한 절차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 특정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 므로 원안대로 의결

(26) 건 축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로 제한하되 2005. 1.1일부터 시행
-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건축분야 기사1급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건축실

무 경력자, 건축분야 기술자 자격취득자,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 분야 기사1급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를 삭제하되 2010. 1.1일부터 시행함

심사결과(2000, 12, 20)

• 건축사 예비시험 및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강화는 W T O협정에 따라 건축 사의 국가간 이동을 허용하는 전단계 조치로서 국제적인 건축사 자격기준 설정 에 맞추어 건축사 자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27) 주택간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정보문화실(입주민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야 하며, 정보문화실 및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주출입구 및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0.12.20)

- 정보문화실 설치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주택사업자들이 입주자의 선호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이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주출입구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CCTV 설치여부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협의 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철회하도록 권고

(28) 도시계획법 시행령

십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상업지역 중 주거지역과 인접한 구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의 구역(단, 녹지·공원·지형지물 등 완충지대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

심사결과(2000, 12, 22)

•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발생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2.철 도청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 현황

• 총 11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기존 등록규제 중 1건의 규제를 강화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0년도에는 철도소운송업법 등 5개의 법령에 대해 강화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철도청의 2000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1)철 도소운 송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철도청장은 소운송업자에 대한 검사결과 소운송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0.10.6)

• 검사의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Ⅱ. 누락규제 등록(감사원 감사결과)

1.건설 교통부

가.개요

1) 감사원 감사에 따른 누락규제 정비

• 1999. 6월말~7월초 건설교통부의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사무 중 등록에서 누락된 사항을 지적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자체정비 및 등록계획을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등록누락된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등록

2) 수시정비

•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 강화규제 심사시에 심사대상 법령 중 등록에서 누락 된 규제사무를 발굴하여 부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하고 등록 하도록 조치

3) 중앙행정 기관 자체정비

• 중앙행정기관 자체적으로 등록에서 누락된 규제사무를 발굴하여 등록

나. 누락 규제 정비경 위

1) 감시원 감시에 따른 누락규제 정비

- 1999. 6. 17~7. 3일까지 실시된 건설교통부 규제개혁업무 관련 감사원 감 사결과 등록누락규제 60건을 지적
- 건설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등록누락규제 정비계획심사 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99,12,24)

•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가 아닌 사항 및 기존에 등록된 규제내용에 통합하여 등록할 사항을 제외한 42건을 누락규 제로 확정하고 이 중 1건을 폐지하고 2건을 개선키로 의결(2000, 7, 5)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정비 결과

단위 : 건

| 그님 | 느리그레 스 | 정비계획 | | | 드로게히 |
|----------|--------|------|----|----|------|
| 구분 | 누락규제 수 | 폐지 | 개선 | 존치 | 등록계획 |
| 감사원 감사결과 | 60 | - | - | 1+ | |
| 건교부 정비계획 | 46 | - | - | 46 | 46 |
| 규개위 심사결과 | 42 | 1 | 2 | 39 | 42 |

2) 수시정비

•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규제 심사시 심사대상 법령 중 등록에서 누락된 행정규제사항 1건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의결하고 등록하도록 조 치

등록누락규제 수시정비 결과

단위 : 건

| 7 H | 느리그레 스 | | 정비계획 | | |
|----------|--------|----|------|----|------|
| 구분 | 누락규제 수 | 폐지 | 개선 | 존치 | 등록계획 |
| 건교부 정비계획 | 1 | - | - | 1 | 1 |
| 규개위 심사결과 | 1 | - | - | 1 | 1 |

3) 중앙행정 기관 자체정비

• 건설교통부는 자체적으로 소관 행정규제사무 중 등록에서 누락된 7건의 규제 사무를 발굴하여 자체 정비계획 수립 후 등록

건설교통부 등록누락규제 자체정비 결과

단위 : 건

| 7.8 | 느리그레 스 | 정비계획 | | | 드르게쉬 |
|----------|--------|------|----|----|------|
| 구분 | 누락규제 수 | 폐지 | 개선 | 존치 | 등록계획 |
| 건교부 정비계획 | 8 | - | - | 8 | 8 |

다. 누락 규제 정비내역

1) 감사원 감사결 과에 따른 누락규제 정비내역

| 규제사무명 | 규 제 내 용 | 정비결과 |
|---|--|------------------------------|
| 항공법 | | |
| 1. 항공기 감항증명 및 시험비행 허가 (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 제18조) |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항공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비행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항공기 감항증명시 운용한계(항공기 기종에 따른 운항범위)를 지정함 형식승인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감항성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존치 -A46-0831-00에 통합 등록 |
| 2. 신체검사 명령 (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 • 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필 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존치 -A46-0847-00에 통합 등록 |
| 3. 승무시간 기준 제한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143조) | •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최대승무시 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4. 기장의 노선자격 심사 (법 제5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 시행규칙 제151조, 제 | 정기항공운송용 항공기 기장은 노선자격을 정기 또는 항공기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심사받아야함 정기항공운송 사업자가 기장의 노선자격 심사를 자 | 존치 -A46-0851-00에 통합 등록 |

| 규제사무명 | 규 제 내 용 | 정비결과 |
|---|---|------------------------------|
| 153조 내지 제155조, 제157조 내지 제165 조) | 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지정을 받아야 함(시설·장비·인원이 확보된 항공사에겐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 5. 무조종사 항공기비행 허가 (법 제62조) | • 조종사 등 항공기 승무원이 탑승하지 아니한 항공기 를 비행시키고자 하는 자는 건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항공기에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방법을 제한할 수 있음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6. 비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71조, 시행규칙 제209조 내지 제211조) | • 계기비행방식으로 관제권 등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비행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존치 -A46-0854-00에 통합 등록 |
| 7. 공항개발예정 지역 안의 행위제한 (법 제93조 제2항, 시행규칙 제263조 및 제264조) | • 공항개발예정지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기받은 공사 등을 착수한 자는 신고를 한 후 시공하도록 의 무 부과 | 존치 -A46-0876-00에 통합 등록 |
| 8.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및 투자허가 (법 제105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9조, 시행규칙 제269조) | •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허기를 받아 야 하고, 공항 개발투자사업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 설업자는 착공 7일 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감독과 준공검사를 받도록 함 | 존치 -A46-0877-00에 통합 등록 |
| 9. 소음부담금 부과 · 징수 (법 제108조, 제109조,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시행규칙 제275조 내지 제277조) | •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 업자로부터 소음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음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 정비결과 |
|---|---|--|
| 10. 정기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법 제114조) | •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단체 등과 금치산자 등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정기운송사업면허를 제 한함 | 존치 -A46-0882-01(정기운 송사업의 허가)에 통합 등록 |
| 11. 사업개선명령 (법 제122조) | • 항공운송의 안전 기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 · 부정기 항공운송사 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선 -제5호 구체화(2001년) -별도규제로 등록 |
| 12. 사업의 양도 · 양수 인가 (법 제124조) | •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양 도 ·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함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13. 사업의 합병인가 (법 제125조) | •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14. 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26조) | •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함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15. 사업휴지허가 (법 제127조) | •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 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
| 16. 폐업승인 (법 제128조) | • 정기항 공운송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17. 한국항공진흥협회 등의 설립 (법 제143조,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9조) | • 한국항공진흥협회에 대하여 정관을 승인받고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함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 정비결과 |
|--|--|-----------------|
| 18. 외국인 국제항공 사업 허가 (법 제147조, 시행규칙 제320조) | • 외국인이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19. 외국항공기의 유상 운송 허가 (법 제148조) | • 외국항공기가 국내에 도착 또는 출발하는 여객 및 화물을 유상운송하기 위하여는 허가를 받아야 함 | |
| 20. 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운송 금지 (법 제149조) | • 외국항공기는 국내 각 지역간의 유상운송을 할 수 없도록 함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21. 보고의 요구 등 (법 제153조, 시행규칙 제325조 및 제326조) |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종사자 등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 | | |
| 22. 주택단지 안의 설치 제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규정 제6조) |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아래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음 부대시설, 복리시설, 도로 · 상하수도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 |
| 23. 시설의 배치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규정 제9조 및 제10조, 제30조, 기준규칙 제7조) |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 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하여야함(제9조)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보육시설및 노인정은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 정비결과 |
|--|---|-----------------|
| | 여야 함(제9조) •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함(제10조) • 주택단지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축대 설치시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 등의 높이만큼 띄어야 하며, 주택단지에는 배수구·집수구 및 집수정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제30조) | |
| 24. 지하층의 용도 및 구조 설비기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규정 제11조) | • 공동주택단지의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조 및 설 비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 25. 주택과의 복합건축 제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규정 제12조)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연장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주택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여서 는 아니됨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 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 · 계단 및 승강기 등 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함 | |
| 26. 주택의 구조 기준 (주택건설촉진법 제31 조, 규정 제13조, 제14 조, 제16조 내지 제18 조, 제23조 및 제24조, 기준규칙 제3조) | 주택치수의 기준척도(제13조) 평면길이: 30cm 또는 10cm단위 거실의 반자높이: 2.2m 이상, 10cm단위 세대간 경계벽의 설치기준(제14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5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블록조·벽돌조·석조: 두께 20 cm 이상 조립식주택: 두께 12cm 이상 계단의 설치기준(제16조) 공용계단: 유효폭 120cm 이상,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규제사무명 | 규 제 내 용 | 정비결과 |
|----------------------------|--|-----------------|
| | - 세대내 계단, 옥외계단 : 유효폭 90cm 이상, 단높이 20cm 이하, 단너비 24cm 이상 - 계단참 : 높이 2m를 넘는 계단에 너비 120cm 이상 • 복도의 설치기준(제17조) - 갓복도 : 유효폭 120cm 이상 - 중복도 : 유효폭 180cm 이상 - 중복도 : 유효폭 180cm 이상 • 석0m마다 개구부 설치 • 벽 및 반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 • 난간의 설치기준(제18조) - 철근콘크리트 또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재는 부식방지처리) - 높이 : 110cm 이하(위험이 적은 곳 : 90cm 이상) - 간살간격 : 안목치수 10cm 이하(위험이 적은 곳 : 15cm 이상) • 장애인 전용주택의 시설기준(제23조)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함 • 구조내력(제24조) - 건축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55조 및 제59조와 건축법시행령 40규정 준용 | |
|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 ・승강기의 설치기준(제15조) -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 - 16층 이상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 - 7층 이상은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7~15층은 인양기로 대체가능) ・화장실의 설치기준(제21조) - 주택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고, 절수설비를 갖출 것 - 오수정화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제22조)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규제사무명 | 규 제 내 용 | 정비결과 |
|-------|----------------------------------|------|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 |
| | 법률에 의함 | |
| | •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제32조) | |
| | - 주택 세대의 전화설치 장소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 | |
| | 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를 설치 | |
| | - 경비실과 각 세대간에 구내전화를 설치 | |
| |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기준(제34조) | |
| | - 도시가스 공급가능 지역에서는 주택의 각 세대까지 | |
| | 가스 공급 설비를 설치 | |
| | - 기타 지역에는 외기에 면하여 액화석유가스용기 보 | |
| | 관시설을 설치 | |
| | • 비상급수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 |
| |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 | |
| | 하저수조시설을 설치 | |
| | •지하양수시설:1일 매세대당 0.2톤 이상의 수량 | |
| | 을 양수 | |
| | • 지하저수조 : 매 세대당 1.5톤 이상의 저수량 | |
| | • 난방설비의 설치기준(제37조) | |
| |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 | |
| | 방식으로 하여야 함 | |
| | - 난방구획 : 4층~10층은 2개소 이상, 10층 이상은 | |
| | 5개층마다 1개소 이상으로 구획 | |
| | - 각 세대마다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난방열량계 | |
| | 및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 | |
| | •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제40조) | |
| | - 각 세대별 3kW 이상의 전기시설을 설치 | |
| | - 세대별 전력량계 설치 등 | |
| | •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제41조) | |
| | -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 |
| | •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의 설치기준(제42조) | |
| | -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 공동시 | |
| | 청 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구내 전송선로 설비를 | |
| | 설치 | |
| | | |

|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 정비결과 |
|-------|--|-----------------|
| | 급·배수시설의 설치기준(제43조) -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급수전을 설치 - 부엌·욕실·화장실·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설치 • 배기설비의 설치기준(제44조) -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는 외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배기설비를 설치 | |
| | 진입도로 및 단지안의 도로의 설치기준(제25조, 제26조) 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너비 6~20m 이상의 진입도로를 설치 너비 4~15m 이상의 단지안의 도로를 설치 주차장의 설치기준(제27조) 주택의 규모에 따라 전용면적 110㎡당 1대 이상에서 65㎡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수도권지역의 시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인 단지는법정주차장의 3/10~6/10을 지하에 설치 관리사무소의 설치기준(제28조)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10㎡에 50세대를 넘는매 세대마다 0.05㎡를 더한면적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 조경시설의 설치기준(제29조) 주택단지에는 단지면적의 30/100에 해당하는 녹지를 확보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설치 주차장 상부에 식재시 0.9m 이상의 토층을 조성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31조)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안내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단지중합안내판 및 단지내 시설표지판을설치 주택단지의 입구에는 사업주체, 설계자, 시공자, 감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 정비결과 |
|---|--|-----------------|
| | 리자 등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 • 보안등의 설치기준(제33조) -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에 보안등 50m 이내 간격으로 보안등을 설치 • 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제38조) - 주택단지에는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 |
| 29.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규정 제46조 내지 제55조) |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제46조)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매 세대당 3㎡(개소당 300㎡)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건물 외벽에서 5m,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m 이격, 한 변의 폭이 9m 이상으로 설치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제50조)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 · 소매시장 · 상점의 면적 : 매 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이하 유치원의 설치기준(제52조) 대상 : 2천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다른 용도와 복합 건축시 유치원을 전체 연면적의 1/2 이상 설치 유치원의 출입구 · 계단 · 복도 · 화장실을 다른 용도와 분리 주민운동시설의 설치기준(제53조) 대상 :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300㎡에 500세대를 넘는 매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 설치 주택 외벽에서 5m 이상 이격 노인정의 설치기준(제55조 제1항, 제2항) 대상 :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규모 : 15㎡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 더한 면적 이상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기준(제55조 제3항)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규제사무명 | 규 제 내 용 | 정비결과 |
|--|---|-----------------|
| | - 대상: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 규모: 50㎡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 •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55조 제4항) - 대상: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 규모: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 시설 • 문고의 설치기준(제55조 제5항) - 대상: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 | |
| 30. 대지의 조성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규정 제56조 및 제57조, 기준규칙 제12조) | 대지의 안전조치(제56조) 지반의 붕괴 · 토사의 유실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 대지의 조성은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 제1항에 의함 간선시설의 설치기준(제57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는 건축교통부령이 정하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수도시설, 전기시설을 설치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31. 공업화주택의 인정 (주택건설촉진법 제 31조, 규정 제61조의 2, 기준규칙 제15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제61조의2) 공업화주택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인정 신청 공업화주택을 건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도시철도법 | | |
| 32. 도시철도차랑의 부품 등의 품질 기준 인증 (법 제22조의 4, 시행 령 제25조의 6) | •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부품 · 기기 또는 장치 등의 성 능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용품에 대 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음 | |
| 33. 도시철도건설자에 대 | • 도시철도 건설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자산의 상태 | 존치 |

|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 정비결과 |
|-------------------------------------|---|---|
| 한 감독, 보고 및 검사 (법 제24조, 제25조) | 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철도 건설자의 사무소 기타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 사하게 할 수 있음 | -별도규제로 등록 |
| 34. 도시철도사고 발생 보고 (법제25조의2) | • 도시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자는 도시철도의 건설 또는 운영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함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여객지 동치운수 시업법 | | |
| 35. 자동차대여사업 관리 위탁허가 (법 제33조) |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 동차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여하지 못함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36.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34조) | • 건설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항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계획변경, 대여약 관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음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37. 조합의 정관 변경인가 (법 제56조 제2항) | •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 도지사 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존치 -A46-0754-00에 통합 등록 |
| 38. 정관변경 등의 명령 (법 제58조, 제59조) | 시 · 도지사는 조합의 운영상황으로 보아 여객자동 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조합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음 조합의 사업은 시 · 도지사가 이를 감독함 | 개선 -정관변경 등의 명령사유 구체화(차기 법개정시) -별도규제로 등록 |
| 삭도궤도법 | | |
| 39. 공사의 착수 및 준공 시기 제한 (법 제8조) | • 삭도 궤도사업을 허기받은 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준공해야 함 | 폐지 -시 · 도지사가 강요할 성 질의 것이 아님(차기 법 |

|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 정비결과 |
|---|---|---|
| | | 개정시) -별도규제로 등록 |
| 40. 보고의무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 • 시 · 도지사는 삭도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음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41. 전용삭도의 준공검사 (법 제34조) | • 전용삭도궤도의 설치 신고를 한 자는 공사준공시 시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존치 -내용을 분할하여A46- 0815-00, A46-0819- 00, A46-0820-00 및 40번과 통합등록 |
| 지동차관리법 | | |
| 42.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의무 (법 제18조) | • 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함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43.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 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법 제21조) | • 시 ·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가 부정한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44. 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 | • 건설교통부 장관은 극심한 교통체증지역의 발생예 방 또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음 | |
| 주차장법 | | |
| 45.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 (법 제6조 제1항, 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 • 주차장은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함 | 존치 -안전기준임 -별도규제로 등록 |

|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 정비결과 |
|---|---|---------------------------------------|
| 46. 노상주차장 주차행위 제한 (법 제8조의 2) |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이동명령 또는 견인할 수 있음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상주차장 사용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47. 노외주차장 등 관리자 의 책임 (법 제17조, 제19조의 3 제2항) | • 주차장 관리자에게 조례에 따른 운영, 정당한 시유 없이 이용거절 금지와 주차 차량의 멸실 · 훼손에 대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 |
| 48.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법 제19조의 5, 규칙 제16조의 2) | •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 |
| 49. 혼잡통행료 부과 · 징수 (법 제20조의 2) | • 시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혼잡 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 수할 수 있음 | 존치 -개별과제로 분과위에서 추후 논의 -별도규제로 등록 |
| 50. 개선조치 명령 (법 제11조 제3항) | • 시장 등은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버스공동 배차제의 실시 등 개선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음 | 존치 -별도규제로 등록 |
| 51. 자동차운행 제한 (법 제20조) | • 시장 등은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의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음 | |

2)수시정비내역

| 규제사무명 | 규 제 내 용 | 정비결과 |
|--------------|-------------------------------|---------------|
| 지하수법 | | |
| 1. 출입검사 | •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환경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 | 존치 |
| (법 제32조제1항 및 | 정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 | -수질오염 방지 및 지하 |
| 제2항) | 발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 수 자원의 적정한 관리 |
| |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 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 |
| | 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수 | 도·감독권한의 근거이 |
| | 질검사 이행여부, 기록부 비치여부 및 지하수 개 | 므로 존치 필요 |
| | 발 · 이용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
| | | |

3) 중앙행정 기관 자체 정비내역

| 규제사무명 | 규 제 내 용 | 규제시행일 |
|---|---|--------------|
| 건축법 | | |
| 1.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조례 등에 관한 심의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8호) | • 시 · 도, 시 · 군 · 구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두고 건축 조례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설계안의 심의,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 ·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 1972. 12. 30 |
| 주택건설촉진법 | | |
| 2. 지하층 설치기준 (법 제44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 조 제1항 및 제2항) | •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와 설비 및 지하층 의 비상탈출구의 기준을 정함 | 1970. 3. 26 |

| 규제사무명 | 규제내용 | 규제시행일 |
|---|--|-------------|
| 3. 민영주택의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법 제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 • 시장 · 군수는 사업주체가 청약예금 실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수도권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일 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당해 주택건설지 역의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 1978. 5. 10 |
| 4.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에서의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 •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로서 국가유공자 도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공공 사업·도시계획사업·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게는 건설양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음 | 1978. 5. 10 |
| 5. 복리시설의 공급신고 (법 제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 사업주체는 복리시설 중 의료시설, 일반목욕장 및 생활편익시설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 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 1978. 5. 10 |
| 6. 주택의 공급계약 (법 제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를 납부할 것과 해약조건을 정할 수 있음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기일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함 | 1978. 5. 10 |
| 7.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법 제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3항 내지 제5항) | •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 | 1978. 5. 10 |

| 규제사무명 | 규 제 내 용 | 규제시행일 |
|---|--|------------|
| | 까지 거주할 수 있음 •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새로이 공급받는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는 경우에는 새로이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 |
| 건설산업기본법 | | |
| 8.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의 가입 (법 제87조, 시행령 제83조) |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함 | 1997. 7. 1 |

제 5절

복지 · 환경 분야

*집필자:전 홍부이사관(Tel. 3703-2191, jeonhong@opc. go. kr) 권태성 과장(Tel. 3703-3940, ts-kwon@opc. go. kr) 유주봉서기관(Tel. 3703-3941, yujubong@opc. go. kr)

1.보건 복지 부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5 0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7 8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 제 중 4 8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신설 · 강화규제

-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청장은 자활후견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
- 마약취급자는 면허를 받거나 마약취급자가 된 후 1년 이내에 2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규제 신설
-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피해자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제 신설
- 관광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 현재는 서류검사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 무작위 표본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
- 묘지의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의 매장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공익을 현

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5년씩 3회에 한하여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

- 유흥주점의 영업행위 중 "무도장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09:00\sim17:00$ 까지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 신설
-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가 퇴소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 과 동일하게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도 입소자의 퇴소시 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제 강화
- 수련한방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원외처방전에 의한 조제는 할 수 없도록 규제 신설
-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규 제 강화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등 2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2건, 강화 31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65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 6건은 철회권고, 1건은 보류, 28건은 개선권고, 30건은 원안동의하여 보건복지부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15건임

(1) 공 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

- 공중위생영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는 법령에서 규정한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 시 · 군 · 구청장에게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국민보건 · 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등의 위생관리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목욕장업의 수질기준 등)
-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는 시·군·구청장 또는 관련 전 문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
-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여 위생등급별로 녹색/황색/백색등급표를 영업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0. 1. 21)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 원안의결
- 공중위생영업소 현황자료 중 영업장 면적, 객실 수, 기타 시설 및 설비개요, 면 허증 사본 조항은 삭제 권고
- 공중위생업소 등의 위생관리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제신설에는 동의하나, 영업 자의 준수사항 중 "이성입욕 보조자 배치금지"문제는 사회의 윤리·도덕규범, 국민감정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서 규제개혁의 대 상으로만 심사하기는 부적절하고, 관광호텔에 한하여 증기탕 영업 허용이 필요 하면 관광진흥 관련 법률에 반영하여 여론수렴, 관련 부처와의 의견조정, 국회 입법과정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함
- 공중위생 관련 영업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에 대하여 원안의결
- 등급유형에 관계없이 평가주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하지 말고 등급별로 평가주기를 차등화하고, 등급을 받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 6개월 기간을 정하 여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개선명령 규정을 삭제하며,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하고 동 고시안에 대한 규제심사 후 시행토록 개선권고

(2)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재)한국유통정보센터에 등록하여 업체식별코드를 부여 받도록 하며,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의 품목별 · 포장단위별 코드를 설정하 고 그 내용이 포함된 제품정보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토록 함

심사결과(2000. 1. 21)

• 제조업자의 한국유통정보센터의 등록의무는 법률 미근거이므로 삭제하고, 한 국유통정보센터의 매출액에 따른 회비징수는 불합리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개선토록 권고

(3)장에인 보조견전 문훈련 기관의 시설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입지조건, 시설구조 및 설비, 시설관리 및 운영 요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

심사결과(2000.3.17)

•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원안의결

(4)약 사법 시 행규칙

십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7)

-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GMP)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생물학적 제제 등을 제조할 경우 추가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신설
-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진열하도록 함
- 의약품 등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그 낱 알의 모양·색깔·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을 이용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 별되도록 제조하여야 함
- 국내에서 생산·수입되는 의약품을 약국 제제 및 조제실 제제로 제조할 수 없고, 전문의약품을 약국 제제로, 일반의약품을 조제실 제제로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제강화
-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개설자 및 약업사는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 내에서 전문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대한약사회장이 우수약국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우수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
- 낱알모음 포장의 해당 낱알마다 '제품명'및 '제조업자의 상호'를 기재하고,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활자의 크기는 '제품명'활자크기의 1/2 이상으로 정함

- 의약분업 관련 규정 위반시 약사(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대체조제와 관련하여 의약품 허가(신고)품목 중 단일성 분의 정제·캅셀제·좌제에 대하여는 약효동등시험의 실시 및 평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와 더불어 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등한 자료를 제출토록 함

심사결과(2000. 3. 24)

-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하여 원안의결
-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일반의약품의 구분진열에 대하여 원안 의결
- 약화사고 원인규명 등을 위해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강화에 원안의결
- 약국 제제 및 조제실 제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안의결
- 우수약국 관리기준 인증 관련 규정은 삭제권고
-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 표기를 다른 표기사항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업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제76조 관련 화장품 용기 등에 기재할 성분명칭, 사용상 주의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재토록 개선권고
- 의약분업 관련 규정 위반시 약사(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에 원안의결
- 허가(신고)시 약효동등성시험 등 자료제출에 대하여 원안의결

(5)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1)

- 시설의 장은 위탁보호기간 중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조사·상담하고 입(퇴)소 심사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 부랑인 복지시설의 시설 설치기준으로 시설면적, 침실의 면적, 남녀장애별 분 리수용, 설비 등을 규정
- 시설의 장은 개인별 신상카드 및 원생연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시·군·구청 장 요청시 제출하며, 원생연고자 조회실시, 건강검진, 위생급식, 상담실시, 직 업보도, 퇴소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함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소유권 증명서 등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토록 함

규제심사결과(2000, 4, 7)

- 위탁보호중인 부랑인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 시설의 설치기준 중 "30인 이상 수용시설의무" 규정을 "10인 이상 수용시설 의무"로 개선권고
- 부랑인 복지시설 원생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 부랑인 복지시설의 장부 등 서류비치 의무에 대하여 원안의결

(6)의 로법 시행규칙

십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토록 하고, 처방전 기재사항 및 서식 등을 정함

심사결과(2000. 5. 22)

• 원안의결

(7)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2)

- 근로능력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 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를 지급하지 아니함
- 자활후견기관협회 설립 및 정관 변경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함
- 전세자금 · 생업자금 대여, 학비지원, 해산 및 장제급여가 필요한 수급자는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군·구청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사업실적 평가, 지도·감독,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
- 수급권자가 각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신청서에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 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은 급여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

산, 진단서, 월급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0. 5. 22)

- 조건부 생계급여 및 급여중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협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은 삭제권고
- 수급자의 개별급여 신청에 대하여 원안의결
-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 급여신청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 장애인등록증 등은 향후 전산망 구축시 삭제 하고, 개념이 애매한 "필요시"를 "호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수정토록 권고

(8) 영양사에 관한 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관련 (학)과에서 영양학 또는 식품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에서 "영양학 또는 식품학 전공자로서 최소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제한함

심사결과(2000.6.12)

• 영양학 또는 식품학을 전공한 자의 인정범위를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과목과 최소이수 학점수준"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하고, 법률위임 범위를 초과 한 "현장실습 3 2시간 이수"는 삭제권고

(9) 의 료관계 행정 차분 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의약분업 관련 처방전 미교부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특별한 사유 없이 환자 등의 선택진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

심사결과(2000. 6. 19)

• 환자의 의사선택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환자선택진료를 거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계속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토 록 개선권고

(10) 응급의 료에 관한 법 률 시 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모든 구급차량에 응급구조사 탑승을 의무화하되, 단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시에 는 이에 갈음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0.6.19)

• 응급구조사의 의무배치를 모든 일반 구급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부동의, 다만 응급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일반 구급차량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에 한하여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 또는 소정의 응급처치에 관한 기초교육을 받은 자를 탑승하도록 개선권고

(11) 확장품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7)

-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변경)시 필요한 구비요건 규정, 시설기준 요건 마련, 폐업 등의 신고 및 신고필증 재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
- 위탁자의 경우 위탁에 관련된 부분의 제품표준서 작성·보존, 수탁자의 경우 제조관리 기준서 및 품질관리 기준서 작성·보존, 필요시설 구비 및 품질관리 등 준수사항을 규정
-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 · 수입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청에 심사의 뢰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 는 경우 피부자극시험 등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하 도록 규정
- 제조번호별 시험검사 후 합격제품만 출고하고, 안전성·유효성의 문제가 있는 제품의 회수, 정보보고 및 안전대책 강구 등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의 준수 의무 규정
- 화장품 용기 등에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이라는 문자와 기능성 원료, 성분명을 제품의 명칭으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유량, 바코드, 전 제조공정 위탁시 수탁자의 주소와 상호를 기재토록 하고, 원료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
- 화장품 표시 · 광고매체 또는 수단의 범위와 광고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표시 · 광고에 대하여 관련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에 부합되는 처분기준(제조소 폐쇄) 신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및 제조와 관련된 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2000. 6. 19)

- 화장품제조업의 신고제(변경포함)에 대하여 원안의결
- 위 ·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법률 미근거에 해당되므로 삭제권고
-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출서류 중 국내외 유사제품과의 비교,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는 삭제하고, 기원 및 개발경위 등에 관한 자료는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시 안전성 ·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신규도입 원료함유 화장품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의뢰시 제출자료를 식약청 고시에 재위임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시행규칙에 명시토록 개선권고
-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의 준수의무에 대하여 원안의결
- 화장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및 표시시 주의사항 규정에 대하여 원안의결
- 표시 ·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규정하는 사항과 광고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동의 하나, 관련 단체의 자율규약에 관한 사항은 삭제권고
- 법령 위반시 제조시설 폐쇄 및 업무의 정지방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1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 애인복지, 모자복지, 윤락행위 등 방지,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보호시설, 결핵 및 나장애인 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동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고, 사회복 지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을 실시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 6. 26)

- 사회복지시설의 보험가입 의무에 대하여 원안의결
- 사회복지시설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나, 안전점검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13)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1급자격 소지자로 제한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소)시킬 때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 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 정신질환자의 성명, 병명과 상태, 퇴원(소) 연월일, 시설의 명칭, 퇴원(소) 후의 거주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신고없이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한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은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인원이 50인이상인 경우), 국·공립 정신병원 및 보건소로서 수련하고자 하는 분야의 1급전문요원이 1인이상 상근하여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되어 있고 2급 전문요원이 3인이상 상근하는 시설이어야함
- 1급 또는 2급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의 경우 각각 수련기간의 1/3, 1/4 이상을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하고, 1/4 이상을 지역사회 정신보 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함
-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중 전문요원은 입소자 정원 15인당 1인, 보조원은 입소자 정원 10인당 1인을 두어야 하고, 시설장이 자격이 없는 경우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이 있는 관리인을 두어야 함.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주거시설에 근무중인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아닌 심리학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인 관리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십사결과(2000. 6. 26)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위탁자의 범위설정에 대하여 원안의결
- 퇴원(소) 정신질환자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원안의결
- 정신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원안의결
- 사회복귀시설은 이용 · 입소인원 50인 이상의 시설에만 수련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수용인원의 제한취지 등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권고

-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수련과정 강화에 대하여 원안의결
-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강화에 대하여 원안의결

(14) 아동복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1)

-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구조·설비, 운영의 안전기준과 아동용품 제작·설치·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장에게 안전교육계획 수립과 교육실적 보고 등의 의무 부여
- 아동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아동복지 시설 또는 비영리 법인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여기에 종사할 직원의 일반 기준으로서 결격 사유와 상담원 등의 개별 기준에 대하여 규정
-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기준에 사무원, 취사원, 세탁원, 보안요원 등을 추가하고, 시설장, 총무, 기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0. 1. 21)

-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탄력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기준 개선권고
-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66㎡이상) 삭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기관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는 법령 미근거에 해당되므로 삭제, 직원의 자격기준 관련 일반기준은 결격사유로서 법률에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 상담원이 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관 지정요건 및 법률근거가 미비하므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수정하도록 권고
- 직종별 자격은 기준 강화, 유치원 교사 등 경력자를 자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강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시설장 및 총무 등 의 자격요건 중 "기타 이와 동등한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 삭제, 법률 미근거에 해당되는 복지부 장관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 교육실시 조항 삭제권고

(15)식 품위생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을 일반식품에서 분리하여 건강보조식품·특수 영양식품 제조·가공업을 별도로 신설하여 허가 관리

심사결과(2000.6.26)

• 건강보조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제로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규 제 강화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신고제로 재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 성을 훼손하므로 철회권고

(16) 의약외품범위 지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안전성이 확보되어 의사의 전문적 지시가 필요없는 단순의약품의 경우 약국외 (슈퍼마켓 등) 판매를 허용함

심사결과(2000.6.30)

• 원안대로 시행해 보면서 가급적 소비자의 입장에서 OTC제품을 확대하도록 하되, 당초 자율화하기로 결정된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등은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잔류토록 하고, 향후 소화제 등 품목의 약국외 판매여부에 대하여 지속 검토하기로 함

(17)식 품위생법 시행규칙

십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인·허가 관리대상이 아닌 소형 수퍼마켓 등에서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이나 판매를 금지함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불법 포획 · 밀렵한 야생동물은 식품 으로 제조 · 가공. 조리 · 판매 등을 금지함
- 고기를 전문적으로 구워 판매하는 음식점(고기구이 전문음식점)에서는 쇠고기 의 경우 가격표에 국내산인지 수입육인지를 표시하도록 식품접객영업자의 준 수사항으로 규정

심사결과(2000. 7. 14)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진열 · 판매 금지에 대하여 원안의결

- •불법 포획·밀렵한 야생동물의 식품 제조·가공·판매 금지에 대하여 원안 의결
- 수입쇠고기의 국산둔갑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필요와 표시의무 부과의 삭제권고(추후 보건복지부에서 철회)

(18) 전염병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강화 1)

- 의료기관의 장 등이 콜레라 · 페스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염병 병원 체를 전염병 환자, 식품,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한 때에는 병원체명, 분리검체명, 분리일시 등 개괄적인 사항을 국립보건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표시감시 전염병과 감시기관 지정요건을 정하고, 지정기관은 매주 1회 감시전 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여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 외의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실적보고 주기를 월1회에 서 주1회로 강화
- 사립 전염병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건물평면도, 진료과목 별 수용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함
- 예방접종피해로 인한 국가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십사결과(2000, 7, 20)

- 신고대상 전염병 병원체 중 "기타 국립보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원 체"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삭제하고, "신종전염병 증후군을 유발하는 병원체"를 신고대상 병원체에 추가할 것을 권고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보고 관련 규정은 법률 미근거에 해당되므로 삭제권고
- 예방접종실적 정기보고를 월1회에서 주1회로 강화하는 것은 의사들의 보고부 담만 증가시키고 실효성 및 규제준수가 의문시되므로 현행(월1회)대로 유지
- 사립 전염병예방시설 설치신고 구비서류 중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별 수용정원 개요설명서"는 설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필수서류로 보 기 어려우므로 삭제권고

• 국가의 행정편의를 위해 예방접종 피해자의 국가보상 신청기한을 제한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권고

(19)의 료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를 각각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과 가정전문 간호사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로 제 한하고, 의료기관 및 간호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도 '전문과목 표시'와 그에 관한 '광고행 위'를 금지함

심사결과(2000.8.11)

-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에 '의원'을 추가하고, 가정전문 간호사 자격요건을 "간호사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가정전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명확히 표현하며,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중 "가정간호 전담부서설치의무" 규정은 삭제권고
- 치과전문의제도 및 치과의료 전달체계 시행 관련 규제안과 일괄검토 예정에 따라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 및 광고금지 규제는 심사보류

(20)약 사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의약품 제조업자 · 수입자 · 도매상 및 약국 등의 개설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시 준수의무 및 위반시 행정처분 내용 규정

심사결과(2000.8.31)

• 동 규제 위반시 약사법령에 의한 형벌과 행정처분이 수반되므로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표현하도록 수정권고

(21)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 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내용심사 1)

•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학교, 보건소, 의무부대 및 교도소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시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 후 재사용할 때에는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검사범위와 항목을 추가함
-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5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함
- 장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등 사안별로 과태료 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

심사결과(2000. 9.8)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신고 대상확대에 대하여 원안의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범위 및 항목추가에 대하여 원안의결
- 안전관리 책임자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 삭제권고
- 과태료 부과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있어 위반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금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권고

(22) 국민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기관의 요청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2001. 1월부터 임시직 ·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2002. 7월부터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심사결과(2000, 11, 2)

- 국민연금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으나, 현행법에 체납처분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징수편의를 위하여 신용제한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하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부동의
- 2001.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시 경제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사용자들에게 큰 부담증가로 경제활성화를 저 해하고, 고용기간 단축이나 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훼손할 역작용이 우 려되며, 빈번한 자격변동 등을 관리해야 하는 체제의 미비로 공단의 과다한 행 정비용의 발생우려 등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동의

2식 품의약 품안전청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현황

(1)개요

• 총 4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강화

(2)주요신설 · 강화규제

- 식품첨가물 중 올레오레진켑시컴 등 4개 천연첨가물의 사용금지 대상확대 등 록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강화(1999, 6, 21)
- 식품첨가물 중 스테비오사이드 기준 강화(1999, 11, 9)
- 의약품 등의 안전성 · 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시 우수임상시험 관리기 준(GLP)에 의한 독성시험자료만을 인정(1999, 12, 1)
- 국내외 공인검사기관과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중 공인검사기관 인정사항 변경승인 인정취소 근거마련(1999.12.11)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2000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9건, 내용심사 9건 등 총 1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9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철회, 7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6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5건에 대해서는 규제 해당없으며 식약청의 총 신설규제수는 1건임

(1)대한약전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일반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리보플라빈산 등 16개 품목)

• 생약의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감초, 갈근 등 17개 품목)

심사결과(2000. 1. 21)

• 원안에 동의하되, 대한약전 개정작업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용역 의뢰 등 보다 전문성있는 대한약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2)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구연산카르베타펜산 캅셀 등 일반의약품, 가미영신환 등 생약 90개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변경
- 방사성의약품 기준을 폐지하고 방사성의약품 20개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변경해서 수재

심사결과(2000. 2. 11)

• 원안에 동의하되, 기심의한 "대한약전개정안"의 개정작업의 오류방지를 위한 전문성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향후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의 관리에도 참고하도록 함

(3) 오 · 남 용 우려의 약 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요도주입액제 및 염산치료목사민주사제 추가지 정
- 알프로스타딜 요도주입액제 : 1회 판매허용량 3개
- 역산치료목사민주사제 : 1회 판매 허용량 1일 1바이알. 1주 3바이알 이하로 제한

심사결과(2000. 3. 10)

• 원안의결

(4)식 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 품공전)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건)

• 식품의 규격(중금속 잔류허용 기준) 중에서 과학적으로 객관성 확보가 미흡한 비소 규격과 콩나물의 수은 규격은 폐지하고, 담수어의 수은과 납규격과 폐류 및 쌀의 카드뮴 규격을 신설하고, 키토산 가공식품 등 3개 품목의 납규격과 절

임식품류의 이산화황 규격을 안전성 확보를 추가로 설정

심사결과(2000.3.10)

• 원안의결

(5) 수입식 품 등 검사지침

십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십사, 신설 1건))

-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통관된 제품의 수입자와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의 조치를 위반한 수입자에 대해서는 동 신고인이 수입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3회 정밀검사 실시
- 수입신고된 세관장 요건확인 제외품목인 기구 및 용기 · 포장은 검사종료 전에 수입신고한 보관장소에서 타 장소로 운송할 수 없음

심사결과(2000.3.31)

- 부적합한 수입식품의 정밀검사(3회)는 식품위생법 제16조 시행일(2000. 7. 13)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7. 13일 이후는 필요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 세관장 요건 확인제외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 검사 및 관리 등과 관련 식품위생 법상 기구 · 용기 · 포장도 통관 전 세관장 요건 확인품목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 하다면 이러한 방안을 관세청과 협의 추진토록 함

(6)식품등의 표시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부원료명 제품명 사용금지, 영양성분 표시사항 중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추가, 유기농식품 표시가능 범위마련, 식품공전 개정에 따른 표시사항 개정 등

심사결과(2000. 7. 6)

-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는 타 법령 등에 의해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함 에도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 제품명 또는 활자크기 관련 규제를 하는 것은 부적 절하므로
 - 부원료 동·식물명의 제품명 사용제한은 상표명 변경 등의 업계부담이 크고, 동 기준에서 원재료와 함유량을 별도 표시하고 있으므로 삭제권고
 - 판매업소명 표시활자 크기제한 관련 주문자생산 판매방식이 보편화된 현실

에서 판매업소 활자크기 제한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삭제권고

(7) 식 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잔류농약 등 식품오염물질 및 식품 등의 기준 · 규격 검사를 위하여 검사장비의 보강, 검사원 자격 및 수의 명확화, G M O 등 신소재식품 및 다이옥신 등 신종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장비 등 보완

심사결과(2000, 7, 6)

- 잔류농약 등 식품오염물질 검사를 위한 장비보관과 관련 적외선 분광광도계와 Micro-HPLC는 필요한 검사기관에 한해 선택적으로 구비토록 개선권고
- 검사원 수에 관한 기준 중 "식품위생검사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업무를 병행수행하는 경우 3명을 추가한다"는 단서조항은 삭제권고

(8) 의료용구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국제적인 등급분류와 차이가 있는 창상피목제 등 7개 품목 등급 상향조정, 공 산품으로 분류되어온 X선 간접촬영용 카메라를 의료용구로 추가지정

심사결과(2000, 7, 6)

- 마취용 부속기구, 호흡용 부속기구는 완제품에 포함되어 안전성 등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의료용구로 지정·관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삭제권고
- "기타" 의료용구품목(기타 의료용 소독기 등) 신설안은 삭제하고, 신개발품 지정필요시 식약청에서 조속히 품목지정 절차를 수행하는 등 민원인 불편 최소화 대책강구 필요

(9) 유전자재조합식 품 등 표시기준 제정안

십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십사 1건)

•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에 대하여 용기·포장에 그 사실내용을 포시토록 하고, 표시대상식품, 표시의 무자, 표시방법을 규정

심사결과(2000.8.17)

- 표시대상 중 "기타 식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규에서 정할 사항을 식약청장에게 일임하는 과도한 위 임규정이므로 삭제권고
- 표시의무자를 제조·가공·소분·수입·유통전문판매 등 직접 포장하여 판매하는 자로 한정하도록 하여 직접포장을 하지 않은 단순 소매판매업자 등은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10) 유전자치 료제 허가 및 임상시험 관리지침 제정안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 유전자치료제의 품목허가를 하는 범위를 설정
 - 유전성질환, 암, AIDS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래를 초래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제나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제의 효과가 현재 이용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우수함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품목허가

심사결과(2000. 12. 1)

• 근거규정(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10호)에 맞게 "품목허가를 하는 범위"를 "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11)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 의약품 등의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을 OECD GLP기준에 맞게 제정

심사결과(2000, 12, 1)

• 워안의결

(12)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 외한약규격집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건)

- 대한약전수재 단삼 등 6종 생약규격 개정
 - 단삼, 지모규격 중 확인시험에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을 추가, 오수유, 우슬 규격 중 성상에 현미경 관찰을, 확인시험법에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을 추가

하고, 대황가루규격을 신설하여 대황규격의 함량기준 및 시험법을 사용하고 엑스함량항을 삭제하고 회분기준을 10%에서 13%로 완화

-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수재 녹용의 규격 개정
 - 녹용과 녹용각을 통합하여 '녹용' 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재정의하고, 녹용의 회분기준을 전체 평균의 28% 이하로 규정하고, 등급항을 삭제

(나) 심사결과(2000. 12. 7)

- 대한약전수재 단삼 등 6종 생약규격 개정에는 동의
-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개정과 관련해서는 녹용과 녹용각의 구분을 폐지해서 녹용으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
 - 다만, 회분기준은 현재 녹용각의 최고기준(35%)을 그대로 적용하고, 현재 식약청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중인 "녹용의 회분함량과 약효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등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녹용의 하대부분의 유통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2001년 상반기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13)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심사결과(2000. 12. 15)

•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식약청은 검사기관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시켜 검사기관간의 경쟁에 의해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동의

3.환경부

가.지난 3년간 신설·강화규제현황

(1) 개요

• 총 26개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13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

(2) 주 요 신설 · 강 확규제

-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심사(신설 9건, 강화 5건)
 - 기존 건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 우. 오수 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 변경하도록 의무화
 - 오수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시 공업 등록자, 오수 처리시설 제조업자로 제한하는 강화규제를 건설업 면허소 지자 등 건축주에게도 허용토록 완화 의결
 -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 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못하도록 축산폐수 처리의무를 부과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처리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축산폐수 저장시설 또는 축분 분리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접객업, 숙박업 영업을 하는 자가 상습적으로 오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 당해 영업을 허가한 기관의 장에 게 영업정지 등을 요청
 -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폐기물관리법(신설 4건. 강화 5건)
 - 폐기물의 엄격한 처리를 위한 처리 증명제(안 제25조의 2~제25조의 10) 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규제의 신설·강화는 수용 곤란하여 수정의결
 - 수탁처리자와 연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와 감시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제도신설은 삭제
 - 과대료(안 제63조)는 폐기물처리 연간계약 및 감시 위·수탁계약 체결제도 의 신설규정 삭제에 따라 해당 과대료 규정 삭제
- 대기환경보전법(신설 5건, 강화 6건)
 - 방지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방지시설 시공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토록 한 실명제는 삭제
 -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용 정지기간 연장 등(안 38조 및 38조의 2)의 규정 삭제 의결
 -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미준수. 생활악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

- 한 기준 미준수, 불법연료를 사용·판매한 자 등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화규정 삭제 의결
-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심사(신설 4건, 강화 3건 / 1999. 1. 29)
 - 정도검사의 대상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누출 측정자가 사용·관리하는 측정기기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 환경측정 기기 제작 및 사업장 출입점검을 삭제하고 대행 전문기관에 대해서 만 필요시 점검하는 것으로 수정
 -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설정을 규제개혁위원회가 검토한 기준 으로 수정보완
 - 기타 환경부안 수용
- 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강화 1건 / 1999. 3. 12)
 - 폐유리용기의 목표율은 45%로, 페트 용기는 1998년부터 45%로 2002년 부터는 55%로 조정하고, 기타 플라스틱은 용기와 제품을 분리하고, 용기는 1998년부터 20%로, 2002년부터 25%, 제품은 1999년 5%에서 2002 년부터 10%로 조정키로 의결
-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심사(신설 6건 / 1999. 4. 23)
 - 동일사업장 내에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의 업무정지는 철회 의결
 - 오염물질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수입의 2~10배로 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토록 하여 규제신설의 목적에 맞도록 조정
 - 불법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는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철거명령 사실을 양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 마련
- 페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심사(신설·누락 등 5건, 강화 7건, 내용심사 7 건 / 1999. 6. 18)
 - 사업장폐기물 운반처리시 폐기물 인계서 작성, 인계시기 등 내용심사
 - 폐기물인계서 검인시기를 처리시 7일에서 3일로 완화
 - 강열감량기준의 강화율 적용시기를 2008년 이후로 완화
 - 감염성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는 제도는 관련업계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의 차량요건을 현행 3대를 존치하되, 필요시 서울시 의 경우 5대 이상으로 기준 강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을 재심사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 요 건 중 파쇄시설 구비기준을 1일 300톤에서 100톤으로 조정하고 재활용 신 고업자의 업종전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존치하도록 수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누락규제 6건, 강화 10건, 내용심사 5건 / 1999. 6. 25)
 - 축산처리 관리기준 규제강화 중 관리일지 작성 의무화 규정 삭제
 - 축산폐수 처리방법의 농경지 확보면적 강화기준을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2~3년 부여하고 연차적으로 강화토록 조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심사(신설 1건, 내용심 사 2건 / 1999, 6, 25)
 - 행위제한이 배제되는 시설의 허가시 향후 원상복구 등의 조건부여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정범위를 정하여 허가시 총량계획 이행을 평가하는 기관과 허가 전에 협의토록 하는 방안강구로 대체
- 수질환경보전법 심사(신설 2건, 강화 1건 / 1999. 6. 25)
 - 상수원 주변도로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제한은 오염확산성이 높은 액상의 유류, 유독성 물질로 제한하는 등 수정의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지정 중 중복지정 우려가 큰 특별대책 지역내, 상수 원 보호구역내, 수변구역내 등은 대상지역에서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1건, 강화 6건, 후속심사 1건 / 1999 8 13)
 - 생활악취 규제대상 중 제조업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규정함은 지나 치게 규제를 확대하는 결과이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나열하여 규정하도록 하 고 나머지 규제대상은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수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 중 시설설치에 따른 유예기간을 1년간 주도 록 조정
- 먹는물관리법 심사(신설 4건, 강화 5건 / 1999. 9. 17)
 - 수질개선부담금 3회 이상 체납시 허가취소규정 철회 의결
 - 먹는물 유통업자에 대한 허가취소규정 철회

- 자연공원법 심사(신설 · 누락 2건, 강화 6건 / 1999. 10. 29)
 - 공원구역외 계획확대 용지는 주차장과 도로만으로 한정토록 조정
 - 공원관리상의 필요에 따른 건축물 등의 철거이전은 철회토록 함
 -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예치기준을 각각 $5 \sim 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보증보험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공원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불을 내는 행위 및 총기·도끼·삽의 휴대행위) 는 삭제하고 총기 휴대행위는 규제하도록 조정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결과

개 요

- 2000년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낙동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2개의 법령 등에 대하여 신설 및 누락 52건(신설 48건, 누락 4건), 강화 73건, 내용심사 8건 등 총 13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3건 중 6건에 대해서는 철회, 50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7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환경부의 2000년도 총 신설규 제수는 48건임

(1) 국 외반 출시 승인이 필 요한 생물자 원의 고시 심 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시 승인대상 추가고시(201종 : 식물 190종, 어류 11종) 심사결과(2000, 3, 10)
- 승인절차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승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

(2) 환경측정 기기 형식 승인 · 정 도검사 등의 고시 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련 강화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강화
 - 검사대행자의 품질보증 의무화 및 교정가스 분석 오차조정
 - 매연포집용 여과지에 대한 시험필증 부착의무

심사결과(2000. 3. 10)

• 검사대행자의 품질보증 의무화 및 교정가스분석 오차조정은 환경부안을 수용하고 매연포집용 여과지에 대한 시험필증 부착의무는 여과지 검사대행기관의 복수화가 이루어진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제11조2항 단서의 필증부착단위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

(3) 오수 · 분 뇨 및 축산 폐 수 처리에 관한 법 률 시 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오수 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기기 설치대상 확대
- 오수 처리시설 제조업체의 사후관리 의무화

심사결과(2000.4.14)

- 오수 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기기 설치대상 확대는 고의성 없는 기기고장인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예외조치 등 보완을 조건으로 환경부안 수용
- 오수 처리시설 제조업체의 사후관리 의무화 중 제조업자에 대한 3년간 사후관 리 의무 부여 규제는 유보

(4) 유해확학 물질 관리법에 의한 PCE, TCE 관리기준 고시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유독물질인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TCE(트리클로로에틸렌) 2종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

심사결과(2000. 5. 9)

• 기준안 중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및 작업자가 지켜야 할 책무 또는 의무부과와 중복 또는 동일한 규정이 있으므로 중복부분 삭제를 개선권고

(5) 음식 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등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규제

심사결과(2000. 5. 19)

- 수정고시안의 제품용도를 비농경지역(별표 1의 가등급 사용용도 내용삭제)으로 수정하고 환경부 수정고시안 수용
- 농림부의 퇴비원료 및 지정기준 관련 고시(농진청 고시 제99-1호 및 농과기 고시제99-1호 등)는 2001년 6월말까지 개정
- 별표 1 사용 용도
 - 가등급 사용 용도를 삭제하고. '나등급' 사용 용도도 아래와 같이 수정
 - 정원, 공원, 임야, 간척지, 개간지, 도로절개지, 폐광지, 토양식생 복원사업지, 매립지 등(농경지, 목본과수지, 화훼 재배지, 묘목장, 식용작물 재배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먹 는물관리법 시 행령 및 시 행규칙 심 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강화 6, 내용심사 2)

-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지정요건
- 납부증명표지 부착의무 관련 사항
- 부담금증명표지 제조단가 승인
- 부담금증명표지 미표시자 승인 및 표시자의 의무
-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신고 등 의무
- 수출용 먹는샘물의 제조신고
-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준수사항
- 수질개선부담금 요율 조정
- 먹는물 제조업자 등의 휴폐업 신고의무 강화
- 수질검사기관 지정 강화
-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예외규정 신설
-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심사결과(2000. 5. 19)

• 납부증명표시 부착의무 관련 규제 : 샘물 제조업자가 매월 1회에 한하여 납부

증명표지를 요청토록 하는 것은 제조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과 다 · 불합리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토록 개선권고

- 수출용 먹는샊물 신고제 폐지
- 먹는물 제조업자 등의 휴폐업 신고의무는 폐업신고만 인정하고 휴업·재개업 신고는 폐지
- 수질검사기관 지정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20일로 연장

(7) 낙 동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심 사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1)

-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 하천구역내 농약사용 제한
- 하천 인접지역의 배출 억제시설 및 녹지조성 의무
- 취수시설 상류 집수구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행위제한
- 사업자 최종방류구 시간별 오염 부하량 할당지정 등
- 오염 부하량 초과자에 대한 제재 등
- 오염 부하량 총량초과 부담금
- 오염 총량관리계획에 의한 행위제한
- 산업단지, 유독물 영업자의 완충저류시설 등 설치 · 관리의무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자의 저감계획 수립 이행여부
- 배수관거 설치 사업자의 관거검사 관리의무
- 축산폐수시설의 분 · 뇨 분리시설 의무
- 분류하천 인접지역의 폐기물 최종처리업 입지제한
- 물수요 관리목표 미달지역에 대한 사업 제한
- 산업단지 입주자의 폐수 재이용 의무
- 공사과정 후발생 지하수 이용신고 등
- 수질개선사업시 토지 등의 수용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법령처분 위반자에 대한 인 · 허가 취소
- 과태료 부과
- 수변구역 기존 건축물에 대한 방류수질 기준

심사결과(2000. 5. 19)

-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에 있어서 수변구역 대상지역임에도 시설입지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오 수 ·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등에서 형평성을 보완하도록 수정
- 하천구역내 농약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유기성 농업 지원, 정부수매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
- 공사비용 사전예치제를 삭제하고 의무 불이행시 준공·사용검사의 거부조치 등으로 보완
- 오염 부하량 할당제도와 함께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초과부담률을 2배 이내로 완화조치
- 완충저류시설 등 설치 · 관리의무에 있어서 유독물 영업자의 시설설치 유예기 간을 3년으로 완화
- 물수요 관리목표 미달지역에 대한 사업 제한
 - 지자체에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한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보완, 사실상 개인 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허가제한 범위를 하위규정 마련 시 축소조정
- 산업단지 입주자의 폐수 재이용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미이행시 조업중지 규제는 삭제, 과태료로 전환하고 가급적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토록 조치
- 축산폐수 시설의 분·뇨 분리시설 의무 및 산업단지 입주자의 폐수 재이용 의무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완화
- 기타 사항 원안의결

(8)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오염물질 불법 배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인 오염물질의 종류 및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불법배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철거 및 폐쇄 를 명하는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심사결과(2000.6.2)

• 원안의결

(9)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4)

- LPG용 승용차 및 경유용 소형화물차의 HC, 질소산화물, PM(입자상물질)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 휘발유 및 경유의 황. 벤젠의 함량기준을 강화하고 경유의 밀도항목 신설
-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강화
- 배출오염 기준 강화
-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결함 시정내역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심사결과(2000.6.2)

- 배출허용 기준강화는 재심의
-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결함 시정내역의 환경부 장관에 대한 보고 삭제
- 기타 원안의결

(10) 수질 환경 보전 법 시 행령 심 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 초과배출부담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추가
- 배출부과금의 산정 방법 · 기준 강화 및 사업장별 부과계수 신설
- 사업장별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강화

심사결과(2000. 6. 16)

-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 규제할 수 있는 지역범위의 지정요건을 "취수구역의 원수수질이 2급수 이상 인 경우"등 구체적 기준 보완
 - 지정대상의 지역범위를 10km 거리의 범위 등과 함께 집수구역 등을 추가하여 지리적 조건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 마련
 -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고 우려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 초과배출부담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추가는 원안의결
-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강화 및 사업장별 부과계수 신설

- 초과부담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산정에서 $10,000 \,\mathrm{m}^3$ 이상 배출업소는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지수를 $1.5 \sim 1.8$ 정도로 조정
-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강화는 삭제(불인정)

(1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2)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
- 폐기물 처리수집 운반업자 교육대상 추가
- 폐기물 처리상황 등 기록유지 대상 추가
- 사업장폐기물 인계 · 인수 대상 추가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강화
-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 페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시설장비 기술능력 기준 강화)
-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강화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
-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 강화 및 내용심사
-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처리 기준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강화

심사결과(2000.6.16)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시설
 - 감염성 폐기물 소각시설의 기술관리인 요건을 감염성 폐기물의 규제목적에 적합한 기술인력 요건으로 별도 규정하여 고용토록 조정
- 폐기물 처리수집 운반업자 교육대상 추가
 - 3년 1회 보수교육을 신규 허가자와 법령 위반자에 한하여 교육토록 권고
- 폐기물 처리상황 등 기록유지 대상 추가
 - 기존의 운영관리 대장에 온도기록 사항을 폐지하여 중복 기록규제가 되지 않 도록 하고, 자동 온도측정기계의 고장 오·작동에 의한 위반의 경우 처벌이 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장폐기물 인계 · 인수 대상 추가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시설장비 기 술능력 기준 강화)는 수용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강화와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삭제
-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강화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 수용
- 폐기물 처리업자의 변경허가는 차기 법률 개정시 신고·통보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 재활용 신고대상 폐기물 강화 및 내용심사 수용
-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처리 기준은 기존업소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강화도 기존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를 조 건으로 수용

(12) 환경정 책 기본법 시 행령 심 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사전 환경성협의를 위한 절차 마련

심사결과(2000. 7. 14)

- 사전협의 대상을 검토 안건의 최종 조정안으로 의결(단, 산림법 적용지역은 산 림청과 환경부 협의안)
- 협의기간 중 연장의 경우 1회 10일에 한하도록 명시화
- 구비서류는 하위규정에서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함
- 개별법에 의한 사전협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

(13)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인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
-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의 지정
- 검사대행자 지정
- 인증기관 및 측정대행업자에 관한 행정처분
- 환경기술인력의 환경전문교육 의무
- 화경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등
- 방지시설업 등록
-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설업자의 시공 · 감리

심사결과(2000, 7, 14)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2년 1회)은 삭제
-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의 행정처분 중 시설장비·기술능력이 부족하게 된 경우와 기술인력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의 처벌이 고의·중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보다 강한 것은 형평성이 없으므로 전면수정
-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의 정기보수교육은 삭제하고 신규 전입시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교육토록 조정

(14)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자동차연료(LPG) 품질기준 심사

심사결과(2000. 7. 21)

- 기준 중 프로판의 함량과 증기압을 동시에 규정하는 방법이 불합리하고 중복되므로 증기압에 대하여 최고치만 규정된 기준을 프로판 혼합비와 자동차 엔진의시동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 및 죄고 증기압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정
- 산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마련중인 LPG 품질기준이 마련될 시 금번에 마련한 기준과 일부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산자부안과 혐의할 것

(15) 대암산 용늪 출입금지 기간 연장고시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출입기간 연장

심사결과(2000, 7, 21)

•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한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연장기간을 5년으로 수정의결

(1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법 률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수입폐기물 처리내역 등 통보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2000. 7. 21)

• 원안의결

(17) 토양환경 보전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4)

- 토양오염에 대한 무과실 책임
- 토양 관련 전문기관 인정 · 취소
-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토양 정밀조사 명령

심사결과(2000. 7. 21)

- 토양오염에 대한 무과실 책임과 관련 시설의 양수자 · 포괄승계자 · 경매 등에 의한 인수자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 오염원인자에서 제외토록 하고, 아울러 원인자인 전소유자 등의 보상책임도 승계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
- 토양 정밀조사 명령시 원인자에 의한 축소, 왜곡된 정밀조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조사기간 ·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령하도록 보완수정

(18) 하수도법 개정안 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3)

- 하수도용 자재기준
-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 징수
-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 방류수 수질검사 미실시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2000.8.25)

-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에 일시적인 공사로 인한 소량 배출되는 지하수에 대해 면제할 수 있도록 향후 조례준칙 마련시 반 영하도록 권고
-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19) 한 강수 계상 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개정안 심 사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물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심사결과(2000. 9. 15)

• 원안의결

(20) 수 도법 개정안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 강화 3)

- 물수요 관리목표미달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 등의 인가 제한
-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 중수도 설치 의무화
-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물절약 투자대행업(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대상에 전용수도 설치자 포함
- 중수도 설계 시공자의 자격,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 강화
-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상향조정

심사결과(2000. 9. 22)

- 물수요 관리목표미달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 등의 인가 제한
 - 인가제한 대상을 물수요 관리목표미달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물수요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도입 병행실시
-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 중수도 설치 의무화
 - 중수도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화 원안수용
- 물절약 투자대행업의 등록제도 도입 삭제
-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대상에 전용수도 설치자 포함 원안수용
- 중수도 설계 시공자의 자격,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 강화 원안수용
-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 농원여관업, 여인숙업과 같이 영세·노후하여 절수효과가 미미한 업소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원안동의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상향조정
 -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불이행자에 대한 과대료 300만원 이하 부과는 인정하고 나머지 기타 신고의무 불이행은 과대료를 현행수준(100만원 이하) 유지

-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

(21)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5. 내용심사 2)

-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유해물질 수송차 통행제한
- 폐수 배출시설의 분류통합 및 대상추가
- 총질소. 총인에 대한 규제강화
-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강화
-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심사결과(2000.9.28)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유해물질 수송차 통행제한
 - 통행제한 대상자동차에서 지정폐기물 중 액상의 지정폐기물에 한하여 규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강화
 - 시설확장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융자지워 등 인센티브방안 강구
-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삭제
- 총질소. 총인 규제 강화
 - 원안동의, 단 설치의 부담경감을 위해 융자지원방안 강구
- 기타 사항 원안의결

(22)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정산이자율고시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정산 이자율 결정

심사결과(2000.9.28)

• 원안의결

(23) 감염성 폐기물전 용용기의 검사기관지정 및 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의료법에 의해 관리를 받아오던 감염성 폐기물을 2000. 8. 9일부터 폐기물관 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넣어서 수집 · 운반 · 보관하도록 전용용기의 심사기준을 마련

심사결과(2000. 9. 28)

• 원안의결

(24) 팔당 · 대청호 수질보전 종합대책 고시 개정안 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폐수 배출시설 등 입지제한
- •특별대책지역내 오수 배출시설의 입지제한 세부기준

심사결과(2000. 9. 28)

• 원안의결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9. 강화 2)

- 제조업자의 재활용 의무 및 의무량 산출기준
-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의무이행 인정기준
-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
- 재활용 부과금의 징수
- 재활용 의무 대상제품 판매자의 회수의무
- 용기의 회수. 재사용(공병보증제도)
-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 조합워의 분담금 납부
- 조합의 사업계획 인가, 사업결산보고서 제출
- 보고자료 제출 및 공무원의 출입검사
-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사결과(2000. 9. 28)

•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의무이행 인정기준

- 이행계획서 제출승인, 결과보고, 재활용 인정 등 번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행실적 등이 우수한 재활용의무 생산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의 도입 등으로 자발적 이행 유도 및 절차 간소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질 분류표시, 재활용 가능표시와 혼용하여 사용할 경 우 혼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제도를 통합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로 일원화

(26) 자연환경 보전법 개정안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심사결과(2000. 9. 28 : 재심사 의결 / 2000. 10. 6 : 재심사)

-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 제45조의 개정안의 내용을 "제한하거나 출입, 취사, 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생태보전협력금의 존폐여부를 차관회의,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키로 조 건부 동의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1 종지정품목에 개인용 컴퓨터 추가 및 지정사업자의 의무사항 규정
-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 추가 및 예치금 요율 상향조정

심사결과(2000, 12, 1)

• 원안통과(단, 반환예치금 차등적용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미반환금(30%)의 사용은 재활용품의 회수 · 활용 등에 사용되도록 운영의 합리화 필요)

(28)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 가법 시행령 심 사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5)

- 영향평가 대상의 확대
 - 환경, 교통, 재해 등 일부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평가대 상을 확대
- •시 ·도 영향평가사업의 범위
 - 시·도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영향평가의 범위를 통합평가법상 사업범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 사업자가 재출한 평가서가 최소한의 형식적·내용적 요건을 결한 때에는 이를 보완가능
-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설정
 - 평가대행자가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평가 서 부실작성에 대한 처분을 강화
- 영향평가 재협의 기간 단축
 - 영향평가협의 완료 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 평가대행계약의 분리체결
 - 영향평가 대행계약을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거나 평가대 행비용을 구분·명시토록 함

심사결과(2000. 12.6 : 분과위 / 2000. 12.8 : 본회의)

- 영향평가 대상의 확대
 - 환경분야에서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 등의 채취중
 - · (3)해안광물의 채취에서 "···단위구역에서 연간 광물채취량이 10만제곱미 터 이상인 경우"를 삭제의결
 - · (3)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과 (4)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 면적 및 채취량 누적면적, 누적량으로 법제처 입법과정에서 조문자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 · (5) "해안에서의 토석·모래·자갈채취···" 및 (6) "포락지 또는 개인소유 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토지로 조성···"을 삭제의결
 - 교통분야에서
 - · 평가대상 시설의 (1)주거시설 "5만 제곱미터(주차장제외) 이상"을 "6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정의결

- · 평가대상 시설의 (7)백화점, 쇼핑센터 "4,500제곱미터 이상"을 "6,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정의결
- 재해분야에서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재해영향평가를 모두 하기에는 무리이므로 재해영향평가 시행 1년 후 검토하여 시 · 도에 위임할 것을 권고
- 기타 사항 원안의결

(29)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 합대책 고시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특별대책지역(여천지역, 울산지역)내 대기배출 허용기준 강화
- 특별대책지역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심사결과(2000, 12, 15)

• 원안의결

(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4)

-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의무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사업장을 객석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장에 대하여도 시·군·구의 조례에 의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건설페기물의 배출자가 그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철거 등 건 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시 추가 서류 징구
 - 소각시설의 경우 주요 설비의 변경이나 처리중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 시 시설검사 결과서 추가제출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관리기준
 - 종전 시간당 2톤(1일 50톤) 이상 소각시설만 다이옥신 배출규제에서 시간 당 200kg(1일 5톤) 이상 소각시설에도 확대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

- 법령미비로 정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소형 소각시설(시간당 600kg 미만) 및 1997년 이전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기한을 명시

심사결과(2000, 12, 15)

-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의무 및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시 추가 서류징구는 원안 의결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관리기준(본회의 심의)
 - 시간당 2톤 이상 4톤 미만의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검사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기타 사항 원안의결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
 - 현행 정기검사기관 3개소로는 검사기관이 부족하므로 검사능력을 갖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소 등을 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함

(31)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고시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제조 · 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범위 확대
 - 내항여객선에 대하여 방오용 도료(수산화트리알킬주석)의 제조, 수입, 사용을 금지

심사결과(2000, 12, 22)

• 원안의결(단, 군용 · 경찰용 선박에 대해서도 규제방안 강구)

(32) 국제적 멸 종위 기에 처한 동 · 식 물 보호규정 심 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국제적 멸종위기종 추가
 - 남반구 밍크고래 등 동물류 12건, 식물류 3건을 국외 반출·반입시 허가사 항으로 추가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종류 추가
 - 장식머리앵무 등 국외 반출 · 반입시 허가사항으로 추가

심사결과(2000. 12. 22)

• 원안의결

제6절

일반행정 및 법무 분야

*집필자: 전옥태 사무관(Tel. 3703-3935, jkj751@opc. go. kr) 성문식 사무관(Tel. 3703-3939, sms4400@opc.go. kr) 권용식 사무관(Tel. 3703-3936, sharky88@opc. go. kr) 성문식 사무관(Tel. 3703-3939, sms4400@opc.go. kr)

1.행정 자치 부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현황

(1)개요

• 온천법, 소방법, 접경지역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4개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0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3건을 강화

(2)주요신설 · 강화규제

-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 관련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999. 7. 15일 차 관회의에서 규제를 강화토록 결정됨에 따라
 -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준에 "노유자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중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를 신설하여 강화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2000년도에는 소방법, 온천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 5건, 강화 2건 및 접경지역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으로 신설 등 5건 총 12건 (신설 10, 강화2)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1) 온천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건, 강화2건)

- 온천전문기관은 등록기준에 의한 자격기준 및 장비 갖추어 행정자치부 장관에 게 등록(신설)
- 행정자치부 장관이 등록된 온천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부과(신설)
- 행정자치부 장관은 등록된 온천전문기관이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등록 결 격사유 발생시 온천전문기관 등록취소(신설)
- 온천의 원수 및 욕조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을 정함(신설)
- 온천의 일시이용 허가에 따른 이용 허가량 제한 및 온천 발견 신고가 수리된 공이 있는 경우, 토지와 토지이용 시설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의무화 (강화)
- 온천전문기관에 대하여 검사보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토록 의무부과 (강화)

심사결과(2000. 4. 7)

• 효율적인 온천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

(2) 소방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력, 경력, 신인도 등 평가 관련자료를 위탁기관에 제출(신설)

심사결과(2000. 7. 24)

•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을 위해 원안 대로 의결

(3)접 경지역 지원법 및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건)

- 일반사업 신청자의 경우 사업시행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요 및 투자 계획 등 관계서류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신설)
- 사업장 소재지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 및 토지수용 자 등의 이주대책 수립·시행의무 부과(신설)
- 사업시행자(민간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부과 및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검사(신설)
- 자료제출 불이행, 허위자료 제출, 검사를 거부 ·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심사결과(2000. 7. 14)

• 낙후된 휴전선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신설 1건)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의무 부과(신설)

심사결과(2000.4.17)

• 정부지원시 예산낭비 억제 및 주민부담 방지 등 불건전한 시민 단체와 선별장 치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

2.법 무부

가.지난 3년간 신설·강화규제현황

(1) 개요

• 변호사법, 민영교도소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총 7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27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5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신설·강화규제

- 거소이전 신고 및 반납의무
 -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한하여 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데, 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은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할시 신고증의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소 이전 신고를 의무화
 - 소지할 수 없는 자격이 되거나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14일 이내에 출 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반납하도록 의무화
- 국내거소신고의 첨부서류 규정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영주권 사본, 호 적등본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
- 외국국적 동포 체류기간 연장불허
 - 외국국적 동포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불허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규정
- 재외동포의 국내활동 제한
 -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단순노무행위, 사행 업종 등의 국내활동을 제한
- 출국금지실무위원회 신설
 - 출국금지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함으로써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며, 출국 금지기준 해당여부 등을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심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및 자문을 위하여 출국금지실무위원회를 신설
-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학사 이상의 법학과정 개설학교에서 법학사 이상의 법

학과정 학위취득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로 제한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변호사법 시행령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건, 강화 2건, 내용심사 3건 등 총 1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결과 대상 10건 중 원안의결 9, 개선 1(신설규제 5건)

(1)변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강화1)

- 외국 변호사의 등록신청 절차
 - 개업이 허가된 외국 변호사는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 변호사 명부에 등록 후 신청인에게 통지(신설)
- 비위 전력자에 대한 법률사무소 직원채용 제한
 -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일정범 죄에 관한 범죄전력으로 규정(신설)
- 수임 관련 장부의 작성 · 보관 기준
 - 변호사가 사건수임시 의뢰인·사건내용·수임일 등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 부터 3년간 보관(신설)
- 법무법인 설입인가 신청시 종전 제출서류에 구성회의록을 추가(강화)
- 법무법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기준
 - 법무법인 주사무소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자 포함하여 과반수가 주재하도록 하고, 같은 지방법원 관할구역내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분사무 소에는 분사무소임을 표시하도록 규정(신설)

십사결과(2000. 6. 9): 원안의결 4. 개선 1

- 외국 변호사의 등록신청 절차 : 원안의결
- 비위전력자에 대한 법률사무소 직원채용 제한 : 원안의결
- 수임 관련 장부의 작성 · 보관 기준 : 원안의결
 - 단, 수임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므로, "수임계약한 때로부터"와 같이 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
-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첨부서류 추가 : 원안의결
- 법무법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설치기준 : 개선권고
 - 분사무소 설치제한을 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도록 권고

(2) 민영교도소 등의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심사 3)

- 기본재산의 하한선 설정 및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특정(내용심사)
 - 교정법인의 기본재산은 교도소 등의 부지매입·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과 1년간 교도소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규정하고,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민영교도소 등의 시설기준으로서 종교상징물 설치 제한(내용심사)
 - 법무부 장관이 특히 허가한 경우 외에는 시설 안에서 수용자가 상시 출입하 거나 접근하는 장소에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
- 당연퇴직사유 추가(강화)
 - 당해 민영교도소 등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및 일반직원의 경우 63세, 소장의 경우 65세에 달한 때에 당연퇴직되도록 규정
- 손해배상의 담보
 - 교정법인은 손해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 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십사결과(2000. 9. 4): 원안의결 3. 개선 1

- 기본재산의 하한선 설정 및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특정 : 원안의결
- 민영교도소 등의 시설기준. 종교상징물 설치 제한 : 개선권고
 - 종교시설 설치의 의무화 조항은 삭제, 다중집합장소 특정종교 상징물 설치 제한 관련 문구수정

• 손해배상의 담보 : 원안의결

(3)사법시험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학사 이상의 법학과정 개설학교에서 법학사 이상의 법학과정 학위취득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로 제한함

심사결과(2000. 9. 25)

- 사법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원안대로 의결
 -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구성원 중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를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사법시험 선발인원에 대한 심의"사항 을 추가토록 권고

3.경찰청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현황

(1)개요

• 총 18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7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 규제 중 29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신설·강화규제

- 화약류의 종류에 '황산알루미늄을 주 재료로 한 화약'을 추가하고, 총포개조· 수리업자의 개조·수리명세부 비치 및 작성의무를 강화(제31차 행정사회분과 위 / 9 9, 6, 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의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질서유지인의 명단통보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

면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제36차 행정사회분과위 / 99.7.14)

- 경비업 허가업종에 특수경비업무 및 기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허가를 5년으로 신설하며, 기계경비업자에 대한 오·경보 방 지 및 대응체제 구축 등의 의무를 부과(제51차 행정사회분과위 / 99.11. 19)
- 지정차로제 개선과 관련하여 중·소형승합차, 1. 5t 이하 화물차는 승용차와 같이 차로제한을 폐지하되,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1. 5t 초과 화물차 등 은 차로별로 통행을 제한하고 저속차량 우측통행원칙을 규정(제55차 행정사회 분과위 / 99, 12, 24)

나. 2000년 도신설 · 강화규제심사결과

개 요

- 2000년도에는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도로교통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비업법 등 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누락 3건), 강화 16건 등 총 2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여
- 심사대상 20건 중 사전심사전 조정사항 이외에 3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1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경찰청의 2000년도 총 신설 규제수는 1건임

(1) 사격 및 사격장단 속법, 동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사격장 설치자가 사격장 영업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구비서류 중 "총포 등의 처리계획서 1부"를 추가하 며, 사격장 설치허가 취소사유에 "영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를 추가

심사결과(2000. 7. 20)

• 신고대상 휴업을 15일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기규정된 휴업신고시 법정 구비

(2) 총 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 속법, 동법 시 행령 · 시 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화약류의 적용범위' 중 장난감꽃불류의 취급 및 저장 등에 대하여, 장난감꽃 불류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에 적용받고 있는 규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저장소 설치 허가자(불꽃을 내는 것 500kg 이상, 폭발음을 내는 것 250kg 이상)에 대하여는 취급의 금지, 폐기, 저장, 운반, 안정도시험 등을 적용하도록 강화

심사결과(2000.8.11)

• 장난감꽃불류의 저장 및 운반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필요한 조치이므로 규제강화에 동의하 되,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6의 판매업자와 토목업자 등에 대한 저장소 이외 의 저장기준 25kg은 삭제

(3) 도로교통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0)

- 국내 운전면허 정지기간 또는 재취득 금지기간 중 외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 허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규정하여 처벌
- 운전자 준수사항에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를 추가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시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여도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 규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
-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
- 자동차학원운영기준의 법적 근거로서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 강사 등 자동차학원 종사자의 자격 등을 규정
- 일정한 사유발생시 자동차학원의 설립 · 운영자에게 일정비율의 수강료를 반환 케 하는 등 교육생 보호조치를 행할 의무를 신설규정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실효성이 미미한 '기능검정 정지' 를 '학원운영 정지'로 강화

- 일반자동차에 자동차(전문)학원의 명칭 · 표식 사용금지 등
- 운전면허 취득 전 연습운전면허에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 운전면허 취소사유를 추가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도로교 통법규 위반행위 유형에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위반 등을 추가

심사결과(2000. 8. 11)

• 동 내용은 경찰청 중점추진과제인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제개혁방안'의 시행을 위한 법적 조치사항이 대부분이며, 도로교통의 안전확보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원안동의

(4) 도로교통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기존 강화안의 완화)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의결안 에 대하여 3년을 2년으로 완화

심사결과(2000.8.25)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운전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는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이를 2년으로 완화하는 데에 동의

(5) 경찰공무원임용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 이상)를 경찰간부후보생 · 순경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사 이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추가

심사결과(2000.9.8)

• 스피드화 · 광역화되어 가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대국민 치안서 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규제임을 감안하여 원안에 동의

(6) 경비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경비업자 등의 의무에 국가 중요시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근무배치 전 사전교육의무를 부과하고, 복종의무·경비구역 이탈금지 의무 등을 규정

심사결과(2000. 10. 6)

•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에 배치될 특수경비원의 경우 일반경비원과 달리 무기휴 대 및 사용권을 부여함에 따른 안전관리 차원에서의 동 규제강화 내용에 대해 원안의결

4.청 소년 보호위원회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 현황

(1)개요

•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26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제 중 10건의 규제를 강화하였음

(2)주요신설 · 강화규제

- 청소년 유해약물 및 물건의 결정기준
- 청소년 유해업소의 범위
- 청소년 유해 표시의무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포장
-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 · 배포시 연령확인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분 · 격리방법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확대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 고용제한 표시의무
- 청소년 통행금지 등의 설정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 과징금 부과
-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대상 매체물의 범위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등 2개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결과 대상 4건 중 원안의결 2, 철회 1, 개선 1 (신설규제 1)

(1)청 소년 의성 보호에 관한 법 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신상공개의 내용, 기준, 절차 규정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6개월간 게재, 정부중앙청사,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
 - 신상공개 내용은 성명,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로 함
 - 신상공개 기준은 성범죄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 명단을 연 2회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중 범죄전력, 죄질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공개결정
 - 신상공개 결정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15일이 경과한 후 공개

심사결과(2000. 9. 29)

- 신상공개의 방법, 내용 및 기준은 원안의결
- 신상공개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에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2)청 소년 보호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2)

-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시 반드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내용심사)
-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종업원이 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업원 고 용시 상대방 연령확인 의무를 명확히 합(내용심사)

•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일탈 청소년의 일탈사실을 통보받거나, 사실을 인지 한 관할 경찰서장은 소년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한 경우 소년부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으며, 소속 학교장은 해당청소년 에 대하여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는 선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 도록 함(신설)

심사결과(2000. 11. 23, 12. 7): 원안의결 2, 철회 1

-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 등의 경우 연령확인, 청소년 유해업소의 종업원 고용시 연령확인은 원안의결
- 일탈 청소년의 일탈사실 통보는 철회권고

제 7절

문화관광 분야

*집필자: 권태성 과장(Tel. 3703-3940, ts-kwon@opc. go. kr) 유주봉 서기관(Tel. 3703-3941, yujubong@opc. go. kr)

1.문화관광부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총 29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37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24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신설 · 강화규제

-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연장은 설계검토와 정기검사 등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연구소, 대학,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인적, 재정능력, 시설 등의 구비여부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교육기관·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 성 검사를 받도록 함
- 축구 및 농구경기에 대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투표권의 종류, 발행대상, 위탁 승인 및 자격요건 등을 정함

-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의 종류에 국제회의시설업과 시내순환 관광 업을 추가하고,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 및 외국어 구사 종사원을 고용하도록 하 는 등 관광호텔 등록기준을 강화
-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단체 · 시설 등에 전문연수 과정을 개설 ·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등 1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7건, 강화 1건, 내용심사 8건 등 총 36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 7건은 철회권고, 6건은 개선권고, 16건은 원안동의(현재 7건은 심의중) 하여 문화관광부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15건임

(1)박 물관 및 미술관 진 흥법 시행령 ㆍ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건)

- 박물관·미술관 전문직원(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과 재직 및 실무경력 인정기 관 등 절차를 정함
- •사립박물관 ·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취소 절차를 규정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후 6개월내 사업 미추진시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임의변경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0 2 11)

- 사립박물관(미술관)설립계획 승인 취소사유 중 승인내용 미추진기간 6개월을 완화하고, 이행·시정명령을 한 후 미이행시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수정의결
- 등록된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박물관·미술관운영위원회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검정절차 없이 단 순히 재직경력만으로 승급이 가능한 학예사 등급제도는 불합리하므로 승급 전 연수실시 등을 검토하도록 개선권고

(2) 저작권법에 따른 국정교과서 저작료에 관한 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 국정교과서에 실린 산문, 운문, 음악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료 보상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2000, 2, 29)
- 원안의결

(3) 영화진 흥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건)

-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비용의 출자비용이, 출연자의 배역 등을 혼성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혼성기준이 공동제작영화 제작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신고하여야 함
 - 주연급 또는 조연급 출연자 등 1인 이상이 한국인이거나, 감독이 한국인인 경우를 출연자 혼성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 4. 14)

• 원안의결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8건)

-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방법과 단위투표금액 1천 원, 투표권에 기재할 사항 등을 정함
- 축구 등 투표권 발행대상 경기종목(축구, 농구, 야구), 투표권 발매 전 대상경 기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체육진흥공단의 발행사업 위탁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을 위한 경제적 · 기술적 요건 등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정함
- 투표권발행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과 수익금 배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투표권 구매·양도·알선 등 금지 대상자의 범위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 한 등을 정함
- 수탁자의 발행사업 승인 및 지도 · 감독을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투표권 발행대상 경기를 안정적으로 주최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도록 함

심사결과 (2000.6.23)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중 사행성 방지와 사업성 측면을 고려하여 '야구'를 삭제하여 '축구'와 '농구'로 대상경기를 한정하고, 투표권 발행횟수는 연간 90회 이내로 시행하고 2002년 월드컵 이후 다시 정하기로 함
- 수탁사업자 선정요건 중에 도덕성, 수익성도 고려하도록 하고, "기타 체육진흥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에서 '기타'는 삭제하도록 함
- 수탁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취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탁운 영 비율을 정할 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발매금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시행령에 명시
- 2002년 월드컵 이후 수익금 배분비율을 다시 정하도록 함
- •기타 체육진흥투표권 종류 및 투표방법, 수탁사업자의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감독 관련 사항 등은 원안대로 의결

(5) 유원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실 시지침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건)

-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를 유원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위한 수탁기관 으로 지정함
- 교육대상자를 안전관리자 및 운행자로,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교육 실시기관은 매년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 을 받도록 함
- 교육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실적은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등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2000. 5. 29)

- 교육수탁기관 지정은 원안대로 의결
-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 지정, 교육계획의 승인 및 교육비용 징수 등에 대하여는 법률 미근거 규제에 해당되거나 또는 교육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할 사항에 해당되므로 부동의

(6) 유기기구안전성 검사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6건)

• 종전 공중위생법상의 안전성 검사 기준에 용어의 정의, 안전성 검사기준 적용 범위, 안전성 검사기관 및 검사반원의 자격요건, 안전성 검사종류 구분, 안전성 검사 신청 관련 서류제출, 안전성 검사기준, 안전성 검사결과 통보방법 등을 변 경함

심사결과(2000. 5. 29)

- 고시에서 시행령과 달리 유기기구 안전검사 대상범위를 유원시설의 수입·제 작·설치·운영 등과 관련 있는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 므로 부동의
- 안전성 검사 종류구분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 8조에서 검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고시에서 별도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동의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요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검사기관의 지정 에는 동의하나, 향후 법령에서 인력과 시설 등의 수탁기관의 구비요건을 정하여 동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기관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기관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실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고, 기타 검사반원의 자격요건 등은 삭제하고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위탁계약서 등에 포함하여 이행하도록 개선권고
- 안전성 검사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 허가 전 검사 및 비검사 대상 확인검사는 고시개정안과 같이 업체의 신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되, 정기검사 및 재검사는 자동차검사제도와 같이 검사대상업체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에 대상업체에 검사기간을 정하여 통보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각종 검사시 대상업체에서 제출받는 서류는 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으로서 보완 전까지는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요구하도록 하고 향후 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안전성 검사기준 중 비검사 대상 확인검사 기준은 법령위임범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성격상 허가전검사나 정기검사, 재검사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동 검사기준을 고시개정안보다 대폭 완화 또는 삭제
- 안전성 검사결과 통보와 관련 고시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된 "협회는 유기기

구 안전성 검사에 대한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하고, 위탁계약서에서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편람 등을 작성, 비치토록 개선권고

(7) 저작권법 시행령 ·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내용심사 1건)

-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암호화 조치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도서관 등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정함
- 법정허락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의 기준으로 당해 저작물 관련 저작권 위탁관리 업자, 이용자 또는 관련법인 및 단체 2개 이상에 조회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 는 문서를 최종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등으로 정함

심사결과(2000.6.12)

• 원안의결

(8) 관광진 흥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 4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영업 의 제한사항 등 내국인 출입 카지노사업자 영업주칙을 제정

심사결과(2000.8.20)

• 동 준칙 제2호의 카지노 이용자의 신분확인 서류를 '주민등록증 및 여권'으로 한정한 것을 운전면허증 등 기타 증명서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동 준 칙 제8호의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보장과 관련, "문광부 장관의 승인없이"라는 문구를 삭제시켜 카지노 이용자의 자료공개 및 누출을 금지하도록 개선권고

(9)출판 및 인쇄진 흥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건)

- 출판사는 간행물에 정당한 가격을 책정 ·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간행물은 표시 된 정가대로 판매토록 함
-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해간행물 및 특정 외국간행물을 발 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출판사는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표시하도록 함
- 영업신고한 출판사 · 인쇄소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즉시 신고필증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출판 · 인쇄 · 서점업계의 주요 사항을 협의 · 추진하는 민간 기구로 한국출판 · 인쇄산업진흥협의회를 설치 · 운영함

심사결과(2000. 12. 7)

- 유해간행물 등의 수거조치, 국제표준자료번호표시 의무 및 출판사 · 인쇄소 폐 업시 신고필증 반납의무 등은 원안대로 의결
- 간행물의 정가판매제도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규제준수 율 확보도 곤란하며, 국가에 의한 가격통제는 규제개혁 추진과 상치되는 측면 이 있으므로 부동의
- 한국출판 · 인쇄산업진흥협의회의 명칭 · 구성 ·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은 정부의 사업자단체 규제개혁과 배치되므로 부동의

(1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7건)

-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사항 변경시에도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재허가토록 함
- 방송광고판매자의 소유제한 등을 정함
 - 누구든지 방송광고판매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초과 금지
 -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기업과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일간신문, 통신사는 방송광고판매자의 주식(또는 지분) 소유 금지
 - 각각의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자의 지분(또는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 방송광고판매자가 각각의 지상파 방송사업자로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받는 경우 출자 또는 출연의 합계가 당해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 금 지

- 방송광고판매자가 외국자본(외국정부·단체와 외국인 포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받는 경우에는 그 합계가 당해 법인 지분 총수의 10% 초과 금지
- 주식(지분) 소유제한과 출자 및 출연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지분)을 소유하거나 출자 및 출연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방송광고판매 사업자가 허위로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허가취소,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공영방송의 방송광고판매 대행의 지정 등
 - 한국방송광고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홍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MBC) 등 공영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 대행을 3년간 한시적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방송광고판매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법인 재산상 황을 제출토록 함
- 방송광고판매자 등의 방송광고진흥자료 징수 등
 - 방송광고판매자 및 한국방송광고공사 자회사는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방송광고진홍자금으로 납부토록 함

심사결과(2000, 12, 22)

• 2000. 12. 22일 심사결과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의 재심사요청으로 재심사계류중

2.문화재청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현황

(1)개요

- 4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등록규제 중 2건의 규제를 강화
- (2)주요신설 · 강화규제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시 사전협의 및 지표조사 의무화(신설)
-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신설)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교부(강화)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신설 3건, 강화 2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7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 •1건은 철회권고, 3건은 개선권고, 3건은 원안동의하여 문화재청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2건임

(1)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1)

-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시 공개계획서 제출 및 공개상황 신고
- 문화재 인접지역에서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

심사결과(2000.6.12)

-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시 공개계획서 제출 및 공개상황 신고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이므로 삭제권고
- 문화재 인접지역에서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건설공사시마다 영향검토로 인한 공사지연 등 막대한 손실초래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2)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2. 내용심사 1)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신설)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조난천연기념물 구조상황 신고(신설)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 지정(강화)
- 매장문화재 국가귀속(강화)
- 문화재매매업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내용심사)

심사결과(2000. 6. 12)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는 현존 동물치료소 중 어떤 능력을 갖춘 곳을 지정할 것인가 하는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건을 구비한 곳이면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권고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조난천연기념물 구조상황신고는 사전신고에 해당하는 법률 미근거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하고, 치료 후 완치 · 폐사 등의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개선권고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행위 지정과 관련, 500 m이내의 개발행위, 수계상류에서 건축공사·제방공사행위, 건축공사시 인·허가 기관장이 1차 지 방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
 - 건축물 설치·증설의 경우 종전 100 m에서 500 m로 확대하는 안은 지나친 규제로 종전대로 100 m로 유지하도록 하고, 대기오염·소음·진동·열·먼지등 발생행위는 천연기념물과 건축물 등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구분하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유적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기타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 존과 원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는 포괄적 규정으로서 대 부분 현상변경허가 대상을 기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토록 함
- 매장문화재 국가귀속과 관련,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등 급분류, 국가귀속 시기에 관한 사항에는 동의
 -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등급분류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의무 부과, 자격규정 및 운영비용의 사업시행자 부담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 별도의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삭제권고
- 문화재매매업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 관련 사항은 원안의결

3.방송위원회

가.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방송법 시행령·규칙·고시 등(7개)의 제·개정안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7건, 내용심사 31건 등 총 39건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 4건은 철회권고, 13건은 개선권고, 22건은 원안동의하여 방송위원회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1건임

(1) 방송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6건)

• 방송사업자간 출자 및 겸영의 제한, 방송사업의 추천·허가 등의 절차, 지역사업권의 설정 및 사업권료 징수,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한, 과징금 부과,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기준 준수의무, 중계유선방송 채널 운영범위, 국내방송 프로그램 편성기준, 외주제작방송 프로그램 편성기준, 방송광고 기준 및 방법, 유선 및 위성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의무, 전송·선로설비의 설치확인, 방송사업자의 정보공개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심사결과(2000, 2, 29)

- 방송사업자간 출자 및 겸영제한 : 개선권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33% 초과 소유 금지와 관련 KBS, MBC, EBS, 종교방송은 예외를 인정하고, SBS 등 지역민 방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예외인정 규정(영 제4조 제2 항 단서중 2호 관련) 삭제
- 방송사업 추천 · 허가 등 : 개선권고
 - 중계유선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승인시 구비조건 중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법에 의한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

는 승인 제외(영 제7조 제1항 3호)"는 이중제재 소지 및 법에서 정할 결격 사유로서 삭제

- 국내 방송 프로그램 편성기준 : 개선권고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전체 영화·애니메이션 방송사간의 국산 편성의무비율에 병과하여 전체 방송시간 기준으로도 국산영화 1~3%, 국산 애니메이션 1~5%를 편성토록 하는 것은 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법률미근거에 해당되는 시행령안 제57조 제2항 1호 중'가'및'나'의 전체 방송시간 기준으로 부과된 국산영화 및 애니메이션 편성의무 비율은 삭제
- 기타 방송의 소유와 겸영, 종합유선방송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허가 등, 방송사업자 등의 허가 · 취소 등, T V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납부, 유선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 지역사업권 설정 및 사업권료 징수,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한, 과징금 부과, 방송의 공정성 · 공공성 심의, 방송발전기금 징수, 방송프로그램 편성기준 준수의무, 채널의 구성과 운영기준 준수의무, 중계유선방송 채널 운영범위, 외국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기준, 방송광고기준 및 방법, 유선 및 유선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의무, 전송 · 선로설비의 설치확인, 방송사업자의 정보공개의무 등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동의

(2)방 송법 시행에 관한 방 송위원회 규칙 제정

십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십사 12건)

• 방송사업 허가 추천신청시 제출할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방송채널 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요건, 외국자본 출연승인을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KBS의 수신료 국회승인 전 방송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산출근거자료 등,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KBS의 제작비용 부담 등, 방송매체별 채널수 계산방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시송신할 수 있는 지역생활정보방송 프로그램의 범위 설정, 종합유선방송・위성 방송으로부터 시청자 주권 확보를 위해 편집권 제한 및 거부권 제한 명시, 방송사업자의 폐업·휴업 신고시 제출서류, 종합편성·보도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두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명시, 방송위원회에 제출토록 법률에 규정한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명시 등에 대한 내용심사를 요청

심사결과(2000. 5. 12)

- 방송사업 허가 추천신청시 제출할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외국자본 출연승인을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시 송신할 수 있는 지역생활정보방송 프로그램의 범위 설정, 종합유선방송·위성 방송으로부터 시청자 주권 확보를 위해 편집권 제한 및 거부권 제한 명시, 방송사업자의 폐업·휴업 신고시 제출서류, 방송위원회에 제출토록 법률에 규정한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명시 등은 원안의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등의 등록 요건 등은 법령미근거에 해당되고 불필요한 진입규제에 해당하므로 철회권고
- KBS의 수신료 국회승인 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산출근거자료 중 KBS 이사회 회의록은 KBS의 경영 자율성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내역을 제출토록 개선권고
- 기타 적정수신료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모든 서류요 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막연하고 포괄적 권한부여조항이므로 삭제권고
- 시청자 직접제작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소요 비용을 KBS와 시청자가 공동부담하 도록 하는 내용은 불합리하므로 "KBS가 제작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선권고
- 방송된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을 일률적으로 제작자가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법적 책임" 부분을 삭제권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방송채널 운용계획서를 채널 수 계산자료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채널수 계산방법과 무관하므로 사업계획서 제출조항의 단서 또는 부칙조항으로 직접사용방송채널 운용계획을 제출토록 보완
- 종합편성 ·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두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 단체유형을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신력 있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로부터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3)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고시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건)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국내 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지상파방송사업 자의 타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 등을 정하고자 함

심사결과(2000. 5. 22)

• 편성비율의 고시내용에는 동의하나 편성비율 변경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0년 고시일부터 가을 개편시까지의 외주제작 편성비 율에 관한 사항은 당초 고시안에서 삭제하고, 1999년도 편성비율 고시를 따르 도록 부칙에 명기하도록 개선권고

(4)방 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건)

•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광고주를 표시하도록 하고, 방송광고 음악의 제한, 방송 광고의 제한기준 및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을 정함

심사결과(2000.8.17)

- 방송광고 음악의 제한, 방송광고의 제한기준 및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 방송광고에서 광고주의 표시여부는 방송광고의 공공성 · 공정성 심의와 관련성 이 적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자율에 맡길 사항이므로 철회권고

(5)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건)

• 협찬고지가 금지되는 방송 프로그램, 단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협찬고지의 방법 및 허용시간을 정하고자 함

심사결과(2000.8.17)

• 협찬고지를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 및 협찬고지의 고지방법 제한에 동의하되, 협찬고지의 제한사유는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시 행령 개정시 상향법규화하도록 권고

(6)방송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건, 내용심사 3건)

• 협찬고지가 금지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 및 단체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에 관한 사항, 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 및 절차, 보도·교양·오락의 구체적 편성비율 의무 폐지에 대한 내용심사를 요청

심사결과(2000, 12, 15)

- 협찬고지가 금지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 및 단체 등에 대한 규제 신설 및 보도 · 교양 · 오락의 구체적 편성비율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신규참여자의 진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토록 하고,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재허가 등을 받은 경우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필요적 최소사유로 개선권고

(7)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건)

• 영화,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의무 및 등급표시기호 등을 정하고,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 른 방송시간대 제한을 정하고자 함

심사결과(2000, 12, 15)

- 1 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방송시간대 제한은 청소년보호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할 필요성이 적고, 방송법령의 위임근거도 없으므로 철회권고
- 방송 프로그램 등급분류 및 표시 등과 관련하여 대상 프로그램은 영화, 수입드라마, 뮤직드라마, 애니메이션으로 하되, 향후 국산드라마도 등급분류 및 등급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포함하도록 하고, 등급분류 연령은 청소년보호법 등 타법과 일치시키되, 7세 시청가를 추가토록 하고, 복잡한 기호로 인해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정보표시 관련부분은 삭제하고 연령등급만 표시하도록 하되,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보제공 차원에서 내용정보표시를 하는 것은 허용토록 하고 제재조치 조항은 방송법령에 기규정된 사항이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

제8절

교육 · 노동 분야

*집필자:성문식 사무관(Tel. 3703-3939, sms4400@opc. go. kr)

1.교육인적자원부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 현황

(1) 개요

• 총 14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42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 규제 중 8건의 규제를 강화

(2)주요신설 · 강화규제

-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 보완책으로 평생교육시설의 규모 및 범위,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대학교원 신규채용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 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유치원 원사는 원칙적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하되, 대피시설를 갖춘 경우 3 층도 가능토록 함
-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대부 · 매각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의 수의계약 특례를 인정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대한 수도법의 특례 인정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분양 안내서

- 에 명기하도록 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분양 가격의 8/1000, 단독주택은 토지분양 가격의 15/1000으로 함
- 학교용지의 인접거리는 통학거리 1,000미터 이내로 하고, 거리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토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원격대학,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시 인가 신청토록 하고, 폐쇄 시 이를 신고토록 함
-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및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시 신고 토록 함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사회교육법 시행령 등 9개 법령에 대해 신설 26건, 강화 2건, 내용심사 14건 등 총 4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2건 중 원안의결 25, 철회 2, 개선 15(신설 규제 19건)

(1) 초 · 중 등 교 육법 시 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에 따라 위원정수, 위원구성 비율, 위원선출 방법, 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2000, 2, 2): 개선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를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불확실함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세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수정권고
 -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하

(2) 사회교육법시행령 ·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3)

- 평생교육시설의 과외교습 금지
 -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외교습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개설할 수 없음
-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사용 제한
 - 사내대학에는 "사내대학", 원격대학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의 용어를 그 명칭에 포함하도록 함
-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각종 사업장의 학습휴가는 자체내규를 정하여, 연간 $5\sim10$ 일 또는 $120\sim180$ 시간 범위내에서 실시
- 평생교육사 자격부여
 -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및 등급·연수·자격증 발급신청·자격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평생교육센터,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공무원 훈련기관, 교원 연수기관,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기관 으로 설립된 연수기관, 기타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규정
- 평생교육사의 의무배치
 - 종사원 10인 이상, 동시교습 300인 이상, 연간 교육인원 3,000인 이상인 평생교육단체 또는 시설에 종사자 수의 5분의 1 이상을 평생교육사로 의무배치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력인정 지정신청
 -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입학자격, 교육과정, 학급, 학생, 수업, 수료 및 졸업, 교원, 교재에 관한 기준 규정
 - 학력인정시설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 지정신청
-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신청
 -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 설치자 · 경영자로 규정

- 사내대학의 운영비용 부담
 - 사내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
-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신청
 -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를 지방자치단체, 대학,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 사내대학 · 원격대학의 현황보고 등 준용규정
- 학교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
- 학교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 규정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변경등록, 시설 · 설비기준 규정
-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단체 부설, 학교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 · 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 학력 비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및 통보
- 인가 또는 등록취소, 운영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 및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원격대학의 강좌당 학생수 상한
 - 교육부 장관은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강좌당 학생 수의 상하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식 ·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자본금 3억원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십사결과(2000, 2, 2): 원안의결 15, 개선 7, 철회 1

- 평생교육시설의 과외교습 금지 : 철회
-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사용 : 개선
 - 용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개선
 - 자체내규 규정에 학습비 지원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습휴가 범위설정은 삭제 권고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 개선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삭제하도록 권고
- 평생교육사의 의무배치 : 개선
 - 평생교육사의 의무배치를 권장형태로 운영하고, 1/5 이상 배치기준은 삭제하도록 권고
- 사내대학의 운영비용 부담 : 개선
 - 규제의 명확화를 위해 고용주 및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 개선
 - 워격대학의 강좌당 학생수 제한은 삭제
- •지식 ·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개선
 -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권고
- 평생교육사 자격부여 등 15건 : 원안의결

(3) 교원자격 검정령,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십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2)

- 교(위)장 자격인정 기준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초·중등학교 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인정 기준 중, 종전에는 초등학교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자는 제외하였으나 이를 포함
- 교장 자격취득에 있어서 외국 교육기관 근무경력을 인정

심사결과(2000, 2, 29)

• 원아의결

(4)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3)

- 교과용 도서의 검정기준
 - 한 과목이 2책 이상으로 구성된 2종도서를 검정시기를 달리하여 검정하는 경우, 먼저 검정한 도서에 불합격된 자는 동일 교과목의 다른 도서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자유발행 도서의 인정
 - 인정도서 중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발행 도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선 정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교과서 도서의 가격산정
 - 교과용 도서의 가격에 포함되는 기타 경비의 내용에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추가함

심사결과(2000. 3. 10): 원안의결 2. 개선 1

- 교과용 도서의 심사기준. 교과서 도서의 가격산정 : 원안의결
- 자유발행 도서의 인정 : 개선
 - 초·중등교육법 개정시 법률에 자유발행도서의 근거규정 마련하고, 자유발 행도서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사용하도록 절차마련

(5)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5)

- 학교운영 지원비 예산편성 및 지원
 -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지원비 예산편성시 및 감사시 학부모회 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사학기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 법인과 학교에서 특정목적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할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금으로 예치관리, 용도외 사용을 금하도록 함
- 공사계약에서 연대보증금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증금 으로 반도록 함
- 법인의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
- 증빙서류 및 장부 보존
 - 증빙서류에 금융기관 입출금통장을 추가, 법인과 학교의 회계관계 증빙서류 는 5년간, 장부는 10년간 보존

심사결과(2000. 4. 14): 원안의결 2. 개선 3

- 학교운영 지원비 예산편성 및 지원 : 원안의결
- 사학기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 개선
 - 사학기관의 적립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 단 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

해 적립금 허용대상, 허가의 요건을 명시

- 보증금 규정 : 개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형 대로 규정하도록 권고
- 물품의 관리 : 워안의결
- 증빙서류 및 장부 보존 : 개선
 - 추가증빙서류 중 금융기관 입출금통장은 금융기간 거래실적 입증서류로 수 정,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통일하도록 권고

(6) 교육공무원임용령

십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교육공무원 임용을 위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강화(강화)
 -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응시제한을 2년에서 5 년으로 규정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를 제한 (신설)

심사결과(2000. 6. 30) : 원안의결 1. 철회 1

- 부정행위자 응시제한기간 연장 : 철회
- 공무워시험 부정행위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제한 : 원안의결

(7)학 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십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내용심사 3)

- 학교용지의 인접거리는 통학거리 1,000미터 이내로 하되, 부지여건상 거리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신설)
-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토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함(신설)
- 과태료의 부과 징수(내용심사)
 - 300세대~500세대 미만 사업자: 500만원
 - 500세대~1000세대 미만 사업자: 700만원

- 1000세대 이상 사업자: 1.000만원
- 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자료 제출 의무(내용심사)
 - 개발사업 시행자는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분양자료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 분양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 분양자료 제출일 시점으로 매 1개월마다 변경내용 제출
-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납부 계약조건 공고(내용심사)
 -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승인 내용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를 계약 조건으로 하여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0, 2, 2): 원안의결 3, 개선 2

-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 원안의결
-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기한 : 워안의결
-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원안의결
- 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자료 제출 의무 : 개선
 - 납부기한까지는 1개월. 납부기한 이후에는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개선 권고
-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납부 계약조건 공고 : 개선
 -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담금의 강제징수 등을 명시하여 공고

(8) 고 등교 육법 시 행령

십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사립대학의 입시전형시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실시 제한
 - 사립대학의 경우 논술고사 이외의 대학별 필답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던 것을 모든 대학의 장이 필답고사로서 논술고사만을 시행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 11, 3): 개선

• 대학의 장이 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

2. 노동부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 현황

(1)개요

• 총 3 2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7 7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 규제 중 2 7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신설·강화규제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에 금융 및 보험업 추가
-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파견 금지대상 업무, 허가기준, 파견근로자 사용제한, 파견사업 허가신청서 제출의무, 변경허가, 사용사업자의 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신설
- 고용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 일괄적용사업의 개 시 및 종료신고의무, 이직시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유예 등 신설 강화
- 근로자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교사의 자격취득 기준, 훈련 비용지원신청서 제출의무,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 수강신고서 제출의무 등 신설
- 최저임금 혜택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확대
-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연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부과 및 성희롱 판단기준 설정
- 산재보험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험급여(장의비 제외) 산정기준의 최고한도 설정, 일정연령 이상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유족연금 수급 의무화 및 장의비의 최고 · 최저 보상금액 설정
-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전산 회계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등 6개 자격 신설 및 검정방법 등 규정
- 위험기계류에 부착되는 방호장치가 성능미달 등 불량상태로 제조·유통되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검정합격 당시의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을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인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에서 냉동창고·호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확인주기 확대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결과

개 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11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5건, 강화 17건, 내용심사 21건 등 총 6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결과 대상 63건 중 원안의결 50, 철회 6, 개선권고 7(신설규제 25건)

(1) 고용보험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시적 일 자리 제공차원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 서 제외

심사결과(2000. 1. 21)

• 원안 의결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내용심사 5)

-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면제(내용심사)
 - 구직급여 및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받는 금액의 50%를 추가 징수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기준훈련 실시기준(내용심사)
 - 지원대상 기준훈련을 근촉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기 준훈련이 총훈련 연인원의 100분의 30인 경우로 함
- 수강장려금 지원수준(내용심사)

- 수강장려금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함
- 검정수수료 등 지원수준(신설)
 -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범위, 지원금지, 지원절차 등 규정
- 훈련연장급여 지급대상 기준(내용심사)
 - 직업인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내용심사)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기준 설정

심사결과(2000. 2. 29): 원안의결 3, 철회 1, 개선권고 2

-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면제 : 철회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기준훈련 실시기준, 검정수수료 등 지원수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원안의결
- 수강장려금 지원수준, 훈련연장급여 지급대상 기준 : 개선권고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십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강화 1. 내용심사 10)

- 기준임금 적용 :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 적용(신설)
-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 종전에 적용제외되었던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사 업, 국제 · 외국기관, 회원단체 등에 산재보험 적용(내용심사)
- 업무의 대행: 보험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의 일부를 한국노동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함(신설)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별도 기준 설정: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내용심사)
- 보험급여(장의비 제외) 산정기준의 최고한도 설정 :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보상 기준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내용심사)

- 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지급: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요 양하는 경우 그 선급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 급(내용심사)
- 일정연령 이상의 경우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 65세 이상의 산재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5% 감액하여 지급(상병보상연금은 7% 감액지 급)(내용심사)
- 장해보상연급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중 국외이주 등으로 연금 수급이 곤란하여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갈음(내용심사)
- 간병급여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 :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을 실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1, 2급을 대상자로 한정하고, 지급금액은 장해정도에 따라 상시간병, 수시간병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실제 간병일수에 대하여 간병담당자 1인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지급(내용심사)
- 장의비 최고·최저 기준금액 설정: 장의비의 최고·최저 금액을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와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내용심사)
-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 교부금 지급대상 보험가입자의 범위 축소 : 보험사무 조합이 징부비용 교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를 현행 300인(건설 업은 2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신설)
- 보험사무조합 인가(강화)
 - 보험사무조합 인가신청시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등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고수납대리점 등과 체결한 약정서 및 개설된 통상사본을 추가로 제출토록 함
 - 인가의 요건으로 산재보험사무 위임을 받을 사업주가 30인 이상일 것을 신설
 - 인가폐지 미인가사항 변경시 각각 30일 전 및 7일 전(기존 60일 전 및 10일 전)까지 이를 공단에 신고토록 함
 - 보험사무조합이 비치해야 할 장부에 국고수납대리점 등과 체결한 약정서를 추가
- 보험료징수의 특례: 사업주가 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 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 규모, 매출액 등이 유사한 동종사

업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내용심사)

- 체금 산정방식 변경: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 징수금 미납시 5%를 기존연체 금으로 부과하고 이후 매3개월 경과시마다 36/1000 가산하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신설)
- 보험급여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문서로 제출토록 함(내용심사)

심사결과(2000. 5. 16): 원안의결 14, 개선권고 1

- 기준임금 적용 등 14건 : 원안의결
- 경미한 사항의 신고: 개선권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 "변경사항 신고시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4)장에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8, 강화 1)

- 중증장애인 기준 마련 : 중증장애인의 기준 명시(신설)
- 장인표준사업장 기준 마련: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작업·부대·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정요건, 절차 등을 규정(신설)
- 장애인 직업지도관 등 : 장애인 직업지도 지원을 위한 실시기관 지정시 고려사항, 직업지도에 따른 융자·지원규정 신설(신설)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지원 : 장애인 적응훈련 교과과정 등 기준과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신설)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실시기관 및 지원기준 마련(신설)
- 지원고용 실시·지원: 지원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내용을 정하고 그 지원기 준 마련(신설)
- 취업알선 지원: 장애인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비용지원 기준을 마련 (신설)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및 우대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에 있어서

장애인고용률 등을 참작하여 우수사업주 선정(강화)

•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취소 : 고령자 인재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명 시(신설)

심사결과(2000. 5. 29)

• 원안의결

(5)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내용심사 3)

- 기준임금의 적용: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준임금 적용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함(내용심사)
- 재요양신청서 제출 의무 : 재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신설)
- 이송비용: 재해근로자 이송비용 중 숙박료와 식대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별표 2 제3호의 국가공무원 제3호의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토록하고, 의료기관 이송차량의 범위를 구급차로 명확히 하며, 비용도 기존의 택시요금에 준하는 금액에서 요양비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함(내용심사)
- 간병급여의 청구방법 : 간병급여를 청구하는 자에게 각종 청구서와 관련 서류 를 제출토록 함(내용심사)
- 중 · 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가입 및 보험급여 지급(신설)
 - 보험가입 신청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여 질병 또는 장해의 정도가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험가입 신청서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토록 함
 -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 전년도 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준용토록 함

심사결과(2000. 6. 16): 원안의결 3, 개선 2

- 기준임금의 적용 : 원안의결
 - 단. 기준임금 적용신청서에 포함될 내용의 대강을 시행규칙에 명기
- 재요양 신청서 제출 : 원안대로 의결

- 단. 재요양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의 대강을 시행규칙에 명기
- 이송비용 : 원안의결
- 간병급여의 청구방법: 개선권고
 - 간병급여 청구서에 요양소 입소자가 간병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요양소 등에서 지출된 비용은 공단에서 직접 확인토록 수정할 것을 권고
- 중 · 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가입 및 보험급여 지급 : 개선권고
 - 보험료는 근로자분 보험료 납부 시기에 함께 납부하도록 수정하고 건강진단서 제출자의 범위도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등과 관련한 업무 경력자로 제한
 - 중·소기업 사업주의 건강진단항목, 내용, 실시기간과 건강진단 결과 등을 고려한 보험가입승인 판단기준 등도 시행규칙에 요건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규정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권고

(6)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십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3)

- 종전에 일부 법규정만 적용되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 · 보건상의 조치 등 12개 규정의 적용을 추가(신설)
- 종전에 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적용예외를 두고 있던 업종에 대해 적용예외 규 정을 삭제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규정 추가(신설)
- 농업 등 1 0여개 업종에 대해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추가(강화)
- 대여 및 대여받는 자가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에 리프트 등 4종을 추가(강화)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물질을 현행 21종에서 3종을 삭제하고, 독성물질 등 27종을 추가(강화)

심사결과(2000. 6. 19): 원안의결 4, 개선 1

-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법적용 업종에 대한 적용규정 확대에 대해서는 도입취지를 인정하되, 안전보건 교육, 자체검사,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공정안전보고서 관련규정은 적용확대보다 내실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므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수정의결
- 대여 및 대여받는 자가 유해 ·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 · 기구에 리프트 등 4종 추가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7)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0, 내용심사 1)

- 도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안전 ·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산재예방의무 장소 범위를 확대(강화)
- 대여 및 대여받는 자의 유해 · 위험방지 조치사항을 추가(강화)
- 건설용 리프트의 완성검사 횟수를 1회에서 승강로 길이 20미터 상승 때마다 하도록 추가(강화)
-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기구는 설계검사 및 성능검사를 면제하던 사항을 성능 검사는 면제배제(강화)
- 합격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의 시정명령 근거 마련(강화)
- 수거검정 결과 보호구별 평균합격취소율을 초과하는 보호구 제조업체 및 2회 이상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동일규격 및 등 급의 보호구에 대한 검정신청 제한기간을 180일로 규정(강화)
- 자체검사대상 기계 · 기구를 현행 13종에서 로울러기 등 5종 추가(강화)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은 사업장의 자체검사 기계 · 기구는 검사가 면제되었으나 재 제출의무가 폐지되었으므로 면제 배제(내용심사)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사업장에 대한 확인범위를 추가(강화)
-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3년으로 규정(강화)
- 지정검사기관에 대해 불합격률에 따라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규정(강화)

십사결과(2000, 7, 14): 원안의결 7, 철회 4

- 건설용 리프트에 대한 완성검사 횟수 추가, 안전인증 기계·기구의 성능검사 면제, 합격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근거 마련,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 추가사 항에 대해서는 도입취지를 인정하되, 제도의 실효성, 업계의 부담, 법제형식의 부적합 등 강화가 불필요하므로 4개 사항은 철회
- 도급 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부여, 대여 및 대여받는 자의 유해·위험조치 범위확대, 검정신청 제한 기간의 규정,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사업장의 자체검사 면제배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사업장의 확인범위 추가,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서류 보존기간 규정, 지정 검사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7개 사항은 원안의결

(8)임 금채 권 보장 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체당금의 지급상한액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을 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임금·물가의 변동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함(신설)
- 부정수급자에 대한 체당금 반환요구 외에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신설)

심사결과(2000. 10. 20) : 원안의결 1. 철회 1

- 체당금 지급상한액의 탄력적 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 결정과정과 기준의 합리성·투명성·공개성 등의 확보라는 측면을 볼 때, 유연한 정책결정이라는 목적과 비교하여 비중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회
- 부정수급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제한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9) 사내근 로복지 기금법

십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내용십사 1)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 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에만 기금협의회의 근 로자 대표가 되도록 변경(강화)
-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그 잔여 재산은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없던 것을 잔여재산에 대해 정관에 따라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관에 의하여 귀속되지 않은 재산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홍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홍기금에 귀속하도록 함(내용심사)

심사결과(2000, 10, 27)

• 원안의결

(10) 고령자 고용촉진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명시(신설)

심사결과(2000, 10, 27)

• 원안의결

(11) 근 로자직 업 훈련 촉진 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 강화 1)

-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위탁받은 자가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 장 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도록 보완(신설)
-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은 자 및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훈련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대상에 실업자 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을 포함토록 함(신설)
- 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또는 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신설)
-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 이외에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도 보고 및 자료를 제출토록 함(강화)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훈련실시 상황을 점검토록 함(신설)

심사결과 (2000, 11, 2): 원안의결 5, 개선 1

-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주체 보완, 부실훈련기관에 대한 제재, 훈련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대상 확대,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제도 근거, 보고 및 자료 제출 주체 보완 등 5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 훈련실시 상황의 점검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현행 예규로 운영중인 훈련실시 상황점검을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조정 및 훈련실시기관에 대한 점검시 점검실명제 실시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개선 권고

제9절

외교 · 국방 및 보훈 분야

*집필자:김경탁 사무관(Tel. 3703-2156, ktkim@opc. go.

kr)

1.통일 부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현황

(1)개요

• 총 3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5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1건의 규제를 강화

(2)주요신설 · 강화규제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취업보호 대상인 북한 이탈주민이 근무태만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면직될 경우에는 1년의 취업보호 제한기간을 둠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신설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통일부의 2000년도 총 신설 규제수는 5건임(4건은 1999년말 심사하였으나 법 개정이 2000년 초에 이루어짐)

(1) 남 북 교류협력 에 관한 법 률 시 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

• 북한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 신고를 하여야 함

심사결과(2000. 11. 2)

• 원안의결

2.외교통상부

가.지난 3년간 신설·강확규제현황

(1) 개요

• 총 1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3건의 규제를 신설

(2) 주요신설 · 강화규제

• 해외이주법 제1 0조 :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결과

• 신설 · 강화규제 없음

3.국방 부

• 신설 · 강화규제 없음

4.병 무청

• 신설 · 강화규제 없음

5.국가보훈처

가.지난 3년간 신설·강확규제현황

(1) 개요

• 총 2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3건의 규제를 신설

(2)주요신설 · 강화규제

•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 규제심사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신설 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1)참전군인 등지원에 관한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

• 참전군인 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참전사실 확인을 위해 등록신청 절차 경유 및

구비서류 징구

• 생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사망, 국적상실, 일정 생활수준 초과하는 경우 수급권 소멸 신고의무를 부과

심사결과(2000. 9. 8)

• 원안의결

(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심사요청 규제내용

•취업보호 실시기관의 장은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에 제대군인에게 응시상한 연령을 3세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함

심사결과(2000. 10. 20)

• 개선권고안 수용한 재심사안에 대해 원안의결

제10절

해양수산 분야

*집필자: 박응렬 과장(Tel. 3703-2183, parker1@opc. go.

kr)

1.해양 수산 부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현황

(1) 개요

• 총 31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51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38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신설·강화규제

-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작물 설치 실시계획 인가, 공작물 설치 등에 대한 준공신고 및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 제거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
- 무질서한 이용·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연안지역의 해양오염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하여 연안에서의 오물투기 등 행위제한, 금지·정비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행위제한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안관리법을 제정
- 해운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선주상호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업의 허가, 조합의 설립요건 및 절차와 설립인가, 출자총액의 최저한도 설정, 조합의 사업범위 제한 및 사업주체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법을 제정

-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 파괴가 심각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되, 매립이 결정된 수역에 대하여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립의 목적을 엄격히 제한하여 매립지의 용도를 장기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매립 예정지에서의 어업권 등 새로운 권리설정 제한,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매립지 용도를 임의변경하여 공작물을 설치할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공작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 · 강화
- 연안어장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위생적인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역별 환경수용력에 적정하게 양식면적 또는 시설량을 설정 하고, 양식어장간 거리 등의 조정과 환경오염 유발자 등에 대한 제한
 - 환경오염이 심각한 어장에 대한 사전예고 후 휴식제도 도입 및 수익자 부담 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을 제정
-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해난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인증 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사전준비 등에 관한 사항, 안 전관리대행업에 관한 등록(변경등록)절차 및 등록기준 등을 규정
- 국제적인 공기(公器)인 항로표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해상교통안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사용하는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를 제조검 사, 정기검사, 임시검사로 구분하고, 검사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
-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임원의 해임,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사항을 신설하고, 임원의 성실의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사업영역,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조합의 해산 등의 내용을 강화
- 합리적 수산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무선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신설
- 해양에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 지정하고, 환경보전해역 지정 및 관리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해역에 시설설치 제한기준을 2000㎡ 이상 폐수 배출사업장,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허가시설 등으로 규정

- 해양폐기물 배출금지 장소로서 선박, 해양시설 외에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 해양에 접해 있는 발전소·제철소·조선소·정유소,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장을 추가 규정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2000년도에는 항만법, 도선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항로표지법, 수산업법, 선박직원법 등 1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9건, 강화 11건 등 총 5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0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철회, 7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4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32건임

(1)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규제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검사 강화기준 제정에 따른 총칙 규정(제1조~제3조)
 - 적용범위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의 선체구조 및 배관 장치로 함
- 전반적인 검사준비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제8조)
 - 검사계획, 검사의 조건, 구조물로의 접근수당, 검사장비, 부상상태에서의 검 사 등을 규정
- 선체두께 계측절차와 선내 비치서류, 검사보고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제16조)
- 정기검사 · 제2종 중간검사 · 제1종 중간검사 등의 검사집행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제17조 \sim 제37조)
- 시행일을 고시한 날부터 하되, 국내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 정기검사시부터 적용

심사결과(2000. 1. 28)

- 제정안 중 두께 계측업체의 지정요건 등을 삭제하고 계측공사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등록업체로 수정 의결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2) 수산 동식 물 이식 승인 에 관한 규칙 규제심 사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수산동식물의 이식승인 및 병충해 검사대상에 낚시터 방류용 외래(수입)어종을 추가(제2조 내지 제5조)

심사결과(2000, 2, 11)

• 원안의결

(3) 수산업 협 동조합법 시 행령 및 동법 시 행규칙 개정안 규제심 사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9. 강화 3)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법 제18조 제7항, 시행령 제26조)
 -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제출서류 2종 추가(강화)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법 제155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 지구별 조합, 업종별 조합 및 수산물가공조합의 설립 인가기준을 신설
- 조합의 상임이사 및 대표이사의 자격요건(법 제55조 제4항, 시행령 제31조, 제32조)
 - 상임이사와 중앙회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관계기관의 종사기간 10년으로 정합(강화)
- 전무의 자격요건 등(법 제61조의2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37조)
 - 간부직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법 제65조, 시행령 제35조)
 - 조합경영 건실화를 위해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 한도 규정
- 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법 제132조 제9항, 시행령 제40조)
 -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지 20범위로 제한하고, 금융 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5/100로 함(강화)
-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출연금(법제174조의2, 시행령 제40조의 2, 시행

규칙 제12조)

- 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회원조합의 출연금 납입기준 명시
- 중앙회의 회원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 운용(시행령 제42조 제4항)
 - 중앙회는 회원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 관리방법을 명시
-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법 제150조 제2항, 시행령 제42조의2)
 - 조합의 부실방지를 위해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법 제132조의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4조의10)
 - 중앙회는 우선출자 발행사항을 납기기일 2주 전까지 공고 및 통지함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시행령 제75조)
 - 수산, 은행 등 관련분야 1 0년 이상 종사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5년 이상 경력자
- 조합설립 등기와 사업개시 보고(시행규칙 제8조)
 - 조합이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등본 을 첨부, 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심사결과(2000. 5. 26)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과 관련 출자금이 인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하며 전무의 자격요건 조항을 삭제, 수정의결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4)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규제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 원산지 등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법 제26조, 제72조)
 -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 변형수산물 표시 위반행위시 시정명령 또는 파매금지 명령
 - 명령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설정 등(법 제28조. 제57조)
 - 외국과의 협약 등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점검 결과 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증명서 교부
 - 국내 생산·출하 전단계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행시에는 등록 및 이행증명서 교부

- 지정해역 등에 대한 조사점검 및 시료채취(법 제29조 제2항, 제31조)
 - 지정해역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위생조사의 실시규정 신설
- 이식용 수산물의 검역 불합격품의 폐기 또는 반송명령(법 제5 3조. 제5 4조)
 - 검역관은 검역에 필요한 시료를 무상채취할 수 있으며 포장재 또는 용수에 대한 폐기 또는 소독을 명할 수 있음
 - 불합격된 수산물에 대하여 장관은 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0. 6. 2)

- 안 제27조 관련 "판매금지명령조항" 삭제
- 안 제28조 및 제57조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같은 근거조 문으로 규정하여 "위해요소 중점과제기준" 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토록 수정의결 -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5)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개정안 규제삼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규칙 제3조)
 - 시설장비 관리자는 장비시설의 자체점검 및 정비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방법 및 기준
 - 시설장비에 대한 검사는 검사종류별 검사항목 및 기술수준에 따라 시행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6.9)

- 규칙안 제3조 제2항 관련 해석상의 혼란방지를 위해 "3년 이상"을 "3년간"으로 수정 의결
 -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6) 위험물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안 규제심 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의 시행근거 마련(안 제205조의 3)
 -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및 항만 내의 컨테이너 조작장 등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등이 규제대상 위험물 규칙에 적합한 지 의 여부를 점검토록 함

심사결과(2000. 7. 7)

• 원안의결

(7)항 로표지법 개정안 규제심 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1)

- 위탁관리법의 (변경)등록 및 권리의 승계 등(안 제4조의 3. 제4조의4)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 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시는 재등록 불허
-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안 제4조의6, 제20조)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1년 이내 영업 미개시 및 영업실적이 없을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토록 함
- 보고 및 확인(안 제4조의8)
 - 관리소홀 및 등록기준 미달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함
- 항로표지, 용품의 검사대행시설 지정 · 감독 및 취소(안 제15조의6)
 - 기존은 지정감독 사항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취소사유 5가지를 추가하여 강화

심사결과(2000. 7. 14)

• 안 제4조의6 제5호의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 중 "1년 이 상 계속하여 위탁관리업의 실적이 없을 때"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

(8) 수산업법 개정안 규제심 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1, 강화1)

- 영어조합법인의 육성(안 제9조의2)
 - 영어조합법인 설립이 불법이거나 사업실적이 전무한 법인 등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해어업의 금지(안 제73조)
 - 무기산(염산 등) 등 유해약품을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보관·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

심사결과(2000, 7, 21)

• 원안의결

(9) 선박직 원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2)

- 승무경력 개념의 명확화(안 제2조, 제5조 제1항)
 - 면허발급을 위한 승무경력을 국제협약의 내용에 부합하게 육상근무 경력을 제외한 선박에 승무한 경력만을 인정
-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연장 폐지(안 제8조)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자가 승무기간중 면허 유효기간(5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최근 6개월까지 인정해 주고 있는 유효기간 연장을 폐지

심사결과(2000, 7, 21)

• 워안의결

(10) 수산자원보호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3)

- 연안통발 어업이 붉은대게 포획시 그물코 규격 제한(안 제6조 제1항 제11호)
 - 연안 통발어업으로 붉은 대게를 포획할 경우 그물코 120밀리미터 이하 사용 금지
- 그물코가 작은 어구의 사용금지 기간 적용업종 확대(안 제7조)
 - 연안 안강망어업으로만 어구사용 금지기간을 적용해 왔으나 근해 안강망도 그물코가 작은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

심사결과(2000. 9. 15)

• 원안의결

(11)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정안 규제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11)

- 자원관리 수면의 관리(안 제12조)
 - 바다목장이나 인공어초 시설물 등을 설치한 수면을 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 동수면에 매립·준설·토석·사력의 채취, 어로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안 제10조, 제13조)
 - 수산업법에서 부과· 징수하던 수산자원 조성사업 부담금을 수산자원 조성금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동법으로 이관하고 부과면제대상 축소 및 부담료를 현 실화
- 수산질병 관리사의 면허(안 제15조)
 - 수산질병 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 수산질병 관리사의 금지 행위(안 제22조. 제23조)
 -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의사와 수산질병 관리사만이 수산 생물의 진료를 할 수 있게 함
 - 진료요구가 있을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진단서 발급 요구시 발급 의무화
- 수산질병 관리사의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안 제16조, 제19조, 제20조)
 -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금치산자, 마약·대마 등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등은 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대학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련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 등이 자격시 험 응시 가능
 - 부정행위로 관리사시험이 정지되거나 학력이 무효화된 자는 그 후 2회 시험 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 진료부 및 검안부 비치 의무(안 제24조)
 - 수산질병 관리사는 진료부와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토록 함
- 수산질병 관리원의 개선 및 휴 · 폐업 신고(안 제25조, 제27조)
 - 수산질병 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수산질병 관리원이 휴·폐 업시 신고하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사회 설립 인가(안 제30조)
 - 수산질병관리사회를 설립코자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설립허가를 받도록 함
- 수산질병 관리사 및 수산질병 관리원에 대한 지도 · 감독(안 제34~37조)
 - 수산질병 관리사 및 수산질병 관리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명령, 질병 진료상황 및 진료업무에 관한 보고의무 부여·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질병 관리사와 수산질병 관리원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 또 는 영업정지
- 수산질병 관리사의 연수교육(제3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질병 관리사에게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제도(안 제42조)
 - 수산생물진료원을 개설하지 않고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심사결과(2000. 12.6)

- 안 제30조의 수산질병 관리사회의 설립인가 조문은 삭제하고 민법 제32조(비 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를 적용토록 함
- 안 제32조의 수산질병 관리사에 대한 연수교육은 관련 단체 등에서 자율시행 토록 삭제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2.해양경찰청

가.지난 3년간 신설·강화규제현황

(1) 개요

•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신설규제 심사를 통해 20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규제 등록

(2) 주요신설·강화규제

- 동력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도 록 함
 - 면허구분: 1급면허, 2급면허, 요트면허로 면허의 용도별 분류 단순화
-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위탁하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면허시 현에 응시하도록 함
- 1 4세 미만자,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무면허 조종자, 주취중 조종자 등은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

- 해안으로부터 2마일 이상 원거리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레저활동을 하기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조종자, 동승자 및 레저 활동자는 레저 활동자가 사망하였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양경찰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
- 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과 위해방지를 위한 승선정원의 제한 등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레저용 선박 또는 레저기구는 해양경찰서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레저사업자 및 조종자는 레저기구의 안전점검, 기상상태 확인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결과

• 신설 · 강화규제 없음

제11절

늉림 분야

*집필자:전 홍부이사관(Tel. 3703-2191, jeonhong@opc. go. kr)

1 농림부

가.지난 3년간 신설 · 강화규제현황

(1) 개요

• 총 1 2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8 5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 규제 중 4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신설 · 강화규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불제 시행에 의한 환경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적으로 환경농업 신청시 교육(1회)을 이수하고, 비료 및 농약 사용대 장 기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과 인삼협동조합법을 각각 폐지하고 농업·축산업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해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설립
- 농협중앙회의 사업은 회원조합과 공동출자·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 의 사업과 경합되거나 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을 금지
- 농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기준·대상품목·절차 등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를 보호
- 농산물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 표시기준 · 판정기준 등을 규정

-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역관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남은 음식물을 육지로 반출할 때 확인 · 검사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인삼류의 검사업무가 민간 검사기관으로 이관하고 자율검사토록 규제를 완화 함에 따라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 ·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
-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미 · 보조사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체장(축협중앙회,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에게 신고토록 함
-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 및 출하 전단계에서의 잔류농약·곰팡이독소·식중독균 및 항생물질의 조사기 준을 설정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농림부는 2000년도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3건, 강화 31건, 내용심사 3건등 총 5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7건 중 7건 철회, 14건 개선 권고, 36건은 원안의결하여 농림부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18건임
- 농촌진흥청은 미생물농약의 등록 시험방법 및 기준(고시), 기타 비료의 생산시설 기준(고시)에 대한 규제의 내용심사를 하여 2건을 원안의결

(1)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위해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계획 및 회수결과를 제출토록 규제

심사결과(2000, 1, 28)

• 위해축산물의 체계적인 회수를 위해 원안의결

(2) 농업협 동조합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6)

-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지역조합의 출자금은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품목조합의 출자금은 현행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강화(제3조)
-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상근임직원 10년 이상근무 경력자로 규정(제6조)
-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조합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및 유가증권 매입 등 운용범위를 명시(제10조)
- 조합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자격은 조합의 감사, 회계 또는 농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공인회계사 등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제22조)
- 농협중앙회가 출자할 수 있는 금융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출자한도를 자기자본 의 15/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16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10000분의 15 이내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여 설 치·운영토록 함(제17조)
- 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경영지도(농림부 장관이 위탁)방법은 서면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지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심사결과(2000. 2. 11)

• 원안의결

(3)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격리와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8조, 제9조)
 - 돼지콜레라·구제역 등 6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 시·도지사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사육제 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가축 사육시설을 폐쇄 및 가축을 살처분하고, 기구 또는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게 봉인
- 법 행위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5조)

- 가축전염병의 발생신고의무·소독의무·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대료 처분항목을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원인 제공의 경중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규정

심사결과(2000. 2. 25)

• 가축 사육시설 폐쇄명령시 "당해 가축사육 시설 안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살처분" 규정은 삭제하도록 수정의결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4) 수입축산 물신 고 및 검사요령(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 수입 축산물의 신고(제5조)
 - 축산물의 수입신고는 수입당시의 선하증권 단위로 신고하도록 하고 다만, 동일한 선하증권 내에 서로 다른 품목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품목별 분할 수입신고 허용

심사결과(2000.3.10)

• 수입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원안의결

(5)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요령(고시)

십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십사)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제3조)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 대상품목을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로 함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기준은 "유전자변형(농산물명)"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포함 가능성 있음" 등 3가지로 표시하도 록 함

심사결과(2000.4.14)

•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안의결

(6) 가 축전 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2)

- 가축방역 보조원의 자격(제1조5)
 - 가축방역 보조원의 자격은 가축방역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였거나, 관련 자

격증을 소지한 자 등으로 규정

- 가축에 대한 검사 · 주사 · 약물중독 또는 투약의 실시(제3조)
 - 농림부 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방법·기준 및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소독 등의 실시명령(제4조)
 -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 도축영업자 가축시장 및 검정기관, 가축품평회장 등 의 준수 소독설비 설치기준을 규정.
 - 가축운송업자에게 소독장소를 지정하고 소독실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0.5.9)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원안의결

(7) 농 수산 물 유 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 률 시행령 ·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산지 농산물수집상의 등록 및 변경등록 대행제도 도입(규칙 제24조)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으로 하여금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조금 조성 및 보조금 지급승인(시행령 제8조)
 -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생산자단체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당해 자조 금 조성단체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야 함
 - 자조금 조성단체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조금 조성단체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거나 생산자 조직이 정비되어 있는 등 자조금 조성이 용이한 농수산물 중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으로 규정

심사결과(2000. 5. 9)

• 특정법인(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을 통하여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불필요한 등록경유 절차의 추가로 인한 절차 복잡, 회원 가입강제, 회비납 부 등 수집상에 대한 부담 가중요인이 있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도록 철 회권고

- 자조금의 조성은 생산자단체나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1항의 "…당해 자조금 조성단체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를 "…당해 자조금 조성단체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로 수정의결
- 보조금 지급대상 농산물의 생산량과 대상농산물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수 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수정의결

(8)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과대광고의 금지(제44조)
 - 동물용 의약품의 과대광고 금지범위에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광고와 주성분이 아닌 부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토록 규정
- 동물용 의약품 검정(제27조. 제31조)
 - 농림부 장관은 동물용 의약품의 원활한 검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동물약 품협회'를 검정보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용 의약품의 검정을 위한 시료 및 보관품의 시료 채취방법, 채취량, 기타 채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 5. 19)

- 동물용 의약품의 검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를 검정보조기관 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 등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민간단체에 전가하는 것으 로 타당하지 않은 만큼 이를 삭제
- 검정업무를 위한 시료채취는 현행대로 공무원 또는 동물약사감시원으로 하여 금 수행하도록 현행규정 존치토록 수정의결
- 검정을 위한 시료 및 보관품의 채취방법, 채취량, 기타 채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한다"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수정의결

(9) 사료검사 요령(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사료의 품질검사 의무(제11조, 제12조)
 -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현물검정의 경우에는 신고단체(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 도록 규정
 - 세관장 확인제외 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통관 절차 전이나 완료 즉시 해 당제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신고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후 유통 판매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6.2)

• "현물검정의 경우에는 신고단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검정수수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의 수수료 규정을 준용토록 수정의결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환지업무 대행법인의 요건 및 등록(시행령 제45조의 2,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19조의 4)
 - 환지업무 대행법인의 상시 고용환지사의 수를 10인으로 정함
 - 환지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환지사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등록사항을 변경 · 폐지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
- 환지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시행규칙 제19조의 7)
 - 환지대행 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 ·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2인의 환지사가 미달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미달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년
 - ·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2인 이내의 환지사가 미달한 날로부 터 5개월 이내에 그 미달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심사결과(2000. 7. 7)

- 규제개혁위원회가 협의과정에서 환지사를 20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도록 권고하고 농림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심사 요청하여 원안의결
- 환지대행 법인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중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2인의

환지사를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년"을 "업무정지 1년"으로 수정의결

• 상시 고용해야 하는 2인의 환지사를 5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를 삭제토록 수정의결

(11) 축산 물가 공처리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6)

- 미검사품 출입검사(제25조)
 - 축산물 취급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를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던 것을, 축산물 유통부조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실시하도록 함
- 축산물의 취급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 의무(제48조)
 - 축산물 취급영업자 종업원 자체검사원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위생교육제도 를 폐지하고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 산물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가축의 도살 · 처리기준 (제2조)
 -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처리를 위하여 기존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식육부산물의 위생관리에 미비한 간·내장 관련 위생처리 기준을 추가 규정
-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제6조)
 - 작업장(도축장·축산물가공장)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 기준(별표 2)에 위생적인 세척·소독·분변오염 관련 사항을 추가 규정
- 영업자의 준수사항(제51조)
 -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 규정
 - 소·돼지 도축업의 영업자는 검사보조원을 내장처리실에 고정 배치하도록 하고 도축장에 출입하는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하여 세척 및 소독 등을 실시 하도록 함
 - 집유업 영업자는 원유대금 이외의 보조성 경비를 지급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검사보조원의 시료채취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토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허위표시 · 과대광고 금지(제52조)

- "허위광고·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 규정에 적용대상 축산물에 '조제유류'를 포함하여 광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조제유류에 대한 광고를 금지토록 함

심사결과(2000.8.25)

- "…축산물의 유통부조리 방지를 위하여…"를 "…축산물의 거래질서를 위하여…"로 수정의결
- 축산물 취급 영업자 및 종업원의 위생교육 제도는 제56회 규제개혁위원회 (2000, 7, 7)의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서 원안의결
- 검사보조원의 내장실 고정배치 의무 및 가축 소독차량 소독실시 의무를 삭제하 도록 수정의결
- 집유업자의 집유보조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삭제하도록 수정의결
- 기타 사항은 원안의결

(12) 환경 농업 육성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6. 강화 2. 내용심사 1)

-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인증(제17조)
 - 환경농업육성법상의 "환경농산물의 표시신고제"를 폐지하고, "친환경농산물 의 표시인증제도"를 신설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표시인증의 신청절차 · 인증 · 지도감독 등(제17조 3 내지 제17조의 9, 제18 조의 2 제18조의 3)
 -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농림 부령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농림부 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
 -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등 업무감독을 할 수 있도 록 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인증품에 대해 인증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0. 10.6)

• 인증 유효기간, 지도감독, 인증기관, 지정절차 및 취소, 인증의 취소, 표시제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도록 수정의결

(13) 가축전염병예방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2)

- 검사 · 주사 · 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 등(제5조. 제5조의 2)
 - 농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주 사·약물목욕, 투약 또는 주사의 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축 이동시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휴대하게 하거나 당해 가축에 대하여 주사의 표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살처분 명령(제10조)
 - 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또는 가금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발생농장으로부터 일정범위를 정하여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강화

심사결과(2000, 10, 13)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안의결

(14) 사 로관리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3)

- 사료 안전관리인 배치 의무(제8조)
 -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선임·해임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토록 함
- 유해사료의 제조 · 수입 또는 판매 금지(제12조)
 - 사료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 · 수입 · 판매하거나 이의 원료사용을 금지해야 할 유해물질 등을 정함
- 사료 공정규격의 설정 및 혼합 제한(제13조, 사료의 공정규격(고시))

- 사료의 품질유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료 중 특정성분에 대한 함유량 과 혼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사료의 공정규격 중 곡물부산물 미강(쌀겨)의 산가를 70 이하로 정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설정(제1 4조)
 - 농림부 장관은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전과정에 사료별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 또는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사료 폐기 등 명령(제20조)
 - 농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검사 결과 유해사료 등일 때 사료검사원 이 직접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물품이나 폐기·회수물품에 대해 용도 및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2000, 10, 24)

- 사료안전관리인 배치제도는 도입하되 선임·해임 신고의무는 삭제하도록 수정의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되 사료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기준 준수의무 및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도록 수정의결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15) 농작물재해보험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1)

- 보험가입 자격(제4조)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로서 보험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로 규정
- 보험요율 승인(제6조)
 - 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작물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별로 보 험요율을 작성하여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손해평가의 공정실시(제10조)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손해평가방법, 절차 등에 따라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보험모집(제11조)
 -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사의 임직원, 보험사업자의 장이 인정하는 자 및 보험업법 제144조에서 정한 자로 하고, 보험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
- 모집에 관한 금지사항(제12조)
 - 모집인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 등 보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함
- 보험사업자의 회계구분(제13조)
 - 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관리하여 손익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제15조)
 - 보험사업자는 차년도 이후에 지급할 보험금이나 환급금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당해회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비상위험준비 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
- 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을 작성하여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7조)
- 재보험계약 승인(제18조)
 - 보험사업자는 재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 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험사업자의 보고 · 자료제출 의무(제21조)
 - 농림부 장관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보헙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응하도록 함
- 손해평가방법, 절차를 위반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 대료를 부과(제25조)

심사결과(2000, 10, 24)

- 보험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자격을 확대하도록 수정의결
- 농림부 장관의 보험요율 승인규정을 삭제하고 보험업무 약정시 보험요율도 포 함하여 체결토록 수정의결
-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손해평가방법, 절차 등에 따라 …"를 "농림부 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손해평가방법, 절차 등에 따라 …"로 수정의결

- 보험안내 자료의 기재사항은 삭제하고 보험업법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 록 수정의결
- 보험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대해 보험업법 제156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철회권고 의결
- 재보험계약 승인규정을 삭제하도록 수정의결
 - 재보험자의 보고 · 관계서류 제출규정, 관계기관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16)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원산지의 표시의무(제4조)
 - 최근 1~3년간 연평균 4회 이상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생산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4회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의 경우 당해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 표시 가능
 - 가공품의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당해원료의 원 산지표시는 국가기호(예:독일 → D E)표시 가능
 - 가공품의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이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당해 원료의 원산지표시는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 국명 표시

심사결과(2000, 11, 1)

• 가공품의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당해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국가별 코드"로 표시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수정의결

(17)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 분규격(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설정
 - 우유류의 유통기간을 현재 5일(0~10℃)로 규정된 것을 가공업체 자율로
 유통기간을 정하도록 하되 2002. 7.1일부터 시행토록 함
 - 식육가공품의 검사기준 "대장균 O157:H7: 음성이어야 한다(원료용 분쇄

육에 한한다)"에 "분쇄가공육제품"을 적용대상으로 추가함

심사결과(2000. 12. 1)

•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안의결

(18) 미생물 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기준(고시)

십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 미생물 농약의 등록시험시 경시변화 시험기준과 방법을 별도 규정(제3조)
 - 상온시험: 모든 품목에 대해 약효보증기간 동안 시험
 - 저온 안전성 시험: 0 ℃±2 ℃에서 7일간 시험(액상제형)
 - 시료 개체수 : 매 시험시 3~5개 시료 분석

심사결과(2000, 12, 22)

• 원안의결

(19) 기타 비료의 생산시설 기준

십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십사)

- 기타 비료의 생산시설 기준 설정
 - 비료의 종류 중 기타 비료(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액상석회, 수용성 분상석회)의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
 -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동력분쇄기, 동력체장치 등 생산시설
 - · 액상석회 : 반응장치, 여과장치 등 생산시설
 - · 수용성 분상석회 : 동력분쇄기, 동력배합기 등 생산시설

심사결과(2000, 12, 22)

• 원안의결

2.산림청

가.지난 3년간 신설·강화규제현황

1) 개요

• 산림조합법, 산림법 등 총 3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4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16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신설·강화규제

- 명승지, 유적지 등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및 산사태 위험지역 등 의 벌채허가를 제한
- 영림계획 인가취소 기준에 '산주가 시업(施業) 대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추가
- 산림형질 변경시 적지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에 도로의 절토면 · 성토면을 제외하도록 보완
- 산림조합과 중앙회의 영리 및 투기목적의 업무금지원칙 외에 회원사업과 직접 경합하여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을 금지
- 산림조합은 자기자본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하되,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하도는 연합회장이 정하도록 함
- 연합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및 경영평가를 위해 경영평가제 도입 및 개선 요구권 부여
- 부실조합으로서 파산위험이 현저하여 예금인출 사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 정하기 위한 경영지도 규정 신설
- 위법행위로 2회 이상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조합,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미이행한 조합, 설립인가 기준미달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산림청은 2000년도에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령에 신설 12건, 강화 11건, 내용심사 4건 등 총 2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7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 4건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21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림청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12건임

(1)산림조합법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4. 강화 2)

- 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인가기준 신설 · 강화(안 제4조)
 -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지역조항을 신설하고 조합원 수는 2,000인 이상, 출자금은 2억원 이상으로 강화
 - 전문조합 출자금은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
- 조합상임이사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8조)
 - 국내 조합과 중앙회에 종사한 경력을 임시직 등 비상근직 경력 10년 이상을 상근직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상근직 10년 이상자 등을 허용
-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 납입출연금 신설(안 제15조)
 -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을 신설 하고 출연금의 범위를 15/10,000 이내로 규정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안 제20조)
 - 조합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조합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장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
- 산림조합 경영지도업무 규제 신설(안 제23조~제26조)
 -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지도 방법 ·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심사결과(2000.4.7)

- 안 제4조 지역조합의 도시지역 조합원 수를 300인 이상, 출자금을 1천만원 이상으로 수정의결
- 안 제15조의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 납입출연금의 범위를 15/10,000 이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 후 "산림청장이 고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

(2) 산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강화 4)

- 보존임지 전용협의의 범위에 조림성공지와 산림경영임지 외에 "기타 협의대상 산림"을 추가확대(안 제2 4조 제5항 제2호의 나)
- 공 · 사유림내 채석허가 제한 강화(안 제91조의 5)
 -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 허가제한구역에 지방도 연변 500m 이내의 가시지역 으로 강화하여 지방도 주변의 가시지역 산림을 보호
- 산림사업을 대행, 위탁할 수 있는 법인 자격요건 명시(시행규칙 안 제2조의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 앙회 이외에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사업 시행 신청서를 당해 산림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함(시행규칙안 제 2조의 3)
-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협의를 함에 있어 산림형질 변경 제한지역 해당 여부, 실 측도와 현지 상황과의 적합 여부, 산사태 발생 가능성 및 인근지역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시행규칙안 제19조의 2 제4항 제3호 내지 제6호)
-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대상 확대(시행규칙 안 제8 8조의 3)
 - 임도목적으로 시행을 위한 "진입도로" "송배관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산림형질변경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산림 훼손 방지와 경관을 보호토록 함

심사결과(2000.4.14)

- 규제개혁위원회 검토의견대로 수정의결(강화 2건 삭제)
 - 보전임지 전용협의의 범위에 기타 협의대상 산림을 삭제
 - 보전임지 전용허가 심사기준에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여부 인근지역 재해 발생 여부 등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

(3)산림법 개정안 심사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5)

- 임도의 적정성 평가(안 제10조의5)
 - 임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의 객관적인 현지조사, 평가결과에 따라 임도노선을 설정·설치하도록 하고, 평가의 범위·방법·기준·기타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전임지 전용허가(안 제18조 제6항)
 -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행정처분과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동시에 처리 하도록 한 산림법 시행령을 산림법으로 상위 법령화
 - 주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보전임지 전용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보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 보안림의 지정 · 해제(안 제57조 제2호)
 - 보안림의 지정해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천재, 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함
- 조림대부 및 분수림제도(안 제75조 제1항 제2호. 제88조)
 - 조림대부 및 분수림제도를 폐지하여 국유림을 국가에서 직접 책임 경영관리 토록 함
 - 기 조림대부 및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수재배, 관상수 생산, 유실수 등 소득증대 관련사항은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
- 공·사유림내 채석 허가(안 제90조의 2 제4항)
 - 현행 채석허가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에만 채석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신규 채석허가의 경우, 허가신청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채석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현재 평가대상: 건축·공예용 1ha 이상, 쇄골재용

2ha 이상)

- 기존 허가지와 연접하여 확장하는 경우에는 절개면이 노출되어 매장량·석 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평가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채석업체의 부 담을 경감
- 산림의 복구명령(안 제91조 제3항)
 - 현행 법령내용이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만 복구의무가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자는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복구비용의 예치여부를 불문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는 행위 종료 또는 중단시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규정

심사결과(2000.8.25)

• 원안의결

(4) 수 목원 조성 및 진 흥에 관한 법 률 제정안 규제심 사

심사요청 및 규제내용(신설 5)

- 수목원 운영자의 등록 및 신고(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 수목원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고, 개원, 휴원, 폐원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등록·변경등록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규정
 - 등록수목원은 연간 산림청장이 정한 일수 이상을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도록 함
- 외국인과의 수목 유전자원 교류신고 의무화(안 제16조)
 -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 기타 관련 기관 등과 수목 유전자원을 교류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함
-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 의무(안 제18조)
 - 산림청장은 수목원이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를 받은 수 목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제 출하게 할 수 있음
- 수목원 등록 취소(안 제19조)

- 산림청장은 수목원이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 요건 미달·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등록을 제한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안 제20조 제1항)
 -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과 연접한 지역(광 릉)을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2000, 11, 9)

• 원안의결

제12절

과학기술 · 정보통신 분야

*집필자: 류충렬 과장(Tel. 3703-3944, crryu@opc. go. kr) 박응렬 과장(Tel. 3703-2183, parkerl@opc. go. kr)

1.과학 기술부

가.지난 3년간 신설·강확규제 현황

(1) 개요

• 총 4개의 법률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9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 규제중 17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신설·강화규제

-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방사선 취급 면허자를 의무고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 용역업체에 의해 방사선 관리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토록 업무대행자 등록제도 신설
-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도 사전확인 및 표준화 등을 위해 종전의 시설검사를 대신하여 제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대덕연구단지의 한정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 입주승인이 취소된 후 부지양도명령의 불이행시 일률적으로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것 을 당해 부지 공시지가의 20/100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제강 화
- 원자력발전소 사용중검사에 공사중검사를 추가

-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게 부과된 원자로의 운전조건 9가지 외에 원자로 운전 원에 대하여는 매년 약물복용, 정신질환 등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 는 자가 원자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추가
-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허가기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의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임 및 신고제도와 안전관리규정 승인제도를 대체하되 허가기준 중 인력기준을 추가
- 법에서 규정한 과징금 상한액인 5,000만원 이하 내에서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과징금액을 최고 500%까지 인상하고, 업무대행자·판독업무자 등 2개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과징금 조항 추가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과

개 요

- 2000년도에는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술개발 촉진법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7건, 강화 11건 등 총 1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8건 중 1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17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과학기술부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수는 7건임

(1) 원 자력 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3. 강화 10)

-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연수 경과에 따른 안전성을 10 년 주기로 종합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은 주기적 안전성평가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음
- 동일한 설계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하고 그 인가기준 및 유 효기간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종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 · 판매시에 한하여 허가하던 것을 생산시에도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함
- 원자력 관련 각종 보고 · 검사의무 대상에 원자력 특정품목 생산활동이나 핵연 료주기 관련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자를 추가하여 보고 · 검사의 대상범위를 확 대함
- 기존의 핵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의 건설 · 운영허가 기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의 확보요건을 규정
- 기존규제는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취급은 과기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나 국가과학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사선관리기술사만 하도록 규정했으나, 핵물질의 취급 등에 대해서는 면 허자 확보요건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아 혼란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법 제91조의 요건을 명시
-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 주기시설의 해체시 해체에 관한 품질보 증계획서를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해체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함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 이동사용 또는 판매시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 대상에 업무대행자를 추가하여 대행업무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도록 함
- 방사선발생장치 등과 방사성물질 운반용기를 제작하는 자에 한하여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외국에서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설계승인을 받도록 강화
- 방사선물질 운반시 신고대상에 대한민국 항구나 공항에 일시 입항하거나 영해 를 경유하는(선박의 경우에 한함) 경우에도 동 사실을 신고하도록 강화

심사결과(2000.8.18)

- 법 제23조의 3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의결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2) 원자력 손해배상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현재 9 0억원 한도로 되어 있는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 조치액을 단계적으로

3억 SDR(약 4,500억원)로 증액

심사결과(2000. 9. 15)

• 원안의결

(3) 과학기술기본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 기타 과학기술 관련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
- 과학기술인의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과학인은 자율적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9.22)

• 원안의결

(4) 기술개발 촉진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 누락규제 2건)

- 국산 신기술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 장관에 신청, 인정서를 교부 받도록 함(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심사·인정 업무를 대행)
- 기술개발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첨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토록 함.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심사결과(2000.12.1)

• 원안의결

2정 보통신부

가.지난 3년간 신설·강화규제현황

(1) 개요

• 총 2 3개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107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등록규제 중 17건의 규제를 강화

(2) 주요신설·강화규제

- 전자서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공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관련
 - "가입자와 이해관계없는 제3자"를 삭제하고, 공인인증기관과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체
 - 자본금 요건 중 100억원 이상 확보를 8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기타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규정 삭제
 - 운영인력 및 기술개발 인력의 필수 요건 중 각 제3호, 제4호 삭제
- 전파법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전기통 신연합에 사용할 위성궤도 및 주파수에 대한 국제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비용 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그 등록절차, 비용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 국내 우주무선통신에 미치는 전파혼신 등의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인이 운용하는 우주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여 우주무선통신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인체 위해 및 그 보호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파법에 규정함으로써 전자파 인체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나. 2000년 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결 과

개 요

- 2000년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1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4건, 강화 16건, 내용심사 5건 등 총 5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5건 중 2건에 대하여 철회, 16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37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정보통신부의 2000년도 총 신설규제 수는 32건임

(1)정 보통신 기반 보호법

십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3)

-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금융 · 통신 · 국방 등의 정보통 신 시스템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토록 하고, 지정된 업무를 폐지하 거나. 정지 · 변경할 경우 등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된 시설은 취약점 분석을 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 ·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기관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명령
- •취약점 분석 · 평가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 정보공유 · 분석센터를 설치 · 운영하거나 동 센터 업무를 정지 ·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센터관리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점검결과 필요시 시정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센터관리자는 조치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여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 정보통신부 장관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 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정보보호 전 문업체를 지정
- 양도 ·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심사토록 함
- 정보통신부 장관은 법 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정보통신부 장관은 일정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록·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토록 하고 지정이 취소된 경우 업무관련 자료를 반환·폐기해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 하지 않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거부공격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

십사결과(2000. 9. 29)

-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지 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정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2) 정 보통신 망 이 용촉진 등에 관한 법 률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8. 강화 5)

-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함과 아울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 속 등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그 사실을 이 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처리· 저장·유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부여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인되어 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당해 정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영리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형태의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사회적 범죄(명예훼손, 도박·사행행위 등 법46조에 열거되는 사항들)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 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부가적인 서비스를 위한 선택항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 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책임 자를 지정·관리하도록 함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동의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 정 요구 등의 권리를 수집시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함
- 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정보통신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위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 누구든지 고의로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지 못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10.27)

•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구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시

충분한 검토 필요(법 제22조)

- 이용자 권리에서 열람권과 정정권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하나,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항목의 리스트를 비치, 어떤 정보가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3)전 기통신 사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5. 강화 4)

- 기간통신 사업자는 가입자 선로를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공동활용을 요청할 경우 허용토록 의무화
- 기간통신 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무선통신설비의 공동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로밍을 할 수 있음
- 정보통신부 장관은 번호이동성 계획을 수립 · 시행
- 전국적인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국가 중요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핵심기간 통신 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대하여 정보화의 촉진,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성 의무를 부여
- 일정한 요건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의무화
- 대리점의 불공정행위도 전기통신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보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 비의 수거조치" 등을 추가함
-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신고없이 전기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사법적 제재 외에 역무제공 중지 및 전기통 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 사업자의 의무에 이용자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
- 전기통신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에 대한 기여의무를 "보편적 역무의 제공 또는 손실보전금 분담의무"로 명확하게 규정. 또한, 보편적 역무에 대한 기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신사업의 허가·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정지 등 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0, 10, 13)

• "정보통신이용고도화"는 "초고속망의 조기구축"으로, 국가 중요통신의 안정적

인 제공을 국가안보·군사·치안 등으로 구체화하고, "정보격차 해소, 정보통 신기술 개발에의 기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삭제

- "전기통신설비"의 개념을 한정하는 별도의 규정 신설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4)정 보통신 공사업법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정보통신 사업자는 정보통신 기술자가 동시에 2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하거 나 경력수첩을 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2000. 10. 13)

• 워안의결

(5)전 기통신 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1. 강화 1)

- 전기통신 사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통신자료 제공 현황통계 및 현장 기관 대표자 등의 확인서류를 보고함. 통신자료 제공대장은 접수일시, 요청기 관, 요청자 등을 기재토록 하고, 매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 통신자료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함.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신자료의 제공 및 이용자의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식인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그 기업결합 대상사업자도 동일 사업자로 보아 해당 역무에 대하여 이용약과 인가를 받아야 함

심사결과(2000, 2, 25, 6, 30)

• 통신자료 요청자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경우에는 '총경'을 명시하고, 전담기구의 설치와 관련, 규정운영시 전담기구의 조직 등에 대하여 기업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통한 제한은 불필요함. 향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법 개정시에 통신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정부기관에서 해당 기업에게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을 마련

토록 함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6)전 파법 시 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강화 1)

-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여부를 조사·확인해야 함. 주파수 할당 또는 주파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 공동사용의 조건을 정함. 자연환경의 보호 및 중복투자의 방지를 위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동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음

심사결과(2000. 3. 10)

-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 삭제
- 3항 본문상 "…자연환경의 보호 및 중복투자의 방지를…" 구문을 "…자연환경의 보호 등을…"로 변경함. 제3항 제3호(기타, 투자비용의 절감을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도심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수정의결

(7)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시행령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홍원 등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에 필요한 조직 및 심사원 · 인증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함

(나) 심사결과(2000, 7, 7)

- 인증기관 지정시 제9조 제1항 제4호(기타 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기관)을 삭제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8) 종합중계유선방 송사업 및 전 송망사업 의 허 가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절차 및 요건을 정함

심사결과(2000. 5. 9)

• 등록증 서식(별지 6호)의 "부관사항" 항목 삭제. 수정의결

(9)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1)

• 부정복제물을 수거 · 삭제 · 폐기 등을 한 때에 관계공무원은 수거증을 교부함.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 내에 부정복제물이 내장되었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 소유자 등의 입회하에 삭제할 수 있고, 부정복제물을 수거한 때는 비밀이 유지 되는 장소에 보관하고 소유자 등의 입회하에 폐기 가능함

십사결과(2000. 7. 7)

• 원안의결

(10)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통신사업자간 협정체결 관련 불공정 행위, 부당요금 청구, 부당한 계약체결, 시 외전화사전선택 제한행위, 결합판매 관련 불공정 행위 등을 금지하며, 요금업 체와 관련한 신용불량자의 등록을 제한함

심사결과(2000.8.25)

• 원안의결

(11)전 기통신설비의 안전 · 신뢰성 기술기준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고시적용대상으로 별정통신시설을 추가하고, 주요 통신국간 전송로 설비이원 화를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며, 주요 통신설비의 고장 등 비상상태 시 응급복구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체제를 명확히 함

심사결과(2000. 1. 28)

• 원안의결

(12) 정 보보호 시스템 평 가인 증지침 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신설 2)

- 부정한 방법 혹은 제품의 임의변경 및 필증의 무단사용 기타 평가결과의 변질 이 있을 경우에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취소시 일정기간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신청자격을 제한
- 비밀성 · 암호키 관리부분의 암호논리가 포함된 인증제품을 국가기관에 보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암호논리에 대하여 인증기관장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인증기관장이 제공하거나 평가 승인한 암호논리를 국가기관용 이외의 다른용도로 임의사용 또는 수정해서는 안되고, 인증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인증기관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심사결과(2000. 1. 28)

-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을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구체화하여 수정의결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13)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설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국선의 인입배관 설치의무를 업무용의 경우 현행 2공에서 3공으로 강화하고, 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또한, 중간단자함 과 관련 세대별로 세대단자함을 설치하고, 구내배선의 요건 및 기준을 정하며, 장치함의 크기 및 동축케이블의 배선요건을 정함

심사결과(2000. 1. 28)

• 장치함의 크기로서 "충분한 공간"에서 "충분한"을 삭제, 수정의결

(14) 기간통신 사업자의 양수합병인가 등의심사기준 및절차

심사요청 규제내용(내용심사 4)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의 인가 심사기준을 법률에서 정한 심사사항별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법률에서 위임한 기간통신사업 양수 · 합병의 인가심사 절차를 정함
- 기간통신 사업자의 양수 · 합병인가 심사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당사항을 일

간지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함

• 기간통신 사업자의 양수인·합병인 등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양수·합병 인가를 받을 때까지 양수·합병계약의 이행행위, 임원의 선임행위 등 양수·합병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 5. 9)

- 예외적으로 장관승인시 임원선임행위를 허용. 수정의결
- 기타 내용은 원안의결

(15)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

심사요청 규제내용(강화 1)

• 동일한 역무에 대하여 복수의 허가신청 법인간 경쟁이 있는 경우, 법인주주는 하나의 허가신청 법인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IMT 2000의 경우, 일시출 연금 부담을 구성주주가 하도록 함

심사결과(2000. 7. 21)

• 원안의결

건설산업 발전 견인하는 규개위 활동 기대한다

양기방(대한건설신문 편집국장)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산업이다.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할 수도, 퇴보할수도 있다. 결국 건설산업의 흥망성쇠는 정부가 어떤 제도와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 던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 도로 중요하다.

그동안 규개위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해 과감한 메스를 들이대 일정 부분 성과를 올린 게 사실이다. 실제로 여러 부문에서 불필요한 규제들이 완화 또는 철폐되어 기업활동에 적잖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란을 통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우선 주지의 사실이지만 규개위의 활동방향이 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이미 현장에서 사문화되거나 사

문화 과정을 걷고 있는 몇몇 법조항들을 손질하는 정도의 규제 완화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건설산업은 아직도 칸막이식 업역분류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건설업자간 하도급 제한, 일반·전문업자간 겸업 제한, 건 설업체의 건축설계 참여 제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 무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

건설산업은 수주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입·낙찰 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입·낙찰제도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의 경우 시공경험과 기술능력보다는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고 있는 현실이다. 당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잣대는 시공능력과 기술력이 무엇보다 절대적이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조달청 중앙집중발주 방식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요기관이 당해 공사 특성에 걸맞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사 특성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업체들의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는 바로 산업경쟁력과 이어진다.

이밖에도 지역공동도급제도와 부대입찰제 등은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규개위는 앞으로 정부 조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적 이고 과감한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 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 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제1절

자치단체 규제정비

* 집필자 : 전옥태 사무관(Tel. 3703-3935, jkj751@opc.go.kr)

1.추진 배경

- 1998년 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 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행정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자치단체별 규제개혁 성과의 정확한 전달 및 홍보 필요
 -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는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폐지, 완화, 존치)하여 민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품질을 제고
 - 법령에서 위임된 규제는 중앙부처의 규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례· 규칙 등을 정비,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는 폐지 또는 근거 마련
 - 지역단위별로 주민·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규제사무에 대한 개선 등을 받기 위한 자치단체별 규제신고센터 운영
 -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한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규제신고센터 설치를 반상회보,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 홍보

2.2000년 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현황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 총 규제사무수 8만 5,845건 중 규제정비대상은 5만 3,219건이며 이 중 95%인 5만 187건의 규제정비 완료
 - · 자치단체 평균 규제 346건의 62%(213건)를 정비(폐지 146건, 완화 57건)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 규칙정비
 - · 중앙부처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 규칙 등 1만 5,722건 의 정비대상 중 1만 4,269건의 정비(91%) 완료

정비현황

2000.12.31 현재

| 시 · 도별 | | 총규제 | 정비디 | 쌍 | ᄎ지시저 | | 상위법령 개정 | 비고 | | |
|--------|------------|-----------------|-----------------|-----|-----------------|-----|----------------|----------------|-----|----|
| | | 사무수 | 사무수 사무수 | | 추진실적 | | 계획 | 실 | 적 | 미ᅶ |
| | 계 | 85,845 | 53,219 | 62% | 50,187 | 95% | 15,722 | 14,269 | 91% | |
| 총계 | 광역 (평균) | 7,531 (471) | 4,844 (303) | 64% | 4,525 (283) | 94% | 1,294 (81) | 1,161 (73) | 90% | |
| | 기초 (평균) | 78,314 (338) | 48,375 (209) | 62% | 45,662 (197) | 95% | 14,428 (62) | 13,108 (57) | 91% | |
| 서울 | 광역 | 1,114 | 834 | 75% | 745 | 89% | 143 | 126 | 88% | |
| 시골 | 기초 | 7,556 | 5,410 | 72% | 4,984 | 92% | 1,499 | 1,316 | 88% | |
| HYL | 광역 | 436 | 266 | 61% | 260 | 98% | 73 | 69 | 95% | |
| 부산 | 기초 | 2,869 | 1,719 | 60% | 1,635 | 95% | 606 | 557 | 92% | |
| rll ¬ | 광역 | 407 | 239 | 59% | 235 | 98% | 88 | 85 | 97% | |
| 대구 | 기초 | 1,310 | 872 | 67% | 776 | 89% | 310 | 272 | 88% | |
| 이눠 | 광역 | 569 | 323 | 57% | 290 | 90% | 81 | 70 | 86% | |
| 인천 | 기초 | 2,776 | 1,762 | 64% | 1,637 | 93% | 513 | 444 | 87% | |

| == | | 총규제 | 정비디 | 쌍 | | | 상위법령 개정 | 에 따른 조례 · · | 규칙 정비 | |
|-------|----|--------|-------|-----|-------|------|---------|-------------|-------|----|
| 시 · | 도별 | 사무수 | 사무 | 수 | 추진실적 | | 계획 | 실 | 적 | 비고 |
| 고조 | 광역 | 503 | 270 | 54% | 258 | 96% | 97 | 91 | 94% | |
| 광주 | 기초 | 1,269 | 912 | 72% | 805 | 88% | 370 | 322 | 87% | |
| -IITJ | 광역 | 349 | 223 | 64% | 206 | 92% | 79 | 76 | 96% | |
| 대전 | 기초 | 1,315 | 926 | 70% | 898 | 97% | 305 | 295 | 97% | |
| 011 | 광역 | 474 | 342 | 72% | 318 | 93% | 59 | 47 | 80% | |
| 울산 | 기초 | 1,142 | 663 | 58% | 633 | 96% | 200 | 183 | 92% | |
| 74-1 | 광역 | 309 | 201 | 65% | 147 | 73% | 69 | 31 | 45% | |
| 경기 | 기초 | 12,600 | 6,846 | 54% | 6,355 | 93% | 2,244 | 1,858 | 83% | |
| 7101 | 광역 | 412 | 251 | 61% | 236 | 94% | 115 | 112 | 97% | |
| 강원 | 기초 | 6,700 | 4,453 | 67% | 4,292 | 96% | 1,287 | 1,232 | 96% | |
| 충ㅂ | 광역 | 314 | 181 | 58% | 174 | 96% | 58 | 52 | 90% | |
| 충북 | 기초 | 3,770 | 2,328 | 62% | 2,093 | 90% | 690 | 600 | 87% | |
| ネル | 광역 | 466 | 314 | 67% | 310 | 99% | 80 | 78 | 98% | |
| 충남 | 기초 | 6,088 | 4,192 | 69% | 4,021 | 96% | 1,003 | 966 | 96% | |
| 전북 | 광역 | 567 | 376 | 66% | 374 | 99% | 66 | 65 | 98% | |
| 신국 | 기초 | 5,999 | 3,743 | 62% | 3,637 | 97% | 937 | 900 | 96% | |
| 저나 | 광역 | 489 | 317 | 65% | 297 | 94% | 88 | 79 | 90% | |
| 전남 | 기초 | 7,987 | 5,095 | 64% | 5,087 | 99% | 1,452 | 1,448 | 99% | |
| 거ㅂ | 광역 | 381 | 217 | 57% | 207 | 95% | 81 | 76 | 94% | |
| 경북 | 기초 | 7,707 | 4,228 | 55% | 3,973 | 94% | 1,325 | 1,223 | 92% | |
| 건! L | 광역 | 332 | 256 | 77% | 256 | 100% | 78 | 73 | 94% | |
| 경남 | 기초 | 7,950 | 4,548 | 57% | 4,223 | 93% | 1,450 | 1,281 | 88% | |
| ᅰᄌ | 광역 | 409 | 234 | 57% | 212 | 91% | 39 | 31 | 79% | |
| 제주 | 기초 | 1,276 | 678 | 53% | 613 | 90% | 237 | 211 | 89% | |

3.향후 자치단체 규제정비 중점사항

가.잔존규제의 지속적 발굴ㆍ정비

- 자치단체별 잔존규제의 마무리 정비
- 규제사무의 등록 · 관리 전산프로그램 운영 개선
- 준공공기관(유사행정) 규제의 발굴 · 정비

나.규제정 비및 이행실 태현지확인 · 점검 강화

- 중앙 및 시 · 도 자체 점검반 편성 · 운영
- 행정감사를 통한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다.규제개혁 추진체제의 재정비, 운영 활성화

-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조정기능 강화
- 규제신고센터의 내실운영
 - 규제신고센터는 민원실로 일원화해 설치하고 대민홍보 강화
 - · 홍보내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주민이 알기 쉽게 게재하고 활용도 극대화
 - 신고된 규제는 신고대장 등 비치·관리, 처리결과는 신속 회신
-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 연찬회 개최, 교육원 교육, 직장교육 등 활용연수 실시

라.신설 · 강화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 및 심사 강화

•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되도록 규제 영향분 석 및 규제심사 철저

마.현장 체감지수 제고를 위한 대민홍보적 극전개

-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민홍보 방법에서 규제관련 단체·협회(회원) 등 직능별 계통홍보 방법으로 전환, 적극 홍보 전개
- 민원 처리시 관련 규제개혁 개선내용 병행 안내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규제등록서'등의 변동내용을 개선시마다 정리하여 대민홍보효과 제고

제2절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1.규제개혁 이행실태상시점검체계운영 강화

- 국무조정실과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합동으로 상시 점검단 인력 풀(pool) 을 구성하여 매 2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지침, 고시 등의 후속조치가 당초 규제개혁 취지와 내용에 맞는지 여부 점검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령 미근거 규제 발굴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설·강화규제 조사
 - 폐지·개선된 규제의 내용에 대한 자체교육, 행정집행 편람(메뉴얼) 작성 등 집행실태 점검
- 점검결과 부진사항 등은 즉시 시정하고 관계자 문책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 록 하며,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개혁 분위 기를 지속 확산
- ※ 1999~2000 자치단체 이행실태 점검결과
-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 제고를 위해 1999. 4. 1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조정관을 단장으로 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 '규제개혁 이 행실태 상시점검단'을 구성
 - 1999. 4. 19 ∼ 2000. 11. 28 사이에 정기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123개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 · 점검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62개 기초자치 단체
- 점검결과
 - 총 6회 점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54건의 부적정 운영사례를 적발하였으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영하는 등 규제법정주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자치단체 점검결과

| 계 | 폐지규제 계속운영 | 법령 미근거 규 제 | 법정서류 외 서류 징구 | 후속조치 지연 등 | 비고 |
|------|--------------|---------------|-----------------|--------------|--------------|
| 454건 | 150건 | 107건 | 141건 | 56건 | 중앙행정기관 제외 |

- 점검 후 조치결과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전 행정기관에 대한 교육·홍보실시 등을 국무 총리 지시로 시달하여 지적사항 및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 며,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문책토록 조치
- * 국무총리 지시
 - 지시 1999-10호(규제개혁 후속조치 조속 이행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추 진지시) 등 4회의 총리지시 시달
- * 관련자 문책
 - 경기도 의정부시 등 기관경고 2건, 징계 3건 5명, 훈계 및 주의 77건 111 명

2.국민제안 및 불편신고에 대한 환류체계 활성 화

•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군·구별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규제개혁 성과의 환류체계를 강화

- 각급 행정기관에 접수된 규제개혁 제안은 차상급 중간기관을 거치지 않고, 즉시 규제개혁위원회로 송부토록 제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시에 규제개혁 관련 민원 및 제안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 · 발굴하여 적극 반영

3.규제개혁 관련 교육의 내실 화

- 일선 행정기관의 규제담당 공무원 및 일반 집행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변화를 유 도하기 위해 규제개혁 관련 교육을 내실화
 -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교육 실시
 - ·총 1.658회 16만 9.344명 교육
 - · 규제개혁의 당위성, 개혁방안, 개혁내용을 숙지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개 혁추진과 개혁성과를 조기 확산
 - 각급 공무원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규제개혁 관련 강좌를 신설·보강토록 함으로써 분야별 규제개혁 사항 등을 교육하여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유도
 - ·13개 교육원에서 132회 7,749명 교육
 - 규제개혁 관련 법령의 정비가 확정되면 업무별 편람을 즉시 개정하여 담당공 무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4.대국민 홍보및 여론조사

-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일방적 단순홍보에서 벗어나 국민들로부터 직접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쌍방적 적극 홍보전략(이해관계 단체와의 좌담회 · 토론회 개최 등)을 구사하고
 - 규제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의 개혁실적을 분석·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반영
 - 총 351종(광역 24, 기초 327)의 책자, 팸플릿, 포스터 발간·배포

규제개혁 관련 네티즌 반응

아래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www.rrc.go.kr)에 게시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게시물을 특별한 편집 없이 소개하는 것임

약간의 판단 오류를 한 듯합니다.....

김봉수(규제신고센터 게시번호: 3024)

100

귀 위원회의 건승을 빕니다.

귀 위원회의 국가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약간 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먼저 방사선사는 단지 방사선이나 동위원소를 다루는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방사선사는 방사선이나 동위원소를 인체에 직접 노출하거나 투여하는 직업입니다. 정말로 위험하고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에서는 방사선사는 산업근로자로 분류하여 관 리한다면 방사선 치료 및 진료를 받는 환자는 얼마나 불안할까 요?

위 법률에서처럼 해석한다면 인체는 기계가 되는 건가요?

국가는 국민의 보건 · 의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방사선사 국가면허는 존속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자격에 대한 것은 철저한 규제로 확실한 보건·의료 지식인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세상을 위하여….

누구를 위한 규제고 무엇을 위한 검사인 가?

김병기(규제신고센터 게시번호: 1512)

소형 근린 상가건물에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한국승강기안전 관리원), E/V정기검사(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를 강제로 고액의 검사료를 지불하 면서 받아야 하는지요?

현실은 건물주들이 세입자 확보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와 안전을 위해서도 법에 따라 매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에게 용역을 주어 철저히 관리, 보수, 유지를 하여 사용하고있는데 고액의 검사료를 납부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중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결국 검사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모두 원가상승 요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이중 규제는 즉각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가 용승용차의 정기검사 횟수를 줄였다고 사고가 늘지 않았듯이 건 물주들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종류의 시설에는 각별한 주의 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시대적인 규제를 하루빨리 폐지 하여 개혁의 가시적인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게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처방전 인정,말도안되는일!!!

어떤 의사(규제신고센터 게시번호: 1416)

9월 20일 신문을 통해 인터넷 처방전을 의료보험 청구를 할수 있게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는 기사를 봤다. 의사의 진료행위란 무엇인가? 환자에 대한 문진, 시진, 촉진, 타진 및 필요시 검사행위, 방사선 촬영 등이 복합된 복잡한 행위이다. 하지만 현재의 인터넷상의 진료행위란 문진행위로만 구성된 상태이다. 쉽게 얘기해서 전화상담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진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모두 환자에게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규제할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생각은 말 그대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진료란 단순히 처방전이라는 문서를 발행하는 행 위가 아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인 것이다.

얼굴 한번 못보고, 혈압 한번 재지 않고 이루어지는 현재 수 준의 인터넷 진료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으며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도 우 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현재 수준의 인터넷 처 방전에 대한 규제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다 풀어 놓는다고 규제완화는 아닙니다

이장균(규제신고센터 게시번호: 1378)

안녕하십니까.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고 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의 기본요구인 의 · 식 · 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피해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요사이 매스컴에 온갖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도배 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알만한 사람에게는 이미 예고된 것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제조업소는 전체업소 중 약 10퍼센트만이 대형화·자동화가 되었고, 나머지 90퍼센트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한 업소입니다.

그 중에 식품을 전공하나 위생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이 몇분

이나 될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연탄공장을 하던 양반이 연탄이 사양산업으로 되어 장사가 안되니까 무엇으로 공장을 바꿀까 하다가 두부공장을 하 면 연탄 찍던 기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찍어내는 공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연탄공장을 두부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였 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것은 조금은 과장되고 우스갯소리 같은 말입니다만, 우리나라 식품공장이 다 이와 같은 상황이랍니다.

음식은 더럽다고 안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식품공장에서 최소한의 위생관리를 맡고 있는 식품위생관리인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그냥 쓰 레기장에서 음식을 주워 먹으라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규제완화도 좋습니다. 영세업자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이러한 의무고용제도를 없앴다고 합니다만, 과거의 위생관리인들이 회사에서 업주들에게 엄청난 인건비 부담을 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인제도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일어날 일들을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국민이 한마디 올렸습니다.

제7장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및홍보

제1절

이행실태 점검 개요

* 집필자 : 김경탁 사무관(Tel. 3703-2156, ktkim@opc.go.kr)

1. 점검체제 구축 및 점검활동

1.규제개혁 이행실태점검단 구성

'1998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법령, 조례, 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과 개선된 규제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독려하여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산·정착시키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지수를 제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규제개혁이행실태 상시점검단'을 구성(1999, 4, 18)하였다.

2점검단 운영 및 활동

점검단 구성 이후 정기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1999년중 4회, 2000년에 2회, 총 6회에 걸쳐 123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 구분 | 기간 | 점검반원 | 대상기관 |
|----|--------------------------|------------|---|
| 1차 | 1999. 4. 19 ~ 4. 24 | 15명 |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식약청 서울(종로구, 성북구, 강남구, 송파구), 인천(남구, 부평구), 경기도(의정부시, 남양주시, 용인시, 군포시) |
| 2차 | 1999. 7. 5 ~ 7. 13 | 15명 | • 대구(북구, 중구, 달성군), 대전(서구, 대덕구), 충남(공주시, 연기군), 전남(순천시, 강진군, 구례군, 해남군), 경북(칠곡군) |
| 3차 | 1999. 9. 13 ~ 9. 21 | 21명 | 교육부, 노동부, 관세청, 산림청, 식약청 부산(연제구, 중구, 기장군), 충북(충주시, 영동군, 옥천군), 전북(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경남(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부산 동래소방서, 충북 충주소방서, 전북도 소방본부, 경남 창원소방서 |
| 4차 | 1999. 11. 15 ~ 11. 23 | 21명 | 광주(동구, 서구, 광산구), 울산(남구, 북구, 울주군), 강원(춘천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청도군) 광주, 울산, 강원, 경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광주, 울산, 강원, 경북 소방본부 및 소방서 광주세관, 울산세관, 동해세관, 포항세관 |
| 5차 | 2000. 4. 17 ~ 4. 25 | 12명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서울시(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인천시(서구, 연수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
| 6차 | 2000. 11. 20 ~ 11. 28 | 13명 | • 대구시(수성구, 달서구), 충북(청주시, 보은군), 전남(여수시, 나주시), 경남(거제시, 통영시) |
| 계 | 연48일 | 연인원 97명 | • 15개 중앙행정기관, 22개 광역자치단체, 62개 기초자치단체, 소방분야 12개 기관, 경찰분야 8개 기관, 4개 세관 등 • 총 123개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

Ⅱ. 점검결과

1.점검실적

1999. 4월 이후 총 6회에 걸친 점검결과 총 490건의 부적정 운영사례를 적발하였는 바, 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를 계속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어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및 준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규제심사를 받지 않고 규제를 신설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운영하는 등 규제법정주의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 중앙행정기관 | | | | 지방자치단체 등 | | | | |
|------|--------|--------------|------------|-----|--------------|--------------|--------------|--------------|--|
| 계 | 소계 | 무심사 규제 신설 | 규제 누락 등 | 소계 | 폐지규제 계속운영 | 법령 미근거 규제 | 법정 외 서류징구 | 후속조치 지연 등 | |
| 490건 | 36 | 10 | 26 | 454 | 150 | 107 | 141 | 56 | |

^{*1}차(68건), 2차(91건), 3차(110건), 4차(86건), 5차(57건), 6차(78건)

2.점검 후 조치결과

국무총리 지시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전 행정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실 시를 시달하여 지적사항 및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중요한 지적 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문책토록 하였다.

〈국무총리 지시〉

- •지시 1999-10호 : 규제개혁 후속조치 조속이행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지시
- 지시 1999-17호 : 규제개혁 추진관련 법령 조속정비 및 이행철저 등에 관한 지 시
- 지시 1999-25호 : 규제개혁에 따른 관련법령개정 및 집행 등 철저한 후속조 치 지시
- 지시 1999-31호 : 규제개혁 후속조치 철저이행 등 지시

〈관련자 문책〉

- 기관경고: 2건 (경기도 의정부시, 전남 순천시)
- 중징계 및 경징계: 3건 5명
- 훈계 및 주의 : 77건 111명

제2절

5차 이행실태 점검

*집필자:김경탁 사무관(Tel. 3703-2156, ktkim@opc.go.kr)

1. 점검 개요

1.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 일시 : 2000. 4. 17(월)~4. 25(화)
- 대상기관 (15) : 중앙행정기관(4),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11)
 - 중앙행정기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광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기초 : 서울(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인천(서구, 연수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2.중점 점검사항

- 부처 정비계획(98, 99년) 및 핵심과제에 대한 후속 법령 제·개정 추진상황 점검
- 법령 미근거 규제 운영상황 점검
-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심사결과 이행여부 및 무심사 신설규제 확인

- 규제등록에 관한 정비상황 점검
- 법령 제 ·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상황
- 폐지 · 개선된 규제의 집행 실태
- 일선기관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적극적인 주지 · 홍보노력 등 일선기관의 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Ⅱ. 점검결과

1.총평

- 1999년도 4차례에 걸친 이행실태 점검과 감사원·중앙행정기관의 계속된 점 검이 이루어진 관계로 규제개혁 후속조치 및 이행실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 아직도 일부기관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규제개혁 3차년도를 맞이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노력이 요구됨

| 점검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지적건수 | 78 | 91 | 110 | 86 | 57 |

2.주요점검결과

•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미등록 규제를 운영하거나 고시 · 예규 등 자체법규 의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하는 사례가 있음 〈주요 지적사례〉▲ 해운법 제23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제24조(운항관리자)가 규제등록에서 누락되고 이를 근거로 한 '여객선 운항관리규칙(해양부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제를 미등록(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을 중심으로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개선된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 상위법령이 폐지·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운용하거나 관행적 인 법령 미근거 과다서류 징구 등의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지적됨

《주요 지적사례》▲ 건축법 제33조가 1999. 2. 8일 개정되어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 기준이 폐지되었음에도 2000. 2. 28일 하남시 신장동 519-11 최병력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조건 부여(경기 하남시)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접수시 법령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건설폐

기물협회 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주차장 사용계약서, 공원시설관리위탁증서 등 법정 외 과다서류를 징구(서울 마포구)

3.지적 사항

〈기관별: 15개 기관 57건 지적〉

• 중앙행정기관: 8건

| 기관 | 재정경제부 | 보건복지부 |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
| 지적건수 | 1 | 2 | 3 | 2 |

• 광역자치단체 : 7건

| 기관 |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
|------|-----|-----|-----|
| 지적건수 | 2 | 3 | 2 |

• 기초자치단체 : 42건

| 기관 | 서울 마포구 | 서울 | 서울 동작구 | 인천 서구 | 인천 연수구 | 경기 성남시 | 경기 하남시 | 경기 광주군 |
|------|-----------|----|-----------|----------|-----------|-----------|-----------|-----------|
| 지적건수 | 5 | 3 | 7 | 3 | 5 | 6 | 7 | 6 |

〈유형별〉

| 유형 | 폐지개선된 규제 계속운영 | 법령 미근거 | 과다서류 징구 | 미 등 록 규제 운영 | 조례정비 등 후속조치 지연 | 기타 |
|------|---------------|--------|------------|----------------|-------------------|----|
| 지적건수 | 24 | 5 | 20 | 5 | 2 | 1 |

4.분야별 점검결과

가. 폐지 · 개선된 규제의 계속운영

•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폐지·개선된 규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종전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음

《주요 지적사례》▲ 골재채취법 제5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0조, 동법 시행규칙 제1 9조의 개정으로 변경신고의무, 장비 비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등록조건에 과태료 처분 등을 명시하여 처리(서울 동작구) ▲ 환경 관련 환경관리인 개임신고제도는 1999. 8. 9일 환경 관련 법령(대기·수질 등)개정으로 폐지되었음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처리하였고, 폐지된 동내용을 별도로 공문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준수사항에 폐지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안내(경기 광주군)

나.법령 미근거 규제 운용 및 과다서 류징구

• 법령에 근거없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허가조건 등을 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일부 지적되었으며,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징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반려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사례 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

《주요 지적사례》▲ 수질환경보전법 제1 0조 제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이외 사업자등록증, 폐수수탁처리업등록증의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서울 서대문구,동작구) ▲ 1999. 2. 26일 광주군 초월면 선동리 76 우종남의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등록인가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없는 신청인확인서, 신청인각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징구(경기 광주군)

다. 조례정비 등 후속조치 지연 등 기타

• 법령 제·개정에 따라 즉시 정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의 하위규정의 정비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주요 지적사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99. 2. 8)에 따라 사업계획의 사전 결정 등이 폐지되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처리지침'(95. 3. 29 / 예규 제19호)도 정비되어야 함에도 점검일 현재까지 동 규칙의 개정이 지연(인천 연수구)

제 3절

6차 이행실태 점검

*집필자:김경탁 사무관(Tel. 3703-2156, ktkim@opc.go.kr)

1.점검 개요

1.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 일시 : 2000.11.20(월)~11.28(화)
- 대상기관(12) : 광역자치단체(4) 및 기초자치단체(8)
 - 광역 :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 기초 : 대구(수성구, 달서구), 충북(청주시, 보은군), 전남(여수시, 나주시), 경남(거제시, 통영시)

2.중점 점검사항

- 폐지 · 개선된 규제의 집행실태
- 법령 미근거 규제 운영상황 점검
-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한 심사결과 이행여부 및 무심사 신설규제 확인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 및 실시결과
- 법령 제 ·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상황

• 일선기관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적극적인 주지 · 홍보노력 등 일선기관의 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Ⅱ. 점검결과

1.총평

- 1999년 이래 계속된 점검으로 규제개혁 후속조치 및 이행실태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
 - 특히, 피검 자치단체들은 금년 3월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시달한 '지방자치단 체 규제개혁 모델'을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운영
- 그러나, 중앙에서 결정된 개혁방안을 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 각 중앙부처가 규제정비를 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하위규정 정비 에 곧바로 반영되도록 하는 전달체계 확립 필요
-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감사에 대한 우려, 사고발생시 책임에 대한 염려 등으로 법령 미근거 첨부서류를 과다하게 징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일선공무원 및 상급관리자에 대한 개혁마인드 함양 교육과 행정기관 자체확 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결론적으로 이번 점검결과 전체적으로는 이행실태가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일부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었음
-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유공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유인책과 주기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점검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
| 지적건수 | 78 | 91 | 110 | 86 | 57 | 78 |

2.지적 사항

〈기관별: 12개 기관 78건〉
광역자치단체: 23건

| 기 관 | 대구시 | 충청북도 | 전라남도 | 경상남도 |
|------|-----|------|------|------|
| 지적건수 | 3 | 5 | 8 | 7 |

• 기초자치단체: 55건

| 기관 | 대구 | 대구 | 충북 | 충북 | 전남 | 전남 | 경남 | 경남 |
|------|-----|-----|-----|-----|-----|-----|-----|-----|
| | 수성구 | 달서구 | 청주시 | 보은군 | 여수시 | 나주시 | 거제시 | 통영시 |
| 지적건수 | 6 | 8 | 7 | 4 | 9 | 9 | 6 | 6 |

〈유형별〉

| 유형 | 폐지개선된 규제 계속운영 | 법령 미근거 규제 운용 | 과다서류 징구 | 조례정비 등 후속조치 지연 | 기타 |
|------|------------------|-----------------|------------|-------------------|----|
| 지적건수 | 18 | 29 | 12 | 13 | 6 |

3.분야별 주요사례

가. 폐지 · 개선 된 규제의 계속운영

•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폐지·개선된 규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종전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음

〈주요 지적사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3조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변경사항 등의 신고시 설립신고증 및 변경신고증 제출의무는 행정자치부 고 시 2000-1호(2000. 1. 13)로 폐지되었으나,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수

리시 이를 구비서류로 제출받음(대구 달서구, 경남도) ▲ 2000. 1. 12일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용구 판매자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2000. 10. 9일 이상순이 신청한 의료용구판매업 등록을 처리하는 등 3건을 등록처리(충북 보은군)

나.법령 미근거 규제 운용및 과다서 류징구

• 법령에 근거없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허가조건 등을 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일부 지적되었으며,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징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반려조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음

《주요 지적사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8 7조에 의거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등록신청서류 중 기술능력 보유자는 자격증 확인으로 갈음토록 되어 있으나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 근무확인서와 상시근로계약서를 징구(전남도) ▲ 사료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사료제조업 등록신청시 법정 구비서류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사례(경남도)

다. 조례정 비 등 후속조치 지연

• 법령 제·개정에 따라 즉시 정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 하 위규정의 정비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

《주요 지적사례》▲ 농지법 제2 5조의 개정(99.3.31)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 기간 설정 및 임차료 상한설정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 '대구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도 정비되어야 함에도 점검일 현재까지 동 조례의 개정이 지연(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4.주요 수범 사례

〈경상남도〉

- 경남도지역 규제개혁 추진성과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경남도와 관내 시·군의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및 체감도를 평가하고 향후 중점추진할 규제개혁 분야 발굴을 위해 1999. 12. 16 ~ 2000. 1. 10에 2.400명에 대한 12개 문항의 설문조사 실시
 - · 도민들이 원하는 행정규제개혁 분야를 파악, 행정에 환류시키고 개혁의 체 감도 제고를 도모
- 유사행정규제(준공공기관) 규제사무 발굴 및 정비 추진
 - 준공공기관 규제사무 정비계획을 공고(2000, 10, 12)하여 1차로 지방공사인 경남 마산·진주의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 8건에 대해 규제정비 실시
-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2000. 11. 9~11. 20까지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및 공무원을 표창
 - 2000년도 경남지역 규제개혁 추진상황보고회 개최로 기관간 경쟁체제 유지 및 33건의 정비대상을 추가로 발굴하는 성과 거양

〈대구광역시〉

- 규제영향 분석서에 전문가 검토의견 첨부
 -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시에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전문적인 분야는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의가 효과적이고 용이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전문가 검토 의견을 첨부토록 함

〈전 라남 도〉

-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규제개혁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와 효과성, 개선사항을 파악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 기업인, 공무원 등 500명에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반영하고 공무워 교육자료로 활용

-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여수시)
 - 규제개혁 내용을 3회(2,000부)에 걸쳐 홍보책자로 발간하여 일선민원실, 통·리에 배포
 - 여수KBS 및 MBC방송에 출연하여 규제개혁 추진과정, 내용 및 향후 추진방 향 등을 설명하여 규제개혁에 시민참여 유도

〈충청북도〉

- 민원편의를 위한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청주시)
 - 전국 최초로 기존의 건축허가대장을 폐지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화함으로써 서류보존 및 관리, 통계작성상의 수작업 부담을 경감

제 4절

규제개혁 홍보

*집필자: 권용식 사무관(Tel. 3703-3936, sharky88@opc.go.kr)

1. 규제개혁과 홍보의 의의

- 규제개혁은 지식창출의 주체인 개인 ·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및 법적 · 제도적 장벽의 제거, 지식확산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전자정 부 구혀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됨
- 이러한 규제개혁은 정부의 지속적 추진노력 이외에도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개혁과제이며, 규제개혁 추진의 성공여부는 국민·시민단체·정치권의 지지 및 협조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개혁의 성과홍보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님
- 향후 규제개혁의 홍보는 기존의 개선내용에 대한 양적홍보에서 규제개혁 수혜층에 대한 집중홍보 및 일선공무원·지역주민에 대한 성과홍보를 통해 규제개혁의 대국민 공감대 확산과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한 질적홍보로의 전환을 추진

II. 2000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홍보

1.2000년 도 규제 개혁 주요 홍보실적

- 규제개혁위 출범 2주년(4.18) 계기 홍보
 - 규제개혁 추진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실시 및 홍보, 기자간담회 개최, 장관 기고문 게재, 규제개혁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규제개혁 추진성과 홍보 책자 및 1999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 등 홍보
 -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개혁 세미나 개최(2000. 3. 15)와 언론 브리핑 등을통한 홍보 실시
 -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2주년 분야별(경제, 사회분야) 규제개혁 추진성과 홍보, 규제개혁 추진 우수사례 등 홍보, 1999년도 규제개혁 홍보책자 발간, 한국경제신문 등 지상간담회 홍보(2000.4) 등
- 규제개혁 심사결과 브리핑 및 규제개혁방안 확정시 내용 홍보
 - 규제개혁위원회와 각 부처에서 직접 대언론(신문, TV) 브리핑, 분야별 관련 전문지, 홍보지 등에 소개
 -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 정비추진과 관련하여 해사신문 등 전문지의 특집 기획기사 게재(2000.12) 등
 - 매주 규제심사 관련 분과위 및 본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 실시 (2000년 중 보도자료 배포 74건, TV 등 인터뷰를 통한 설명)
 - 규제개혁 홍보관련 K-T V '정보파노라마' 내 '달라진 규제개혁' 협조 ·1999년 7월 셋째주부터 2000년 2월 중순까지 매주 방영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규제개혁위원회 주요 안건 및 심사결과, 보도자료 등 게재
- 국정홍보처 발간 '야호 코리아' 내 '규제개혁-이렇게 달라졌어요' 게재
 - 2000. 3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8회 게재
 - · 3월: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규제개혁
 - · 5월 : 병무행정 관련 규제개혁

· 6월: 벤처기업 창업 관련 규제개혁

· 7월: 건축허가 관련 규제개혁

·8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 폐지 관련 규제개혁

· 9월 : 대학 수업료 분할납부 확대 관련 규제개혁

·11월: 여권 효력기간 연장 관련 규제개혁

·12월: 공중위생업소의 신고제 폐지 관련 규제개혁

-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OECD 국별 종합심사를 계기로 대내외 인식 제고 및 보도자료 작성, 간담회 · 인터뷰 등 홍보
 - OECD 국별 규제개혁심사단 심사 및 정부·민간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2000.7)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담당관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교육·토론 등 연찬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분위기 조성 및 홍보
 - 제2차 중앙 및 지자체 규제개혁 연찬회 실시(2000, 5, 교육문화회관) 등
-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및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독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순회 중앙·지방 합동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홍보
 - 전북 고창군에서 2000. 12. 8일 중앙·지방합동으로 제66차 규제개혁위 원회 개최 및 지자체(전북도, 고창군) 규제개혁 추진현황 보고
- 지방자치단체별로 홍보책자 발간, 언론을 통한 개혁내용 홍보,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여론조사 등 다수 실시

2.기존 홍보에 대한 평가

- •지난 2~3년간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언론은 규제 개혁 성과에 긍정적이나, 일부에서는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 및 현장 체감률 의 저조, 일선 행정기관의 제도이행 미흡 등 비판적인 내용도 보도되는 사례가 제기됨
- 이러한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 미흡 및 낮은 현장체감률의 문제를 홍보 시스템 측면에서 분석할 때, 규제개혁 홍보효과 결집 및 효율성의 한계, 목표(Targeting) 불분명에 따른 홍보효과 극대화 도모의 한계, 일선공무원의 규제개혁 집행능력 부족 및 행태

문제, 그리고 홍보의 제도화 · 전문화 미흡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므로 2001년도에 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의 병행을 통해 중앙부처의 규제개 혁 추진내용이 일선현장에 확산 · 전파될 수 있도록 독려하되, 보다 다면적인 홍보방향으로의 전환을 추진토록 함

제5절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

*집필자:이재홍 과장(Tel. 3703-3934, jhlee@opc.go.kr)

1. 규제신고센터 설치 • 운영

-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규제개혁 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인터넷에 규제 개혁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에도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일반 국민을 비롯한 기업과 단체들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건의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규제개혁 건의 제출방법 〉

- 우 편 :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방 문 : 규제신고센터(정부중앙청사 206호실)

- 전화:02-722-9797,02-3703-21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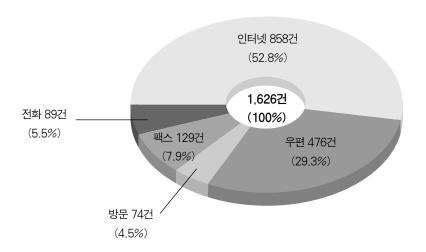
-FAX : 02-720-2056

- 인터넷: http://www.rrc.go.kr

Ⅱ. 국민제안 접수·처리실적

• 규제개혁위원회가 2000년중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한 규제개혁 제안은 총 1,626건으로 월평균 140건 내외이며, 제안방법은 인터넷 접수가 858건 (5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29.3%), 팩스(7.9%), 전화(5.5%), 방문 (4.5%)순이었다.

〈그림〉 접수방법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 제안과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택·건축 분야 196건(12.1%), 보건·위생 분야 157건(9.7%), 교육·학술 분야 143건(8.8%)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 분야 | 건수 | 분야 | 건수 | 분야 | 건수 |
|----------|-----|-----------|-----|---------|-------|
| 행정일반 | 35 | 재정경제 | 75 | 건 설 | 49 |
| 국적 · 출입국 | 3 | 전 매 | 18 | 수자원 | 1 |
| 법무 | 25 | 금융·통화 | 23 | 보건 · 위생 | 157 |
| 민사 | | 농지 · 농정 | 25 | 의료 · 약사 | 39 |
| 형사 · 교정 | 2 | 축산 | 14 | 사회복지 | 22 |
| 지방행정 | 57 | 산림 | 15 | 환경 | 66 |
| 경찰·교통 | 88 | 수 산 | 5 | 노동 | 107 |
| 소방 · 민방위 | 15 | 무역 | 3 | 관광 | 0 |
| 군사 · 병무 | 25 | 상·공업 | 16 | 운송 · 물류 | 124 |
| 국가 보훈 | 6 | 공업소유권 | 11 | 해운 · 항만 | 12 |
| 체육 · 청소년 | 22 | 에너지 | 32 | 정보통신 | 32 |
| 교육·학술 | 143 | 국토 · 도시개발 | 42 | 외무 · 여권 | 2 |
| 문화 · 공보 | 45 | 주택 · 건축 | 196 | 기타 | 42 |
| 과학 · 기술 | 3 | 토지·지적 | 23 | 계 | 1,6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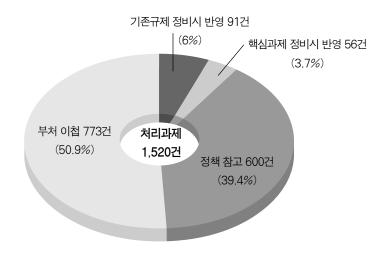
•제안 소관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 425건(26.1%), 보건복지부 199건 (12.2%), 교육부 144건(8.9%), 노동부 106건(6.5%), 행정자치부 103건 (6.3%)순으로 상위 5개 부처 소관 제안수가 총 977건(60%)에 이르러, 건설 교통·사회·복지·노동 등 법령이 복잡한 분야와 제안이 많은 분야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부처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 부처·청 | 접수건수 | 부처 · 청 | 접수건수 | 부처 · 청 | 접수건수 |
|-------|------|--------|------|--------|-------|
| 건설교통부 | 425 | 정보통신부 | 32 | 국방부 | 7 |
| 보건복지부 | 199 | 병무청 | 18 | 조달청 | 6 |
| 교육부 | 144 | 청소년보호위 | 17 | 국가보훈처 | 6 |
| 노동부 | 106 | 해양수산부 | 16 | 문화재청 | 5 |
| 행정자치부 | 103 | 산림청 | 15 | 관 세 청 | 5 |
| 경 찰 청 | 86 | 금융감독위 | 15 | 외교통상부 | 5 |
| 환경부 | 69 | 국 세 청 | 14 | 과학기술부 | 2 |
| 재정경제부 | 65 | 공정거래위 | 13 | 기획예산위 | 1 |
| 산업자원부 | 54 | 국무조정실 | 12 | 대검찰청 | 1 |
| 문화관광부 | 46 | 식 약 청 | 12 | 철도청 | 1 |
| 농림부 | 42 | 특 허 청 | 9 | 기타 | 29 |
| 법무부 | 38 | 중소기업청 | 8 | 계 | 1,626 |

•이러한 제안과제 1,626건 중에서 1,520건을 처리하고 106건은 검토중에 있으며, 처리한 과제는 기존규제 정비시 반영 91건(6%), 핵심과제 정비시 반영 56건(3.7%), 정책 참고 600건(39.4%), 부처 이첩 773건(50.9%)이었다.

〈그림〉 규제개혁 제안 처리현황



Ⅲ. 평가 및 향후계획

- 2000년도 국민제안 접수는 1999년도 2,141건보다 515건(24%)이 감소한 1,626건으로, 이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제출이 858건(52.8%)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제안의 내용면에서 볼 때 규제개혁과 관련된 제안보다는 개인적인 민원사항과 자신의 사업에 대한 개인의 편의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규제제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구현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규제사항 제 안이 매우 중요하므로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일부 보완하여 보다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정 부규제개혁성 과에대한 여론조사결과

규제개혁위원회

다음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0. 12~2001. 2월까지 총 4,312명(일 반국민, 주한 외국 기업인,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3개년 추진성과'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 규제개혁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 -조사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50.8%, 분야별 전문가의 63.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의 인지도는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체감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 -일반국민의 74.4%, 분야별 전문가의 82.0%가 규제개혁이 국민의 자율성 확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 -일반국민의 60.9%, 분야별 전문가의 64.0%가 '만족한다' 고 응답하였으나, 문화관광체육(37.3%)·농축수산(35.8%)·교육(32.4%) 등의 분야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존재하였으며, 또한 교통운송·건설 등 일부분야에서는 규제개혁이 '지나치다'는 평가(각 25.1%, 21.5%)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조사시 제기된 주요 미흡원인으로는

- -관치금융에 따른 실질적 제한, 잦은 정책변경에 따른 일관 성 부족, 관료들의 경직된 일처리 상존 등(금융·산업 분야)
- -각종 난개발, 업체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문란, 환경오염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미흡 등(건설, 교통운송, 농축 수산 분야)
- -근본적인 대책 부재, 영세사업자·근로자·청소년 등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미흡 등(교육, 노동, 문화관광, 보 건복지 분야)
- 단체 과다설립으로 인한 불화·반목 유발 및 회원 서비스 수준 저하, 제도적 악용 소지에 대한 근절대책 부족 등(사업 자단체, 일반 행정 분야)이 제기되었다.

국민의정부규제개혁체감도조사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다음 내용은 전경련이 2000년 9월 57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정부 2년간의 규제개혁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금번 조사에서 규제개혁 추진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 규제 개혁에 대해 전체 응답자 수의 62.72%가 '성과가 있다'고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 분야(80%), 물류·유통 분야(68.89%), 세제 분야(68.65%), 환경 분야(63.75%), 토지이용 분야(63.49%)는 높게 평가하였으나, 대기업정책·공정거래 분야(40.91%), 인력·노사 분야(50%), 안전·소방 분야(50%), 자금조달·금융 분야(53.85%) 등은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제개혁으로 크게 나아진 점이 어떤 분야인가에 대한 조사에

서는 크게 나아진 것으로는 대관(對官)업무(인·허가 등) 감소와 기간 단축(36.01%), 규제폐지 및 합리화로 비용절감(24.10%) 등 이며, 경쟁촉진, 규제폐지 및 합리화로 인한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은 34.04%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통폐합 등 중복규제 축소(47.00%), 공무원의 자질향상(서비스 정신 및 전문지식 함양)(16.76%), 공무원의 감축 및행정부처의 통폐합(13.7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절차 개선이나건수위주의 규제개혁에서 정부조직, 공무원, 관련 법령 축소 등정부조직 축소와 법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단위 : 업체수(괄호 안은 %)

| 구분 | 많은 성과 | 다소 성과 | 그저 | 별로 | 오히려 | 합계 |
|---------|---------|------------|------------|---------|----------|----------|
| | 있다 | 있다 | 그렇다 | 없다 | 악화되었다 | |
| 토지이용 | 2(3.17) | 38(60.32) | 23(36.51) | 0(0.00) | 0(0.00) | 63(100) |
| 물류·유통 | 1(2.22) | 30(66.67) | 13(28.89) | 1(2.22) | 0(0.00) | 45(100) |
| 환 경 | 5(6.25) | 46(57.50) | 28(35.00) | 0(0.00) | 1(1.25) | 80(100) |
| 세 제 | 1(1.49) | 45(67.16) | 20(29.85) | 0(0.00) | 1(1.49) | 67(100) |
| 대기업정책 | 0(0.00) | 9(40.91) | 12(54.55) | 0(0.00) | 1(4.55) | 22(100) |
| 건설 · 건축 | 0(0.00) | 10(62.50) | 6(37.50) | 0(0.00) | 0(0.00) | 16(100) |
| 인력 노사 | 0(0.00) | 10(50.00) | 8(40.00) | 1(5.00) | 1(5.00) | 20(100) |
| 자금조달 | 0(0.00) | 7(53.85) | 5(38.46) | 0(0.00) | 1(7.69) | 13(100) |
| 외환거래 | 0(0.00) | 8(80.00) | 2(20.00) | 0(0.00) | 0(0.00) | 10(100) |
| 안전 · 소방 | 0(0.00) | 5(50.00) | 4(40.00) | 0(0.00) | 1(10.00) | 10(100) |
| 전 체 | 9(2.60) | 208(60.12) | 121(34.97) | 2(0.58) | 6(1.73) | 346(100) |

제8자 규제개혁평가

제1절

규제개혁 3년의 종합평가

*집필자:이주선 박사(한국경제연구원)

1.규제 개혁 실적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취임 초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조 정관실을 그 독자적인 정부 사무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영삼 행정부 임기 말 입법화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입각하여 유일한 규제개혁기구 로서 공식적인 법률조직으로 출범하였다.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인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측 위원 6인과 민간측 위원 12인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의 성격을 가졌다. 정부측에서는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산업자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법제처장 등 6인이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인 위원들은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의 대표 등을 포함하여 임명되어 왔다. 규제개혁조정관실은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 휘하의 국무조정실에 소속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실무담당 공무원 조직으로 김대중 행정부 초기의 「정부조직법」에 신설되어 명실상부한 정부내 독자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규제개혁조정관실은 3개 심의관실을 운영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 정부내 실질적인 실무조직으로 확고하게 정착하고 있다.

가. 1998-1999년 도 규제개혁 실적

이와 같은 추진체계하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입각하여 총 1만 1,125개의 중앙정부 기존규제에 대한 등록을 시행한 이래 지난 3년에 걸쳐

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시행하였다. 1998년과 1999년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langle 표 1 \rangle 에 요약된 것과 같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98년 정부의 각 부·처·청이 등록한 총 1만 1,125개 규제가운데 48.8%에 해당하는 5,430건에 대한 폐지와 21.7%에 해당하는 2,411건의 개선을 추구하였다. 이는 사실상 등록규제 총수의 70.5%에 해당하는 7,841건에 대하여 폐지 내지는 완화조치를 계획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계획은 국회와 행정부의 소정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국회의 수정과계류상태 140건과 재심사 94건을 포함하여 총 234건의 개혁이 유보된 상태였다.

이에 더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되고 난 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신설된 규제 608건이 추가되었고 각 부처의 법령을 다시 전문가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1차 등록과정에서 누락된 규제들을 추가로 등록하게 됨에 따라서 다시 274건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비계획에서 확정하였던 잔존규제 5,695건을 포함하여 총 6,811건의 규제가 1999년 초까지 남아 있었다.

〈표 1〉 규제개혁 추진실적

1998~1999

| 1) 1998년도 기존규제 정비실적 | | | | | | | | |
|---------------------|---|-------|-------|---------|--|--|--|--|
| 구분 | 규제총수 | 폐지 | 개선 | 잔존규제 | | | | |
| 건수 | 11,125 | 5,430 | 2,411 | 5,695 | | | | |
| 2) 1998년도 정비 이 | 2) 1998년도 정비 이후 규제총수의 변경내역 [*] | | | | | | | |
| 구분 | 국회수정/계류 | 재심사 등 | 신설심사 | 누락규제 등록 | | | | |
| 건수 | 140 | 94 | 608 | 274 | | | | |
| 3) 1999년도 개혁대성 | 3) 1999년도 개혁대상 규제 정비실적 | | | | | | | |
| 구분 | 정비대상** | 폐지 등 | 개선 | 잔존규제 | | | | |
| 건수 | 6,811 | 503 | 570 | 6,308 | | | | |

^{*} 규제총수의 변경내역별 건수 합계는 1,116건임

^{** 1999}년 정비대상 건수=1998년 잔존규제수+변경내역별 규제수

[※] 자료: 이주선 외(2000), p. 62.

1999년에는 대통령이 1999년 2월 2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규제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들의 타당성을 민간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검토하여 불합리한 것을 추가로 폐지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6,811건에 달하는 잔존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민간연구기관 15개와 국책연구기관 15개 등 총 30개 연구기관에 의뢰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재정·금융, 산업·건설, 행정·복지, 교육·문화·노동, 농림·해양 및 환경·정보 등 6개 분야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잔존규제의 존치 여부와 질적 개선방안을 집중 심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1999년도에는 잔존규제 총수의 7.4%에 해당하는 504건의 폐지와 8.4%에 해당하는 570건의 개선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규제정비 과정을통해서 2000년 3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의 총수는 6,308개에 달하고 있다.

나. 2000년 도 규제개혁 실적

규제개혁 추진 3차년도인 2000년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지식·신기술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문화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규제품질 제고 및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사회적 규제의 수단과 방법 합리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단체 등 준공공기관의 유사규제 정비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노력은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은 실적을 보였다. 지침, 내규 등 하위 행정규정에 입각한 총 2,533건의 규제와 협회, 공단 등 정부산하기관의 각종 규정에 입각한 유사행정규제 1,675건을 찾아내어 이 가운데 57.2%에 해당하는 2,405건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는 실적을 올렸다.

〈표 2〉 2000년도 하위 행정규제 정비실적

| 구분 | 규제수 | | 정비실적 | |
|--------|-------|-------|------|-------|
| 1 E | Π^ 〒 | 폐지 | 개선 | 계 |
| 하위규정 | 2,533 | 668 | 549 | 1,217 |
| 유사행정규제 | 1,675 | 927 | 261 | 1,188 |
| 계 | 4,208 | 1,595 | 810 | 2,405 |

[※] 자료:규제개혁위원회(2001), p. 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총 2,533개 규제 가운데 26%인 668개 규제를 폐지하고 22%에 해당하는 549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행하여 총 하위규제수의 48%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였다. 한편 협회나 공단 등 정부산하기관이 행해 온 유사행정규제의 경우에는 총 1,675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그 가운데 55%에 달하는 1,476건을 폐지하고 15%에 달하는 261건에 대한 개선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하위규제 정비는 1998년과 1999년도에 행하여진 대대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애로(bottleneck)가 발생하여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던 규제개혁을 정상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규제개혁이 사회적인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올바른 정책수단임을 입증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81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2000. 9. 27)'을 마련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함은 물론 그 가운데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절차 마련, 인터넷 환경하의 상표권 보호방안 마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 도입 등 26개 과제에 대한 정비작업을 계획대로 완료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의 기업부담 경감과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핵심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건의를 검토하여 그 가운데 1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촉진을 통한 규제개혁의 체감도의 강화를 위해서 시·도, 시·군·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규제개혁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대민접촉의 직접적인 창구인 지방행정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 모델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균 총 규제사무 346건의 62%에 달하는 213건을 규제정비 목표로 설정한 후 2000년말까지 목표대비 95%에 달하는 평균 203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간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의 인프라 확장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에 더하여 규제개혁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2회나 시행함으로써 규제개혁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표 3〉과 같이

〈표 3〉 신설 · 강화규제의 심시실적

| 구분 법령수 | 심사대상 | 심사결과 | | | |
|--------|------|-------|------|------|------|
| T판 | 규제 | 규제수 | 철회권고 | 개선권고 | 원안수용 |
| 건수 | 406 | 1,102 | 94 | 306 | 702 |
| 비중(%) | | 100.0 | 8.5 | 27.8 | 63.7 |

※ 자료: 규제개혁위원회(2001), p. 4.

행하여 규제총량에 대한 관리에도 진전이 있었다.

2.규제 개혁 실적 평가

2000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은 중앙정부의 경우 양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 그실적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1998년과 1999년도 규제개혁이 시행되고 난 후 신설규제의 증가에 기인해서 전체 등록규제 수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1998년과 1999년에 걸친 규제개혁 과정을 통해서 등록규제 총수의 50%에 달하는 규제의 폐지가 이루어졌고 이에 더해서 약 20%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므로 실제로 신설규제의 증가로 인한 규제총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규제 수는 절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앞의 〈표 2〉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지침·내규 등 하위 규정과 산하기관의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시행하여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여 온 하위행정규제에 대한 상당한 제거와 개선에 진전이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규제의 개혁에 성과를 시현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0년도의 양적인 규제개혁 성과도 현 정부 1년차와 2년차의 성과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라 할 수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르는 제도적 인프라의 확립에 발맞추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도적인 정비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비록 그 성과가 가시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니셔티브는 향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더구나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를 지속하여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안이 그대로 수용된 경우가 63.7%밖에 되지 않는 등 행정부 내부의 규제신설에 대한 제약조건을 강화함으로써 규제관리에 있어서도 2000년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를 기준으로 볼 때 규제개혁의 추진이 이제는 정부개혁 엔진의일환으로 확고하게 정착하게 되었다는 판단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3.규제 개혁 성과에 대한 비판의 원인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이 미흡하다" 든지 "규제의 무조건적인 폐지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과 부작용이 크다" 든지 하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왜 대대적인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과 대안의 마련은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대단 히 중요하다.

우선 이러한 비판의 근저에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소요된 시간차(time lag)가 존재하므로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데 따른 피규제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규제개혁은 구조개혁을 의미하며 그 개혁의 제도화 과정에 대단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효과는 현 정부가 개혁을 완료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차기정부나 차차기정부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사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위 행정규정들의 변경과 행정행태와 관행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규제개혁의 당위성과 장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의 가시화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규제개혁은 기득이권자의 이익을 축소하거나 손실을 발생시키고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는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손실을 축소시키는 이해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 일반국민에게 개별적으로는 사소하게 발생하는 반면 그 손해는 집중적으로 기득이권층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규제개혁의 이익을 향유하는 그룹의 규제개혁에 대한 옹호는 약한 반면 규제개혁으로 인한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기득이권층은 이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하게 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기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개혁을 중단시키나 지연시키려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득이권층의 이해관계가 규제개혁의 부작용이나 규제개혁의 미흡을 비판하는 근저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규제개혁이 현 정부 집권 초 2년 동안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양적인 측면에서의 대규모성에 비해서 질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한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이 특정한 단계에서 미흡하여 애로가 발생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상쇄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원인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은 그러나 하위 행정명령이나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제의 개혁을 통해서 2000년도 규제개혁에서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규제개혁의 과정에서 규제총량을 제약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설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미흡이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총수의 관리를 위해서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규제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수의 증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현정부 규제개혁 이전 수준으로 규제총수가 증가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규제개혁은 정부의 기능조정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조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에 상응하는 정부개혁 노력이 다양하게 경주되어야 규제개혁의 성과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구조의 개혁이 규제개혁과 맞물려서 적절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회의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규제개혁 방향의 일관성 부족이 비판을 초래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은 시장경쟁을 전제로 한 제도적 인프라의 확립과 인센티브 체계의 개편을 목표로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가운데 일부는 이러한 일관성을 결여한 채 과거의 간섭과 규제, 보호와 육성, 사업자간 이해관계의 조정에 치중함

으로써 개혁과정의 일관성을 손상시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개혁과정의 일 관성 부족이 비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규제 개혁 여론조사 결과와 시사점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규제개혁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직접적으로 당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는 집단에서는 74.4%, 해당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집단에서는 82.0%로 나타나 규제개혁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의 수준에 대한 규제개혁 체감집단의 만족도는 60.9%, 전문가집단의 만족도는 64.0%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규제개혁 수준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인지도는 효과체감집단의 경우 전혀 모름 36.6%를 포함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문가집단의 경우에도 규제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는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비판이 상당부분 규제개혁에 대한 인지도의 미흡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규제개혁은 규제개혁 과정 자체의 관리뿐만 아니라 피규제대상이 되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데도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정책적 시사점

위에 나타난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부분 편파적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은 향후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제 그요인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고려와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규제개혁 과정이 특정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단선적인 파괴과정이 아니라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 단계로 진입하여야 한다. 규제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규제의 사전심사제도, 규제의 등록,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기존규제의 부처별 자체정비 의무 부과 등에 더해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규제대안이나 비규제적대안을 개발·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규제개혁이 일회성의 전시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정부기능의 유연한 변화를 보장하는 항구적인 수단으로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야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므로 개혁의 당위성과 이익을 홍보하는 데도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등록규제 총수의 약 60%가 경제적 규제이므로 이를 산업별·기업활동 단계 별로 분류하여 개혁이 미진한 산업과 기업활동 단계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부문에 대한 규제지도(regulatory map)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하다. 규제지도의 작성은 특정한 산업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애로를 해소하여 개혁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규제총량의 증대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행정 각 부처가 규제를 늘리기 위해서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반드시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총량제의 실시는 규제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저지하면서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규제개혁, 민영화, 정부조직 개편, 재정 및 예산개혁, 지방화 등 공공부문 개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부개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설치한 정부개혁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개혁은 부문별 개혁 상호간의 일관성 결여로 개혁의 효과를 상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혁과정의 부작용은 개혁 저항세력의 강화를 가져와 결국 개혁의 지연 내지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다섯째, 규제개혁이 경쟁원리에 따르도록 개혁과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능동적인역할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으로 변화된 제도가 일관되고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감독자가 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스스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예컨대, 현재 공정거래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경제력 집중억제정책이 유연성 제고, 대외개방 확대, 다양성 인정, 시장화 진전과 분권화 촉진이라는 규제개혁의 목표에 부합하는가를 재검토하여 그 행위규제를 포기하는 대신 대외개방의 가속화와 각종 진입 · 가격규제 폐지를 촉진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제2절

경제 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집필자 : 이승철 박사(전국경제인연합회)

참고문헌

이주선 외(2000), 『행정규제의 성격별 분류와 개혁방안』, 국무조정실 용역보고서. 규제개혁위원회(2001), "2001년도 정부 규제개혁업무 추진계획",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2000),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규제개혁위원회. 한국갤럽(2000), 『규제개혁 여론조사』, 국무조정실 용역보고서.

1.규제개혁의 배경 과성과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는 우리 경제가 IMF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던 시기였고, 특정집단의 이익보다는 국가적 생존이 우선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목표로 정부규제의 전면 정비작업에 착수하였다. 규제개혁 작업은 주로 경제회복을 위하여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다수부처의 법령이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과거에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중점과제에 대한 개혁작업도 추진되었다.

1998년 한 해 동안 전체 기존규제 총 1만 1,125건 중 절반수준인 5,430건을 폐지하고 2,411건을 개선하는 등 총 7,841건(70.5%)을 정비하였으며, 1999년에도 잔존규제 5,675건 중 1,073건(15%)을 추가로 정비하였다. 이 시기에 달성한 규제개혁의 성과는 경제위기라는 비상시기가 아니었다면 각종 이해 관계자의 반대에부딪혀 도저히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규제개혁 추진 3차년도인 2000년도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규제개혁위 원회는 '신지식·신기술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문화의 창출'을 목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권 출범 2년 동안 이루어진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적인 규제개혁에서 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의 품질재고에 노력하였다.

2.경제적 규제개혁의 평가

가. 기업인 에 의한 평가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여러 기관과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규제의 대표적인 피규제집단인 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평가를 중심으로 지난 3년간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전경련은 현 정부 초기 2년 반 동안 토지이용·건축, 물류·유통, 금융, 세제, 대기업정책·공정거래 등 주로 경제적 규제를 중심으로 기업활동과 관련한 총 10개 분야에서 추진된 규제개혁 성과와 규제 개혁 수준에 대해 기업체 종사자들의 체감실태를 조사하였다. 총 10개 분야 575개

기업체 종사자 중에서 346명이 응답(응답률 60.2%)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 수의 63%가 '성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피규제자인 기업인들의 63%가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그동안의 규제개혁 작업이 기업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 분야(80%), 물류·유통 분야(69%), 세제 분야(69%)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으나, 대기업정책 분야(41%), 인력·노사 분야(50%) 등은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IMF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체 응답자의 2/3가량이 현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분야별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토지이용 분야에서는 개발부담금 완화,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등 토지 공개념 관련 제도의 폐지 및 개선, 토지거래신고제도 폐지, 수도권 지방세 중과세 완화 등이 잘된 과제로 지적되었다. 반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제도의 폐지를 비롯하여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폐지가 미흡하여 가장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부문으로 선정되었다.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보세운송제도 개선, 화물터미널 등록제도 개선 등이 잘된 과제로 지적되었다. 반면에 항만시설 관리제도 개선, 화물터미널사업 등록제도 개선 등은 개혁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못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세제 분야 개혁도 매우 잘된 규제개혁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IMF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지원수단인 구조조정 지원세제 도입과 법인세법상 기업합병·분할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등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이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및 개선을 세제 분야에서 잘된 과제로 들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가 기업들에게 장래 투자목적의 토지 확보에 과도한 제약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규제개혁으로 오히려 불편하게 된 과제로는 손비처리기준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는데, 기밀비 폐지로 경조비 처리가 곤란하며, 10만원 이하의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이 금지되고 법인카드 사용이 강제됨에 따라 지방사업자의 경우 영세상인들과의 거래가 불편해졌다고 지적하였다.

대기업정책·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제한요건 완화, 제한적 최저입 찰제 폐지, 시장지배사업자의 고시제도 폐지 등이 잘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과제로는 출자총액규제의 폐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또는 완화, 계좌추적권 시한연장 취소, 지주회사 설립·전환요건의 추가 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심사요건 완화 등이 지적되었다.

건설·건축 분야에서는 아파트 분양부문이 가장 잘된 개혁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아파트 미분양 해소 및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 분양권 전매 허용, 채권입찰제 및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등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대부분 규제완화 조치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의 문제로 지적된 것은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인데 시장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가 건설업체의 난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자금조달·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개혁과제가 가장 잘된 규제개혁으로 평가되었고, 유가증권 발행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가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과제로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조기 완료, 워크아웃 기업 회생 및 퇴출의 조기 결정, 회사채 시장 마비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대책,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관리 개선 등이 있다.

나. 효과체감집단 및 전문가집단에 의한 평가

전경련의 조사가 주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반면, 한국갤럽이 2000년 12월에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여론조사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을 포함한 효과체감집단과 전문가집단까지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규제개혁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주로 자신의 이익에 입각해 규제개혁을 평가하는 반면에 일반국민이나 전문가집단은 보다 객관적으로 규제개혁을 평가할 것이므로 그들에 의한 평가는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 이 조사는 1998년 이후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된 규제를 위주로 총 11개 분야 34개 규제를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규제개혁의 인지도 조사에서 전체 효과체감집단 조사 대상자들의 37%가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13%는 '말만 들어본 정도'라고 대답해 규제개혁 조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가집단은 84.0%가 규제개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효과체감집단의 74%, 전문가집단의 82%가 규제개혁의 추진이 국민들의 자율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규제개혁에 대해 큰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결국 다수의 국민들

은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동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개혁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효과체감집단의 61%, 전문가집단의 64%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응답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였으나, 지나치거나 미흡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아 각 분야별 충분한 실태조사를 거쳐 개혁의 범위와 속도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분야별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의 67%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사실 금융규제는 적어도 규제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은 대부분 개혁되었으나 관치금융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건설 분야에서는 경제위기 초기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개혁되었으나 전문가의 35%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이 별로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다소 많았으나 이는 진입규제와 가격규제의 폐지가 과당경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경쟁촉진과 시장안정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이나 산업 분야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규제개혁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효과가 재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위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있거나, 인·허가 규정이 모호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규제개혁 조치들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한 전문가들은 농축수산 연구분야 투자확대나 농수산물 도매시장기능 활성화 등과 같이 농축수산 분야의 지원성 조치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여 규제개혁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응답을 하였다.

다. 기타 종합적 인 평가

과거 사소한 규제를 단편적으로 개선하는 규제개혁에서 핵심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규제 분야에서는 정책분야별 중점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핵심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특히 경제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진입과 가격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다수 부처의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제를 선정하여 1998년 37개, 1999년 33개, 2000년 64개의 중점과제를 정비하는 등

핵심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은 상당 수준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판단 등의이유로 아직도 일부 핵심규제가 남아 있으므로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효과가 큰 핵심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과제의 발굴이 정부 중심에서 피규제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특히 경제적 규제의 피규제자인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정부는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다. 경제5단체에서 건의한 핵심규제개혁 22개 과제를 검토, 1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규제개혁은 사후조치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감시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상설 규제개혁기구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신설·강화규제의 효과적인 감시에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규제 분야에 있어서 284개의 법령에 걸쳐서 764개의 신설·강화규제를 심사하여 이 중 510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원안수용을 하였으나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는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신설·강화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어느 정도 해당 부처에서 수용하였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도 신설·강화규제의 감시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보다 많은 정책적 자원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3. 개선 해야 할 점

규제영향 분석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보다 철저히 하여 비용이 편익보다 큰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설·강화를 불허해야 한다.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입증책임을 해당 부처가 지도록 하게 하여 각 부처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데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 또는 '신지식·신기술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문화의 창출'이라는 규제개혁 슬로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목표는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기업과 국민의 후생증대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규제개혁의 주요 목표가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효율의 증진에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년간 규제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과 국민에게 다소 불 편이 따르더라도 경쟁제한적 법령·제도를 적극적으로 축소·철폐하여 경제 전반의 경쟁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입제한에 의해 장기적으로 독과점 구조가 유 지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쟁제한적 법령·제도·관행을 적극적으로 개 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필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진입규제 혹은 가격규제 등과 같은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업체가 난립하던가 혹은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등 시장질서가 흐트러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건설업과 운송업의 등록기준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불안정이다. 이러한 사례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혹은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규제개혁의 부작용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부작용이 아니라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시장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인 진입과 가격에 대한 규제개혁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

규제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국민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과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정책도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규제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 지원정책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러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선의 성과에 비추어 예산과 인력 감축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매년 규제완화와 관련한 예산과 인력 감축의 정도를 측정하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해야 한다.

또한 규제대행을 활성화하여 규제 체감도를 완화해야 한다. 규제의 수준이 아주 엄격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에 실제로 민원인이 직접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규제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변호사들이 규제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규제 관련업무를 대행해 주는 변호사

제3절

사회 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 집필자: 권미수 박사(한국전산원)

들은 규제절차만을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규제를 제3자가 전문적으로 대행함으로써 규제순응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피규제자의 규제순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토지·건설·대기업 규제 등 일부 경제규제 분야에는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특정 부처에서 기업활동을 규제하게 되면 다른 부처에서도 경쟁적으로 하게 되어 규제가 중복적인 경우가 많다. 중복규제는 부처간 이해관계로 개혁이 부진하며, 관련 부처가 동시에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아 부분적인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경련의 조사에서도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중복규제의 축소가 전체 응답의 47%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중복규제의 일괄정비를 통해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1.사회 분야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정부의 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대분된다. 경제적 규제란 진입·퇴출장벽, 가격, 품질 등의 규제를 말하고 사회적 규제란 삶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신장, 경제·사회적 약자의 보호, 사회적 형평의 실현 등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건강, 안전, 환경, 청소년 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들이다.

경제적 규제는 자본주의가 성숙됨에 따라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규제는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사회의 복잡화에따라 오히려 강화될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 역시 규제의 편익과 함께 비용을 적지 않게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규제의 합리적 수준을 정하여 규제준수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크다.

사회적 규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과정 자체나, 행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제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규제가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민간경제에 줄 경우 기업 등의 반발이 강해지고, 나아가 경제침체 등의 파급효과가 올 수 있으므로 정부는 사회적 규제의 합리적 수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사회적 규제는 과감한 규제철폐와 과도한 규제필요성의 강조 사이에서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설정하여 규제준수율을 높이면서도 규제준수 비용은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000년 도 사회 분야 규제 개혁의 주요 실적

2000년 사회 분야 규제개혁은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보험, 증명민원, 운전 분야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그간의 법령기준의 모호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던 외국인학교와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제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게임제공업 등 문화산업과 폐기물 처리 등 환경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준수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의료보험 분야에서는 보험급여대상 자격조회에 대해 민원인과 요양기관 편의를 도 모하고,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공보험의 보완적 연계·발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증명민원 분야에서는 증명민원 감축대상을 중앙부처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증명서류까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증명 민원 감축을 추진하였다.

운전관련 분야에서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차량정체 등으로 인한 정지중, 긴급자동차, 범죄·재해신고 등 긴급시 및 핸즈프리 등 안전운전에 장 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대상을 확대하며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 사후규제 를 강화하였다.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학교설립 절차, 입학자 격, 교원, 교육과정 및 수업연한, 교사 등 시설기준, 학력인정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문화재 보호 분야에서는 문화재 발굴비 원인자 부담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3 만㎡ 미만 건설공사 전 지표조사 실시여부 인정기준을 명확화하며, 문화재 수리공사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시공자에 대하여 우대하고 사유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등도 수용대상에 포함하였다.

폐기물재활용 분야에서는 제품·포장재 등의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독자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 분할되어 있는 공병회수제도를 환경부로 일 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병보증금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페트병(PET) 제3자 예치금 지급범위를 전년도 물량의 0.3% 이상을 재활용한 자까지로 확대하고(현행 0.5%), 건설폐기물 처리는 발주자 가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게임 제공업 구분을 현실화하여 "19세 이상 성인이 이용가능한 성인용 게임물"을 제도권에 수용하고, "19세 이용가" 게임물 설치가 가능한 성인게임장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화를 위한 사후관리 기능은 강화하였다.

3.사회 분야 규제 개혁의 성과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명문법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 회를 둠으로써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일관성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며 범부처적인 시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함께, 관련 부처 장관을 위원에 포함시킴으로써 행정적 추진력도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 분야별 전문위원 및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규제개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 분야 규제는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는 경제 분야 규제와는 달리 규제의 필요성과 수준에 대한 다양한 평가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사업자단체, 전문자격사 규제개혁 등 이해관계가 많고 소위 사회적으로 힘있는 이해집단에 대한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였고, 2000년 말에 실시한 규제개혁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규제개혁 인지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회 분야의 규제는 국민의 보건, 안전, 환경, 청소년 보호 등의 분야로 단순히 규제철폐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통해 규제준수율을 높이면서도 규제준수 비용은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추진한 내용중 안전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규제를 강화한 반면, 행정편의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지 않을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조항의 삭제를 권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점이많았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되 안전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경우는 허용하는 것도 합리적 수준의 사회규제를 정한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 부처의 입법과정에서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피하여 입법 화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 즉 공무원이 규제를 신 설·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처음 부터 가능한한 규제에 넣지 않고 법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규제개혁위 원회를 통해 규제가 줄어드는 비율은 명시적으로 규제 심의과정에서 규제가 삭제권 고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규제는 국민과 정부에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행정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완전하지는 않지 만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사회적 규제라 하더라도 규제준수를 위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사회 분야 규제 개혁의 미흡한점

사실 사회 분야의 규제개혁은 경제 분야의 규제개혁에 비해 힘든 점이 많다. 경제 분야의 규제는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대전제하에 규제의 비용·편익분석도 비교적 용이한 반면, 사회 분야의 규제는 규제의 비용·편익을 계량화하기가 힘들고, 특히 규제개혁의 비용이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심야영업 금지를 폐지하고 청소년 출입시간을 조정한 규제개혁 조치는 규제개혁 이후 5년간 3,600억원의 국민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670억원의 정부비용이 절감되는효과를 더하면 상당한 편익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시적 편익일 뿐이고국민의 자유감이 증대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뇌물제공 등 부정부패가 줄어든 효과, 규제준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법과 질서가 확립되는 효과 등을 더하면 그 편익은더욱 커진다. 반면 청소년의 귀가시간이 늦어짐에 따른 탈선 가능성 증가, 퇴폐영업증가 가능성 등은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규제개혁의 비용이 되고 이 점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았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까지의 규제개혁은 경제위기 극복 등의 국가적 목표의 부각과 함께 규제의 비용편익이 가시화되기 쉬운 경제 분야의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게 되고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큰 사회규제 개혁은 상대적으로 미홈한 점이 있었다.

사회 분야 규제를 포함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규제개혁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가 심각하게 낮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물론 홍보의 부족 등에서 기인된 점이 크겠지만, 규제개혁의 궁극적 수혜자와 지지세력이 국민임을 인식할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사회규제로 분류되나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큰 시각의 규제개혁이 필요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주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화산업분야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크지만 음란, 청소년 보호 문제와 늘 대치되고 있다. 이러한 음란, 청소년 보호 등의 문제는 사후규제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로 이러한 분야의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제8장 규제개혁 평가

5.사회 분야 규제개혁의 추진전략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규제개혁이 이제 4년 차를 맞이한다. 대학으로 보면 졸업학년이 된 것이다. 지난 3년간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OECD 등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규제개혁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성적은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심화된 교육을 위해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대학 졸업생의 입장처럼, 기존방식보다 한단계 진보된 규제개혁 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존규제의 정비로부터 신설·강화규제의 사전심사 강화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총량관리와 규제영향 분석, 규제일몰제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규제 폐지·개선 단계에서 규제관리단 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추진전략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전략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계속하여 향후 규제개혁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0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위한 규제개혁은 2001년 에도 계속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핵심규제 · 덩어리규제가 그러하듯이, 지식정보화 사회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들 역시 다부처 · 다분야 관련 규제가 많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의 경험과 조정능력 등이 유용할 것이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에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한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의 법 · 제도적 구현이 필요하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분야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에는 지난 3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규제개혁의 체감도와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사행정규제가 대부분 남 아있기 때문이다. 비록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들이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위규제, 유사행정규제의 개혁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는 그 방법으로 분야별 전문지와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대 외적 홍보효과와 함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서 바람직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보다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와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간의 유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연중 $1\sim2$ 회 개최하는 규제개혁연찬회에 중앙과 지방의 규제개혁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상시적으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두 개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건설, 환경 등 지자체와 밀접한 특정분야 규제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의약, 보건, 환경 같은 전문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 자문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무국 및 전문연구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상시자문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중앙부처의 법령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을 연계한 정보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 개혁의 주요 전략 중 하나가 중앙의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전산등록하고 규제개혁위 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의 정리와 공개는 투 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집행의 지름길이다.

중앙부처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 중앙의 규제개혁방안이 일선 지자체까지 제대로 전달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고, 지자체 사이의 규제수준을 비교할 수 있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엄 격한 규제가 시행되는 지자체의 조례·규칙은 규제개혁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이다.

특히 이렇게 될 경우, 법령미근거 규제는 바로 발굴할 수 있으며, 유사행정규제 역시 발붙이기 힘들게 된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은 이제까지의 하향식 규제개혁 전략을 상향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여기에 규제신고센터 등을 활용한 규제개혁 모니터링 강화, 홈페이지를 활용한 상 시 여론조사 등을 도입하는 것도 국민에게 밀접한 규제개혁 방안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OECD 규제심사

*집필자:최대용 과장(Tel. 3703-3937,

1. 개요

1998. 4월에 OECD의 규제개혁 국별심사를 자원한 이후로 2년여에 걸친 심사작업 끝에 2000. 6월 최종보고서가 공식 발표되었다. 2000년도에는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심사회의가 3월에 파리에서 개최되어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7개 부처 담당관으로 이루어진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보고서 초안에 대한 한국 정부와 OECD사무국과의 최종조율을 거쳐 6월 2일 세이치 곤도 OECD 사무차장이방한. 기자발표회 형식으로 보고서 발간을 공식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1998년 이후 적극 추진해온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 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제고 에 기여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Ⅱ.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OECD의 심사 추진경 위

- OECD는 회원국의 규제개혁을 지원하고 회원국 규제수준의 형평성있는 발전을 위해 1997년 각료이사회에서 규제개혁보고서를 채택하고 1998년부터 회원국 에 대한 국별심사를 실시
- 1998. 4월 정부는 규제개혁 의지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1999년도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를 자원
 - ※ 1998년 심사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멕시코1999년 심사국: 한국, 스페인, 덴마크, 헝가리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경부, 공정위, 외통부, 산자부, 정통부 관계관과 민간전문 가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대비
 - -1999. 2 ~ 5: OECD의 서면 질의서에 답변
 - 1999. 7. 7 ~ 7. 13 : OECD 전문가 방한, 각 부처, 연구기관, 경실련 등과 6 0여회의 회의 및 현지 조사활동
 - -1999. 10 ~ 11:OECD에서 분야별 심사회의 개최
 - 2000. 3. 20 ~ 22 : OECD 종합심사회의에 정부대표단(7개 부처)이 참석, 회원국 대표들과 한국 규제개혁에 대해 토론, 규제개혁 성과와 입장을 반영
- 2000, 6, 2:0ECD 사무차장 방한 최종보고서 발표
 - -OECD의 한국규제개혁심사보고서 발간·공표를 위해 Seiichi Kondo 사무 차장이 방한하여 내·외신 기자발표회 개최

Ⅲ. 규제개혁 국별심사 분야와 구성

규제개혁 국별심사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

루고 있다.

제1장 규제개혁의 필요성 제1장은 보고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검토 대상국 규제체계의 전체적 구조를 조사하고, 이러한 구조가 국가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어떠한 '경제적 모델'의 발전에 이바지하는가를 본다. 또한 여기서는 규제 및 규제개혁의 배경으로서 그 나라의 경제성과의 여러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경제환경이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정책의 목적, 전략 및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이에 덧붙여, 규제개혁이 심사대상국의 경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따라서 규제가 가져오는 각종 비용(기업의 적응비용 상승, 소비자에 대한 상품가격 상승 및 정부의 비효율)을 분석하고, 반대로 규제개혁이 가져오는 이익(기업의 적응비용 저하, 상품가격의 저하 및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추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제2장 고품질 규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 이 장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혹은 정부 규제를 관리하는 기구 나아가서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기구 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토론한다. 정부 기구 내에서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한다.

제3장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경쟁정책의 역할 이 장은 경쟁정책이 정부 규제정책 과정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주 목적이다. 또한 규제개혁이 가져오는 효과로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시장 지배자의 지위 남용(market abuse)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쟁정책의 효휼적 집행에 대해 살펴본다. 이 장의 주요한 관심사는 첫째, 각국의 역사, 정책적 환경 등이 경쟁 정책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둘째, 각국이 적절한 경쟁정책을 운용할 제도(경쟁법 및 경쟁정책 담당기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제4장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의 개방성 제고 이 장은 각국의 규제 및 규제운용 과정이 무역 및 투자라는 국제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피고, 다른 한편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제경제에 대한 시각이 어느 정도 감안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주 목적이다. 나아가 최근의 규제개혁 과정에서 시장의 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제5장 전력산업에서의 규제개혁 이 장에서는 전력산업에서의 규제체계가 한편으로 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국내 및 국제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효율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즉,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환경보호 라는 동 산업 특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동 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전체 적인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동 산업에서의 규제 및 규제개혁의 내용이 적합한 것인지 를 살펴본다.

이 장은 위의 네 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규제의 원칙적 측면을 구체적인 산업에 적용한다는 목적과 함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추진해 온 각국의 전력정책에 대한 검토작업을 수행한다.

제6장 통신산업에서의 규제개혁 이 장에서는 통신산업에서의 규제체계가 한편으로 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국내 및 국제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주 목적이다. 즉, 전국적인 통신망의 확충,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라는 동 산업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동 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은 물론 전체적인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동 산업에서의 규제 및 규제개혁의 내용이 적합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장도 정책분야별 장에서 다루는 각종 규제의 원칙적 측면을 구체적인 산업에 적용한다는 목적과 함께 통신산업위원회가 추진해 온 각국의 통신정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한다.

제7장 결론 이 장은 전체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며, 각 장의 요지를 정리하고, 분야별로 OECD의 정책권고안을 제시한다.

Ⅳ. OECD 규제개혁 심사 관련 업무

1998. 4월 우리나라가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를 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 등 관련 업무에 착수하였다.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주관이 되어 OECD 규제개혁 심사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등 관련 부처 담당관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OECD 규제심사준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 관련 업무는 국별심사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OECD 전문가팀의 방한 현지활동에 대한 지원, 우리나라에 대한 분야별 동료심사 (peer review)와 종합심사에 참여하여 질의응답 및 토론에 응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OECD 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분기별로 개최되는 OECD 규제개혁회의에 참석하여 규제개혁 심사 및 관련 이슈토론에 참여한다. 이러한 규제개혁 심사 분야와 OECD 관련 위원회 및 소관부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심사분야 | OECD 관계 위원회 | 소관부처 |
|-----------|---------------------|---------|
| 거시경제 | 경제위원회 | 재정경제부 |
| 정부의 역량 | 공공관리위원회 | 국무조정실 |
| 경쟁정책 | 경쟁정책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 시장개방 | 무역위원회 | 외교통상부 |
| 전기산업 | 경쟁정책위원회 | 산업자원부 |
|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부 |
| 결론 및 정책대안 | 공공 관리위원회 | 국무조정실 |

앞에서 보았듯이 OECD 규제심사는 분야별로 소관부처가 각기 달라 이들 부처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 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는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며 소관위원회별로 소관부처가 분담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즉,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OECD 규제심사를 총괄하며 공공관리위원회 소관 정부역량 부문을 담당하고, 경쟁정책 부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개방 부문은 외교통상부에서, 전기산업 분야는 산업자원부에서, 정보통신 부문은 정보통신부에서, 제1장의 거시경제 부문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개혁2심의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들 소관부처 담당관과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민·관 합동 OECD 규제심사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체제를 구축했다.

참고로 O E C D 심사준비기획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심시준비기획단 명단

(1999.12. 현재)

| 관련부처(부문) | 정부 대표단 | 민간 자문위원 |
|------------------|------------------------|--|
| 국무조정실(총괄 및 정부역량) | 김석민 규제개혁2심의관 최대용 과장 | 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태윤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연구센터 소장 |
|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 | 한철수 국제업무2과장 | 김진국 건양대 교수 |
| 외교통상부(시장개방) | 이상규 경제기구과장 | 김도훈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 산업자원부(전기산업) | 이유종 전력산업과장 | 하병기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 | 이기주 통신기획과장 | 정인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재정경제부(거시경제전반) | 문재우 경협총괄과장 | 양준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IV. OECD 한국 규제개혁 심사보고서 요지

• OECD 한국심사보고서는 영문판으로 출간되었으며(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in Korea), 한국산업연구원에서 국문판을 번역 출간하였다. 아래는 각 장별로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은 야심적인 규제개혁, 금융개혁과 구조개혁을 통해 1997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으며, 1999년과 2000년에 걸친 경제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음.

정부개입 경제개발모델에서 시장지향 경제발전모델로 옮겨가고 있는 한국의 정책 변화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한 국의 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는 다 시 어려워지고 문제에 빠질 위험이 있음.

제1장 한국에서의 규제개혁 1997년 위기의 와중에서 추진된 규제개혁정책은 광범 위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즉 규제의 심사, 민영화의 가속화, 금융산업에서의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 등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앞으로의 과제는 개입이라는 관행을 바꾸는 것임. 시장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정부개입을 중립적인 시장의 역할 로 대체해 나간다는 분명한 계획이 필요함. 향후의 성장은 경쟁과 혁신에 의해 생성 되는 생산성 향상으로부터 나올 것임. 규제개혁은 그러한 성장의 여건을 갖추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제2장 고품질의 규제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 정부 규제의 거의 50%가 철폐되는 대량의 규제완화 조치가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단행되었음. 개혁조치들은 이제 규제의 질과 제도 조성에 한층 더 전향적이고 종합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로 옮아가고 있음. 정치적 · 행정적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구들이

만들어졌음. 한국은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였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폭을 더욱 넓혀야 할 것임.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프로그램은 잘 구성되어 있으나, 부처들의 실제 적용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있음. 업종별 독립규제기관들이 만들어짐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는 한층 개선될 것임.

제3장 규제 개혁에서 경쟁정 책의 역할 비록 정책환경은 개입과 경쟁이 아직도 혼재되어 있지만, 한국정부는 경쟁원칙을 빠른 속도로 확대 적용하여 왔음. 경쟁법과 경쟁당국은 모범적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 가장 심각한 형태의 수평적 담합들이 가일층 강력하게 조치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대해 단순히 구조적으로만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음. 경쟁정책의집행과정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형사처벌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 또한 경쟁당국은 소비자 보호 문제도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혁조치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음.

제4장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개방의 제고 최근 몇 년간 한국정부는 절박하게 필요한 외국 자본과 외국 전문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유화하는 데 큰 진전을 보여 왔음. 규제 및 행정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몇 가지 긍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음. 그러나 한국의 규제제도는 아직도 외국기업에 불투명한 것으로 교역상대국들의 눈에 비쳐지고 있음. 한국의 법체계상 무차별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일부 규제들로 해서 사실상의 장벽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음. 교역상대국들이 제기하는 불필요한 무역 제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의 기능과 최근 설립된 옴부즈만 제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한국은 기술규제 및 표준들을 국제표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제5장 전력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한국의 전력산업 개편계획은 비록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시장을 경쟁으로 이끌어 가는 건전한 틀을 제시하고 있음. 개혁조치들은 이제 겨우 이행단계가 시작되었으나, 계획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음. 역시 기업지 배 구조상 민간 소유권자의 역할을 증대시켜야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정책당국자들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함. '공익기능 프로그램(전력산업기반기금)'은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조치임. 독립 적이고 책임 있는 규제기관의 설립과 같은 시장기구의 개선은 개혁의 초기단계부터 필요함. 몇 가지 중대한 규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함. 예들 들면, 요율의 결 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적 규제의 도입, 좌초비용(stranded cost)에 대한 정책의 명확화, 그리고 저비용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기구 등임.

제6장 통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한국의 통신산업에서도 규제개혁이 진전되고 있음. 국유화된 기본 시장구조에서 출발하였으나, 경쟁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일부 가격의 인하를 촉진시키고 있음. 정보화 사회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규제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의 촉진에 대한 전략적인 비전이 필요한 때임. 시장개방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중요한 분야에서 아직도 장벽들이 상존하고 있음. 통신위원회는 만일 그 독립성과 책임성이 대폭 향상된다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제7장 결론및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권고안 한국의 규제개혁은 중도에 멈추지 않는다면 향후 성장을 위한 건전한 기초가 될 것임. 남아 있는 과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혜택 또한 클 것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재벌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사회정책적규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정부 내에 상존하고 있는 개입과 통제의 관행을 바꾸어야 함.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정책수단들은 강력해야 하며, 강력한정치적 지지가 필요함.

- 개혁의 총체적인 플랜에 입각하여 성과지향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여야 함
- 각 행정부 내에서 규제의 품질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규제영향 분석의 수준을 높여야 함
- 이해관계집단,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제도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지도 사용은 철폐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행정부 차원에서 개혁집행 능력을 제고해야 함
- 신설 · 독립 규제기관의 효율성 · 독립성 · 책임성을 위한 정책적 기초를 증진시켜

야 함

- 시장개방원칙을 국내 규제체계에 통합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 치들을 취해야 함
- 통신산업에서의 시장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한국 규제개혁 보고서에 대한 OECD발표문

발표자: 곤도 O E C D 사무차장 발표일: 2000.6.2

- OECD 규제개혁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이 이 분야에서 OECD심사를 가장 먼저 자원한 국가들 중 하나였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은 한국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한국의 빠른 진전은 중대한 개혁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다른 OECD 새 회원국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미국,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와 헝가리 등 OECD로부터 규제개혁 심사를 받은 선별된 소수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이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는 한국의 규제개혁이 1999년과 2000년의 강력한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과 그러나 그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위기를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향후의 위기에 대해 취약하지 않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모든 측면에 있어, 현재의 이러한 경제회복 국면에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아시아의 선두주자로 부각되었습니다.

- 한국이 어렵고 위험한 전환과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것은 인상적입니다. 1997년말 한국은 OECD 회원국이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심각한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건전재정 및 통화정책의 기조를 토대로 아심찬 규제 · 금융 ·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경제위기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다시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강력한 정치적 지원 덕택으로 한국의 진전은 경제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시장개혁의 추진에 있어 한국을 선두주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 한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규제모델은 소비자 선택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가치에 기초한 시장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한국은 OECD가 권장하는 모범관행에 빠르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 규제완화, 시장개방, 강화된 경쟁정책 등은 한국의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시장의 힘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었습니다.
 - 금융부문에서 새로운 규제체제와 제도들이 확립되었으며, 이는 금융 분야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분야의 규제는 국제기준에 더 가까워 졌습니다.
 - 다수의 중요한 개혁을 시도하여 기업지배구조도 국제기준에 가깝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 재벌도 시장질서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본수익률에 중점을 두는 체제가 다시 도입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규제영향 분석과 같은 기법을 채택하고, 공공협의를 폭넓게 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고위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는 단 1년만에 규제를 범정부적으로 50% 감소 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규제를 심사하고 규제영향 분석과 같은 기법을 장려하는 위원회의 활동은 개혁의 진전에 계속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 전력 및 통신산업 등의 부문에서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개혁들은 비록 개혁방 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개혁의 진전에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한국의 규제관행 중 일부는 아직 바람직한 국제 관행에 미달합니다. 추가적인 개혁을 하면 이는 물가를 내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한국 국민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 한국정부는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개혁을 진행했지만, 여타 아시아 국가나 북미, 유럽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이한 태도를 가질 수 없 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는 개혁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부문에서 정부개입을 시장경쟁으로 대체 하기 위한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한국의 규제체제는 아직 여러 분야에서 바람직한 국제관행에 미달하고, 이는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존중을 통해 중립적인 시장환경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미래의 경제성장은 경쟁과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부터 비롯될 것이 므로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년 동안 포괄 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 규제개혁을 통해 통신, 에너지, 운송 등 서비스와 여타 다수의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될 것이므로 한국의 소비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조조정이 되는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으나, 수요의 증가로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창출될 것입니다.
 - 더욱 향상된 규제제도와 방법으로 한국은 안전, 보건, 환경보호 등의 긴급한 규제정책 목적을 보다 더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OECD 보고서는 29개 선진민주주의 회원국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OECD 보고서에 대해, 특히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와 정책권고 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OECD 보고서는 정부기관과 절차, 경쟁정책과 집행, 시장개방의 제고, 전력산업과 통신산업 등에 대해 주제별·부문별로 다루고 있으며, 개혁을 위한 거시경제적 맥락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에는 OECD의 29개 회원국 정부와 구주연합 집행위의 참여와 견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재계와 노동계도 역시 보고서 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자적인 접근방법은 여러 국가의 다양한 경험과 전통에 기인한 견해를 반영하게 되어 가치있는 작업입니다. 한국의 관련 부처들이 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회원국 동료들 및 OECD 사무국과의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개혁을 더욱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OECD 보고서와 정책권고는 한국에서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개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개혁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권고는 무엇인지 모두 언급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몇 개의 주요 이슈만 언급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요약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본 바와 같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핵심입니다. 시장신뢰를 뒷받침하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에 걸쳐 강한 저항과 특정 이익집단에 맞서 규제개혁과 경제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수기관입니다. 위원회는 계속 시장성과와 경쟁에 대한 결과를 강조하고, 위원회의 권한이 조세와 기업지배구 조 등 시장지향적인 경제정책의 확립과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이슈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위원회에 NGO 대표들이 새로운 위원으로 포함된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한국은 더욱 개방적이고 균형적인 개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책결정에는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미 채택된 많은 개혁 조치들은 철저한 집행을 통해서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개혁에 대한 의지와 책임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집행계획이 필수적이지만 한국 의 민영화 계획의 지체에서 보여지듯이 어려운 일입니다.
- 개혁의 범위는 서비스나 농업 등 과거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중요성이 큰 산업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개혁은 정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책과정은 아직도 중앙집중적이고 불투명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자체를 포함하는 모든 계층의 정부에서 행정전반에 걸쳐 보다 강한 투명성과 시장원리가 요구됩니다. 개혁은 광범위한 집단의 참여기회를 증대시켰으며, 이는 곧 정부와 업계,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간에 협의 메커니즘과 투명성 보장을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통신, 에너지, 기타 다른 부문에서 업종별 독립규제기구가 만들어짐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진전이 늦습니다.
-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쟁법과 경쟁당국은 잘 갖추어져 있으며 바람직한 국제관행에 부합하지만 공 정거래위원회는 수평적 경쟁제한문제와 입찰담합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조치들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재벌에 의해 야기된 투명성 및 경쟁 관련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회계기준, 기업지배구조, 경쟁강화, 시장개방과 같은 시장원칙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재벌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어 정부개입적 방식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 규제개혁은 필수과제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내에서 규제의 품질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규제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24개의 여타 OECD 회원국에서 의무화한 규제영향 분석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각 부처의 분석수준은 아직 미약합니다.
- •시장개방을 강화하는 추가적 개혁은 한국의 소비자와 한국 경제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규제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 이 최근 취해졌지만, 한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한국의 규제체제가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전력산업에 관해서 IEA(국제에너지기구)와 OECD는 현재 진행되는 개혁을 지지하지만, 가격인하를 가져올 효과적인 경쟁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일련의 보다심화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개혁플랜은 아직 완성되지 않

았고, 집행도 이미 예정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진 독립적 규제기구와 같은 개선된 시장제도가 필요하며, 몇몇 주요 규제 관련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대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통신산업의 규제개혁은 진행중입니다. 경쟁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촉진시켰고, 일부 가격을 하락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화 사회와 전자상거래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촉진을 위한 전략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접속가격의 기준으로 장기평균증분 비용방식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추가적인 개혁이 없으면, 대부분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도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에는 전환비용이 따르지만 소비자, 근로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희망적인 전망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 규제개혁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에서의 노동자 해고와 경쟁력 없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전환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 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노동시 장정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경제 전체를 보는 큰 그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개혁은 투자, 혁신과 새로운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생산자, 근로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전망을 밝게 할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지남에 따라 한국정부는 이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규제개혁 및 구조개혁의 다년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의 개혁성과는 인상적이며 한국 국민에게 많은 편 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과제는 더 있습니다.

American Chamber of Commercein Korea

Jeffrey D. Jones President

Regulatory reform has been pursued with great vigor in the last three year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Kim Dae Jung. The commitment to deregulating the economy comes from a sincere desire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conomy, help to eliminate corruption and create greater equality of opportunity in the economy for all companies.

For those companies who have experienced the business and regulatory climate of Korea prior to the effort to eliminate regulations, there is unanimity of opinion that effort has been extremely successful. Businesses operating in Korea consistently notice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involvement by the regulators in the day to day operations of the company. For those issues remaining which require either reporting to or

approval by the various agen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level of documentation as well as the time needed to process the documentation has been substantially reduced. This has led to an improvement in the cost of doing business in Korea in addition to the ability of companies to make economic decisions with respect to their businesses without being influenced or restricted by the confines of unnecessary regulatory hurdles.

There has been great progress made and yet there still remain some obstacles on the regulatory side that should be eliminated. For example, the foreign exchange controls have been extensively liberalized and most of the controls have been eliminated. With the increasing presence of foreign businesses, however, experience has shown that even the remaining regulations present a tremendous obstacle to the free flow of funds around the world which is required in order to bring Korea into line with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other nations.

Notwithstanding the successes of the past several years, we are very pleased with the continued commitment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o further the deregulatory effort. This gives us great confidence that the government will continuously pursue their goal of making Korea the best investment environment in Asia if not the world.



제9장 향후규제개혁방향및 2001년 도 계획

2001년도 규제개혁 중점추진방향

- 지식정보화 사회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작업을 금년 상반기중 마무리하고, 제2단계 계획 수립
- 일선기관, 정부 관련 법인·단체 등의 국민생활 관련 규제를 집중 정비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
- 규제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더욱 강화
- 기업의 자율성 신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지속 추진
- 이해관계자 · 외부전문가의 참여 확대 및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점검평가 강화

1. 지식정 보확 사회 및 전 자정 부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1. 제 1단계 계획 추진 완료

-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제1단계 81개 규제개혁 과제 중 금년에 추진키로 한 64개 과제를 2001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착
 -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규제의 개선
 - · 전자정부 구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제의 개선 등 4개 분야 25개 과제
 - 산업의 지식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 ·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3개 분야 18개 과제
 -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 · 창의적이고 경쟁력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 등 2개 분야 1 5개 과제
 -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 강화 등 6개 과제
- 추진방안 및 일정
 -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01년 상반기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하반기중 관련 법률을 제·개정
 - · 기타 시행령 · 규칙 또는 고시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과제는 1/4분기중 추진을 완료
 - ※ 4대 부문 개혁을 2001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초 일 정을 앞당겨 조정
 -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외부 전문연구기관 에 용역 의뢰(환경, 건축, 생명공학 분야 등)

2.제2단계계획수립 · 추진

• 상반기중 지식정보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종합평가 하고, 제2단계 규제개혁방안을 2001년 7월까지 수립

Ⅱ. 하위규정 ㆍ 유사행정 규제의 집중정비

-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환경 등 5개의 중점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집중 개선
 - 작업반은 소관분야별로 규제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발굴규제에 대한 정비방 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의결
 - 동 작업시 실질적인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상의 각종 별표규정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 기타 분야는 현행과 같이 소관부처별로 추진하되, 2001년 1/4분기중 명확한 지침과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시달

하위규정 · 유사행정규제 중점 정비대상 분야

| 중 점 분 야 | 세 부 추 진 계 획 | 비고 |
|------------|---|--|
| 1. 해양수산 분야 | • 작업반 구성 • 항만 · 해양 분야 하위 · 유사규제 정비 • 수산 분야 하위 · 유사규제 정비 | 2001. 6월중 2001. 7월중 2001. 8월중 |
| 2. 건축 분야 | • 작업반 구성 • 건설산업 분야 하위 · 유시규제 정비 • 주택 · 도시 분야 하위 · 유시규제 정비 | 2001. 2월중 2001. 3월중 2001. 4월중 |
| 3. 산업 분야 | 작업반 구성 자원정책 분야 하위 · 유시규제 정비 중소기업 분야 하위 · 유시규제 정비 | 2001. 3월중 2001. 4~5월중 2001. 6월중 |
| 4. 환경 분야 | 작업반 구성 수질 분야 하위 · 유시규제 정비 대기 · 소음 분야 하위 · 유시규제 정비 환경 · 생태 분야 하위 · 유시규제 정비 | 2001. 3월중 2001. 4월중 2001. 5월중 2001. 6월중 |
| 5. 문화체육 분야 | • 작업반 구성 • 체육 분야 하위 · 유시규제 정비 • 문화관광 분야 하위 · 유시규제 정비 | 2001. 3월중 2001. 4~5월중 2001. 6~7월중 |

Ⅲ. 신설·강화규제 심사 강화

-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 신설·강화규제의 비용효과 분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비용이 효과보다 큰 경우 원칙적으로 신설·강화를 불허
 - 국민생활과 관련이 큰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의 영향분석 결과를 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
 - 규제영향 분석기법을 개발·향상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

- 규제총량제의 엄격한 적용
 - 규제 신설시 신설규제에 상응하는 기존규제의 폐지계획을 제출받아 실질적 인 규제총량을 일정하게 관리
 - ※ 기존규제의 폐지가 어려운 경우 소관부처 산하단체의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이를 기존규제 폐지로 인정
- 모든 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존속기한) 적용
 - 모든 신설 · 강화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존속기한 설정
 - 존속기한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규제영향분석서에 명확히 제시
- 철회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위원회 심의결과의 집행력을 제고(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Ⅳ.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활성 확를 위한 규제개혁 강확

1.기업 활동의 자율성 신장 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체계 구축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등 상시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관련 규제개혁과제를 건의받아 개 선방안 마련
 - ※ 2001. 1월중 접수예정인 제1차 건의과제에 대하여는 1/4분기중 개선안 마련
-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의 분기별 간담회 등 정례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투자촉진 및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한국건설경제협의회 등 분야별 이익단체로부터의 건의도 수시로 수렴, 규제개 혁 추진과정에 반영

2.기존규제의 지속적인정비

- 그동안의 기존규제 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혁이 미흡한 분야를 특정과 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정비 추진
 - 2000년 이월과제 및 금년도에 신규발굴한 과제 등을 대상으로 25개의 특 정과제를 선정
 - ·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 방안 등 22건
 - · 소방 관련 규제개혁방안 등 2000년도 이월과제 3건
 - ※ 2000년도 이월과제 총 7건 중 3건은 2001년도 특정과제에 포함·추진하고 2건은 지식정보화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국가자격 검정 관련 규제개혁,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방안 등 2건은 정책적 판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 보류. 당초 선정된 2000년도 추진대상 63개 과제 중 56개 과제는 추진 완료)
- 주요 정비대상과제
 - 각종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 4개 과제
 - · 맥주제조시설 기준 완화방안(재경부)
 -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제한제도 개선(정통부) 등
 - 국제적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 5개 과제
 - ·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규제의 합리화방안(재경부, 금감위)
 - · 관광산업 관련 규제의 합리화(문광부) 등
 - 민간의 자율성 확대·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8개 과제
 - ·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방안(재경부, 금감위)
 - · 직업교육 · 훈련 관련 규제개혁방안(노동부) 등
 - 규제내용이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미흡한 규제의 개선 : 4개 과제
 - · 광고물 관련 규제개혁방안(행자부)
 - ·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설치 관련 규제개선(환경부) 등
 - 기타 관련 법령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의 개선 : 4개 과제
 - · 환경 관련 유사중복성 규제개선방안(환경부)
 - · 해양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해양부) 등
 - ※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 및 국민제안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 로서 중점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연중 추가로 선정하여 개혁 추진

• 추진방안

- 소관부처가 제시하는 개혁안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 림을 거쳐 개혁안 마련
-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용역을 거쳐 개혁안 마련

• 추진일정

-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2001년 2월까지 전문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하반기 중 위원회 상정
- 비용역과제에 대해서는 2001년 1/4분기중 초안을 접수하고 상반기중 위원 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 ※ 2001년도 추진대상 특정과제 : 546쪽의 참고 1

Ⅴ. 규제개혁 성과의 평가ㆍ홍보 강화 및 지원 확대

1.규제 개혁 추진성 과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추진방안

- 국민의 정부 4개년간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규제개혁작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9개 전 부·처·청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실시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평가지침을 시달하고 행정 자치부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 우수부처에 대해서는 기관포상을 실시하고, 재정상의 인센티브 제 공방안 등 강구

• 주요 평가내용

- 부처내 규제개혁 추진기구 구성·운영의 합리성, 규제개혁 추진의지, 규제영 향평가 실시수준 등 추진체계의 적정성
- 규제정책의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규제수단의 품질 등 규제개혁안 결정의 합리성

- 입법화 노력, 홍보 등 규제개혁안의 집행노력
- 국민체감도. 경제적·사회적 영향 등 규제개혁안의 성과와 파급효과 등

2.규제 개혁 모니 터링 제도 운영

- 일선행정 현장의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규제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규제개혁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
 - 유사행정규제개혁작업단, 분야별 규제개혁 전문가그룹, 전문언론사, 시민단체, 규제개혁 세미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등을 모니터링 요워으로 활용
 - 학자, 기업인, 전직 공무원 등 규제현실을 잘 아는 인사를 중심으로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 각종 현안사항 발생시 자문그룹으로 활용

3.규제개혁 관련 세미나 등연구 · 홍보 강화

- 규제개혁 과정에 이해관계인과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규제개혁 관련 세미나를 개최
 - 출연연구기관, 분야별 전문언론사 경제단체 등과 공동개최

분기별 세미나 개최계획

| 분기별 | 주 요 주 제 | 주관기관 |
|-------|---------------------------|---------------------|
| 1/4분기 | • 지식정보화 관련 규제개혁방안 | 산업연구원 |
| 2/4분기 | •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 과제 | 해양수산개발원 · 해사신문사(공동) |
| 3/4분기 | • 건축 분야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 | 국토연구원 · 건설신문사(공동) |
| 4/4분기 | • 소방 관련 규제개혁방안 | 반부패특위 · 소방안전지(공동) |

4.지방 자치단 체의 규제 개혁 지원

-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침 시달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지침 을 2001년 1월말까지 시달
 -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지침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2001, 2월)
- 규제개혁 이행실태 지도 · 점검 강화 및 평가
 - 자체 규제정비 및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행정자치부)
 - 중앙부처 점검과 관련하여 지자체 집행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점검 및 평가 실시

〈참고 1〉

2001년도 추진대상 특정과제

| 구 분 | 일 정 | |
|--------------------------------------|----------|--|
| 1. 각종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 | | |
| ① 맥주제조시설 기준 완화방안(재경부) | 2001.8 | |
| ②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공정위) | 2001. 2 | |
| ③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제한제도 개선(정통부) | 2001. 9 | |
| 2. 국제적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 | |
| ①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합리화방안(재경부, 금감위) | 2001. 10 | |
| ② 사회복지사업 관련 규제개혁방안(복지부)* | 2001. 11 | |
| ③ 관광산업 관련 규제합리화(문광부) | 2001.8 | |
| ④ 외국인력 활용제도의 합리화(노동부) | 2001. 9 | |
| ⑤ 소음진동 측정 관련 규제개선방안(환경부)* | 2001. 11 | |

| 구 분 | 일 정 | |
|--|----------|--|
| 3. 민간의 자율성 확대 ·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 | |
| ① 금융감독규제의 체계화방안(재경부, 금감위) | 2001. 5 | |
| ② 직업교육·훈련 관련 규제개혁방안(노동부) | 2001. 10 | |
| ③ 기간통신사업자간 거래제도 개선(정통부) | 2001. 8 | |
| ④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발전방안(공정위) | 2001. 6 | |
| ⑤ 소규모 농지거래 제한 규제개선방안(농림부) | 2001.5 | |
| ⑥ 접도구역 규제개선방안(건교부) | 2001. 5 | |
| ⑦ 고등교육기관 설립·운영 관련 규제개혁방안(교육부) | 2001. 5 | |
| ⑧ 체육시설 설치·운영 관련 규제개혁(문광부) | 2001. 8 | |
| ⑨ 에너지 이용 관련 규제 합리화방안(산자부) | 2001. 3 | |
| 4. 관련 법령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의 개선 | | |
| ① 해양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해양부) | 2001. 5 | |
| ② 환경 관련 유시중복성 규제개선방안(환경부) | 2001. 4 | |
| ③ 농업인 · 농용시설 및 가축 등의 개념정비 및 범위확대 개선방안(농림부) | 2001. 10 | |
| 5. 규제내용이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미흡한 규제의 개선 | | |
| ① 오수처리 및 정화조 설치 관련 규제개선(환경부)** | 2001. 10 | |
| ② 광고물 관련 규제개혁방안(행자부)* | 2001. 9 | |
| ③ 소방 관련 규제개혁방안(행자부)* | 2001. 11 | |
| ④ 건축기준 합리화방안(건교부)** | 2001. 10 | |
| 6. 과도한 보고 및 신고부담의 경감을 위한 규제개혁 | | |
| ① 각종 보고(신고)부담 경감방안(재경부, 금감위)* | 2001. 8 | |

주: ""표시는 용역대상과제

"**"표시는 2000년도 이월과제







- 1. 규제개혁 관련 법령
-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



부록 1

규제개혁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1997. 8. 22 법률 제536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행정규제" (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2. "법령 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을 말한다.
-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 법 시행 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3.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 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건과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실효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 처리기관 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하다.
 -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 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

의 비교분석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 처리절차 등의 적정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되기 1년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 제9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청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 의견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하다.
-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제17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한 경우
 -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 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

- 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2조(조직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 발전에 관한 사항
- 2. 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4. 규제의 등록 · 공표에 관한 사항

-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 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6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2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 제30조(조정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 요구
 - 2.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 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1조(위원회의 업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 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34조(규제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 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35조(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가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제36조(행정지원 등) 총무처 장관은 규제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 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훈령·고시 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시행 당시 시행중인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에 규정된 규제는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하다.

제3조 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 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 장관과 혐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 제3호 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 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 항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 하다)에 관하 사항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 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2.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3. 조세의 종목 · 세율 ·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명칭
 -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 3. 규제의 처리기관
 -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 6. 규제의 존속기한
 -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 까지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야 한다.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다. 규제의 목표설정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경제 · 사회적 비용의 분석
 -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다. 비용 · 편익의 비교 및 검토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 일관성 · 이해용이성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7.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 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내용
 - 2. 위원회의 심사의견
 -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 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컴퓨터통신·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의견제출자의 성명 · 주소
 - 2. 규제의 내용 · 문제점 및 정비방안
 - 3. 기타 참고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제15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6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 던 자
 - 2.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 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하다.
-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 2. 2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제19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 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 조정
 -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 · 연구
 -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2조(전문위원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 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 인·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 · 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확인 · 점검사항
 - 2. 확인·점검일정

-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 ② 위원회는 법 제3 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3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제4조(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 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 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 2. 법 시행일 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 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1998. 4. 18 제정, 1998. 7. 16 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3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

- 제5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분과위원 회를 둔다.
 - 1. 경제1분과위원회
 - 2. 경제2분과위원회
 - 3. 행정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 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배치한다.
- 제6조(소관) ① 경제1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건설교통·산업자원·공정거래·금 융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경제2분과위원회는 정보통신·과학기술·해양수산·농림·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행정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외교통상·통일·국방·법무·복지·교육·노 동·문화관광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분과위원회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위원이 소관사항을 조정한다.
- 제7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나 분과위원회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관계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의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중요규제 여부의 결정

- 2.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 3.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 · 의결토록 위임한 사항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조정관실의 직무) 규제개혁조정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 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 조정사항
-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 인사 · 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 평가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조정관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 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위원 · 조사요원 및 전문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 ②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조사요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 제14조(공정위에의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 제1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있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하며, 용역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 · 조사요원 ·

부록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지

* 집필자 : 박구연 사무관(Tel. 3703-2159, kuyeon@opc.go.kr) 권용식 사무관(Tel. 3703-3936, sharky88@opc.go.kr)

조추연 사무관(Tel. 3703-3942, jocy@opc.go.kr)

1. 규제 개혁 위원회 본회의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1차 | 1998. 4. 18 | 제1호 제2호 제3호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분과위원회 구성 및 간사위원 지명 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계획 | 의결사항 의결보고사항 보고사항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
| 제2차 | 1998. 4. 24 |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 98년 규제개혁 종합지침안 전문연구기관 지정안 외국인투자관련 규제개혁방안(Ⅰ) 규제개혁 기본계획시안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정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 원안의결 보 류 수정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
| 제3차 | 1998. 5. 8 |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 주택건설관련 규제개혁방안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완화 방안 규제개혁 우선추진과제 추진상황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 |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 제4차 | 1998. 5. 22 |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 자동차관련분야 규제개혁방안(Ⅰ) 물류·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Ⅰ) 해운항만부문 규제개혁 우선추진과제 규제개혁방안 전문연구기관 지정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원안의결 원안의결 일부보류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5차 | 1998. 6. 5 | 제17호 | • 풍속영업 및 식품접객업관련 규제 개혁방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제18호 | • 자동차관련분야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제6차 | 1998. 6. 19 |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 건설분야 규제개혁방안(Ⅰ) 물류·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Ⅱ)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Ⅰ) 관광산업관련 규제합리화 방안(Ⅰ) 「예금자보호법」개정안에 대한 긴급 규제 심사 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 추진상황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
| 제7차 | 1998. 7. 3 |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 주차장관련 규제개혁방안(Ⅰ) 물류 · 운수분야 규제개혁방안(Ⅱ-1) (판매 · 물류시설의 설립관련 규제 개혁방안) 98년 규제개혁실적평가 및 향후계획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일정 |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
| 제8차 | 1998. 7. 16 |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4호 | 수출입통관관련 규제개혁방안 「증권투자회사법」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사전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중 개정안 항만행정 간소화 방안 도심지주차 정책 방향 98부처별 기존규제 정비계획종합 및 심사계획보고 98상반기 신설 · 강화규제법령안 심사현황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 제9차 | 1998. 8. 14 |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2호 제42호 제43호 | 98부처별 기존규제 정비계획종합 98통계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조달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관세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국세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주류분야 규제개혁방안 한만하역 노무공급제도 개선방안 건설기계관련 규제개혁방안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 보고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원안의결 보 유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10차 | 1998. 8. 28 |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 98농촌진흥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해양경찰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산림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경찰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
| 제11차 | 1998. 9. 11 |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 제54호 제55호 | 98통일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외교통상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국방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병무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국가보훈처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풍속영업관련 규제개혁방안(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원안의결 일부보류 일부보류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보 류 |
| 제12차 | 1998. 9. 18 | 제56호 제57호 제58호 제59호 | 98금융감독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중소기업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특허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수정의결 원안의결 일부보류 원안의결 |
| 제13차 | 1998. 9. 25 | 제60호 제61호 제62호 제63호 제64호 | 98기상청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98과학기술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정보통신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98환경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일부보류 원안의결 |
| 제14차 | 1998. 10. 2 | 제65호 제66호 제67호 | 98행정자치부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98교육부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보 류 원안의결 수정의결 |
| 제15차 | 1998. 10. 16 | 제68호 제69호 제70호 제71호 제72호 | 98행정자치부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98재정경제부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98산업자원부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98건설교통부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98철도청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일부보류 일부보류 수정의결 일부보류 수정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15차 | 1998. 10. 16 | 제73호 | • 병역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부 결 |
| | | 제74호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중 개정령 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제16차 | 1998. 10. 26 | 제75호 | • 99규제정비지침(안) | 의결사항 | 보 류 |
| | | 제76호 | • 98문화재관리국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77호 | • 98해양수산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78호 | • 「수상레저안전법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보 류 |
| | | 제79호 | • 98농림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조정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제80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제17차 | 1998. 10. 30 | 제81호 | • 98법무부 규제정비계획심사 조정안 | 의결사항 | 일부보류 |
| | | 제82호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83호 | • 98보건복지부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제84호 | • 「장기이식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85호 | • 98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정비계획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86호 | • 98노동부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87호 | • 98문화관광부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제88호 | • 98공정거래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심사 조정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89호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인」 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제90호 | • 「자산유동화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 의결사항 | 보 류 |
| | | | 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 |
| | | 제91호 | •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 |
| | | 제92호 | •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재심사 | 의결사항 | 부 결 |
| | | 제93호 | • 99규제정비지침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18차 | 1998. 11. 6 | 제94호 제95호 | | 보고사항 보고사항 | 원안접수 원안접수 |
| | | 제96호 |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제97호 | • 「수상레저안전법 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2차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98호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부 결 |
| 제19차 | 1998. 11. 20 | 제99호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재심사 | 의결사항 | 부 결 |
| | | 제100호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제101호 | • 「은행법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02호 |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제20차 | 1998. 12. 4 | 제103호 | • 건설현장 안전관리합리화 방안 | 의결사항 | 보 류 |
| | | 제104호 | • 환경분야 각종부담금제도 개선방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05호 |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06호 |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폐지」에 대한 재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07호 | • 98하반기 신설 · 강화규제 법령안 심사 실적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108호 | • 규제개혁관련 법률정비 추진현황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제21차 | 1998. 12. 18 | 제109호 | • 「은행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10호 | •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지정등에 관한기준」개정안에 대한 긴급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11호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 규제 심사 | 의결사항 | 보 류 |
| | | 제112호 | • 98부처청별 기존규제폐지계획(2차분)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22차 | 1999. 1. 29 | 제113호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14호 | • 99규제개혁 추진계획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115호 | 지방자치단체의 99행정규제정비 추진계획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116호 | • 98규제개혁법률 입법추진현황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117호 | • 99핵심과제 추진계획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118호 | • 98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119호 | • 법령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실태 점검결과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120호 | • 99OECD 규제개혁 국별심사 준비 관련보고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제23차 | 1999. 2. 12 | 제121호 |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22호 | • 「연안어장환경관리법제정안」에 대한 신설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제123호 | • 외국인유학생 출입국제도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24호 | •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25호 | •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 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제126호 | • 규제등록 및 전산화 추진현황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제24차 | 1999. 2. 26 | 제127호 | •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128호 | • 「남북협력기금법중개정안」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29호 | • 각종영향평가제도 통합 · 개선방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제25차 | 1999. 3. 12 | 제130호 |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31호 | •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32호 | • 자동차운전속도제한관련 제도개선방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제26차 | 1999. 3. 26 | 제133호 | • 경쟁제한적인 수출입 및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제134호 | •「99부처별규제정비계획」심사·조정방안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135호 | • 98규제개혁유공자 포상계획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27차 | 1999. 4. 9 |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 |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방안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Ⅱ)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상시 점검체제 운영계획 |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
| 제28차 | 1999. 4. 23 | 제139호 제140호 제141호 제142호 |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기준 중 개정고 시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의료용구산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비업무용 공장용지 중과세제도 및 공장 업종구분 개선방안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업무실적 및 향후계획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원안접수 |
| 제29차 | 1999. 5. 7 | 제143호 제144호 제145호 제146호 제147호 제148호 | 주택공급 자율성 확대 방안 비업무용 토지제도 및 공장업종구분 개선방안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제개혁방안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99 OECD규제개혁 국별심시준비 관련보고(Ⅱ)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 수정의결 수정의결 보 류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 제30차 | 1999. 5. 21 | 제149호 제150호 제151호 제152호 |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련 규제개혁방안 「굴뚝자동측정기 부착대상사업장 측정 항목 및 부착시기지정고시」신설규제심사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제도 개선 방안 「농업인협동조합법 제정안」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
| 제31차 | 1999. 6. 4 | 제153호 제154호 제155호 제156호 제157호 | 항만노동생산성 항상을 위한 규제 개혁방안 자동차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산업현장 안전기준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보세구역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32차 | 1999. 6. 18 | 제158호 | • 식품 · 의약품 안전관련 규제개선방안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159호 | • 석유 · 화학시설 등의 안전관리합리화 방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160호 | •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161호 | • 「지역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규칙」중 강화규제 심사 | 의결안건 | 보 류 |
| | | 제162호 | • 규제총량 변경상황 보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제33차 | 1999. 7. 2 | 제163호 | • 건설현장 안전관리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164호 | • 증명민원 개혁방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165호 | • 비영리법인 설립 · 감독관련규제개혁방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제34차 | 1999. 7. 16 | 제166호 | • 안마사에 관한 규칙개정안 재심사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제167호 | •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 추진방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제168호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 의결안건 | 보 류 |
| | | 제169호 | •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169-1호 | • 개발제한구역관리 개선방안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170호 | •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결과보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171호 | • OECD규제개혁심사팀 방안결과보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제35차 | 1999. 7. 30 | 제172호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173호 | • 99상반기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174호 | • 99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175호 |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2차)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176호 |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 운영 방안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제36차 | 1999. 8. 13 | 제177호 | • 99년 노동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178호 | • 99년 산림청 잔존규제 정비계획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179호 | • 승강기 검사제도 개선방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180호 | •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 의결안건 | 보 류 |
| | | 제101층 | 규제개혁 | 버그이건 | 의이저스 |
| | | 제181호 | • 중앙일보 「규제개혁 기획보도」관련 보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37차 | 1999. 8. 27 | 제182호 제183호 제184호 제185호 | 99년 정보통신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99년 교육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99년 건설교통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38차 | 1999. 9. 3 | 제186호 제187호 제188호 제189호 제181호 | 99년 환경부 잔존규제 정비계획 99년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잔존 규제 정비계획 (안) 기업의 준조세 관련 규제개혁(Ⅰ) 99년 경찰청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규제개혁 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외결 |
| 제39차 | 1999. 9. 17 | 제191호 제192호 제193호 제194호 | 자격제도 규제개선방안 99년 과학기술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99년 농림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99년 문화관광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40차 | 1999. 10. 1 | 제195호 제196호 제197호 제198호 제199호 제200호 제201호 제202호 | 99년 재정경제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99년 금융감독위원회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99년 산업자원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99년 행정자치부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99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잔존규제 정비계획(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2000년 규제개혁추진 지침(안) 교육부잔존규제 정비계획중 의결유보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3차)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점수 원안접수 |
| 제41차 | 1999. 10. 29 | 제204호 제205호 제206호 |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저작권 행사관련 규제개혁방안 「약사법 개정안」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41차 | 1999. 10. 29 | 제207호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인」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208호 | • 「전기사업법 개정안」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209호 | •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210호 |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규제 심사 결과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제42차 | 1999. 11. 12 | 제211호 | • 지정진료제도 개선방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212호 | • 항만노동생산성 항상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계획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213호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개선방안 조정안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214호 |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지원단 운영 계획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215호 | •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운영계획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216호 | • 경쟁제한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계획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217호 | • 타조의 식용허용관련 규제개선방안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제43차 | 1999. 11. 26 | 제218호 | • 민간건축물 공사감리관련 규제개혁 방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제219호 |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레법 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220호 | • 99년도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 의결안건 | 원안접수 |
| 제44차 | 1999. 12. 10 | 제221호 | • 농수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에대한 규제개혁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222호 | • 소방관련 법령 · 규제정비계획보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223호 | • 증명민원 서류감축 추진상황 보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224호 | • 규제자유지역 설치방안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225호 | • 제4차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226호 | • "고시등"하위규정 일제정비계획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제45차 | 1999. 12. 24 | 제227호 | •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228호 | • 노동조합법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229호 | • 대학원 · 박사과정 설치관련 규제 재심사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230호 |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231호 | • 규제대안 개발연구용역 결과보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46차 | 2000. 1. 28 | 제232호 제233호 | 소형어선 출입항 신고제도 개선방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규제심사 | 의결안건(개별)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
| | | 제234호 제235호 | 행정규제의 판단 및 단위분류기준2000년도 부처별 중점규제개혁 추진과제 | 의결안건 보고안건 | 원안의결 일부수정접수 |
| 제47차 | 2000. 2. 11 | 제236호 제237호 제238호 제239호 제240호 제241호 | 2000년도 규제개혁 업무계획보고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규제개혁방안 보험관련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폐기물관리관련 규제개선방안 「평생교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신설ㆍ강화규제 심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2000년 계획 | 보고안건 의결안건(개별) 의결안건(개별)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점수 |
| 제48차 | 2000. 2. 25 | 제242호 제243호 제244호 제245호 | 자동차보험의 진입규제 개선방안 외국인 국내활동관련 규제개혁방안 농약유통 및 안전관련 규제개선방안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추진실적 보고 | 의결안건(개별) 의결안건(중점) 의결안건(중점) 보고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
| 제49차 | 2000. 3. 10 | 제246호 제247호 제248호 제249호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Model보고 통합방송법령 시행관련 보고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작업단 2000년 추진계획보고 | 의결안건(개별) 보고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 수정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 제50차 | 2000. 3. 24 | 제250호 제251호 제252호 제253호 제254호 제255호 | 도시계획지역 · 지구제도개선방안 청소년보호연령 기준관련 규제개선방안 감사인 수임제한제도 개선방안 임산물 굴취 · 채취 · 매각관련규제 개혁방안 생태계보존협력금에 대한 규제재심사 공원지역내 행위제한 규제개선방안 | 의결안건(중점) 의결안건(개별) 의결안건(개별) 의결안건(중점) 의결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상정보류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
| 제51차 | 2000. 4. 7 | 제256호 제257호 | • 감사인 수임제한제도 개선방안 •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 관련 규제개선방안 | 의결안건(개별) 의결안건(중점) | 원안의결 (일부 수 정)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51차 | 2000. 4. 7 | 제258호 | •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 | 의결안건(개별) | 원안의결 |
| | | 제259호 | • KOSDAQ시장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방안 | 의결안건(중점) | 원안접수 |
| 제52차 | 2000. 5. 15 | 제260호 | • 의료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안건(중점) | 원안의결 |
| | | | | | (일부보류) |
| | | | | | *추후보고 |
| | | 제261호 | • 항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후속조치보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262호 |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제53차 | 2000. 5. 26 | 제262호 |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 의결안건(중점) | 원안의결 |
| | | | 개선방안 | | (일부보류) |
| | | | | | *추후보고 |
| | | 제264호 | • 산업안전관련 건축물시설기준합리화방안 | 의결안건(개별) | 원안의결 |
| | | 제265호 | • 최저임금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266호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규제 심사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267호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의결안건 | 상정보류 |
| | | |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 (추후재상정) |
| | | 제268호 | • 의료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 중 의결 | 보고안건 | 접수보류 |
| | | | 보류사항 검토 보고 | | (추후재보고) |
| 제54차 | 2000. 6. 9 | 제267호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의결안건 | 의결보류 |
| | | | 개정안 신설 · 강회규제 심사 | | (차기회의 |
| | | | | | 재상정) |
| | | 제269호 | •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관련 규제개선방안 | 의결안건(중점) | 원안의결 |
| | | 제270호 |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 의결안건(중점) | 원안의결 |
| | | 제271호 | • 의료보험관련 규제개선방안중 의결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_,, | 보류사항(의료전달체계) 검토보고 | | |
| | | 제272 |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 방안 중 의결보류사항 검토 보고 | | |
| | | | 당한 중 의결보규사양 검도 보고 | |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55차 | 2000. 6. 23 | 제267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 보험영업관련 규제개선방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중점) | 일부사항 조정의결 일부사항 재논의 조건부의결 |
| | | | 해운분야 규제개혁방안증명민원 서류 감축방안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 신설규제 심사 | 의결안건(중점) 의결안건(중점)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56차 | 2000. 7. 7 | 제277호 제278호 | 축산업관련 진입규제 개선방안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 의결안건(중점) 의결안건 | 일부사항 재논의조건부 원안의결 일부조정 |
| | | 제279호 | 신설규제 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안건 | 의결 원안의결 |
| 제57차 | 2000. 7. 21 | 제280호 제281호 제282호 |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개편방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대기환경 배출허용기준 강화 심사 규제개혁모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00년 규제정비계획 보고 | 의결안건(중점) 의결안건 보고안건 | 원안의결 상정보류 (추후재상정) 원안접수 |
| | | 제293호 | •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제에 대한 국가 검정 폐지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제58차 | 2000. 8. 18 | 제284호 제285호 제286호 제287호 | 자동차 운전학원관련 규제개혁방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규제심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재심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규제심사 | 의결안건(중점)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59차 | 2000. 9. 1 | 제288호 제289호 제290호 | 폐기물 재활용관련 규제개선 방안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 규제 재심사증명민원감축 추진결과보고 | 의결안건(중점) 의결안건 보고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
| 제60차 | 2000. 9. 15 | 제291호 |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중점) | 원안의결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60차 | 2000. 9. 15 | 제291호 | • 학원설립 · 운영관련규제개혁방안(I) • 사법시험법 제정안 규제심사 결과보고 | 의결안건(중점) 보고안건 | 원안의결 차기회의 재논의 접수보류 |
| 제61차 | 2000. 9. 29 | 제295호 제296호 제297호 제298호 제299호 제300호 제301호 제302호 제302호 제303호 |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규제심사 산지의 보존 및 이용관련 규제합리화방안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Ⅱ)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 사법시험법 제정안 규제심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규제심사 건축법 개정안 규제심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재심사안 보고 | 의결사항(중점) 의결사항(중점) 의결사항(중점) 의결사항(중점) 의결사항(중점) 의결사항(중점) 의결사항(중점) 의결사항(중점) 의결사항(중점) |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보 류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62차 | 2000. 10. 13 | 제305호 제306호 제307호 제308호 제309호 제310호 | 수돗물 절수 및 상수원 수질보전개선 대책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2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제심사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규제심사 지하수법 개정안 규제심사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규제심사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보 류 |
| 제63차 | 2000. 10. 27 | 제311호 제312호 | 통신산업 규제의 합리화방안 규제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제심사 | 의결사항(중점) 의결사항 | 보 류 (내용보완후 서면의결) 보 류 (내용보완후 서면의결) |
| | | 제313호 제314호 제315호 제316호 | 고용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 심사 외국인학교설립 · 운영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심사 제대군인지원관련 규제 심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규제심사 | 의결사항(중점) 의결사항(중점) 의결사항 의결사항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호수별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63차 | 2000. 10. 27 | 제317호 | •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규제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318호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규제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제319호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제64차 | 2000. 11. 10 | 제320호 제321호 제322호 제323호 |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 문화재보호관련 규제의 합리화방안 심사 경제5단체규제개혁 건의과제조치계획 부품 · 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의결사항 의결사항(중점) 보고사항 보고사항 | 보 류 원안의결 원안접수 원안접수 |
| 제65차 | 2000. 11. 24 | 제324호 |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관한 법률 제정안 규제심사 | 의결사항 | 보 류 |
| | | 제325호 | • 농지관련 규제개선 방안심사 | 의결사항(중점) | 원안의결 |
| | | 제326호 | • 경제5단체 건의관련 규제정비계획 심사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327호 | 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328호 | • 경쟁제한 규제개혁지원단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329호 | 기업규제개혁작업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330호 | •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에 관한 법률안」규제심사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제66차 | 2000. 12. 8 | 제331호 | • 고창군 규제개혁 추진현황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332호 | • 전북도 규제개혁 추진현황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제333호 | •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제67차 | 2000. 12. 22 | 제334호 | • 건설현장 환경관리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335호 | • 도시계획법 시행령 중 개정안 신설 · 강화 규제 심사결과 보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제336호 | • 폐기물처리시설의 다이옥신 배출 기준 및 검사관련 규제심사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337호 | •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안 규제심사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제338호 |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규제(2차)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Ⅱ. 규제 개혁 위 원회 경제 1 분과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71차 | 2000. 10. 12 |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② 코스닥시장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규제개선방안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제72차 | 2000. 1. 19 | ① 보험관련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②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규제개혁방안 ③ 댐건설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개별과제 개별과제 원안의결 |
| 제73차 | 2000. 1. 26 | ①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규제개혁방안중 일반건설업자의 "시공참여자 하도급제한 폐지" 관련 보고 | 보고사항 | 원안접수 |
| | | ② 서울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개선방안 ③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관련 산업 자원부 규제정비계획 심사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 개별과제 개별과제 |
| | | ④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관련 공정위, 국세청, 조달청 규제정비계획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제74차 | 2000. 2. 2 | ① 서울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개선방안 | 의결사항 | 개별과제 |
| | | ②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규제개혁 방안 | 의결사항 | 개별과제 |
| | | ③ 증권거래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④ 유시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⑤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관련 금융감독 위원회 규제정비계획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제75차 | 2000. 2. 9 | ① 보험감독규정 개정안 ② 자동차보험진입규제 개선방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 수정의결 개별과제 |
| 제76차 | 2000. 2. 22 | 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제77차 | 2000. 3. 2 |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77차 | 2000. 3. 2 | ② 자동차관리 관련 규제개선방안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 개별과제 수정의결 |
| 제78차 | 2000. 3. 15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 감리업 등록기준중 출자증권조항 삭제에 대한 재심사안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⑤ 법령미근거 규제 정비심사안 ⑥ 감사인 수임규모 제한제도 개선방안 ⑦ 도시계획 지역 · 지구제도 개선방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개별과제 개별과제 중점과제 |
| 제79차 | 2000. 3, 22 | ① 도시계획 지역·지구제도 개선방안 ② 코스닥시장 건전육성을 위한 관련규제개선방안 ③ 환경경영체제 인증신청 규제 등 4건에대한 재심사안 |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 중점과제 원안접수 수정의결 |
| 제80차 | 2000. 4. 6 | ①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제정안 신설·강화 규제심사 ② 벤처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신설·강화규제심사 ③ 염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신설·강화 규제심사 ④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관련 보고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개별과제 |
| 제81차 | 2000. 4. 14 | ①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개정안」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②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개정안」 신설·강화규제심사안 ③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④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신설·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 | 강화규제 심사안 ⑤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 의결사항 | 중점과제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81차 | 2000. 4. 14 | ⑥ 법령미근거 규제정비안 ⑦ 감리제도 개선방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 개별과제 중점과제 |
| 제82차 | 2000. 5. 10 | 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② 주택 · 토지 취득관련 거주지 제한규제개선방안 ③ 건설현장 환경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정보고안 ④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개정령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 중점과제 중점과제 중점과제 수정의결 |
| 제83차 | 2000. 5. 17 | ①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안 ②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③ 신탁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④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⑤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령안 ⑥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개정령안 ⑦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⑧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⑨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의규정등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츄기중개정령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우정의결 수정의결 우정의결 |
| 제84차 | 2000. 5. 25 | 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② 은행법시행령중개정령안, 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에대한 신설·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 중점과제 보 류 |
| 제85차 | 2000. 5. 31 | ① 외국환거래법중개정법률안 ② 외국환업무감독규정 개정안 ③ 기업의 유가증권발행 관련 규제개선방안 ④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⑤ 도시공원내 시설규제 개선방안 ⑥ 도시계획 지역 · 지구제 개선방안 재심사안 ⑦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 수정의결 (이월) 중점과제 원안의결 개별과제 중점과제 수정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86차 | 2000. 6. 7 | ①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② 전기공사 감리에 관한 중복규제 정비안 | 의결사항 | 중점과제 |
| | | ③ 선물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④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신설·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⑤ 외국환업무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 강화 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⑥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정비 심사안 | 의결사항 | 개별과제 |
| 제87차 | 2000. 6. 14 | ①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대한신설· 강화규제 심시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② 제주도개발특별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③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시행규칙안에 대한 신설 · 강화 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④ 법령미근거 규제정비 심사조정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⑤ 보험영업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 중점과제 |
| 제88차 | 2000. 6. 20 | ① 금융지주회사설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신설 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② 보험영업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 중점과제 |
| | | ③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④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⑤ 품질경영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⑥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개선방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⑦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⑧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88차 | 2000. 6. 20 | 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설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신설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제89차 | 2000. 6. 28 | ①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신설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② 가격표시제실시요령중 개정고시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③ 감사원감사결과 후속조치관련 규제정비 계획 심사안(재정경제부 비금융부문)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④ 감사원감사결과 후속조치관련 규제정비 계획 심시안(관세청)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보 류 |
| 제90차 | 2000. 7. 5 | ①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② 감사원감사결과 후속조치관련 규제정비 계획심사안(건설교통부)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제91차 | 2000. 7. 12 | ①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 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②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 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관련 규제정비 계획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④ 동일인 신용공여 규제합리화 방안 | 의결사항 | 보 류 |
| 제92차 | 2000. 7. 19 | ① 불공정무역행위규제및산업피해구제에 관한법률제정안에대한신설·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②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③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 의결사항 | 중점과제 |
| | |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제93차 | 2000. 7. 26 | ① 교통체계효율화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93차 | 2000. 7. 26 | ② 열기구사용기자재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③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④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대한 특수법인 존치 관련 검토 | 의결사항 | 보 류 |
| 제94차 | 2000. 8. 23 |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 ③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 의결사항 의결사항 | 중점과제 수정의결 |
| | |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72.10 | 10-12 |
| | | ④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도입 | 보고사항 | |
| 제95차 | 2000. 8. 30 | ①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보 류 |
| |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 중점과제 |
| 제96차 | 2000. 9. 4 | ① 지식정보화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제97차 | 2000. 9. 8 | 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 중점과제 |
| | | ③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보 류 |
| 제98차 | 2000. 9. 20 | ① 유기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②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③ 수출입별도공고중개정안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④ 에너지효율기자재관리규정중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⑤ 국토이용체계 개편 방안 | 의결사항 | 중점과제 |
| | | ⑥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신설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강화규제 심사안 | |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98차 | 2000. 9. 20 | ⑦ 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법률안 신설 · 강화 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⑧ 지하수관리제도 개선방안 | 보고사항 | 수정의결 |
| | | ⑨ 하천법중개정법률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⑩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개정법률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제99차 | 2000. 9. 27 | ①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② 감리제도 개선방안 재심사안 | 의결사항 | 중점가제 |
| | | ③ 건축법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제100차 | 2000. 10. 4 | ① 담배사업법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② 소비자보호법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③ 지하수법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④ 철도운송업법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⑥ LP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중점과제) | 보고사항 | |
| 제101차 | 2000. 10. 11 |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신설 · 강화 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②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③ 증권투자회사감 독규 정개정안 신설 · 강화 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④ 건축사법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보 류 |
| | | 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중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개정령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 |
| | | ⑥ 건축사가 아닌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폐지 재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⑦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피뢰설비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설치의무 폐지 재심사안 | |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102차 | 2000. 10. 18 |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②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사전심사대상 규제보고안 | 보고사항 | |
| | | ③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사전심사대상 규제 보고안 | 보고사항 | |
| | | ④ 유료도로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강화규제 심시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⑥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안중 "주식분산 의무"에 대한 보고 | 보고사항 | 원안의결 |
| 제103차 | 2000. 10. 25 |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②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④ 공정거래사 관련 보완사항 보고(공정위) | 보고사항 | |
| 제104차 | 2000. 11. 1 |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 법률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보 류 |
| |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③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④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⑤ 공인회계사법에 대한 잔존규제 정비계획 재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제105차 | 2000. 11. 1 | ① 현장배치플랜트설치근거마련등관련 건설 기술관리법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시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②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105차 | 2000. 11. 1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⑤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⑥ 지식정보화관련 규제개혁방안(특허청) | 보고사항 | 원안의결 |
| | | ⑦ 부품 · 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안 신설 · 강화 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⑧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법률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보 류 |
| 제106차 | 2000. 11. 17 | ① 경제5단체 건의관련 정비계획(건교부)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② 보세구역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 중점과제 |
| | | ③ 부대입찰제 관련 재심사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④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⑤ 지식정보화 관련 정비계획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⑥ 다단계판매업 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⑦ 경제5단체 건의관련 정비계획(공정위 등)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 금융기관영업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 이 월 |
| | | ⑨ 증권거래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⑩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 원안의결 원안의결 |
| -114077 | 0000 44 00 | 0 | | |
| 제107차 | 2000. 11. 22 | ① 보험감독규정개정안 ② 용정되범청새무레이그기기이도등에게합법률이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 ③ 국토이용및도시계획에관한법률안 | 의결사항 의결사항 | 수정의결 수정의결 |
| | | 0 1 1311 1111 12222 | | , , , , _ |
| 제108차 | 2000. 11. 29 | ① 자동차매매업관련 규제개선방안 | 수정의결 | 중점과제 |
| | | ②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 | | ③ 석유제품품질기준등에관한고시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 | | ④ 증권회사의증권업 부수업무의 영위에 과한규정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 | | 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수정의결 | 수정의결 |
| 제109차 | 2000. 12. 6 | ① 맥주제조시설기준 완화방안 | 의결사항 | 개별과제 |
| | | ②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 | 의결사항 | 중점과제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109차 | 2000. 12. 6 | ③ 석유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④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제110차 | 2000. 12. 20 | ① 건설현장 환경관리 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사항 | 중점과제 |
| | | ②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③ 건축사법 개정안 신설 · 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④ 증권업 감독규정 제정안 신설·강화규제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⑥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제정안 신설 · 강화규제 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 | | ⑦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 의결사항 | 이 월 |
| 제111차 | 2000. 12. 27 | ①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 합리화방안 ②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개선을 DLN한 | 의결사항 의결사항 | 이 월 수정의결 |
| | | 시범실실 특례기준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③ 전기, 가스분야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규제개선방안 | 의결사항 | 수정의결 |
| | |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폐지관련 재심사안 | 의결사항 | 원안의결 |

Ⅲ. 규제 개혁 위 원회 경제 2분과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43차 | 2000. 1. 28 | 소형선박 출입항 신고 규제개선방안 폐기물관리관련 규제개선방안 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지침 개정안 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설치방법기술기준 개정안 전기통신설비의안전신뢰성기술기준 제정안 산적화물선및유조선검사강화기준 제정안 선원법시행규칙 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
| 제44차 | 2000. 2. 11 | 환경부소관 정비계획 수정안 심사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정안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개정안 생태보전협력금에 대한 규제재심사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
| 제45차 | 2000. 2. 25 | 99정통부 규제정비계획 재심사 기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농약유통 및 안전관련 규제개선방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
| 제46차 | 2000. 3. 10 |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 개정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국외반출시 승인이 필요한 생물자원고시 개정안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등에 관한고시 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
| 제47차 | 2000. 3. 22 | 임산물굴취,채취,매각관련 규제개선 공원지역내 행위제한 규제개선 음식물폐기물, 유기성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정안 |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접수 보 류 |
| 제48차 | 2000. 3. 31 |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에 대한 규제개선방안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후속조치 계획 |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48차 | 2000. 3. 31 | • 약용작물(한약재)의 기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제49차 | 2000. 4. 7 | • 항만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후속조치 •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 보고안건 의결안건 | 원안접수 수정의결 |
| 제50차 | 2000. 4. 14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고시 제정안 산림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
| | | • 농업관련 인허가 업무절차 규제개선 | 의결안건 | 보 류 |
| 제51차 | 2000. 5. 9 | 기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안 농수산물유통및기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
| | |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 등록절차등에관한 규칙 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합병, 인가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고시 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테트락클로로에칠렌 및 트리콜로로에칠렌에 대한 관리기준고시 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음식물류폐기물유기성오니의재활용용도및방법 등에관한고시 제정안 | 의결안건 | 보 류 |
| |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의결안건 | 보 류 |
| 제52차 | 2000. 5. 19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심사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98정비계획(수질환경보전법) 수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중 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음식물류폐기물유기성오니의재활용용도및방법 등에관한고시 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제53차 | 2000. 5. 26 | • 99정비계획(도선법) 수정안 심사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수협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54차 | 2000. 6. 2 | 공병회수제도에 관한 규제개선방안 사료검사요령고시 제정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안 환경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
| 제55차 | 2000. 6. 16 | 해운산업의 진입규제 및 운항관련 규제개선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정안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재심사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보 류 |
| 제56차 | 2000. 6. 23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재심사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제57차 | 2000. 6. 30 | 폐기물재활용관련 규제개선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축산업관련의 진입규제개선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보류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58차 | 2000. 7. 7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안 항로표지법 개정안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 류 수정의결 보 류 보 류 |
| 제59차 | 2000. 7. 14 | 동물용의약품중 항생제에 대한 국가검정제 폐지 관련 심사 항로표지법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60차 | 2000. 7. 21 | •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수산업법 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선박지원법 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처리에관한법률 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대암산용늪 출입금지 고시 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중 자동차연료 품질기준강화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농업관련 인허가 업무절차 개선방안 | 의결안건 | 보류 |
| 제61차 | 2000. 8. 18 |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관련 보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 원자력법 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개정안 | 의결안건 | 보 류 |
| 제62차 | 2000. 8. 25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보류 |
| | | • 산림법 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폐기물재활용 개선방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하수도법 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제63차 | 2000. 9. 1 | • 지식정보화 관련보고 | 보고안건 | 보 류 |
| | | •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제64차 | 2000. 9. 6 | • 산지이용 합리화 방안 | 의결안건 | 보 류 |
| | | •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보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 의결안건 | 보 류 |
| 제65차 | 2000. 9. 15 | • 산지이용 합리화 방안 | 의결안건 | 보 류 |
| | | •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66차 | 2000. 9. 22 | 산지의보존 및 이용관련 규제개선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안 전통식품의표준규격고시등(누락) 수도법 개정안 농업관련 민원업무절차 개선방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
| 제67차 | 2000. 9. 28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정산이자율고시 개정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의검사기관지정및 검사기준고시 개정안 팔당, 대청호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보 류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68차 | 2000. 10. 6 | 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통신산업규제의 합리화 방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수도법(절수대책방안) 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보 류 수정의결 수정의결 |
| 제69차 | 2000. 10. 13 | 오수처리시설및정화조설치 규제개선 관련보고 기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
| 제70차 | 2000. 10. 24 | 항만분야규제개선방안 산림법 분법 추진계획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제처 협의결과 보고 사료관리법 개정안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안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개정안 재심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의결안건 보고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수정의결 수정의결 보 류 수정의결 |
| 제71차 | 2000. 11. 1 | 통신산업규제의 합리화 방안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고시)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72차 | 2000. 11. 9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 재심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유임산물 매각규칙 개정안 농업지원관련 규제개선방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보 류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
| 제73차 | 2000. 11. 17 | 항만 입출항료 폐지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규제 개선방안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 재심사 경위보고 |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접수 |
| 제74차 | 2000. 12. 1 |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 축산물의 기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원안의결 |
| 제75차 | 2000. 12. 6 |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개정안 재심사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안 재심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보 류 수정의결 수정의결 |
| 제76차 | 2000. 12. 15 | 환경산업 규제개선방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 대기오염 조감을 위한 종합대책고시 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
| 제77차 | 2000. 12. 22 | 미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기준고시 개정안 기타비료의생산시설기준(고시) 제정안 제조, 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고시 개정안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규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Ⅳ. 규제 개혁 위 원회 행정 사회분과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56차 | 2000. 1. 21 | • 법인아닌사단 · 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개정안) | 의결안건 | 규제제외 |
| | | • 대한약전(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제57차 | 2000. 2. 2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개정안) | 의결안건 | 보 류 |
| |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평생교육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제58차 | 2000. 2. 11 | •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2차심사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운영실적및계획 보고 | 보고안건 | 원안접수 |
| 제59차 | 2000. 2. 18 | • 외국인보호제도규제개혁방안(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기준(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산업안전관련건축물시설기준합리화방안(개정안) | 의결안건 | 보 류 |
| | | • 교장 · 원장자격인정관련규제개혁방안 (교육부중점과제)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제60차 | 2000. 2. 29 | • 방송법시행령 및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교육에 관한규칙, 교(원)장자격증부관 설정등에관한규정(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유료직업소개사업규제개혁방안추진상황 보고 | 보고안건 | 수정접수 |
| 제61차 | 2000. 3. 10 | • 초등학교영어과외교육금지규제관련검토 (교육부 개별과제)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식품등의기준 · 규칙(식품공전)(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오 · 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62차 | 2000. 3. 17 | 소화약제와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개정안)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개정안) 청소년보호연령기준관련 규제개혁방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63차 | 2000. 3. 24 |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식품영업허기제한기준(개정안)운전중휴대폰사용금지 규제신설 추진방안 보고 |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 수정의결 보 류 원안의결 |
| 제64차 | 2000. 3. 31 | 보호구성능검정규정(개정안) 수입식품등검사지침(개정안)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수정의결 보 류 |
| 제65차 | 2000. 4. 7 | 온천법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제정안) 일하는여성의집설립 · 운영지침(개정안) 유료직업소개사업관련규제합리화방안 보고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 수정의결 수정의결 보 류 원안접수 |
| 제66차 | 2000. 4. 14 | 방염제의검정기술기준및방염성능의기준(개정안) 사학기관재무 · 회계규칙(개정안) 의료보험관련규제개혁방안(복지부 중점과제) 영화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67차 | 2000. 5. 12 | 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 업무에관한규정(개정안) 산재보험법시행령(개정안) 의료보험관련규제개혁방안(부처중점추진과제) 방송위원회규칙 · 고시(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2000년도편성비율(방송위고시)(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보 류 보 류 |
| 제68차 | 2000. 5. 22 | 산업안전관련건축물시설기준합리화방안 (중점추진과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의료보험관련규제개혁방안중 재검토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시행규칙(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68차 | 2000. 5. 22 | • 2000년도편성비율(방송위고시)(개정안) 2차심사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제69차 | 2000. 5. 29 | 유원시설업종사자안전교육실시지침(제정안) 유기기구안전성검사기준(개정안)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개정안) 2차심사 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수정의결 보 류 원안의결 |
| 제70차 | 2000. 6. 5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법령정비 추진현황 보고 변호사법시행령(개정안) 의료전달체계개선필요성 재검토 보고 | 보고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
| 제71차 | 2000. 6. 12 | 저작권법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영양사에관한규칙(개정안)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변리사관련규제개혁방안 재심사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보 류 원안의결 |
| 제72차 | 2000. 6. 19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2차심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안) 화장품법시행규칙(제정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증명민원감축방안(행자부 중점추진과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보 류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보 류 |
| 제73차 | 2000. 6. 26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안) 정신보건법시행령 ·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관한 규칙(개정안) 아동복지법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3차심사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
| 제74차 | 2000. 6. 3 | 소방시설공사시공능력의평가및공시방법 등에관한고시(제정안)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 보 류 보 류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74차 | 2000. 6. 3 | •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안) 2차심사 • 약품외품 범위지정(제정안) • 유료직업소개사업관련 규제합리화방안 추진 상황 보고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
| 제75차 | 2000. 7. 6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식품위생 검사기관지정기준(개정안)의료용구지정등에관한규정(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
| 제76차 | 2000. 7. 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안)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제정안) 시공능력의평가및공시방법등에관한고시(제정안) 자동차학원 규제개혁방안(경찰청 중점과제)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보 류 |
| 제77차 | 2000. 7. 20 |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시행령(개정안) 자동차학원관련 규제개혁방안(경찰청 중점과제) 2차심사 규제개혁모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2000년 규제정비계획 보고 병역대체복무관련 규제개선방안(병무청 중점과제)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보 류 원안접수 |
| 제78차 | 2000. 8. 11 |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령(개정안)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 시행령 · 시행 규칙(개정안) 자동차학원관련 규제개혁방안(경찰청중점과제) 3차심사 도로교통법(개정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 보고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 류 수정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보 류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79차 | 2000. 8. 17 |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안)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제정안)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제정안)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심사 요청안건 조치계획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보 류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
| 제80차 | 2000. 8. 25 | • 도로교통법 개정안관련(개정안) 재심사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
| 제81차 | 2000. 8. 31 | 문화산업관련 규제개혁방안(Ⅱ) 민원교도소등의설치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외국어학원설립 · 운영관련 규제합리화방안 (교육부 중점과제)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 보고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 보 류 수정의결 보 류 보 류 원안접수 수정의결 |
| 제82차 | 2000. 9. 5 | |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접수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83차 | 2000. 9. 8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국외유학에관한규정 개정안관련 보고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2차심사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안) 2차심사 소방법령(개정안) 사법시험법(제정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개정안) |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보 류 원안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수정의결 |
| 제84차 | 2000. 9. 19 | • 변호사법(개정안) 규제심사관련 보고 | 보고안건 | 보 류 |
| 제85차 | 2000. 9. 22 | 문화산업관련규제개혁방안(Ⅱ)(문광부 중점과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추가 재심사 사법시험법(제정안) 추가심사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86차 | 2000. 10. 6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2차심사 경비업법(개정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문화산업 규제개혁방안(Ⅲ)(문광부 중점과제)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추가심사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보 류 원안의결 보 류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87차 | 2000. 10. 13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자격의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추진상황 보고 | 의결안건 보고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88차 | 2000. 10. 20 | 문화재보호관련 규제의 합리화방안 (문화재청 중점과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개정안) 고용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노동부 중점과제) 외국인학교설립 · 운영관련 규제개혁방안 (교육부 중점과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본회의 상정관련 보고 |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 원안의결 수정의결 유장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89차 | 2000. 10. 27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개정안)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 |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
| 제90차 | 2000. 11. 2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안) 대학입시에 있어 본고사 시행관련 보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국민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문화재보호관련 규제합리화방안 (문화재청 중점과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규제심사 관련 보고 |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보고안건 | 수정의결 원안접수 원안의결 수정의결 수정의결 원안접수 |
| 제91차 | 2000. 11. 17 | 치과기공소관련 규제개선 자동차 선팅 규제개선 추진상황 보고 사법시험법 시행령(제정안) 외국인 국내활동관련 규제합리화방안 (법무부 중점과제) | 의결안건 보고안건 의결안건 의결안건 |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원안의결 |

| 구분 | 회의일자 | 상 정 안 건 | 의결보고사항 | 회의결과 |
|------|--------------|--|--------|------|
| 제91차 | 2000. 11. 17 | • 전자직업소개업관련 규제개혁방안 (노동부 중점과제)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경제5단체 건의사항 조치계획(통일부, 노동부)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유전자치료제허가및임상시험관리지침(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방송광고판매대행에관한법률(제정안) | 의결안건 | 보 류 |
| | | • 학교위생 정화구역 관련 규제합리화방안 (교육부 중점과제)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제92차 | 2000. 11. 23 | • 의료광고 및 변호사광고 개선관련 (복지부, 법무부)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청소년보호법(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옥외광고물관련 규제개혁방안(행자부 중점과제)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제93차 | 2000. 12. 1 | • 비임상시험관리기준(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 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개정안) | 의결안건 | 원안의결 |
| | | (행자부 중점과제) | | |
| | | • 방송광고판매대행에관한법률(제정안) 추가심사 | 의결안건 | 보 류 |
| 제94차 | 2000. 12. 7 | 의약품등검사업무관련 규제개혁방안 (식약청 중점과제)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추가 규제심사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출판 및 인쇄진흥법(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정안) 추가심사 | 의결안건 | 보 류 |
| 제95차 | 2000. 12. 15 | •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관한 규칙(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방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 | | • 체육시설 설치 · 운영관련 규제개혁방안 추진 | 보고안건 | 수정의결 |
| | | 상황 보고 | | |
| | | • 방송광고판매등에관한법률(제정안) 추가심사 | 의결안건 | 수정의결 |

2000년도

규제개혁 백서

| 발행처 발행인 | 규제개혁위원회/국정홍보처 오홍근 |
|------------|----------------------|
| 편집제작 |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
| 편집협력 | 미담기획 |
| 인쇄·제본 | 일지사 |
| 발행일 | 2001. 5. 31 |
| | |

ISBN 89-86981-24-6 13350

```
규제산고센터안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206호 규제개혁위원회(우:110-760)

전화 (02) 722-9797

팩스 (02) 720-2056

www.opm.go.kr

www.rrc.go.kr

국정 홍보처「열린 정부알림 마당」

www.allim.go.kr